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Improvement of City Architect System in South Korea

심경미 Sim, Kyungmi
이혜원 Lee, Hyewon
김민경 Kim, Minkyung

(a u r i

기본연구보고서 2020-5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Improvement of City Architect System in South Korea

지은이 심경미, 이해원, 김민경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02. 18.)
인쇄 2020년 10월 26일, 발행: 2020년 10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29,000원, ISBN:979-11-5659-286-0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 연구책임	심경미 연구위원
! 연구진	이혜원 연구원 김민경 연구원
! 외부연구진	이상현 대구광역시 주무관 이인기 FORUM D&P 대표 황의현 Studio for Essential Architecture 대표
! 연구보조원	김다영, 박지은, 양유선, 한진엽

! 연구심의위원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김태경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강인호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연구자문위원	강인호 총괄계획가(부여) 고은정 디자인기획관(수원) 김규린 공공건축가(충남·경북) 김대익 총괄건축가(용인) 김민석 공공건축가(경남) 김용미 총괄건축가(제주) 김인철 총괄건축가(부산) 김창균 공공건축가(당진·제주·서울) 김태형 서울 도시공간개선단 단장 김혜란 지역총괄계획가(前고령·임실) 김혜진 서울 은평구 건축과 주무관 민현식 총괄건축가(경남) 박기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과장 박 신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팀장 배병길 총괄건축가(경북) 신승수 도시건축관리단장(영주) 신창훈 총괄건축가(대구 수성구) 안재락 총괄건축가(남해) 오신욱 공공건축가(김해)

1 연구자문위원

유방근 공공건축가(경남·사천)
유형두 공공건축가(광주)
윤두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기획조정단 실장
윤여갑 공공건축가(당진)
윤철재 총괄건축가(의성)
윤충열 총괄건축가(전북)
이기옥 총괄건축가(파주)
이민아 총괄건축가(춘천)
이양재 공공건축가(충남·행복청)
이옥화 공공건축가(서울·인천·포천)
이원중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주무관
장진우 수원시 도시디자인단 팀장
조준배 지역재생총괄계획가(전주)
차주영 총괄계획가(당진)
최삼영 총괄계획가(진주)
함인선 총괄건축가(광주)
현군출 공공건축가(제주)

제1장 서론

2019년 4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에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참여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는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당시 규정이 마련되어, 건축·도시 관련 계획 및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구축되었으나, 법에는 자격기준과 업무범위만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제도를 이해하기에 한계를 안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영주시(2009)와 서울특별시(2012)가 선도적으로 본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국토교통부도 본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 영주시와 서울특별시의 성과가 알려지면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지자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 담당자들과 지자체장, 관련 공무원, 그리고 민간전문가로 활동할 전문가들조차 이 제도에 대한 개념과 역할,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2019년 12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의 업무 및 운영 체계와 관련한 사항들도 큰 변화를 맞고 있다. 건축기획 업무 의무화, 사전검토 및 심의 대상 확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이들 유관조직들과 민간전문가와의 관계 설정, 총괄·공공건축가 수행업무와의 관계 설정,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확보 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국내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 파악조차 미미한 실정이다.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내 운

영현황과 실태를 토대로 많은 지자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매우 단순화되어 있는 법 규정과 관련하여 혼동을 줄이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 ‘지자체 단위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이슈와 운영 실태를 토대로, ①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② 많은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정립·제시하며 ③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개념 및 용어를 검토하고 관련된 이슈를 도출하여 연구 분석의 주요 틀로 활용하였다(2장).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국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 분석하였다(3장). 이 중 ‘지자체 단위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를 중심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이슈별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회의 및 면담조사를 통해 국내 지자체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4장). 이와 함께 해외(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의 총괄건축가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별 특성 및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5장). 국내외 현황 및 분석을 종합하여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6장).

제2장 민간전문가 제도 및 주요 이슈사항 검토

2장에서는 「건축기본법」에 의한 민간전문가 제도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도입 추진과정, 개념 및 용어를 검토하고, 민간전문가 정책 변화를 개괄한 후 본 제도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도시분야 민간전문가는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일컫는 명칭을 지자체별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19년 7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서의 용어와 개념을 따르고자 한다(표 요약-1).

주요 이슈는 크게 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 지원사업(2013~2019), 언론보도 및 비평, 그리고 2019년 말에 진행되었던 전국 단위 권역별 설명회에서 대두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관련된 이슈를 크게 위촉 및 근무, 역할 및 업무, 담당부서 및 유관조직 세 가지로 구분하여 총 12가지로 정리(표 요약-2)하였다. 이들 이슈는 전문가 의견수렴과 운영실태 분석의 주요 틀로 활용하였다.

[표 요약-1] 본 연구에서의 민간전문가 관련 용어 정의

총괄건축가 /총괄계획가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기획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
공공건축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민간전문가

출처: 국토교통부(2019.7),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pp.1-2.

[표 요약-2]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이슈 종합

구분	이슈 및 문제점
위촉 및 근무	1. 위촉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 절차의 공정성(선정방식, 위촉주체) - 자격기준 문제 : 주관적, 법과 다른 기준
	2.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위상 문제
	3. 공공건축가 구성 문제 : 신진건축사 배제, 지역건축사 비율
	4. 보수지급체계 : 보수기준, 지급방식
역할 및 업무	5. 도 민간전문가 운영 필요성 및 업무 차별화
	6. 도시규모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 도시규모별 역할 및 업무의 차별화 필요성과 업무내용 - 중복사업, 관련사업들의 연계·조정업무의 필요성, 인식문제 - 정책 및 사업발굴 기획업무의 필요성, 인식문제
	7. 공공건축가 업무 - 직접설계 참여에 대한 적절성 - 공공건축가의 역할과 권한 : 조정 or 자문
	8. 별도 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
담당부서 및 유관조직 체계	9. 민간전문가 유관조직들과 민간전문가 담당부서와의 관계
	10. 유관조직과 민간전문가 관계 설정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민간전문가
기타	11. 분야별 전문가 운용의 문제
	12. 민간전문가의 역량,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행정부서의 역량

출처: 저자 작성

3장 국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3장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국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전반적인 도입·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 분석하였다. 첫 번째 지자체 단위에서는 먼저 전국을 대상으로 현재 본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를 파악하고, 지자체별로 기초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두 번째 공공기관 단위에서는 마찬가지로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우선 파악하고, 기관별로 도입배경 및 운영체계, 업무 및 역할, 운영 규정 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처 프로젝트 단위에서는 그 수와 범위가 방대하여 국내 건축·도시 관련 중앙부처 사업 중 민간전문가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선별하여 운영현황을 파악하였다. 세 가지 유형별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단위 민간전문가는 2020.5.13일 기준 총 39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있는 지자체는 총 29곳이며, 이 중 22곳은 공공건축가도 운영하고 있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없지만 공공건축가만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10곳이나 된다. 이 중 본 제도를 2년 이상 운영한 곳은 8곳뿐으로, 대부분 2019년 이후 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현황을 살펴볼 때, 위촉기간, 전담인력 유무, 총괄 및 공공건축가 유무, 유관조직 신설 현황 등 운영체계 및 기반구축 상황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전문가 운영 관련 이슈에 대해 기초현황을 토대로 보다 심층적인 면담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민간전문가는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한국철도공사 총 3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공기관에서의 운영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하지만 행복청의 경우 도시와 건축 업무를 총괄하는 민간전문가를 별도로 두면서도 상호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총괄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점, 전문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전담지원조직(기획조정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이 특징적이며 선도적이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타 지역 교육청의 총괄기획자들과 달리 학교공간혁신사업 관리 외에 서울특별시 교육공간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아직까지 활동이 미미한 수준이나 특정부처 자체적으로만 진행되는 소방시설, 경찰시설 등을 소관하는 공공기관의 운영모델로 추후 행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 민간전문가는 각 사업별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총괄·자문 역할로 민간전문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한계점과 문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역량있는 전문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사업마다 민간전문가 위촉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단계별로 다른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가 나타나 사업의 전과정(기획(계획)-설계-실행(시공))을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대부분 국비지원 이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중간지원조직 또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어 실행의 어려움이 있다. 넷째, 각 사업마다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 확보, 지역 내 관련 사업과의 연계, 관련 주체와의 관계 조율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별 민간전문가 운영 및 지원체계에 대한 가이드가 미흡하여 민간전문가 역할 정립에 상당기간 노력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장 지자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실태분석

4장에서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운영 유형 중 ‘지자체 단위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이슈별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회의 및 면담조사를 통해 지자체별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간담회는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도시규모별로 총 4회(도 1회, 특광역시 1회, 시군구 2회), 공공건축가 2회 총 6회를 진행하였다. 지자체 운영실태 사례분석은 민간전문가 선정 및 위상, 전담부서 신설·운영 및 전문직 공무원(임기제) 운영, 업무수행체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역할 및 활동사항, 공공건축가 운영체계, 유관조직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 이슈 및 쟁점사항과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전문가 위상정립이 미흡하여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연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기와 근무일수로 산정되는 보수지급체계와도 연계되어 있는 문제로, 위상정립방안을 모색하고 임기 및 보수지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구체적인 위상정립방안에 있어서는 행정체계규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시간을 갖고 자연스럽게 정립이 되어가는 방향이 좋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타났다. 둘째, 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할자치단체에서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는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 셋째, 이 경우 도시규모에 따라 도, 특·

광역시, 시군구 단위별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업무와 역할을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의 업무와 역할의 항목의 조정보다는 도시 규모별로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넷째, 행정의 민간전문가에 대한 인식과 담당직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제기하였다. 관련하여 자문업무가 일회성 또는 면피용으로 머물지 않도록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섯째, 공공건축가 직접수행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기획 업무는 적극적으로 권장,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한 반면, 설계업무 직접수행에 대해서는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에 있어서도 공공건축가가 설계안 자문보다는 건축기획 단계에서의 자문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여섯째, 공공건축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등에 대한 교육과 교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관조직 구성과 민간전문가 간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건축정책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가 포함되고 위원장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겸직할 필요가 있으나, 공심위의 민간전문가 참여는 민간전문가 활동내용과 연계하여 지자체 여건에 따라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지자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실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위촉 및 근무 측면, 역할 및 업무 측면, 담당 부서 및 유관조직 체계 측면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위촉 및 근무 측면에서는 첫째, 선정절차와 관련해서 지자체 담당자들은 제도 도입을 위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후보자 목록을 구성하는 업무에서부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위상에 대한 조례규정이 대부분 없는 가운데 임시직이라는 인식이 커, 아직까지 현장에서도 민간전문가에 대한 위상정립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요약-3]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이슈 및 문제점 최종 종합 : 위촉 및 근무

구분	현황	한계 및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
선정 및 근무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괄) 대부분 지명추천 후 지자체 장 위촉, (공공) 대부분 공개모집 지자체 자체규정에 자격기준을 법보다 포괄적으로 규정 위촉기간 기본 2년(1~2차례 연임 가능) 대부분 비상근 운영(수원만 상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모집 시 적극적 홍보 필요 후보자 목록을 구성하는 어려움 발생 2년간 한정된 역할수행이라는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풀 제공 지자체 여건에 따른 임기도입 유도 (시장과 임기 동일)
보수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회의, 자문수당으로 보수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민간전문가 역할, 활동별 적정 보수지급 기준 마련 미흡 	-
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 위상정립이 없거나 국장, 또는 4급상당의 지위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전문가에 대한 위상정립 미흡 	-인식제고를 위한 관계자(교육) 중요성 강조 필요

출처: 저자 작성

다음으로 2) 역할 및 업무 측면에서는 첫째, 지역의 비전 및 미래상 설정과 관련한 업무는 대부분 수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 마련의 어려움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가장 많은 비중의 업무인 자문은 일회성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효성 확보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소단위로 관련 사업 간의 연계, 조정의 역할이 중요한 지방 소도시, 군 지역, 구 단위의 경우 일부지역에서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도시규모에 따른 주요업무를 제시하여 인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부지역에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임기 초기 제도도입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역의 틈새업무를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공건축가가 프로젝트에 단순히 배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초기에 공공건축가의 운영방향과 역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 지역의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민간전문가가 해당지역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확립과 제도의 이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 및 협력체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요약-4]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이슈 및 문제점 최종 종합 : 역할 및 업무

구분	현황	한계 및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역할 및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 및 미래상 설정 지원 업무 수행 * 일부 지자체 기획예산 마련(당진, 원주, 제주) 	- 제도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별도 예산마련에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군지역에서 정소단위의 사업간 통합정연계, 조정역할 수행 	- 대부분 중소도시, 군지역에서 사업부서 요청시 자문하는 형태로 사업연계조정 업무 수행 미흡	- 군지역, 구단위의 중요업무로 제안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지역에서 개별프로젝트 자문업무 수행(평균 54회, 수행프로젝트 중 50% 이상) 	- 대부분, 일회성으로 자문업무	- 자문업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지역 가시적 성과위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공공건축가와 협업을 통한 틈새업무 발굴 	- 별도 예산이 마련되어있지 못할 경우 추진하기가 어려움, 행정적, 인력 뒷받침 한계	- 공공건축가의 사명감과 지역의 인식을 넓힐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지역에서 발주방식 및 설계공모 개선 방안에 주력 	- 설계공모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역의 논란 발생 - 지역건축가들의 반발 발생	-
공공건축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지역 공공건축가, 행정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일회성 워크숍, 포럼 등 진행 충남, 제주 등 도지사와의 면담 	- 제도도입 초기 대부분지역에서 관계자 교육 추진 미흡 - 대부분 지자체장과의 보고체계 마련 미흡	- 제도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업무의 중요성 제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서요청시 공공건축가 자문역할을 주로 수행 	- 대부분 지역에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와의 협업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프로젝트 일회성 자문으로 사명감을 갖기 어려움	- 공공건축가 운영방안 및 역할을 초기 마련할 필요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간의 정보교류 및 협업구조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지역에서 사업추진 전 과정에 조정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수원, 당진, 제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진 월1회 공공건축가 간의 업무회의를 통한 정보교류 		

출처: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3) 담당 부서 및 유관조직 체계 측면에서는 첫째, 전담조직은 서울이 유일하며, 일부지역에서 1~2인의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순환보직체제로 인해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문직 공무원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운영체계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민간전문가 운영 지원부서의 전문직 운영을 권장하고 순환보직을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9월 현재 건축정책위원회는 6곳,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18곳,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는 3곳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 건축정책위 4곳, 공심위 8곳에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나, 공심위 6곳에는 아예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민간전문가가 심의기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와 심의주체를 구분하여 따른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축정책위원회와 달리 공심위는 민간전문가 업무 및 활동 정도와 연계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요약-5]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이슈 및 문제점 최종 종합 : 담당부서 및 유관조직 체계

구분	현황	한계 및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
행정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제외 전담조직 운영 지역 부재 일부지역만 1~2인 전담인력 확보 전문직 공무원 운영시 전문적 체계적 업무 지원 가능(총담, 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업무 지속성 및 전문성 확보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직공무원 운영 권장, 임기 내 담당자 순환보직 지양 유도(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사업부서의 자문요청시 업무수행 일부지역 지자체 방침에 따라 자문시기 명시, 결재라인 포함, 구두보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일부지역 활동결과 환류체계 마련(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서의 요청이 없을 경우 유관사업의 현황을 파악, 개입하기가 어려움 공공건축가 일회성, 면피성에 그친 자문수행건수가 증가, 운영부서에서 사업추진과정 및 결과반영을 알기가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운영, 민간전문가 간의 업무수행체계 마련 필요 활동결과 모니터링체계 마련 유도
유관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지역 건축정책위 공심위 역할 수행 대부분 시군지역에서는 공심위 운영 일부지역은 자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기구에 민간전문가 불포함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미흡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내 자문위원으로 민간전문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직 일부지역에서는 건축정책위, 공심위 설치가 미흡 타부서의 프로젝트 자문요청시 심의와 자문을 동시에 수행하여 공정성 확보 어려움 지역공센에서의 공공건축가의 역할 정립이 아직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센에서의 공공건축가 역할 정립 필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개별 프로젝트 민간전문가 위촉시 대부분 역할 위임 일부지역은 개별프로젝트 총괄, 조정역할 수행(영주) 일부 지역은 타부서 관련 심의기구에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어 사업부서의 요청 전 민간전문가의 개입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정립 필요

출처: 저자 작성

5장 해외 민간전문가 제도 사례분석

5장에서는 총괄건축가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국가별 특성 및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세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나라별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네덜란드는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건축가를 비롯하여 주정부, 시 총괄건축가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약 20여개 도시에서 총괄건축가가 활동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소도시들이다. 암스테르담은 최근 총괄건축가를 재도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상정립이 불분명한 가운데 법적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자문과 조정(심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좋은 도시 디자인을 위해 여러 주체들 간의 협업과 주변 지역 간의 조정을 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네덜란드식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한 벨기에는 3개 주정부 모두 총괄건축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브뤼셀을 포함 총 5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상근직이다. 벨기에 주정부 총괄건축가는 국가 수준의 총괄건축가로서의 전문성 외에도 인성심사 등 선정절차가 7단계로 매우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다. 이는 선정이 곧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명예로운 자리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이들 주정부 총괄건축가는 연구조직을 포함한 그룹으로 운영되고, 일부 도시 단위에서도 '아뜰리에'라는 연구조직을 갖고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직접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거나 주요 프로젝트의 건축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비롯해 바람직한 도시를 위한 지향점을 제시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덴마크는 현재 98개 지자체 가운데 9개 지자체가 총괄건축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상근직이다. 임기는 시장취임과 같이하거나, 코펜하겐의 경우 5년 임기로 2회 연임이 가능해 장기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바일레시 한 곳뿐이지만, 전략사업을 기획하고 수립할 수 있는 별도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점, 도시실험실을 운영하여 도시의 개발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논의하고 있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해외 운영현황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만, 그럼에도 국내와 비교했을 때 ① 국가차원의 건축가(국가건축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네덜란드), ② 임기가 5~10년으로 다소 길게 설정되어 있거나 시장임기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 ③ 대부분 상근직으로 행정체계 내에서 활동하고 있고(네덜란드는 비상근직으로도 운영), 관련해서 민간영역까지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 ④ 모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는 점 등

은 국내와 다소 차이가 크다. 반면 ① 위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예산 등의 부담으로 많은 지자체가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개인의 역량과 주관적 판단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는 점 등은 국내 실정과 비슷하다.

국내에의 시사점으로는 ① 바람직한 도시를 위한 방향이나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다 장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보다 다양한 활동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조직을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혹은 이러한 활동을 공공건축가와 함께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공무원 외에 시장, 정치인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반면에 국가건축가 도입, 민간영역까지 업무범위 확대, 상근직으로 운영 등은 국내 실정과 상황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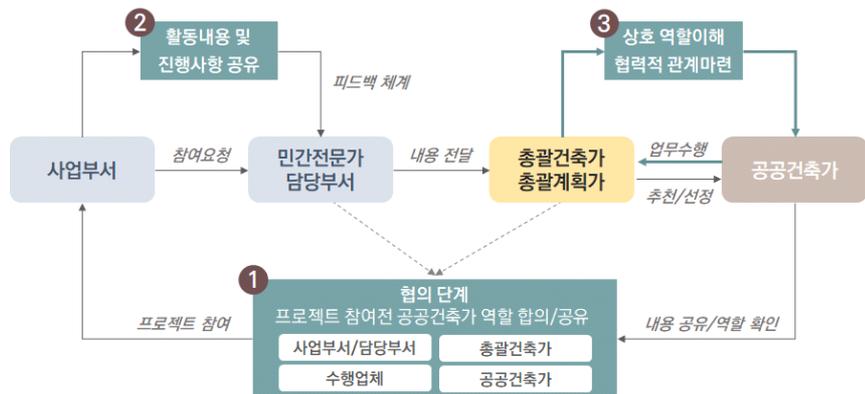
6장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6장에서는 국내외 현황 및 분석을 종합하여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위촉 및 근무관련, 역할 및 업무수행 관련, 운영체계 및 조직 관련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촉 및 근무관련 사항으로 ① 위촉과정에서 제기된 전문가 풀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목록을 아카이브하여 자료를 공개, ② 조례 및 실제 지자체 현황을 반영하여 자격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 추진, ③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위상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하여 임기기간과 보수지급체계를 위상에 걸맞게 개정, ④ 공공건축가는 지역건축사 구성 비율 보다는, 지역건축사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⑤ 공공건축가 업무 및 활동 유형별로 적합한 세부적인 지급기준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이 중 위상정립과 관련하여서는 3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역할 및 업무수행 관련 사항으로는 ① 먼저, 도 단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도·특별시·광역시 산하 시·군·구(자치구) 단위에 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② 도시규모별 업무 차별화는 기존 가이드라인의 업무를 도시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기 보다는, 도시규모별로 고려해야 할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도시규모별로 보다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를 제시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③ 공공건축가 업무와 관련해서는 디자인 자문보다는 기획단계 자문에 중점을 두고 수행할 것, 기획단계부터 참여시 프로젝트의 전 과정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직접설계 수행은 기본적으로 지양하되 불가피할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 제안하였다. ④ 공공건축가 운영체제와 관련해서는 사업 참여 전에 역할에 대한 합의와 공유를 위한 협의단계를 거칠 것, 사업 참여 후 활동내용 및 진행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피드백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것, 공공건축가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 협력적 관계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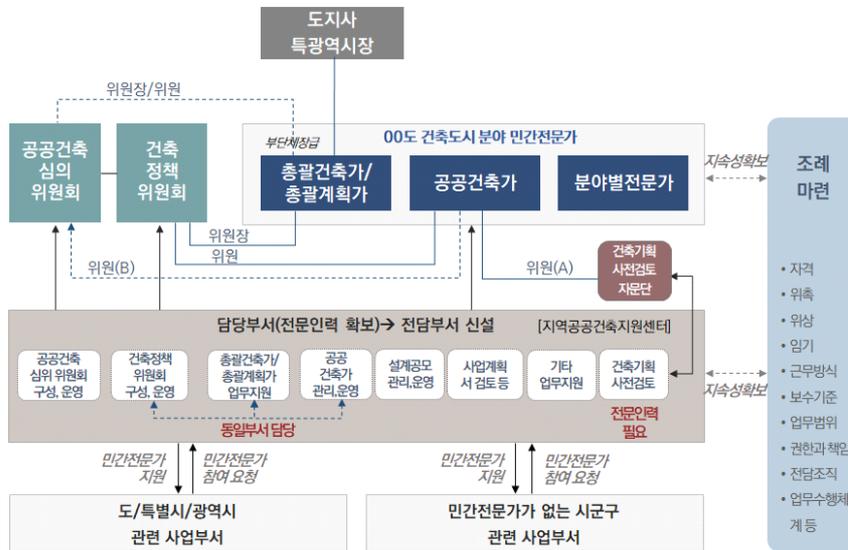
[그림 요약-1] 공공건축가 업무수행체계 운영 개선방향 개념도

출처: 저자 작성

셋째, 운영체제 및 조직관련 사항으로는 ①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신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를 위해 전문직위 지정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근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② 유관조직들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는, 공심위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민간전문가들의 해당 업무범위와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지자체 여건에 맞게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는 자문단과 공공건축심의위원 중복운영 지양, 자문단에 공공건축가 포함 시 본인이 직접 수행한 프로젝트는 사전검토에 대한 자문수행을 지양하도록 방향을 설정하여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것을 제시하였다. ③ 건축정책과 건축기획업무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심위의 역할을 건축정책위원회가 대신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건축정책위원회 업무관련 법규정 개정을 제안하였다. ④ 민간전문가의 활동사항이 사업 전과정에서 일관성있게 수행되도록 담당부서, 운영부서, 위원회, 센터 등과의 운영체제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 시행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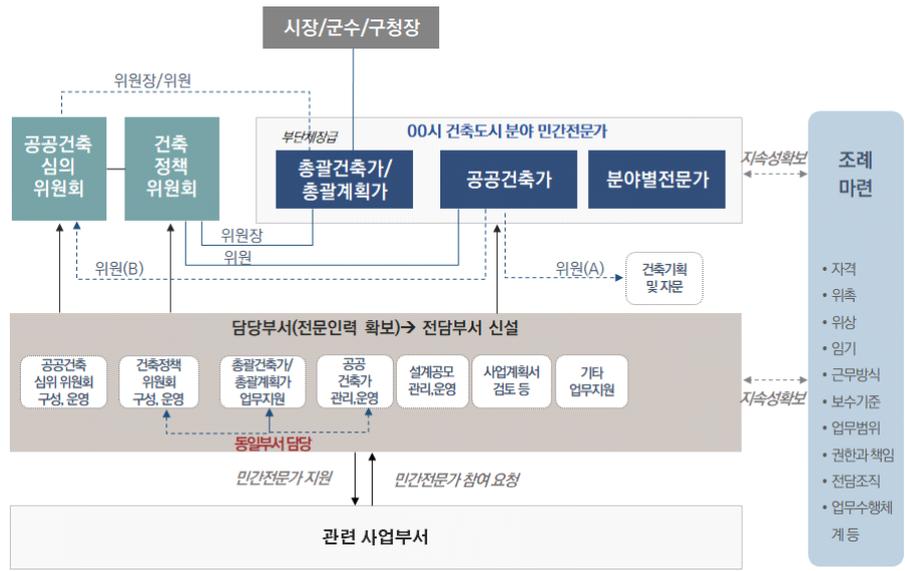
다음으로 앞서 제시된 개선방향을 토대로 지자체 규모별 민간전문가 운영모델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 운영모델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수정, 추가할 사항을 정리하여 운영모델을 제시하였다. 크게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및 운영 개정(안), 공공건축가 업무 및 운영 개정(안),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개정(안)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각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2단계(도·특광역시, 시·군·구)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3단계(중소규모 시 및 군구, 특광역시/대규모 시, 도)로 구분체계를 조정하고, 각 지자체 규모별로 고려해야 할 여건과 업무를 정리하였다. 공공건축가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공건축물 설계업무 참여에 대한 세부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활동에 대한 원칙 또는 방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건축정책위원회 외에 공심위와 지역공공건축센터, 센터 내 사전검토 자문단과 민간전문가 간의 관계 설정, 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부서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요약-2] 광역자치단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체계(안)

출처: 저자 작성



[그림 요약-3] 기초자치단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체계(안)

출처: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건축기본법」, 「공공부분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분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건축기본법」상에서는 민간전문가 용어 정립, 자격기준 현실화, 업무범위의 구체화, 유관조직과의 관계 설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표 요약-6] 「건축기본법」 개정사항

구분	관련사항	개정사항
법 제23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민간전문가 용어	→ 민간전문가 용어 삭제, 총괄건축가 또는 총괄계획가(총괄계획가 등)와 공공건축가를 법정 용어로 새롭게 명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	→ 총괄건축가 등과 공공건축가를 구분하여 업무 명시 →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조항 삭제
	보수기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제시
	자격기준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의 자격기준 구분 → 직위기준을 자격기준으로 변경 (박사학위소지자) → 해외자격증소지자 명시 등 자격기준 현실화
법 제19조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유관조직 기능 확대	→ 타 법령에서 심의 규정사항 포함

출처: 저자 작성

건축기본법 개정안과의 법규 간 정합성을 고려하고 법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임기, 보수 기준, 자격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안

을 제안하였으며,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서는 민간전문가의 전담조직 및 관련 업무지원 조직 및 인력 규정에 대한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표 요약-기]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사항

관련사항		개정사항
가이드라인	임기 및 근무방식	→ (1인) 임기는 4년(또는 5년)으로 하되 연임 → (2인) 장기적 위촉 원칙, 3년마다 재임용 가능 →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운영
	보수지급체계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월급형태로 지급 → (공공건축가) 활용유형, 업무난이도별 보수기준 마련
	민간전문가운영체계	→ 순환보직 지양,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 전문직위 지정
업무기준	민간전문가 업무지원	→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 전문직위 지정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민간전문가 업무 지원역할 수행

출처: 저자 작성

7장 결론

본 연구는 민간전문가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자체 단위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 실태를 처음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현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점, 도시 규모별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및 역할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정과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등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관련 법규 간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본연의 취지대로 민간전문가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법개정과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지자체 단위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하여, 공공기관형과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실태분석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향후 각 유형에 맞는 운영모델 마련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민간전문가, 총괄건축가,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디자인관리체계, 공공건축

차례 CONTENTS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민간전문가 제도 및 주요 이슈사항 검토	11
1. 국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 개요	11
1) 국내 민간전문가 제도의 이해 및 도입배경	11
2)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추진과정	13
2.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개념 및 용어 검토	15
1) 법률에서의 관련 용어 및 정의	15
2) 선행연구와 해외에서의 관련 용어 및 정의	18
3) 본 연구에서의 용어 정의	20
3. 민간전문가 정책 변화 및 주요 이슈	23
1) 최근 정책 변화	23
2)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주요 이슈	25
3)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주요 이슈 종합	29
제3장 국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31
1.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32
1) 지자체 민간전문가 위촉 현황 : 위촉 지자체 수, 규모 및 명칭, 기간	33
2) 조례제정 및 담당부서 현황	38
3) 민간전문가 위촉절차 및 근무체계(위상, 임기, 근무형태, 보수체계)	41
2.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45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6
2) 서울특별시 교육청	51
3) 한국철도공사	54
3.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56

1) 운영현황 및 개요	57
2) 역할 및 관계	60
3) 운영 및 지원체계	62
4. 소결	66
1) 지자체 민간전문가	66
2)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69
3)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 민간전문가	70
제4장 지자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실태 분석	73
1. 분석개요	74
1) 조사목적 및 방향	74
2)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75
3) 조사대상 및 조사 실시	77
2. 민간전문가 간담회 주요 내용	79
1) 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79
2) 특광역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83
3) 시군구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87
4) 공공건축가 간담회	92
5) 소결	95
3. 지자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실태 사례분석	102
1) 민간전문가 선정 및 위상	102
2) 전담부서 신설·운영 및 전문직 공무원(임기제) 운영	104
3) 업무수행체계	108
4)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역할 및 업무	111
5) 공공건축가 운영체계	117
6) 유관조직 운영 현황	119
7) 기타	121
8) 소결	123
제5장 해외 민간전문가 제도 사례분석	127
1. 네덜란드 도시총괄건축가	128
1)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128
2) 행정적 지위	130
3) 역할	130
4) 운영 특성	131
2. 벨기에 총괄건축가	133
1)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133
2) 행정적 지위	134

3) 역할	136
4) 운영 특성	137
3. 덴마크 도시건축가	139
1)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139
2) 행정적 지위	140
3) 역할	141
4) 운영 특성	144
4. 국내에의 시사점	146
제6장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151
1. 기본방향	151
2. 운영실태 분석 종합 및 개선방향	153
1) 위촉 및 근무 관련	153
2) 민간전문가 역할 및 업무수행 관련	157
3) 운영체계 및 조직 관련 등	162
3.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모델 제시	165
1)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및 운영 개정(안)	165
2) 공공건축가 업무 및 운영 개정(안)	168
3)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개정(안)	170
4. 제도 개선방안	173
1) 건축기본법 개정(안)	173
2)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안)	176
제7장 결론	181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181
2. 정책제안 및 향후 연구과제 제안	183
참고문헌	187
SUMMARY	195
부록	207
1.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현황(20.9월말 기준)	208
2.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213

[표 1-1] 「건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민간전문가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	2
[표 2-1] 민간전문가 개념 및 용어(법·제도)	15
[표 2-2] 각종 사업법에서의 ‘총괄계획가’ 법적 정의	17
[표 2-3] 선행연구에서의 민간전문가 개념 및 용어	18
[표 2-4] 선행연구에서의 민간전문가 관련 용어	18
[표 2-5] 해외 민간전문가 용어	19
[표 2-6] 네덜란드 지자체별 민간전문가 업무범위	19
[표 2-7]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과 공공건축특별법에서의 용어 정의 비교	22
[표 2-8] 「공공건축특별법」 발의안(20.7.) 내 민간전문가 관련 항목	25
[표 2-9] 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에서의 주요 이슈 및 개선사항: 사업 확대 단계(2018~2019)	26
[표 2-10]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이슈 종합	29
[표 3-1]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조사 개요	32
[표 3-2] 국내 민간전문가 위촉 지자체 현황(20.5.13. 기준)	33
[표 3-3] 국내 민간전문가 위촉 지자체 현황(20.5.13. 기준)	33
[표 3-4] 국내 분야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운영 현황(20.5.13. 기준)	34
[표 3-5] 국내 지자체 민간전문가 위촉 규모(20.5.13. 기준)	34
[표 3-6] 지자체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시점(20.5.13. 기준)	35
[표 3-7] 국내 지자체 민간전문가 위촉 현황: 규모 및 명칭, 위촉시기(20.5.13. 기준)	36
[표 3-8] 국내 지자체 민간전문가 위촉 현황: 지역건축사 공공건축가 위촉 비율(20.9.1. 기준)	37
[표 3-9] 지자체별 법제도 등 마련 현황(20.5.13. 기준)	38
[표 3-10] 국내 민간전문가 위촉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20.5.13. 기준)	39
[표 3-11] 국내 민간전문가 위촉 지자체 담당부서 및 전담인력 현황(20.5.13. 기준)	40
[표 3-12] 국내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위촉절차 및 근무체계(도)	42
[표 3-13] 국내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위촉절차 및 근무체계(특·광역시)	43
[표 3-14] 국내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위촉절차 및 근무체계(시·군·구)	44
[표 3-15]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운영 개요 및 조사내용(20.5.13. 기준)	45
[표 3-16]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역할	48
[표 3-17] 총괄기획가 및 총괄자문위원의 자문대상	48
[표 3-18] 행복도시 공공건축사업별 전담공공건축가 명단(19.1.8. 기준)	50
[표 3-19] 교육공간 자문관 및 꿈담건축가의 역할	52
[표 3-20]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53
[표 3-21] 「한국철도공사 공공건축가 운영지침」 주요 내용	55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3-22]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조사 개요	56
[표 3-23] 민간전문가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별 주요사업 개요	57
[표 3-24]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58
[표 3-25]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59
[표 3-26] 민간전문가 자격요건 및 역할	60
[표 3-27] 민간전문가 역할 및 업무범위	61
[표 3-28] 사업별 전문가조직 및 민간전문가의 역할	63
[표 3-29]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 민간전문가 및 관련 조직 현황	63
[표 3-30] 민간전문가 및 관련 전문가 조직 운영현황	64
[표 3-31] 도/ 특·광역시 민간전문가 운영 및 기반구축 현황 종합(20.5.13. 기준)	67
[표 3-32] 시·군·구 민간전문가 운영 및 기반구축 현황 종합(20.5.13. 기준)	68
[표 4-1] 조사 개요	75
[표 4-2]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심층면담조사 내용	75
[표 4-3]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주요 내용	76
[표 4-4] 공공건축가 간담회 주요 내용	76
[표 4-5]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개최 개요	77
[표 4-6] 공공건축가 간담회 개최 개요	78
[표 4-7] 지자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심층면담조사 대상 및 진행 개요	78
[표 4-8]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이슈에 대한 민간전문가 간담회 의견 종합	95
[표 4-9] 민간전문가의 위상정립 방안에 대한 간담회 이견	96
[표 4-10] 도시규모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주요업무	97
[표 4-11] 공공건축가 직접설계에 대한 간담회 이견 종합	99
[표 4-12] 건축분야 심의위원회	101
[표 4-13] 지자체 조례상의 민간전문가 자격기준 마련 현황(20.9월 기준)	102
[표 4-14] 국내 지자체별 조례에 명시된 임기현황(20.9월 기준)	103
[표 4-15] 민간전문가 지원조직 운영현황 및 역할	107
[표 4-16] 경기 수원시 디자인이력 관리카드 양식	110
[표 4-17] 공공건축가 활동결과물 제출 내용 및 기간	110
[표 4-18] 서울 은평구 총괄건축가가 총괄·자문하는 2020년 주요사업	112
[표 4-19] 공공건축가 분과별 운영 및 역할	118
[표 4-20] 국내 지자체별 유관조직 신설현황(20.9.14. 기준)	119
[표 4-21] 부처별 프로젝트 민간전문가와와의 관계	122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4-22]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유관 심의기구 포함 현황	122
[표 4-23]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이슈 및 문제점 최종 종합: 위촉 및 근무	123
[표 4-24]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이슈 및 문제점 최종 종합: 역할 및 업무	124
[표 4-25]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이슈 및 문제점 최종 종합: 담당부서 및 유관조직 체계	125
[표 5-1] 네덜란드 도시별 도시총괄건축가 현황(2020년 기준)	129
[표 5-2] 벨기에 총괄건축가 현황(2020년 기준)	133
[표 5-3] 벨기에 플렌더스 지방 총괄건축가 선정절차	134
[표 5-4] 덴마크 도시별 도시건축가 현황(2020년 기준)	139
[표 5-5] 해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현황 종합	146
[표 6-1] 운영실태 분석 종합 및 개선방향: 위촉 및 근무 관련	153
[표 6-2] 운영실태 분석 종합 및 개선방향: 민간전문가 역할 및 업무수행 관련	157
[표 6-3] 지자체 규모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차별화를 위한 여건 및 고려사항	158
[표 6-4] 행정단위별/도시규모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주요업무(안)	159
[표 6-5] 운영실태 분석 종합 및 개선방향: 운영체계 및 조직 관련	162
[표 6-6] 중소규모 시·군·구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수정(안)	165
[표 6-7] 특광역시, 대규모 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수정(안)	166
[표 6-8] 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수정(안)	167
[표 6-9] 공공건축가의 업무 수정(안)	168
[표 6-10] 프로젝트별 민간전문가 참여 업무수행체계(기존)	169
[표 6-11] 프로젝트별 민간전문가 참여 업무수행체계 개선(안)	169
[표 6-12] 「건축기본법」 개정(안): 민간전문가 용어	173
[표 6-13] 「건축기본법」 개정(안): 민간전문가의 업무 및 보수	174
[표 6-14] 「건축기본법」 개정(안): 민간전문가 자격기준	175
[표 6-15] 「건축기본법」 개정(안): 지역건축위원회	175
[표 6-16]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및 방향(안)	176
[표 6-17]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안):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임기 및 근무방식	177
[표 6-18]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안):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 보수기준 개정(안)	177
[표 6-19]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안): 실무지원조직 운영체계	179
[표 6-20]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안): 민간전문가 업무지원	179
[표 부록1-1] 국내 지자체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운영 현황(20.9월말 기준)	208
[표 부록1-2] 국내 지자체 민간전문가 위촉 현황(20.9월말 기준)	208
[표 부록1-3]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도·특·광역시(20.9월말 기준)	209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부록1-4]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 시·군·구(20.9월말 기준)	210
[표 부록1-5]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 분야별 총괄건축가/계획가(20.9월말 기준)	212
[표 부록2-1]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	213
[표 부록2-2]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215
[표 부록2-3]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전문가 역할 및 지원체계	215
[표 부록2-4] 새뜰마을사업 개요	217
[표 부록2-5] 새뜰마을사업 민간전문가 역할	219
[표 부록2-6]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 시범사업 개요	220
[표 부록2-7]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시범사업 민간전문가 자격 및 구성, 역할	223
[표 부록2-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요	224
[표 부록2-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전문가 자격 및 구성, 역할	226
[표 부록2-10] 문화도시사업 개요	227
[표 부록2-11] 문화도시사업 민간전문가 자격 및 구성, 역할	228
[표 부록2-12] 어촌뉴딜 300사업 개요	230
[표 부록2-13] 상권활성화사업 개요	233
[표 부록2-14] 상권활성화사업 민간전문가(타운매니저) 자격 및 구성, 역할	235
[표 부록2-15] 학교공간혁신사업 개요	236
[표 부록2-16] 시도 교육청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20.3.31. 기준)	237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민간전문가 운영 유형 및 본 연구의 범위	5
[그림 1-2] 연구의 흐름	7
[그림 1-3] 민간전문가 관련 선행연구 흐름	8
[그림 2-1] 국내 민간전문가 제도의 취지와 개념 이해도	11
[그림 2-2] 국내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배경	12
[그림 2-3] 국내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운영 연혁	14
[그림 2-4] 2013년 민간전문가 등 업무매뉴얼 상 민간전문가 구분 및 유사용어와의 관계	21
[그림 2-5] 2019년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상 민간전문가 구분 및 유사용어와의 관계	21
[그림 2-6] 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추진 현황	23
[그림 2-7] 공공건축 디자인개선 부처별 주요 성과	24
[그림 3-1] 행정중심복합도시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47
[그림 3-2] 행정중심복합도시 제9기 총괄자문단 구성	50
[그림 3-3] 서울특별시교육청 운영체계	52
[그림 3-4] 학교공간혁신사업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62
[그림 4-1]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조직도	106
[그림 4-2] (초기) 경기 수원시 조직체계	106
[그림 4-3] (현재) 경기 수원시 조직체계	106
[그림 4-4] 민간전문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체계	107
[그림 4-5] 서울 은평구 사업 내용별 총괄건축가 업무수행 절차	108
[그림 4-6] 경기 수원시 디자인 중심 행정 프로세스	109
[그림 4-7] 경기 수원시 전략사업 단계별 디자인 이력 관리내용	109
[그림 4-8] 충남 부여군 통합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사례	112
[그림 4-9] 파주시 설계공모 포스터	115
[그림 4-10] 제주도 디지털 심사장 운영	115
[그림 4-1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운영협의체 운영	117
[그림 5-1] 바일레 시(Vejle) 조직도(2020년 9월 기준)	141
[그림 5-2] 덴마크 쇠도우레시 이르마비엔 개발구역 전경 예시	144
[그림 6-1] 민간전문가 상호간 관계 개념도	152
[그림 6-2] 민간전문가 운영 필요 지자체 단위 구분	157
[그림 6-3] 공공건축가 업무수행체계 개선방향 개념도	161
[그림 6-4]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서의 민간전문가 운영체계(2019.7) : 기준안	171
[그림 6-5] 광역자치단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체계(안)	172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6-6] 기초자치단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체계(안)	172
[그림 7-1] 민간전문가 제도 정책 로드맵(안)	183
[그림 부록2-1]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214
[그림 부록2-2] 새뜰마을사업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219
[그림 부록2-3]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시범사업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222
[그림 부록2-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체계	225
[그림 부록2-5] 문화도시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228
[그림 부록2-6] 어촌뉴딜 8대 선도사업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232
[그림 부록2-7] 상권활성화사업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234
[그림 부록2-8] 학교공간혁신사업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238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정부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민간전문가 활용 확산 예상

2019년 4월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 주요 정책가운데 하나로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내 개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¹⁾. 또한 도시재생뉴딜 등 부처별 주요 정책사업 5개²⁾를 시범으로 선정해 디자인 개선을 선도적으로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공건축가 참여가 의무화되었으며³⁾, 점차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참여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 1) 국무조정실(2019), “[모두말씀]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9.04.18.)”. 정책브리핑자료. 주요 내용은 민간의 전문성 적극 활용, 좋은 설계자를 뽑아 제대로 건설, 국민의 디자인 개선 체감도 제고 세 가지로 요약됨. (총괄건축가) 지역 전체 관점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정책 방안 등 자문을 수행함 (공공건축가) 개별 사업별 설계지침 작성 자문, 설계 관련 심사 등을 수행함
 - 2) 도시재생뉴딜(국토부),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분야 생활 SOC사업(문체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림부), 어촌뉴딜 300(해수부)
 - 3)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반영된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지침·설계기준 작성 등에 공공건축가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함(3점) (출처: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p.22)

□ 2007년 ‘민간전문가’ 제도의 법적 토대 마련되었으나 법적 규정은 단순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는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당시 관련 규정(제23조 민간전문가 참여)이 마련되면서 건축도시 관련 계획 및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이 제도는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의 참여를 통해 기획단계를 강화하고, 좋은 설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설계발주체계를 검토·지원하며, 설계 및 시공단계의 품질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세부적인 법 규정으로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에 민간전문가 자격기준과 업무범위만 규정(제21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에 대한 구분 없이 ‘민간전문가’로 통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의 내용도 세부적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아, 제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다.

[표 1-1] 「건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민간전문가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

민간전문가 자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민간전문가 업무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출처: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2020.2.13.)

□ 영주와 서울특별시 선도적 운영으로 공간환경의 디자인향상 및 제도 확산 등의 성과

제도마련 이후 영주시와 서울특별시가 총괄건축가(디자인관리단장) 및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10년 이상 운영해오면서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의 디자인 품질향상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영주시는 2009년 국내 최초로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 2010년부터 지역총괄계획가인 디자인관리단장(現 도시건축관리단장)을 위촉하였고, 관련조례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다수의 건축상을 수상⁴⁾하는 등 품질 높은 공공건축을 조성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12년부터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2020년

4) 영주시 장애인복지관 : 2018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 영주시 노인복지관 : 2017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 영주 주민생활문화 복지지원센터(참사랑 주민복지센터) : 2012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 영주시 실내수영장 : 2016 김수근건축상 프리뷰상, 조제보건진료소 : 2012 한국농어촌건축대전 농어촌공사장상,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 풍기읍사무소 : 2012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우수상, 2013 한국농어촌 건축대전 대상 등(출처: AURUM 홈페이지 건축상 소개(<http://www.aurum.re.kr/Bits/BuildingAward.aspx/>)(검색일:2020.10.14.)); 2020한국농어촌건축대전 홈페이지 역대수상작 소개(<http://www.raise.go.kr/ruralarchi/jsp/homepage/award/planAward.jsp> (검색일:2020.10.14.))

현재 265명이며, 총괄건축가는 2014년부터 위촉하여 현재 3기 이르고 있다. 2015년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에 관련근거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특히 ‘도시공간개선단’이라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민간전문가 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도 민간전문가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2013년부터 지자체에 민간전문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초기 2년 간 3개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6개 지자체에 민간전문가 참여체계를 경험해보게 하였고, 현재 부여군과 서울 서대문구가 지원사업 종료 이후 자체 예산으로 계속 운영 중이다.

영주시와 서울특별시의 성과가 알려지고 국토부 지원사업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총괄·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 민간전문가 제도 및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제도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

그러나 많은 지자체 담당자들과 지자체장, 관련 공무원, 그리고 총괄·공공건축가로 활동할 전문가들조차 민간전문가 제도에 대한 개념과 역할,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에 대한 용어가 다양하여 업무와 역할을 이해하는데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좋은 건물과 공공사업이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기획업무 강화, 발주방식검토, 연관사업간 협업 및 연계 조정 같은 업무보다 단순히 설계안을 자문하거나 직접 설계를 해주는 전문가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오해는 지역건축사들의 반발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로 실제 현장에서 업무협조나 진행이 어렵거나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민간전문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긍정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우려스러운 점이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2019년 12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의 업무 및 운영체계와 관련한 사항들도 큰 변화를 맞고 있다. 건축기획 업무 도입, 사전검토 및 심의 대상 확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이들 유관조직들과 민간전문가와와의 관계 설정, 총괄·공공건축가 수행업무와의 관계 설정,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확보 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최근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확산 추세에 있으나 현황파악조차 미미한 실정

2018년 하반기 당진시, 용인시, 서울 강동구 등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였고, 2019년부터

5)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장, 서울특별시 총괄건축가, 부여군 지역총괄계획가 등 이들 모두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를 일컫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총괄건축가는 건축 관련 업무만, 도시건축관리단장은 도시건축 업무만, 총괄계획가는 계획 관련 업무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이 있음

제주, 수원, 은평, 경주, 의성 등 전국으로 확대되어 2020년 현재도 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가 매달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어느 지자체에서 어떻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총괄·공공건축가 위촉 시기나 규모, 선정절차나 자격기준, 위상 및 근무방식, 조례제정 여부 등 기초적인 현황 파악조차 미미한 실정이다⁶⁾. 뿐만 아니라 총괄·공공건축가들은 어떠한 활동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업무수행체계나 활동사항 등 운영실태에 대한 파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본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국내 운영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시급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내실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 올바른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국내 실정을 감안할 때, 지자체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지역의 통합적 경관형성, 공공사업의 효율적 운영,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의 디자인품격 향상 등의 효과가 있고, 특히 외부전문가가 부족한 지방도시에 매우 유익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잘못 운영되거나 오해가 생길 경우, 지자체 관련 부서 및 심의 등과 갈등 또는 오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타부서 협조도 진행되지 않아 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과 업무수행이 어렵다. 또한 활동의 주체인 민간전문가들의 참여와 협조도 어려워질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지자체 단위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이슈와 운영실태를 토대로, ①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② 많은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정립·제시하며 ③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개념 및 용어를 검토하고 관련된 이슈를 도출하여 연구 분석의 주요 틀로 활용하였으며, 국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 분석하였다. 이 중 ‘지자체 단위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를 중심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이슈별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회의 및 면담조사를 통해 지자체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별 특성 및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외 현황 및 분석을 종합하여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6) 현재 본 연구에서 국내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을 매달 파악하여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공공건축지원센터 웹사이트(<https://www.npbc.or.kr/intro>)를 통해 기초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에서 민간전문가 범위 :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민간전문가는 폭넓은 의미에서 민간의 전문가를 일컫는 용어로서, 국내에서도 건축 도시 이외에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전문가를 활용,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법적으로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전문가’를 기본 대상으로 보고자 하므로, 본 연구에서 민간전문가 범위는 건축 및 도시 분야와 관련한 민간전문가로 한정한다.

□ 본 연구에서 민간전문가 분석 대상의 범위

건축 및 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관련된 국내 운영 양상은 첫째 지자체 차원에서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유형, 둘째 공공기관에서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유형, 셋째 부처에서 프로젝트 단위의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1] 민간전문가 운영 유형 및 본 연구의 범위

출처: 저자 작성

첫 번째 유형은 지자체 단위에서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또는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이다. 2020년 9월 현재 총 4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두 번째 유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건축물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주요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이다.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많지는 않다. 마지막 유형은 건축·도시 관련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소 규모가 있는 국책사업들에서 민간전문가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우들이다. 도시재생뉴딜 및 어촌뉴딜 300사업 등이 대표적이는데, 매년 선정되는 지자체와 해당 사업지 수가 매우 방대하고, 민간전문가 참여체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준비

중으로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 실태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위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일반현황 내지는 기초현황을 파악하고, 이차적으로는 지자체 차원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공간적으로는 전국을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 민간전문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국내외 운영현황 파악을 위한 문헌조사
 - 민간전문가 개념 정립을 위해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 조사, 국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현황파악 및 해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사례지 조사를 위해 관련 문헌조사를 실시함
- 국내 운영현황 및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면담조사, 자문회의 개최
 - 국내 민간전문가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지자체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행정 담당자와 민간전문가와의 면담조사 및 자문회의를 개최함
- 해외 운영사례 조사를 위한 외부 전문가(전문기관) 협력연구 진행
 - 코로나19로 해외출장이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하여, 최신의 해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심도 있는 사례분석을 위해 해외 현지 또는 국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협력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덴마크 도시건축가 인터뷰음성자료 분석을 위해 전문번역기관과 협력연구를 진행함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간담회 개최
 -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활동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한계점, 개선사항, 현장에서의 실무적 어려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간담회 개최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연구의 범위와 방향, 민간전문가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면담 및 간담회 조사내용, 개선방안 논의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7) 2019년 한해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116곳, 어촌뉴딜은 70곳이 선정되었음

3) 연구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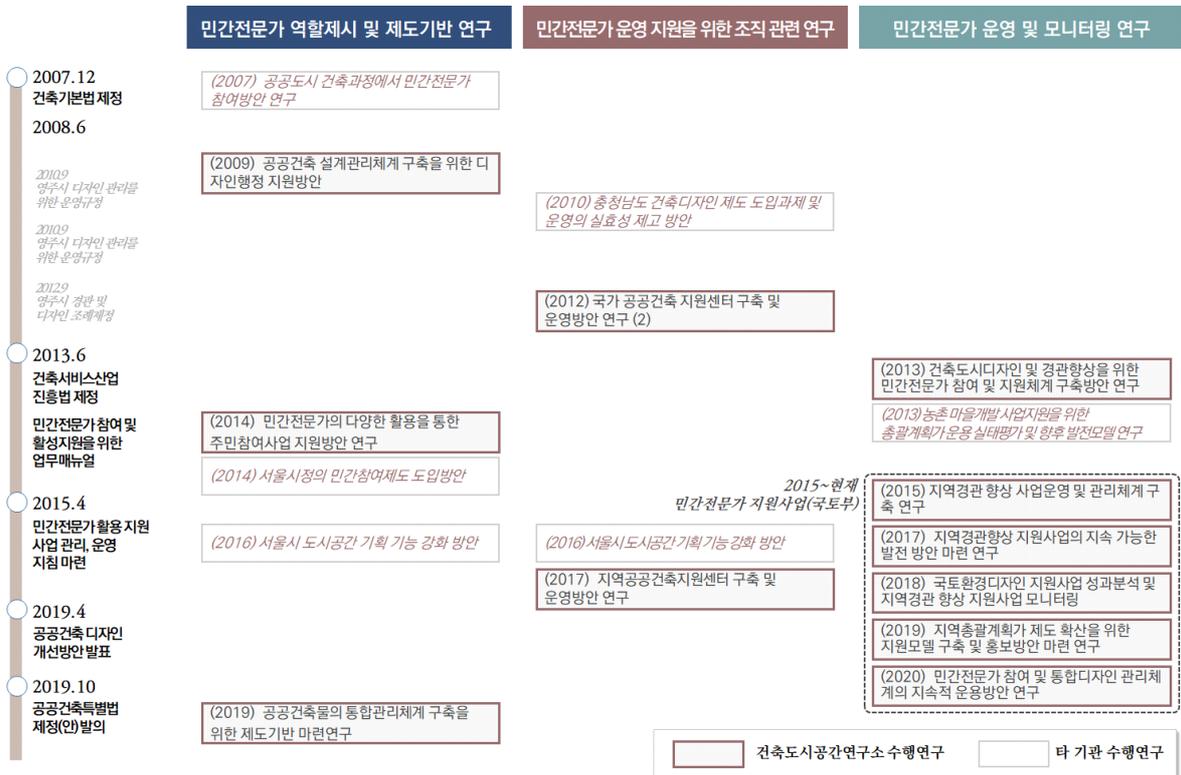
[그림 1-2] 연구의 흐름

출처: 저자 작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2007년 「건축기본법」(제23조 민간전문가의 참여)이 제정된 이후 민간전문가와 관련 연구가 지속되어오고 있다. 크게 제도 정착을 위한 민간전문가 역할 제시 및 제도기반 마련 연구와 민간전문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 관련 연구,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 확산을 위한 관련 사업 모니터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 사항이나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민간전문가 운영을 위한 지침방향 및 개선사항 정도만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 충남 등 일부 지자체 또는 단일부처사업 내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었다.



[그림 1-3] 민간전문가 관련 선행연구 흐름

출처: 저자 작성

□ 민간전문가의 역할 제시 및 제도기반 마련 연구

「건축기본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정착을 위한 업무 및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박인석 외, 2007; 김진욱 외, 2009)와 민간전문가 제도 정착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관련 업무매뉴얼 제시(차주영 외, 2013) 및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및 지원 체계마련 연구(김귀영 외, 2014)가 있다. 대체로 공공부문의 건축·도시분야에서의 민간전문가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정책 지원방안과 운영·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초기단계의 연구로 실제 운영실태를 기반으로 한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제시하거나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 민간전문가의 운영·지원을 위한 조직체계 관련 연구

민간전문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이를 지원하는 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가차원의 지원센터와 지역단위의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제안한 연구(서수정 외, 2012; 임유경 외, 2017)가 진행되었으며, 지자체에 차원에서는 관련 조직 운영 및 체계적 업무수행을 위한 연구(한상욱 외, 2010; 신민철 외, 2016)가 진행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공공건축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나, 지원센터 운영방안, 민간전문가 지원방안 등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개념적이고 포괄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서울, 충남과 같은 지역의 상황만을 반영한 조직정비, 협력 운영체계 구축, 관리시스템 구축, 조직개편 로드맵 등만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제도운영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 작동 가능한 여러 대안과 구체적인 민간전문가의 지원방안 및 운영체계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민간전문가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 연구

민간전문가 운영 및 제도 인식 확산을 위해 국토부가 시행해 온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의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한 일련의 연구(차주영 외, 2013; 차주영 외, 2014; 심경미 외, 2017; 여혜진 외, 2018; 심경미 외, 2019)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계획가 제도 운용 관련 모니터링 연구(김미영 외, 2013)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축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참여체계 및 지원체계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 시범사업 추진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이외에는 농촌 마을개발 사업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총괄계획가 제도의 운영실태 및 한계점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운용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었다. 이들 연

구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사업관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사업대상지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별도 사업비와 운영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국비지원사업과는 여건이 다른 여타의 건축·도시분야의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까지 적용가능한 정책 방향 제시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민간전문가 제도에 대한 개념의 이해를 높이고 기존 제도의 안정화 및 지역단위에서의 확산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제시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민간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운영,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관리 및 모니터링 연구 등으로,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등 지자체에서도 민간전문가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들을 진행해 왔다. 최근 각 지자체, 공공기관, 부처별 단위사업 등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체계를 마련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유사연구로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한 김귀영 외(2014)과 신민철 외(2016)연구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계획가 제도를 대상으로한 김미영(2013)의 연구 정도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는 점과 국가 차원에서 국내 민간전문가의 도입 및 운영 확산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을 인식하여, 국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개념 및 역할을 정립하고 국내 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선진 해외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체계를 고찰하여 민간전문가의 기획업무 추진 방안, 관련 부서 간 협조체계 방안, 민간전문가 유형별 역할정립, 민간전문가의 관리 및 운영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한다는 점,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내 민간전문가 참여의 현 실태를 상호 공유하고 논의를 실시한다는 점, 현재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면밀히 조사·분석한다는 점, 이를 통해 국내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한계와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점 등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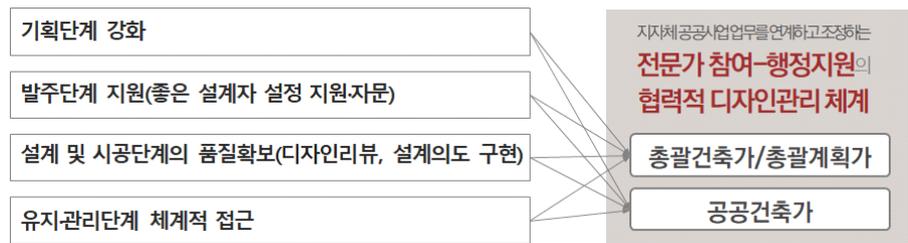
제2장 민간전문가 제도 및 주요 이슈사항 검토

- 1. 국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 개요
- 2.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개념 및 용어 검토
- 3. 민간전문가 정책 변화 및 주요 이슈

1. 국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 개요

1) 국내 민간전문가 제도의 이해 및 도입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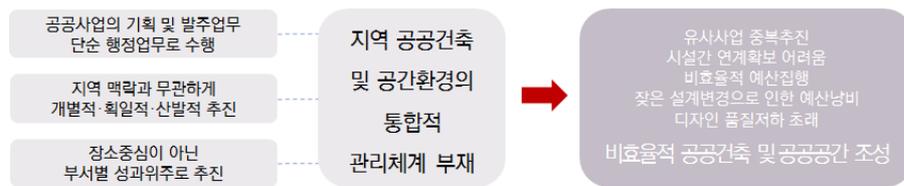
민간전문가 제도는 공공사업이 개별적·산발적·부서별 성과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발생하는 획일적인 공간조성, 중복사업의 추진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디자인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외부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전문가 참여-행정 지원'이라는 협력적 디자인관리체계이다.



[그림 2-1] 국내 민간전문가 제도의 취지와 개념 이해도

출처: 심경미(2019),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이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2019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공공건축 정책 및 제도의 이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83.(2019.7.16)

공공사업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게 된 이유는 그동안 공공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 결과물의 수준이 낮아 시민들의 이용과 편의성은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을 현재 행정역량과 시스템 속에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자체 내 공공건축, 공공공간에 대한 전담부서가 없어 공공사업의 기획이나 발주업무는 단순한 행정업무로 수행되었다. 부처별·부서별 칸막이식 성과위주의 행정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통합·관리되어 추진되지 못하고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해당 사업들이 보여주기 식의 단발성 사업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어 추진되거나, 동일한 장소에 전혀 다른 방향의 사업이 추진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결과적으로 통합된 경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디자인품질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⁸⁾



[그림 2-2] 국내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배경

출처: 심경미(2019),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이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2019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공공건축 정책 및 제도의 이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82.(2019.7.16)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처별, 부서별 칸막이식 업무로 진행되는 행정 체계에서 통합, 연계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며, 둘째 공공사업의 기획단계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합하게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기획단계 의도가 설계-시공-유지단계까지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민간전문가 제도는 지역의 공공사업들이 장소를 중심으로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가 공공사업에 참여하여 기획단계를 강화하고, 해당 사업의 성격과 취지에 적합한 좋은 설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발주단체를 지원하며,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의 품질확보와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지·관리단계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당시 민간전문가 참여 규정이 포함되어,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가 도시·건축 관련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8) 심경미 외(2020), 「민간전문가 참여 및 통합디자인 관리체계의 지속적 운용방안 연구-제1권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pp.13-14. 참고후 저자 재작성

「건축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민간전문가 참여'의 정의

※ 「건축기본법」 제 23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 21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 3.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0.2.14.)

2)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추진과정

2007년 12월 「건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 및 지자체에서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업무 조정,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축민원 업무처리, 대규모 개발사업의 총괄조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 위촉이 가능해졌다.⁹⁾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는 영주시가 국내 최초로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담조직인 '영주시 디자인관리단'을 신설하고 지역을 총괄·관리하는 민간전문가인 '디자인관리단장(조준배)'을 위촉¹⁰⁾하였다. 이후 2012년 12월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전문가 운영을 제도화하고 디자인관리단을 도시건축관리단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는 「영주시 경관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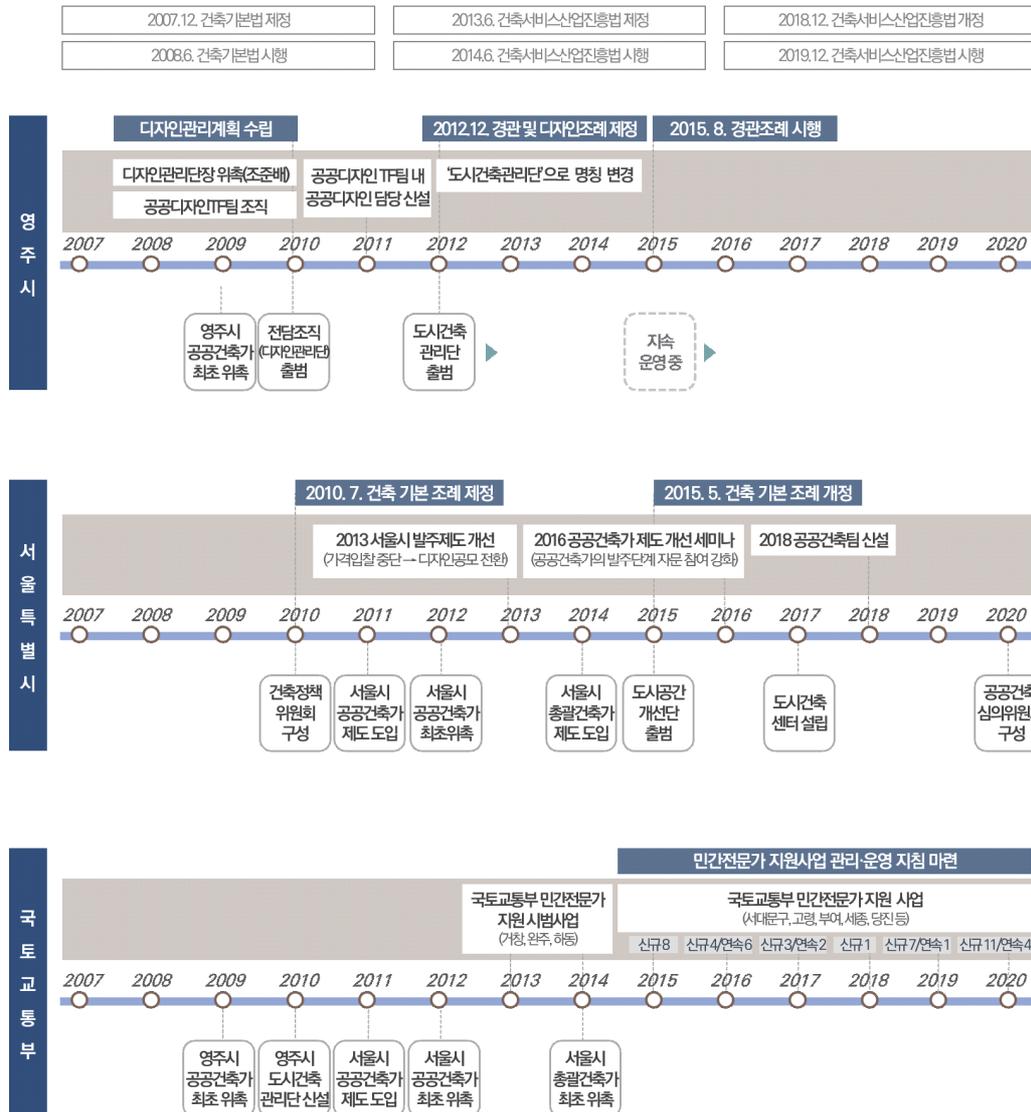
영주시와 더불어 민간전문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012년 77명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265명의 공공건축가를 위촉·운영하고 있다. 2015년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서울형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명칭 및 업무범위를 규정¹¹⁾하여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9) 심경미 외(2020), 「민간전문가 참여 및 통합디자인 관리체계의 지속적 운용방안 연구-제1권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pp.14-15. 참고후 저자 재작성

10) 2010년 9월 '영주시 디자인 관리를 위한 운영규정'을 마련하면서 디자인 분야별 자문비 확보 근거를 마련함

11) 2014년부터 총괄건축가를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대 총괄건축가(김승희) 위촉함('20.02월 기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민간전문가(지역총괄계획가) 활용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3~2014년 거창군, 완주군, 하동군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2015년부터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으로 2015년 8개소, 2016년 4개소, 2017년 3개소, 2018년 1개소, 2019년 8개소를 선정하여 총괄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서대문구와 부여군에서는 사업 종료 후에도 자체적으로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2-3] 국내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운영 연혁

출처: 심경미 외(2019),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모델 구축 및 홍보방안 마련연구」, 국토교통부, pp.17-18. 참고후 저자 재작성

2.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개념 및 용어 검토

1) 법률에서의 관련 용어 및 정의

□ 건축기본법 관련 법·제도에서의 용어 정의

[표 2-1] 민간전문가 개념 및 용어(법·제도)

구 분	용 어	내 용 (역할)
건축기본법 제 23조	민간전문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
민간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매뉴얼 (2013.6) (국토교통부)	지역총괄계획가	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 사업 등을 총괄조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
	사업총괄계획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정비사업, 공공시설사업, 국가 시범사업 등 특정사업에 대하여 기획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하고 관리하는 전문가
	분야별전문가	지역총괄계획가와 사업총괄계획가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2019.7) (국토교통부)	총괄건축가 /총괄계획가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사업의 기획·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
	공공건축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민간전문가
공공건축특별법 (국회 발의중) (국토교통부)	총괄건축가 또는 총괄계획가 (총괄건축가 등)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의 공공건축 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사업의 기획·설계 등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 도시, 조경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공공건축가	해당 공공기관 등의 개별 공공건축사업에 대하여 건축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사업의 과정에 대해 조정·자문해주는 전문가

출처: 「건축기본법」(국가법령지원센터, 검색일 2020.02.10.); 국토교통부(2013), 「민간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매뉴얼」, pp.2-3.; 국토교통부(2019.7),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pp.3-4, p.7.; 「공공건축특별법」(안)(대한민국 국회, 검색일 2020.02.10.) 참고후 저자 재작성

「건축기본법」 제정 시 ‘민간전문가 참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본 규정은 민간 전문가에 대한 용어 정의라기보다는, 민간전문가 참여 규정(제23조)에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해야 할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2013년 「민간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매뉴얼」에서 민간전문가 용어를 정의하였는데, 그때 민간전문가를 ‘지역총괄계획가, 사업총괄계획가, 분야별전문가’로 구분하였다.

이후 2019년 7월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로 구분하였다.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서는 디자인 단계별로 사업의 성격에 적합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면서, ‘총괄계획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¹²⁾ 이후 2019년 7월 개정하면서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과 대부분의 내용을 유사하게 하였으며,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로 구분하여 용어를 정의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매뉴얼, 가이드라인에 의해 정의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갖기가 어려웠으나, 현재 발의중인 「공공건축특별법(안)」에서는 처음으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공공건축가를 포함하여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 각종 사업법에서의 ‘총괄계획가’ 용어 정의

한편, 「건축기본법」 제정 이전인 2005년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에서 처음으로 ‘총괄계획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는 재정비촉진계획에 한정하여 계획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하는 도시·건축 등의 전문가를 일컫는 용어이다. ‘총괄계획가’라는 용어는 법적용어로서 「도시재정비법」 외에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마을 주거 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들 법령에서는 「도시재정비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총괄계획가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 등 개별 사업이나 계획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하는 전문가로 정의하고 있다. 총괄계획가의 업무는 해당 법과 관련된 특정한 계획이나 사업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2)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25호(2009.12.28.))

[표 2-2] 각종 사업법에서의 '총괄계획가' 법적 정의

구 분	용 어	내 용 (역할)	비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법)	제9조	총괄계획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	국토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	제35조의 2	총괄계획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지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	국토부
농어촌정비법	제54조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	농어촌마을정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는 농어촌계획 및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	농림부, 해수부
농어촌마을 주거 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리모델링법)	제7조	총괄계획가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정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기 위한 농어촌지역 개발 및 주택건축 분야의 전문가	농림부, 해수부

출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국가법령지원센터(검색일: 2020.02.03.)) 참고후 저자 재작성

□ 일반 법률에서는 보통명사로 '민간전문가' 사용

「건축기본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서 '민간전문가'가 사용되는 경우(총 131개 법에 해당¹³⁾) 민간의 전문가를 일컫는 보통명사로 사용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법률에서 운영할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에 분야별로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에 구성한다는 규정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는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총괄건축가'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와 별도로 민간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확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에서 민간전문가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의 전문가를 의미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의 '민간전문가'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의 자문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9. 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0.2.3.)

13) 국가법령지원센터(검색일 2020.2.3.) 검색결과

2) 선행연구와 해외에서의 관련 용어 및 정의

□ 선행연구에서의 개념 및 용어 사용

선행연구에서 민간전문가와 관련된 개념 및 용어사용을 보면, 대부분 「건축기본법」 제 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에 근거하여 사용하였으나, 각 연구마다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용어를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석 외(2007) 연구에서는 총괄조정자·총괄계획가를 건축·도시공간 프로젝트 단위를 총괄·조정하는 역할로 제시하였으며, 서수정 외(2012) 연구에서는 총괄형 공공건축가와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로 구분하고 있어 민간전문가 전체를 공공건축가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 내에 관련 국내·외 사례들을 통해 사용되고 있는 민간전문가 관련 용어들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3] 선행연구에서의 민간전문가 개념 및 용어

구 분	용 어	내 용 (역할)
박인석 외 (2007)	건축도시커미셔너	국가차원 및 도시 전반의 공간환경 기획·관리
	총괄조정자·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대단위 건축·도시공간 프로젝트의 총괄 조정 관리
	공공건축사	개별 건축물·시설물의 관리하며, 개별건축물에 대한 상시적 관리 업무
서수정 외 (2012)	공공건축사+건축도시지원센터	시민들의 도시·건축활동 지원 및 활성화
	총괄형 공공건축가	지자체 행정조직체계 내 특정 부서에 소속되어 지역 디자인 정책 및 정체성을 구축하여 개별 업무를 관리하는 전문가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	요청업무에 따라 건축관련 전문성 보안을 위한 자문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전문가

출처: 박인석 외(2007), 「공공 도시·건축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참여방안 연구」, (사)대한건축학회, pp.40-45.;
서수정 외(2012),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I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62. 참고후 저자 재작성

[표 2-4] 선행연구에서의 민간전문가 관련 용어

구분	지역단위의 총괄적 자문 역할	건축·도시 관련 사업단위 총괄·조정 역할	직접적인 계획 및 설계 참여 / 단위 공공건축의 조정·자문 역할
용어	건축도시커미셔너	총괄조정자	공공건축사
	총괄건축가	디자인 전문위원	공공건축가
	총괄계획가	심의위원	분야별 전문가
	총괄형 공공건축가	Master Planner	공공녹지 고문 등
	지역총괄계획가	멘토전문가(사업총괄계획가)	
	디자인 관리단장	사업단위총괄계획가	
	제2부시장 등	공공조경가, 총감독 등	

출처: 박인석 외(2007), 「공공 도시·건축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참여방안 연구」, (사)대한건축학회, pp.40-45.;
서수정 외(2012),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I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62. 참고후 저자 재작성

□ 해외에서의 용어사용

국외에서 민간전문가의 명칭은 도시총괄건축가, 도시건축가, 도시마스터빌더, 총괄건축가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업무에 따른 명칭을 차별화하고 있다.

[표 2-5] 해외 민간전문가 용어

	도시명		명칭
네덜란드	헤이그, 아센, 암스텔베인, 아메르스포르트	Stadsarchitect	도시총괄건축가
	엔스헤데, 하를럼	Stadsstedenbouwer	도시마스터빌더
	아른헴	Stadsbouwmeester openbare ruimte	공공공간 및 도시마스터
	흐로닝겐	Supervisor stedenbouw Stadsstedenbouwer	도시개발 총괄기획자 도시마스터빌더
덴마크	코펜하겐	City Architect	도시건축가
벨기에	브뤼셀	Bouwmeester-maitre architecte	수도권 총괄건축가
	플랜더스	Bouwmeester	총괄건축가

출처: 심경미 외(2019),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모델 구축 및 홍보방안 마련연구」, 국토교통부, pp.52-65. 참고 후 저자 재작성

[표 2-6] 네덜란드 지자체별 민간전문가 업무범위

지역	주요 업무내용
아센 도시총괄건축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 행정집행위원회(College van B&W)에 특정 정책 또는 도시 공간 계획 제안 공간 품질 개선을 위한 회의, 심포지엄, 포럼 개최 및 Q-team 을 통한 의사소통 대규모 또는 복합적인 도시 개발 계획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정책 조언, 프로젝트 조언, 디자인 자문 등을 수행
아메르스포르트 도시건축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프로젝트들 간의 일관성 유지 및 디자인 개선 프로젝트 개발 자문, 시장 및 시의회 자문 시의회 의견 수렴 및 정책 발의 자문 도시 프로젝트의 디자인 관리
아른헴 공공공간 및 도시마스터빌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 간 일관성유지 및 디자인 개선 프로젝트 개발 자문, 시장 및 시의회 자문 품질관리를 위한 업무체계 개선, 공공공간 교통 및 이동성 개선방안 주택정책과 공공공간 연계 고려, 진행 중인 공공공간 프로젝트 자문
엔스헤데 도시마스터빌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체되어 있는 복잡한 프로젝트를 신속 진행, 도시설계 부서에 새로운 디자인 방향 제시
흐로닝겐 도시개발 총괄기획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규모에서 도시의 질적 수준 보장. 전략적인 건축규제 및 고층 건물 관리 정책 공공 영역에 대한 품질 개선 정책
하를럼 도시마스터빌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의 품질 개선 촉진, 건축 정책 및 건축가 선택에 대한 자문

출처: 심경미 외(2019),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모델 구축 및 홍보방안 마련연구」, 국토교통부, p.58.

3) 본 연구에서의 용어 정의

□ 용어의 이해

- 유사 용어와의 관계 : 자문위원, 심의위원 등

민간전문가는 일반적으로 포괄적 의미에서, 자문위원, 심의위원, 위원회 위원 모두 민간 전문가라 칭할 수 있으나, 2007년 「건축기본법」에 의한 협의적 의미에서는 일반적 자문위원, 심의위원, 위원회 위원들은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자문위원 및 심의위원 등은 「건축기본법」이 마련되기 이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심의위원은 각 관련법에 근거하여 역할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2007년 「건축기본법」에 의해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것은, 공공사업의 민간전문가 참여에 있어 기존의 자문위원이 다소 단발적, 일회적 자문에 머물러있다는 문제인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기획단계 부터 유지단계까지 사업이 일관되게 진행되도록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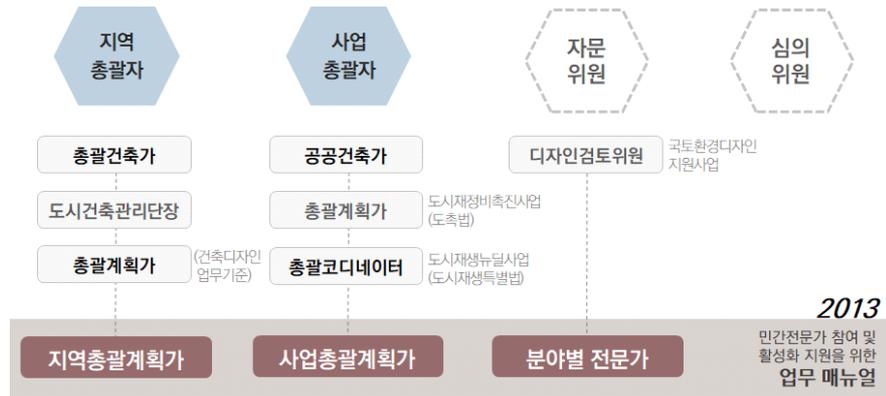
따라서 협의적인 의미로 볼 때, 자문위원 및 심의위원 등은 「건축기본법」에 의한 민간전문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관련 용어의 정리

이제까지 언급된 용어들은 민간전문가 역할 및 업무범위에 따라 구분해보면, 2013년에 마련되었던 매뉴얼 단계와 2019년에 마련된 가이드라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13년 매뉴얼에서는 크게 지자체(지역)총괄형과 사업 총괄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구분에 따라 용어들이 구분되어 사용되어져왔다. 이때 사업 총괄형은 정비사업 내지는 도시재생사업, 개별단위 건축사업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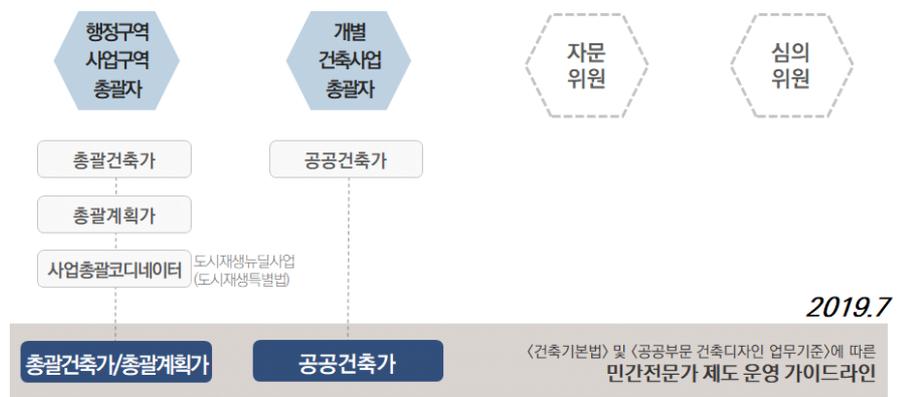
- 지자체(지역) 총괄형 = 지역총괄계획가 : 총괄건축가, 총괄계획가, 지역총괄계획가, 도시건축관리단장 등
- 사업 총괄형 = 사업총괄계획가 : 공공건축가(개별건축사업, 정비사업 등), 총괄계획가(「도시재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사업; 「스마트도시법」,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농어촌리모델링법」,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 등), 총괄코디네이터(도시재생특별법, 도시재생뉴딜사업)

이 경우, ‘총괄계획가’는 어떠한 역할과 업무로 정의되느냐에 따라, 지역총괄자의 역할일수도, 개별단위 공공사업총괄자의 역할일 수도 있으므로, 어떠한 의미와 역할로 사용하고 있느냐로 해당 민간전문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2-4] 2013년 민간전문가 등 업무매뉴얼 상 민간전문가 구분 및 유사용어와의 관계
출처: 심경미(2019),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이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2019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공공건축 정책 및 제도의 이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86.(19.7.16) 참고후 저자 재작성

2019년 가이드라인에서는 크게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 총괄형과 개별 건축사업 총괄형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총괄건축가 또는 총괄계획가'로 명칭을 통일하고, 후자를 '공공건축가'로 통일하여 용어의 혼동을 줄였으며 전자는 개별 사업법들에 근거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5] 2019년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상 민간전문가 구분 및 유사용어와의 관계
출처: 심경미(2019),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이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2019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공공건축 정책 및 제도의 이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86.(19.7.16) 참고후 저자 재작성

□ 본 연구에서의 용어 정의

민간전문가를 크게 지역 총괄형과 개별 건축사업 총괄형으로 구분하면, 지역(행정구역, 사업구역) 총괄형은 대체로 '총괄건축가', '총괄계획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개별 건축사업 총괄형은 '공공건축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볼 때, 가장 최근에 발표된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과 「공공건축특별법」에서의 용어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업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며, 공공건축가의 업무에 있어서는 「공공건축특별법」에서는 기획업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업무의 경우, 「공공건축특별법」에서는 마치 '공공건축'에 업무를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건축'의 의미를 '건축물' 및 '공간환경'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이드라인에서의 정의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2019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정으로 '건축기획' 업무가 의무화되어, 건축기획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자문 업무는 이전부터 기획단계부터의 참여가 중요시되었던 만큼, 공공건축가의 업무에는 기획업무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용어 정의는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2019.7, 국토교통부)」에서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표 2-7】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과 공공건축특별법에서의 용어 정의 비교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2019.7) (국토교통부)	총괄건축가 /총괄계획가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사업의 기획·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
	공공건축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민간전문가
공공건축특별법 (국회 발의중) (국토교통부)	총괄건축가 또는 총괄계획가 (총괄건축가 등)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의 공공건축 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사업의 기획·설계 등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 도시, 조경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공공건축가	해당 공공기관 등의 개별 공공건축사업에 대하여 건축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사업의 과정에 대해 조정·자문해주는 전문가

출처: 국토교통부(2019.7),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pp.1-2.; 「공공건축특별법(안)」(대한민국 국회, 검색일: 20.2.10.) 참고후 저자 재작성

3. 민간전문가 정책 변화 및 주요 이슈

1) 최근 정책 변화

□ 중앙부처(국토부) 차원의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규모 확대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취지를 지자체에게 인식시키고 지자체에 참여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2013년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역총괄계획가 운영비(약 4천만원)만을 지원하던 것에서 2019년부터 지원규모와 대상수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부터는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외에 공공건축가 운영(도특광역시 8천만 원, 시군구 6천만 원 내외)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비용(시군구 2억 원)을 지원하여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림 2-6] 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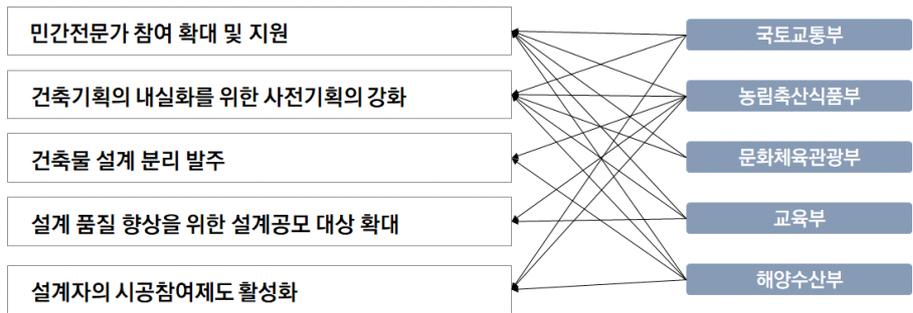
출처: 심경미 외(2019),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모델 구축 및 홍보방안 마련연구」, 국토교통부, p.18. 참고후 저자 재작성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범부처 대응

제 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4.18)의 후속조치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발족되었고, 부처별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및 관련 사항 이행·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범정부 협의체는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교통부),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사업(문화체육관광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림수산식품부), 어촌뉴딜 300사업(해양수산부)으로 구성되었다. 관

런 사항을 살펴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뉴딜 300사업의 경우 공공건축의 디자인 질적 향상을 위해 기존 사업에서 운영되고 있던 민간전문가 내에 공공건축가를 포함하거나 별도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20년 4월 기준 주요성과로는 「교육시설법」 ‘교육시설디자인 전문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건축가 위촉·활용하도록 사업지침 개정, 어촌뉴딜사업을 추진을 위해 ‘공간환경코디네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디자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총괄·공공건축가를 지정하도록 사업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자의 시공참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축 사전기획의 강화, 설계공모 대상 확대(설계비 2억→1억) 등을 추진하여 공간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성 및 사업절차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중앙부처 차원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의 높아진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7] 공공건축 디자인개선 부처별 주요 성과

출처: 국토교통부(2020), “새로운 공간인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4월 10일 보도자료. 참고후 저자 재작성

□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법 개정 및 공공건축특별법 발의

공공건축 품질 향상 및 사업절차의 내실화를 위해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개정(19.12)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든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을 의무화하고, 설계비 5천만 원 이상의 공공건축 사업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예산편성 및 설계용역 발주 등 추진 시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도 기존 설계비 2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전체 공공건축의 약 80%를 차지하는 소규모 공공건축물¹⁴⁾에 대해 디자인 개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시·도지사 등은 해당 지자체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14) 엄철호 외(2019), “공공건축지원사업 4차평가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95.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공건축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역할,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공공건축 사업 절차 및 체계, 공공건축 복합화 등에 대한 사항들을 담은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된 상태(20.7.)이다. 「공공건축특별법」이 제정되면, 건축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의 절차를 체계화함에 따라 모든 공공건축 사업을 관리하여 사각지대 없는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공공건축 정책 자문 및 사업관리를 위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의 활용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건축의 정책 및 사업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표 2-8】 「공공건축특별법」 발의안(20.7.) 내 민간전문가 관련 항목

구분	공공건축 사업의 내실화	공공건축 사업의 절차
조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등의 전문성 확보 • 총괄건축가 등 / 공공건축가 • 공공건축지원센터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설계기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 사업의 시행과정 • 건축기획 • 사업계획 사전검토 • 설계발주 • 설계의도 구현 • 성과평가 • 공공건축사업의 용역대가

출처: 「공공건축특별법(안)」 (대한민국 국회, 검색일: 20.09.15); 엄철호 외 (2019), “공공건축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연구 -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최종연구심의회 자료, 국토교통부. p.102. 참고후 저자 재작성

2)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주요 이슈

□ ‘국토부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주요 이슈 및 개선방안

국토부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에서 관련된 이슈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시범사업단계(2013~2014)에서는 지자체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역할 문제, 공공건축가와 사업총괄 MP간의 역할에 대한 모호함, 기획업무에 대한 경험 부족과 전문인력 부재, 민간전문가 자문내용의 현실성 부족, 부서간의 협의체 마련 및 운영의 한계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른 지역 여건에 맞는 민간전문가 모델 제시, 민간전문가가 지역여건과 행정 파악 체계마련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전문가 유형을 구분하여 역할과 업무범위를 제시하고, 참여 대상사업 및 선정기준 등을 담은 ‘민간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사업초기 3년(2015~2017) 동안은 지역총괄계획가로 활동하는 전문가나 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행정공무원, 지자체 관련부서 공무원들 모두 제도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지자체장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함에도 지자체장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업무 및 역할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방안 마련, 민간전문가 간 역할 구분, 민간전문가가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제도 홍보 및 기반마련을 위한 국토부의 노력 필요 등 많은 개선사항이 제시되었으나, 실제 관련 정책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2018년부터는 본 제도로 도입에 관심을 갖는 지자체가 많아지기 시작하였고, 2019년부터는 민간전문가로 참여하는 전문가 및 행정공무원들의 인식이 대체로 높아졌다. 특히, 지자체 장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 속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지원사업이 기존 '지역총괄계획가'에서 '총괄건축가'로 변경되면서 용어의 정립 문제가 대두되었다. 2019년부터 공공건축가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공공건축가의 역할, 참여단계, 기획단계에서의 업무, 그에 따른 지급기준 등 공공건축가 운영관련 문제가 다수 제기되었으며, 지역건축정책위원회 등 관련조직과의 관계설정 명확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민간전문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9년부터는 국토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필두로 공공에서 공무원 및 실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설, 간담회 및 설명회 등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이 진행되었다.

[표 2-9] 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에서의 주요 이슈 및 개선사항 : 사업 확대 단계(2018~2019)

구분	한계 및 이슈	개선 필요사항
위촉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기본법」, 민간전문가의 유형별 용어 규정 필요 「건축기본법」, 민간전문가 용어 개정 제안
역할 및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건축가의 경우 중간 및 실시설계 단계 자문 역할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건축가의 참여단계, 참여사업 매칭 등 운영에 대한 가이드 마련 필요 관련 공무원 교육 및 전문가 교육 방안 필요 지자체 관련 전문인력 및 지원조직 운영을 지원 필요 공공건축가를 기획단계에 참여하게 하여 예산규모, 사업방향, 설계기간 및 방식 등 여건개선 필요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 겸임 위촉 운영 필요
운영체계 및 조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별로 공공건축가의 참여 및 운영방식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건축가의 참여단계, 참여사업 매칭 등 운영에 대한 가이드 마련 필요 지원 실무부서의 업무충대에 따른 운영 체계화 필요 및 전문인력 지원 지자체 관련 전문인력 및 지원조직 운영 지원 필요 공공건축가 운영방식 및 체계에 대해 정리공유 필요 공공건축가의 적정 지급규정 마련 필요
공공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2018.6), 정책 브로셔 발간, 배포 → 국토부(2019),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 프로그램 신설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9.5), 총괄건축가 간담회 개최(총괄건축가 총13명 참석 등)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2019), 공무원 실무교육 및 건축사 실무교육(상반기, 하반기 각 주체별 2회, 총4회 개최) →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2019.7) →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9.11~12), 총괄건축가 권역별 설명회 개최(권역별 총5회)

출처: 차주영 외(2014).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주민참여사업 지원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pp.73-122.; 심경미 외(2019),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모델 구축 및 홍보방안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p.118, pp.139-144. 참고후 저자 재작성

□ 언론보도 및 비평을 통해 본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주요 이슈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에 대한 언론보도¹⁵⁾ 내용을 분석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위촉 관련, 역할 및 업무, 운영·지원조직 및 체계 등 크게 세가지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전문가 위촉과 관련해서 민간전문가 선정 시 객관성 필요,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시 신진과 중진의 적정 구성인원 제시 필요, 학맥·인맥으로 인한 공공건축 분야 독점현상 미연에 방지 필요, 행정 편의주의를 우선으로 한 공공건축가 선정 방지 필요 등의 사항이 언급되었다. 민간전문가 역할 및 업무 관련한 사항으로는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추진의 한계가 있으며, 현재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간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부족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및 지원조직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현재 민간전문가를 운영할 수 있는 지자체 예산 수립의 어려움, 총괄건축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 조직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슈가 있었다.

[표 2-16] 신문기사에서의 민간전문가 관련 주요 이슈

기사제목	민간전문가 관련 이슈
부산시 공공건축가 제도 왜 만들었나	(역할 및 업무) 역할 및 업무수행 부재하며, 설계, 자문의 성격도 모호 (운영체계) 지자체 예산(250만원)으로 자문료 총당 어려움 등 추진의 한계 발생 (운영체계) 별개의 조직을 만들어 권한있는 총괄건축가 영입, 운영 관리 필요
'공공건축가, 총괄건축가 제도' 전국화 도래...제도 안착하려면	(위촉) 민간전문가 풀 구성에 대한 객관성 확보 필요
서울총괄건축가 서울대 건축과 독식 논란...동문나뉘먹기?	(위촉) 신진과 중진을 혼합하는 인원 구성(발주 성격에 따라 중진(45세 이상)으로 구성하는 방안 검토) (위촉) 역할에 의해 보수지급의 차이, 학맥, 인맥으로 인한 서울 공공건축 분야 독점
국토부 선정 '공공건축가' 뒷말 무성...인맥 나뉘먹기 전락 논란	(역할 및 업무) 서울특별시 건축사업의 용인,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비판 (위촉) 공공건축가 선정시 인맥을 통한 선정 우려, 기본적인 공공건축가 지정 현황 자료 부재, 공공건축가 선정시 신진건축사 배제, 행정편의주의가 반영된 공공건축가 선정
무소불위 총괄·공공건축가... 폐쇄적 운영에 현실 반영 안 돼 논란	(역할 및 업무) 완공 때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검토와 자문을 할 계획 (위촉) 공공건축가의 객관적 선정 기준 모호로 인해 특정 학맥 인맥으로 인한 선정 발생 (역할 및 업무) 자문하는 계획과 설계가 현실성이 부족
공공건축물 획일화 없앤다... 민간 건축가 참여 확대	(위촉) 선정과정에서의 객관적인 선임과정 필요, 지역과 관계없는 건축사 혼합구성방안 요구 (역할 및 업무) 총괄건축가는 지역 관점에서 공공건축 디자인의 정책과 방향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공공건축가는 개별 사업별 설계지침을 자문하고 설계 관련 심사를 수행 (운영체계) 어린이집 등 소규모 공공건축물에도 좋은 설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설계공모 확대

출처: 박태성. (2016), 부산시 공공건축가 제도 왜 만들었나, 부산일보. 11월 23일 기사; 장영호. (2019). 공공건축가, 총괄건축가 제도' 전국화 도래...제도 안착하려면. 건축사신문. 1월 3일 기사; 박대로. (2019). 서울총괄건축가 서울대 건축과 독식 논란...동문나뉘먹기?. 중앙일보. 1월 4일 기사; 임정환. (2020). 국토부 선정 '공공건축가' 뒷말 무성...인맥 나뉘먹기 전락 논란. 뉴데일리경제. 1월 20일 기사; 이진혁 (2019). 무소불위 총괄·공공건축가... 폐쇄적 운영에 현실 반영 안 돼 논란. 조선비즈. 7월 11일 기사; 강동호. (2019). 공공건축물 획일화 없앤다...민간 건축가 참여 확대. 서울경제. 4월 18일 기사. 참고후 저자 재작성

15) 총괄계획가,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로 검색하였으며, 2020.2.8. 기준 52개의 신문 기사를 분석한 결과 46개는 대부분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촉현황 등을 기술한 언론보도였으며, 이 중 6개의 언론보도에서 주요 이슈를 발취함

□ 권역별 설명회¹⁶⁾에서 대두된 사항 등 최근의 주요 이슈

권역별 설명회에서 언급된 주요 이슈로는 크게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업무, 자격기준, 관련조직 및 민간전문가 간의 관계설정, 관련 조직의 운영체계 등이 언급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민간전문가의 유형별 역할정립, 사업 간 연계-조정-총괄 업무, 정책발굴 업무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가 언급되었으며, 도 차원의 민간전문가 운영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주요이슈로 제기되었다. 특히 건축기획업무 확대에 따른 공공건축가 기획업무 참여여부 및 공공건축심의 위원회의 참여여부도 주요이슈로 언급되었다.

이외 민간전문가 위촉시 자격기준에 대한 부분의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현재 외국건축사를 포함시킬 수 없으며, 자격이 충분한 실무자들(부교수급 기준)의 경우 현재 기준에서 위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운영기관(지자체)에서 마련한 조례, 규칙, 운영지침 등의 근거법이 건축기본법, 경관법 등에 따른 자격기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도 언급되었다.

또한 민간전문가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을 주요이슈로 제기되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경우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공공건축사업 기획단계 강화, 발주방식 체계화 등 공공건축의 디자인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소관부서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소관부서 동일할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이는 즉, 민간전문가 제도의 근거법인 「건축기본법」과 「건축기본조례」 소관부서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법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소관부서가 동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경우 지역차원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센터와 민간전문가 운영방식을 어떻게 결합,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해진 상황으로 민간전문가와 조직과의 관계 및 역할설정, 담당부서 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고민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6) 국전위 및 국토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제주도가 주최하였고, '19년 11~12월 총 5차례에 걸쳐 진행함

3)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주요 이슈 종합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된 최근의 정책변화와 국토부 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그리고 최근 신문기사 등을 통해 이슈화된 이슈사항들을 살펴보았다. 몇 가지 사항들은 오래전에 대두된 사항들로 최근 공공에서 다양한 역할과 활동을 통해 일부 문제점들은 해결 또는 해소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4장에서 진행할 운영실태 분석 및 간담회 등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표 2-10]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이슈 종합

구분	이슈 및 문제점
위촉 및 근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촉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의 공정성(선정방식, 위촉주체) - 자격기준 문제 : 주관적, 법과 다른 기준 2.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위상 문제 3. 공공건축가 구성 문제 : 신진건축사 배제, 지역건축사 비율 4. 보수지급체계 : 보수기준, 지급방식
역할 및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도 민간전문가 운영 필요성 및 업무 차별화 6. 도시규모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규모별 역할 및 업무의 차별화 필요성과 업무내용 - 중복사업, 관련사업들의 연계·조정업무의 필요성, 인식문제 - 정책 및 사업발굴 기획업무의 필요성, 인식문제 7. 공공건축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설계 참여에 대한 적절성 - 공공건축가의 역할과 권한 : 조정 or 자문
담당부서 및 유관조직 체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별도 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 9. 민간전문가 유관조직들과 민간전문가 담당부서와의 관계 10. 유관조직과 민간전문가 관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민간전문가
기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분야별 전문가 운용의 문제 12. 민간전문가의 역량,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행정부서의 역량

출처: 저자 작성

제3장 국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1.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2.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3.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4. 소결
-

3장에서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전반적인 도입·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크게 지자체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 민간전문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초현황과 운영현황을 정리·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지자체 단위에서는 먼저 전국을 대상으로 현재 본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를 파악하여, 지자체별 위촉 시기, 명칭, 규모, 지역건축사 공공건축가 비율 등 기초현황을 파악한 후, 이 중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를 운영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위촉절차 및 근무체계를 파악하였다. 두 번째 공공기관 단위에서는 마찬가지로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우선 파악하여, 기관별로 도입배경 및 운영체계, 업무 및 역할, 운영 규정 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에서는 그 수와 범위가 방대하여 국내 건축·도시 관련 중앙부처 사업 중 민간전문가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선별하여, 사업별로 민간전문가의 역할, 운영체계 등 운영현황을 파악하였다.

첫 번째 유형인 ‘지자체 단위 민간전문가’는 4장에서 심층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본 장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39개 지자체에 대한 기초현황과 심층면담조사 진행에 앞서 필요한 기초자료 가운데 수집이 가능한 자료들 위주로 조사·정리하였다.

1.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 조사목적 : 제도 도입 현황 및 기초현황 파악

현재 국내 몇 개의 지자체에서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를 몇 명이나 위촉, 운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제도 도입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위촉현황, 부서현황, 근무체계 등 기초현황을 조사, 정리하여 심층 면담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조사대상 및 내용

- 1차(도입하고 있는 지자체 수 파악) : 전국 대상
 - 민간전문가 위촉 지자체 수, 지자체별 위촉 규모, 시기, 명칭, 지역건축사 비율, 담당부서, 조례제정 현황
- 2차(위촉 절차 및 근무체계 현황) : 현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중 도입한지 3개월 이상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있는 지자체(광역 8곳, 기초 15곳)
 - 위촉절차, 위상, 임기, 근무형태(상근/비상근), 보수지급체계

□ 조사 방법

- 정책 및 관련 문헌자료 조사·분석, 지자체 조례, 관련 업무지침 등 조사·분석, 지자체 유선인터뷰

[표 3-1]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조사 개요

조사항목	세부 내용	조사 방법	대상
민간전문가 위촉현황	위촉 지자체 수	유선인터뷰	전국
	위촉 규모 및 명칭		
	위촉 시기(운영 기간)		
	지역건축사 공공건축가 비율		
조례제정 및 담당부서 현황	조례 제정 현황	인터넷 검색	
	담당 부서	유선인터뷰	
민간전문가 위촉절차 및 근무체계 현황	위촉절차	유선인터뷰	3개월 이상 총괄 운영 지자체 (광역8, 기초15)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위상	유선인터뷰	
	임기	조례(업무지침) 분석	
	근무형태		
	보수지급체계	유선인터뷰	

출처: 저자 작성

1) 지자체 민간전문가 위촉 현황 : 위촉 지자체 수, 규모 및 명칭, 기간

□ 민간전문가 위촉 지자체 수 : 총 39곳 지자체가 위촉·운영 중(20.5.13 기준)

2020년 5월 13일 기준 현재 광역자치단체 10곳(약 59%), 기초자치단체 29곳(약 13%)으로 총 39개의 지자체에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또는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 모두 운영하는 지자체는 21곳이며,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만 운영하는 지자체가 8곳, 공공건축가만 운영하는 지자체가 10곳이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총 29곳인 셈이다.

[표 3-2] 국내 민간전문가 위촉 지자체 현황('20.5.13. 기준)

도	5곳	충남, 전북, 경남, 제주, 경북	경북은 총괄건축가만 운영
특·광역시	5곳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인천	인천은 공공건축가만 운영
시·군	24곳	경기 5곳, 강원 2곳, 충남 2곳, 전북 1곳, 전남 1곳, 경북 4곳, 경남 10곳에서 운영	-
구	5곳	서울 서대문구, 서울 강동구, 서울 은평구, 인천 서구, 대구 수성구에서 운영	-

출처: 저자 작성

[표 3-3] 국내 민간전문가 위촉 지자체 현황('20.5.13. 기준)

(단위: 개)

구분	전체 지자체 수 ¹⁷⁾	민간전문가 운영 지자체 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공공건축가	총괄건축가만 운영	공공건축가만 운영
도·특·광역시	17	10 (약 59%)	도 5	4	1	0
			특·광역시 5	4	0	1
시·군·구	226	29 (약 13%)	시·군 24	12	4	8
			구 5	1	3	1
합 계	-	39	39	21	8	10

출처: 저자 작성

이 외에 특정 분야에서 총괄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로 전북 전주시와 서울 강동구가 있다. 전북 전주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재생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지역재생 총괄계획가(前 주거지재생 총괄계획가)'를 위촉(20.5.20. 명칭 변경)하여 운영 중이며, 서울 강동구는 '도시경관총괄기획가'를 위촉하여 운영 중이다.

17) 행정안전부(2019),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p.4. 참고

[표 3-4] 국내 분야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운영 현황 ('20.5.13. 기준)

구분	지역		담당부서	민간전문가			근거 조례
				명칭	성명	공공건축가	
시·군	전북	전주시	주거복지과	지역재생 총괄계획가 ('19.6.28. 위촉)	조준배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18명 ('18.2. 위촉)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
구	서울	강동구	도시경관과 도시경관 사업팀	도시경관 총괄계획가 ('19.1.2. 위촉)	김경인	(타부서 담당 23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출처: 저자 작성

□ 지자체 민간전문가 위촉 규모, 명칭 및 구성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는 총 인원은 총 789명으로, 이 중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총 29명, 공공건축가 총 760명¹⁸⁾이다.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총괄건축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대부분 '총괄건축가'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 진주시, 부여군은 '총괄계획가'를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 영주시(도시건축관리단장), 전주시(도시 총괄조경가), 수원시(디자인기획관)는 지자체 여건에 따른 색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공공건축가는 광역 또는 대규모 도시(충남,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용인)들에서 수석 또는 MP, 증진, 신진으로 구분하여 공공건축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3-5] 국내 지자체 민간전문가 위촉 규모('20.5.13. 기준)

(단위: 개, 명)

구분	전체 지자체 수 ¹⁹⁾	민간전문가 운영 지자체 수		총괄건축가 /총괄계획가 인원	공공건축가 인원	합 계
도· 특·광역시	17	10 (약 59%)	도 5	5	141	146
			특·광역시 5	4	430	434
시·군·구	226	29 (약 13%)	시·군 24	16	162	178
			구 5	4	27	31
합 계	-	39	39	29	760	789

출처: 저자 작성

18) 서울특별시 마을건축가는 총 248명(마을건축가 MP 25명, 마을건축가 223명)이 위촉되었으나, 현재 구 단위에서의 운영 및 역할 등이 정립 중인 관계로 제외함. 이 가운데 98명은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명단과 중복됨

19) 행정안전부(2019),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p.4. 참고

□ 위촉 시기 및 제도 운영기간

가장 초창기에 본 제도를 도입한 경북 영주시(2009)는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 이상 되었으며, 서울특별시(2012)도 9년 동안 본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두 곳 이외에 서울 서대문구(2015), 충남 부여군(2016), 충남 당진시(2018~)는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을 계기로 본 제도를 도입하여, 이후 자체 예산으로 현재까지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8년에 용인시가 총괄건축가를, 서울강동구가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였다.

종합하면 총 39개 지자체 가운데 2019년 1월 이전에 본 제도를 도입한 곳은 총 8개 지자체뿐이다. 2019년에 도입한 지자체가 24곳, 2020년 5월 13일 현재까지 도입한 지자체가 7곳으로 본 제도를 도입한지 2년 미만인 지자체들이 대다수인 상황이다.

[표 3-6] 지자체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시점('20.5.13. 기준)

(단위: 개)

구분	2019년도 이전	2019년도	2020년도	합 계
도	0	4	1	5
특·광역시	2(서울, 부산)	2	1	5
시·군	4(영주, 부여, 당진, 용인)	15	5	24
구	2(서대문구, 강동구)	3	0	5
합 계	8 (20.5%)	24 (61.5%)	7 (18.0%)	39 (100.0%)

출처: 저자 작성

□ 지역건축사 공공건축가 위촉 비율

지역건축사가 공공건축가에 포함되어 있는 비율은 도시 규모 및 공공건축가 규모와 무관하게 대부분 5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건축사 비율이 30% 미만으로 극히 낮은 지역은 충남, 전북, 경기 파주, 경기 성남, 강원 원주, 충남 부여, 충남 당진, 경남 함안, 경남 남해로 총 39개 조사대상 지자체 가운데 공공건축가를 운영하는 33개 지자체 가운데 8곳에 해당한다. 영주시와 의성군 역시 33%로 지역건축사 비율이 낮다. 비율로 보면 전체의 약 30% 가량이 지역건축사 비율이 30% 내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인 경기 파주 및 성남은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경남 함안과 남해, 영주와 의성은 지역 내 활동하는 전문가 부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 국내 지자체 민간전문가 위촉 현황 : 규모 및 명칭, 위촉시기('20.5.13. 기준)

구분	지역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성함	명칭	위촉일	인원	위촉일	비고	
도 (5)	충청남도	제해성	총괄건축가	'19.7.15.	63명	'19.7.15.	수석 2, 중진 31, 신진 30	
	전라북도	윤충열	총괄건축가	'20.2.18.	20명	'20.2.18.		
	경상북도	배병길	총괄건축가	'19.4.16.	-			
	경상남도	민현식	총괄건축가	'19.5.14.	24명	'19.6.7.		
	제주특별자치도	김용미	총괄건축가	'19.12.5.	34명	'20.1.		
특·광역시 (5)	서울특별시	김승희	총괄건축가	'19.1.2.	265명	'20.1.22.(8기)	MP25, 중진 93, 신진 147	
	부산광역시	김인철	총괄건축가	'19.2.14.	42명	'19.5.16.(27추가)	MP 3, 중진 7, 신진 22	
	광주광역시	함인선	총괄건축가	'19.4.23.	24명	'19.7.		
	인천광역시	-	-	-	50명	'19.5.	MP 5, 중진 26, 신진 19	
	대전광역시	이성관	총괄건축가	'20.1.6.	49명	'20.3.4.	수석 2, 중진 19, 신진 28 수석 3, 공공 10	
시·군 (24)	경기(5)	용인시	김대익	총괄건축가	'18.12.28.	13명	'19.1.11.	
		수원시	고은정	디자인기획관	'19.3.	11명	'19.3.26.	
		파주시	이기욱	총괄건축가	'19.8.20.	4명	'19.8.20.	
		포천시	-	-	-	14명	'19.10.8.	
		성남시	홍경구	총괄건축가	'20.2.1.	14명	'20.2.1.	
	강원(2)	춘천시	이민아	총괄건축가	'19.5.21.	10명	'19.7.31	
		원주시	주대관	총괄건축가	'19.6.19.	5명	'19.6.19.	
	충남(2)	부여군	강인호	지역총괄계획가	'16.	-		
		당진시	차주영	총괄계획가	'18.	5명	'19.1.	
	전북(1)	전주시	최신현	도시 총괄조경가	'19.1.18.	-		
	전남(1)	순천시	-	-	-	8명		
	경북(3)	영주시	신승수	도시건축관리단장	'19.4.	3명	'15.1인'19.6.2인	
		의성군	윤철재	총괄건축가	'19.6.1.	3명	'19.12.1.	
		경주시	이대준	총괄건축가	'19.6.18.	-		
	경남(10)	진주시	최삼영	총괄계획가	'19.6.10.	9명	'19.1.	
		의령군	-	-	-	10명	'19.4.17.	
		거창군	-	-	-	7명	'19.6.24.	
		김해시	고인석	총괄건축가	'20.5.12.	4명	'19.7.	
		함안군	-	-	-	6명	'19.9.5.	
		사천시	-	-	-	5명	'19.9.30.	건축 3, MP 2
		양산시	-	-	-	4명	'20.1.1.	
		창녕군	-	-	-	5명	'20.1.31.	
		남해군	안재락	총괄건축가	'20.2.14.	-		
		창원시	오성훈	총괄건축가	'20.3.5.	22명	'20.4.27.	
구 (5)	서울(3)	서대문구	주대관	지역총괄계획가	'15.	-		
		강동구	-	-	-	23명	'18.9.28.	
		은평구	한영근	총괄건축가	'19.7.1.	-		
	인천(1)	서구	하태석	총괄건축가	'19.1.2.	-		
	대구(1)	수성구	신창훈	총괄건축가	'20.5.13.	4명	'19.8.1.	
계	39개	29명	760명					

출처: 심경미 외(2020), 「민간전문가 참여 및 통합디자인 관리체계의 지속적 운용방안 연구-제1권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pp.17-19. 참고후 저자 재작성

*초록 음영부분은 공공건축가만 운영하는 곳, 핑크 음영부분은 총괄건축가만 운영하는 곳, 회색 음영부분은 2020 국토부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대상

**경북 구미시는 총괄건축가를 '20.3.31. 위촉하였으나, '20.8.31. 사임하여 제외함

[표 3-8] 국내 지자체 민간전문가 위촉 현황 : 지역건축사 공공건축가 위촉 비율 ('20.9.1. 기준)

구분	지역	공공건축가				
		인원	지역건축사 비율	비고		
도 (5)	충청남도	63명	27%	수석 2, 중진 31, 신진 30		
	전라북도	20명	90%			
	경상북도	-				
	경상남도	29명	66%			
	제주특별자치도	34명	68%			
특·광역시 (5)	서울특별시	265명	100%	MP 25, 중진 93, 신진 147		
	부산광역시	42명	50%	MP 3, 중진 7, 신진 22		
	광주광역시	24명	75%			
	인천광역시	50명	50%	MP 5, 중진26, 신진19		
	대전광역시	49명	75%	수석 2, 중진 19, 신진 28		
시·군 (24)	경기(5)	용인시	13명	50%	수석 3, 공공 10	
		수원시	11명	92%		
		파주시	4명	0%		
		포천시	14명	60%		
		성남시	14명	29%		
	강원(2)	춘천시	13명	69%		
		원주시	11명	18%		
	충남(2)	부여군	6명	0%		
		당진시	8명	20%		
	전북(1)	전주시	-			
	전남(1)	순천시	8명	75%		
	경북(3)	영주시	3명	0%		
		의성군	3명	33%		
		경주시	-			
		경남(10)	진주시	9명	77%	
			의령군	10명	100%	
			거창군	7명	100%	
			김해시	9명	78%	
			함안군	6명	16%	
			사천시	5명	60%	건축 3, MP 2
			양산시	4명	75%	
	창녕군	5명	100%			
	남해군	8명	0%			
	창원시	22명	59%			
구 (5)	서울(3)	서대문구	-			
		강동구	23명	90%		
		은평구	-			
	인천(1)	서구	-			
	대구(1)	수성구	4명	75%		
계	39개	796명				

출처: 저자 작성

*초록 음영부분은 공공건축가만 운영하는 곳, 핑크 음영부분은 총괄건축가만 운영하는 곳, 회색 음영부분은 2020 국토부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대상

2) 조례제정 및 담당부서 현황

□ 조례제정 현황 및 근거법 : 19곳에서 조례 제정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39곳 가운데 19곳에서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민간전문가 관련 법제도를 마련한 19곳 가운데 15곳은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경북 영주시와 경남 진주시는 「경관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전북 전주시는 근거법이 별도로 없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은 내부방침으로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직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규정을 「건축기본조례」에 마련한 곳도 2곳(전라남도, 전남 신안군)이 있다.²⁰⁾

[표 3-9] 지자체별 법제도 등 마련 현황('20.5.13. 기준)

(단위: 개)

구분(지자체 수)	제도 마련		제도 없음	합 계	
	제정	기존 조례 개정			
도 (5)	-	3	3	2	5
특·광역시 (5)	-	5	5	-	5
시·군 (24)	7	2	9	15	24
구 (5)	2	-	2	3	5
합 계 (39)			19	21	39

출처: 저자 작성

□ 담당부서 및 전담인력 현황

대체로 건축과 공공건축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도시디자인 또는 공공디자인, 도시재생, 경관 관련 부서에서도 많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축과 다소 거리가 있는 예산 또는 회계와 관련된 과에서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파주시, 서대문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서울 특별시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특별시 전담조직인 '도시공간개선단'은 총 43명 규모이다. 다른 지역들은 기존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부서별 인원은 2~3인 정도로, 경북, 부산, 대전, 파주시, 진주시, 영주시가 1~2인의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국토부 지원사업 대상지인 원주시와 춘천시가 현재 관련 사업부서와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파주시는 별도로 공공건축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원주시는 TF팀에서 '공간환경개선단'을 신설하여 전담조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다.

20)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시행 2019. 11. 7. 일부개정), 「신안군 건축 기본 조례」(시행 2019. 7. 10. 일부개정)

[표 3-10] 국내 민간전문가 위촉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20.5.13. 기준)

구분	지역	담당부서	조례 제정 현황	
도 (5)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공공건축팀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건축문화팀	○ 전라북도 건축기본 조례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총괄건축정책팀	○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공공건축기팀	○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건축팀		
특·광역시 (5)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기획과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경관공공디자인팀	○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건축계획팀	○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대전광역시	도시경관과 공공건축팀	○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시·군 (24)	경기(5)	용인시	공공건축과 공공청사팀	
		수원시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개발팀	○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회계과 공공건축건설팀	○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포천시	건축과 공공건축시설팀	
		성남시	건축과 녹색건축팀	○ 성남시 건축 기본 조례
	강원(2)	춘천시	도시재생과 총괄건축가운영지원TF	○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원주시	건축과 총괄계획가TF	○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
	충남(2)	부여군	전략사업과 전략개발팀(총괄)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공공)	
		당진시	건축과 공공건축팀	
	전북(1)	전주시	생태도시국 천연그루정원도시과	○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
	전남(1)	순천시	도시재생과	
	경북(3)	영주시	도시과 도시경관팀	○ 영주시 경관 조례
		의성군	지역재생과 생태디자인팀	
		경주시	주택과 공공건축팀	
	경남(10)	진주시	건축과 공공시설팀	○ 진주시 경관 조례
		의령군	도시재생과 건축경관담당	
		거창군	도시건축과 도시재생담당	
		김해시	건축과 건축행정팀	
		함안군	도시건축과 공공디자인담당	
		사천시	건설과 공공시설팀	
		양산시	건축과 공공시설팀	
		창녕군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	
		남해군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	
		창원시	건축경관과 공공건축팀	○ 창원시 건축기본조례
구 (5)	서울(3)	서대문구	기획예산과	
		강동구	도시경관과 도시경관사업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은평구	건축과 건축관리팀	
	인천(1)	서구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스마트에코시티기획팀	○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대구(1)	수성구	도시디자인과	
계	39개		19개	

출처: 저자 작성 (*초록 음영부분은 공공건축가만 운영하는 곳, 핑크 음영부분은 총괄건축가만 운영하는 곳)

[표 3-11] 국내 민간전문가 위촉 지자체 담당부서 및 전담인력 현황('20.5.13. 기준)

구분	지역	담당부서	인원	전담인력
도 (5)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공공건축팀	3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건축문화팀	3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총괄건축정책팀	3	1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공공건축가팀	3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건축팀	3	
특·광역시 (5)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43	6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기획과	15	1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경관공공디자인팀	2	1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공공건축담당	3	
	대전광역시	도시경관과 공공건축팀	3	1
시·군 (24)	경기 용인시	공공건축과 공공청사팀	2	
	경기 수원시	도시디자인단 (21명)	21	
	경기 파주시	회계과 공공건축컨설팅팀 (청사컨설팅에서 별도 분리)	6	2
	경기 포천시	건축과 공공건축시설팀	2	
	경기 성남시	건축과 녹색건축팀	2	
	강원 춘천시	도시재생과 총괄건축가 운영지원TF팀	4	4
	강원 원주시	건축과 총괄건축가TF팀	2	2
	충남 부여군	전략사업과	2	
	충남 당진시	건축과 공공건축팀	3	
	전북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천만그루 기획팀	2	
	전남 순천시	도시재생과	2	
	경북 영주시	도시과 도시경관팀	3	1
	경북 의성군	지역재생과 생태디자인계	2	
	경북 경주시	주택과 공공건축팀	2	
	경남 진주시	건축과 공공시설팀	3	1
	경남 의령군	도시재생과 건축경관담당	2	
	경남 거창군	도시건축과 도시재생담당	2	
	경남 김해시	건축과 건축행정팀	2	
	경남 함안군	도시건축과 공공디자인담당	2	
	경남 사천시	건설과 공공시설팀	2	
	경남 양산시	건축과	2	
	경남 창녕군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	2	
	경남 남해군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	4	
	경남 창원시	건축경관과 공공건축팀	5	1
구 (5)	서울 서대문구	기획예산과	1	
	서울 강동구	도시경관과(총괄)/건축과 공공건축팀(공공)	2	
	서울 은평구	건축과 건축관리팀	2	
	인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스마트에코시티기획팀	4	
	대구 수성구	도시디자인과	2	
계	39개			

출처: 저자 작성

3) 민간전문가 위촉절차 및 근무체계(위상, 임기, 근무형태, 보수체계)

□ 위촉절차 : 총괄은 지명추천 위주, 공공건축가는 공개모집 위주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선정방식은 대체로 지명추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8개 지역 중 2020년에 도입한 대전광역시만 공개모집을 하였으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5개 지역 중 경기 수원시, 인천 서구, 경기 파주시 3지역만이 공개모집을 하였다. 공개모집으로 진행되는 경우 선정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심사를 통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를 위촉하였다.

반면 공공건축가 선정방식은 대체로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공공건축가를 운영 중인 8개 지역 중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선정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공공건축가를 운영하고 있는 9개 지역 중 5개 지역(경기 수원시, 강원 원주시, 경남 진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의성군)에서 추천을 통해 모집하였으며, 경기 용인시는 공개모집과 추천모집을 병행하여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위상 : 기초자치단체 위상 정립 대체로 미비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위상은 부지사급/부시장급으로 지자체 장 직속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2곳(경북, 광주광역시)은 아직 위상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경남의 경우 위촉단계에서 위상이 없었다가 현재 부지사급으로 조정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5개 지역 중 부단체장급으로 위상이 설정되어 있는 곳은 7곳뿐으로, 6개 지역은 위상이 아예 설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수원시는 부시장급 아래인 4급 상당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파주시는 국장급으로 설정되어 있어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임기 및 근무형태 : 수원시 전국 유일한 상근직

국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대부분 2년 정도 임기(2년 연임)에 본업을 별도로 갖고 있으면서 비상근으로 주 1~2회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원시는 국내 최초로 4급 상당의 상근직으로서 일종의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공공건축가는 2년 연임이 가능하며, 근무는 대체로 프로젝트별로 업무가 있을시 수시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 보수체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대체로 엔지니어링 기술사 기준 노임단가(1일 기준)를 적용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특별시만이 2019년부터 정부부시장급으로 지급기준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월급기준이 아닌 근무일수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다. 상근직으로 활동 중인 수원시는 4급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공공건축가는 대체로 자문 및 회의수당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자문회수 및 회의참석수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데, 자문 및 회의수당 지급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참여시 엔지니어링 기술사 기준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기도 하며, 건축기획 업무의 경우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계약을 통해 일정 용역비를 받고 수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설계도면 작성·20시간 이상 회의 참석 등의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사 기준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2020년1월1일부터)

(단위: 원, 1인1일 기준)

구분	건설	구분	건설
기술사	369,831	초급기술자	170,615
특급기술자	288,036	고급숙련기술자	204,010
고급기술자	235,682	중급숙련기술자	174,996
중급기술자	219,451	초급숙련기술자	157,750

출처: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etis.or.kr/webs/news/news_board.jsp?eftParam=1&topParam=1&boardId=TOTALBBS&categorygroup2=TB150) (검색일: 2020.4.16.)

서울특별시 총괄건축가 수당(「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시행규칙」 근거)

- 총괄건축가의 수당은 총 근무일수 및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총괄건축가의 수당단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한 단가를 말한다),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에 따른 기준단가를 말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

(단위: 원, 월지급액 기준)

구분	1급(정부부시장)	구분	1급(정부부시장)
1호봉	4,081,400
2호봉	4,224,500	21호봉	6,888,000
3호봉	4,371,200	22호봉	6,956,100
4호봉	4,521,200	23호봉	7,013,7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0.9.14.)

[표 3-12] 국내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 위촉절차 및 근무체계(도)

구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인구규모	212만	267만	336만	67만
총괄건축가	위촉절차	지명추천	지명추천	지명추천
	위상	행정부지사급 예우	없음	없음 → 부지사급
	임기	2년 연임	2년 연임	2년 연임
	근무형태	비상근(주1회)	비상근(주2회)	비상근(주2회)
	보수체계	엔지니어링 기술사 기준	엔지니어링 기술사 기준	엔지니어링 기술사 기준
	사무공간	독립공간(24㎡)	독립공간(68㎡)	독립공간(10㎡)
공공건축가	위촉절차	공개모집	-	공개모집
	임기	-	2년 연임	2년 연임
	근무형태	필요시 근무	필요시 근무	필요시 근무
	보수체계	자문 및 회의수당 지급기준 *사업 참여시 엔지니어링 기술 사 기준 노임단가	-	자문 및 회의수당 지급기준 *사업 참여시 엔지니어링 기술 사 기준 노임단가

출처: 지자체(충청남도 공공건축팀 박상훈 주무관,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강도석 주무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이원중 주무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직적과 김형건 주무관) 유선면담(20.3.3.~20.3.30.) 및 자료조사 등을 토대로 저자 작성 (*음영부분은 운영초기와 달라진 부분)

[표 3-13] 국내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 위촉절차 및 근무체계(특·광역시)

구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구규모	973만	341만	146만	147만
총괄건축가	위촉절차	지명추천	지명추천	추천모집(심사위)
	위상	부시장급	부시장급	없음
	임기	2년 연임	2년 연임	2년 연임
	근무형태	비상근(주1~2회)	비상근(주1~2회)	비상근(주2회)
	보수체계	정무부시장급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지급)	엔지니어링 기술사 기준	엔지니어링 기술사 기준
	사무공간	독립공간	독립공간(40㎡)	독립공간(25㎡)
공공건축가	위촉절차	공개모집	공개모집	지명추천
	임기	2년 연임	2년	2년 연임
	근무형태	필요시 근무	필요시 근무	필요시 근무
	보수체계	없음 (자치구는 구마다 다름)	자문 및 회의수당 지급기준 *설계도면 작성·20시간 이상 회의 참석 등의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사 기준 노임단가	자문 및 회의수당 지급기준 *사업 참여시 엔지니어링 기술사 기준 노임단가

출처: 지자체(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건축팀 변종진 주무관,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기획과 진장한 주무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장제식 주무관, 대전광역시 도시경관과 김문선 주무관) 유선면담(20.3.3.~20.3.30.) 및 자료조사 등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14] 국내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 위촉절차 및 근무체계(시·군·구)

구분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	전북 전주시	인천 서구	서울 은평구	
인구규모	119만	106만	65만	54만	48만	
총괄건축가	위촉절차	공개모집	지명추천	지명추천	공개모집(선정위)	공개모집
	위상	4급상당 (전문임기제 가급)	없음	없음	부단체장급	부단체장급
	임기	2년	2년 연임	2년 연임	2년 연임	2년 연임
	근무형태	상근	비상근	비상근	비상근(주2회)	비상근(주2회)
	보수체계	4급상당 급여	엔지니어링 기술사 기준			
사무공간	독립공간	없음	없음	독립공간	독립공간	
공공건축가	위촉절차	추천모집	공개+추천모집	-	-	
	임기	2년 연임	2년 연임	-	-	
	근무형태	필요시 근무	필요시 근무	-	-	
	보수체계	자문 및 회의수당 지급기준				-
구분	경기 파주시	강원 원주시	경남 진주시	강원 춘천시	서울 서대문구	
인구규모	45만	35만	35만	28만	31만	
총괄건축가	위촉절차	공개모집(선정위)	지명추천	지명추천	지명추천	지명추천
	위상	없음→국장급	없음→부시장급	부시장급	없음→부단체장급	없음
	임기	2년 연임	2년 연임	2년	2년 연임	1년단위 재계약
	근무형태	비상근(주2회)	비상근(주2회)	비상근(주2회)	비상근(주1회)	비상근
	보수체계	엔지니어링 기술사 기준				
사무공간	독립공간(20㎡)	독립공간(55㎡)	독립공간	독립공간(30㎡)	없음	
공공건축가	위촉절차	공개모집	추천모집	추천모집	공개모집	-
	임기	2년 연임	2년 연임	2년	2년 연임	-
	근무형태	필요시 근무	필요시 근무	필요시 근무	필요시 근무	-
	보수체계	자문 및 회의수당 지급기준 *사업 참여 시 엔지니어링 기술사 기준 노임단가				
구분	경북 경주시	충남 당진시	경북 영주시	충남 부여군	경북 의성군	
인구규모	26만	17만	10만	6만	5만	
총괄건축가	위촉절차	지명추천	국토부 지명 추천	지명추천	지명추천	지명추천
	위상	없음	없음	부단체장급	없음	부군수급
	임기	2년 연임	제한 없음	2년 연임	제한 없음	2년 연임
	근무형태	비상근(주1회)	비상근(주2회)	비상근(주1회)	비상근	비상근(주2회)
	보수체계	엔지니어링 기술사 기준				
사무공간	독립공간	시청 건축과 內	독립공간	-	독립공간	
공공건축가	위촉절차	-	지명추천	추천모집	-	추천모집
	임기	-	2년 연임	2년 연임	-	2년 연임
	근무형태	-	필요시 근무	필요시 근무	-	필요시 근무
	보수체계	-	자문 및 회의수당 지급기준 *사업 참여 시 엔지니어링 기술사 기준 노임단가	엔지니어링 기술사 기준 노임단가	-	자문 및 회의수당 지급기준 *사업 참여 시 엔지니어링 기술사 기준 노임단가

출처: 지자체(수원시 도시디자인과 장진우 팀장, 용인시 공공건축과 이민영 실무관, 전주시 천만그루기획팀 오유리 주무관, 인천 서구 건축과 강지연 주무관, 서울 은평구 건축과 김혜진 주무관, 파주시 회계과 공공건축컨설팅 조재현 주무관, 원주시 총괄건축가TF 문성호 주무관, 진주시 건축과 공공시설팀 조용제 주무관, 춘천시 총괄건축가운영지원TF 한아름 주무관, 서울 서대문구 기획예산과 구정은 계장, 경주시 주택과 박희진 주무관, 당진시 건축과 이소정 팀장, 영주시 도시과 방성준 주무관, 부여군 도시건축과 양혜선 주무관, 의성군 지역재생과 여동익 주무관) 유선면담(20.3.3.~20.3.30.) 및 자료조사 등을 토대로 저자 작성 (*응답부분은 운영초기와 달라진 부분)

2.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 조사목적

민간전문가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파악된 공공기관별로 운영방식, 운영근거, 운영조직체계, 주요 업무 등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에서 민간전문가 참여에 대한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조사대상 및 내용

조사대상은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에 대한 진행·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한 민간전문가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내용은 민간전문가 도입배경 및 현황, 운영체계, 민간전문가 역할 및 업무, 운영 규정, 운영 및 지원 조직 현황 등이다.

□ 조사방법 : 문헌조사, 전화인터뷰, 자문회의

[표 3-15]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운영 개요 및 조사내용('20.5.13. 기준)

구분	담당부서	민간전문가				조사내용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등		
		위촉 및 명칭	위촉시기	명칭 및 규모	위촉시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기획조정단	김기호 총괄계획가	'07 도입, '19.8.27. 제9기 위촉	총괄자문단 39명 (총괄건축가 1명, 선임자문위원 2명, 공공건축가 10명 포함)	'20.5.1. 제9기 위촉	- 도입배경 및 현황 - 운영체계 - 역할 및 업무 - 운영규정 - 운영 및 지원 조직
	공공건축추진단 공공청사기획과	민경식 총괄건축가	'18 도입, '20.4.23. 제3대 위촉	공공건축가 30명 중진(23)/신진(7)	'20.4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시설 안전과	권문성 교육공간 자문관	'18.8.1. 제2대 위촉	꿈담건축가 117명	'20.2.28	
한국 철도공사	건축시설처	-	-	공공건축가 100명	'20.1.29	

출처: 각 홈페이지 참고 및 각 기관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2020.3.6.; 2020.3.16.; 2020.3.26.), 자문회의 및 공문 발송 후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민간전문가 도입배경 및 현황

과거 대규모의 신도시 건설 시 도시, 건물, 도로, 공원 등 물리적 공간의 상호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現 LH공사)는 2006년 11월 관련 연구를 발주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총괄조정체계를 구축하였다.²¹⁾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건설 비전 및 전략을 도시공간에 통합디자인 형태나 이미지로 구체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채울 수 있도록 공모와 연동하여 생활권 간의 지구단위계획 및 디자인을 검토조정하며, 경관과제, 상세계획, 상하위계획 및 관련 제반연구들을 통합적으로 조정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²²⁾

「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조정체계 운영규정」 제3조(총괄조정체계의 설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건축 문화의 수준을 향상하고, 도시 전체를 조화롭게 계획·개발하기 위하여 「건축기본법」 제23조의 민간전문가 제도를 활용하여 행복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설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총괄조정체계를 LH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한다.

총괄조정체계는 「건축기본법」 제23조의 민간전문가 제도를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총괄기획가 및 총괄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다. 총괄기획가는 2007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9기가 운영 중에 있고, 46명의 자문위원을 비롯해 행복도시 총괄건축가 1명과 도시·조경 분야의 자문위원 2명으로 구성된 선임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18년도부터는 행복청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의 품격향상을 위해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근거로 설계공모 업무 등에 건축설계·계획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민간전문가에는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가 있으며 2020년 4월말 2기가 위촉되었고, 총괄건축가 1명을 중심으로 중진 공공건축가 23명, 신진 공공건축가 7명이 활동하고 있다.

□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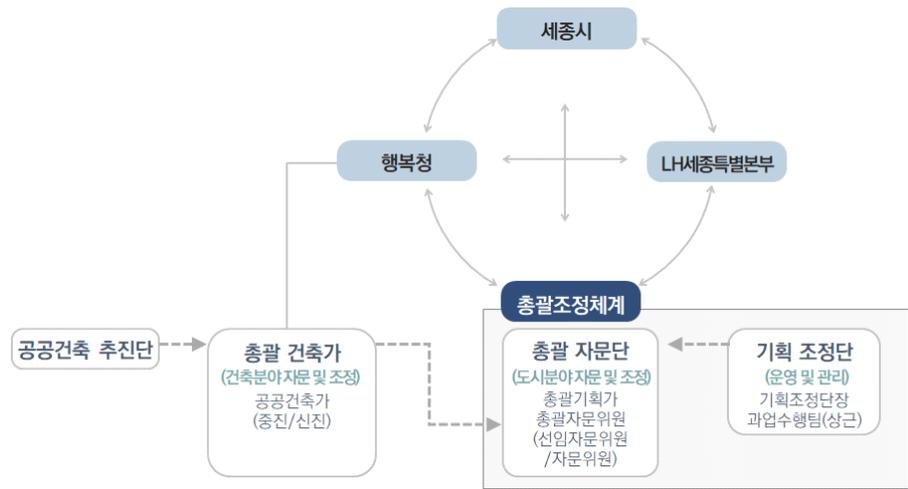
총괄건축가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하여 자문하고, LH공사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을 비롯해 행복청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총

21) 윤두원(2020), 「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조정체계 담론」,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74.

22) 윤두원(2020), 「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조정체계 담론」,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75. 참고후 저자 재작성

괄·조정 및 자문을 수행하고, 공공건축가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총괄 기획가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관한 계획 및 설계 등을 검토·조정하는 자로서 총괄자문단을 통한 총괄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역할이 다른 만큼 운영조직도 차이가 있는데, 총괄건축가는 행복청 내 공공건축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총괄기획가는 기획조정단이란 독립된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는 별도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총괄건축가가 도시·조경 분야의 전문가 2명과 함께 선임자문위원으로 총괄기획가가 총괄·조정하는 모든 회의에 참여하여 도시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1] 행정중심복합도시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획조정단(2020), “제9기 총괄조정체계 가이드북”, p.4. 참고후 저자 재작성

□ 민간전문가 역할 및 업무

총괄건축가는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주요 사업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등 전 과정에서 조정 및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공공건축가 관련 정책 등을 총괄 및 자문하고 있다. 공공건축가는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정 규모, 필요공간, 디자인 개념 등에 대한 사전기획 연구를 수행하여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표 3-16]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총괄건축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건축 관련 정책 검토 및 방향 제시 공공건축 주요 사업의 추진·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한 자문·조정 공공건축가 관련 정책·사업의 총괄·자문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 공공건축분과장 및 회의 운영 행복도시 내 건축물 및 도시경관 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 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요청하여 협의한 사항
공공건축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건축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공공건축 관련 사업의 기획 참여 소규모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설계 참여 그 밖에 공공건축 관련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등의 조정 및 자문 행복도시 내 건축물 및 도시경관 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9),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가 운영규정」 제6조(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

총괄기획가는 총괄자문단을 통한 총괄자문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회의를 통해 공공사업은 건축물 계획까지, 민간사업은 부지를 팔기 전까지 관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자문하고 있다.

[표 3-17] 총괄기획가 및 총괄자문위원의 자문대상

구분	자문 대상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 생활권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조경·공원·특화가로·상징가로 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및 특수구조물·장대교량, 공공조형물, 공공시설물 등의 전반적인 계획과 디자인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학교 제외), 건축심의대상이 아닌 공공시행 건축물 공모, 건축디자인 향상방안, 생활권 및 용지별 마스터플랜 수립 등 행복도시 토지공급 및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선행적 자문 행복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정책 및 기획연구 등에 관한 사항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단지계획 및 획지 분할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행복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설계 등에 관한 사항
행복도시 내 개별 건축물 등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공공시설물·구조물 등의 계획과 디자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괄기획가 또는 주관부서가 소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을 요청한 사항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20), 「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조정체계 운영규정」 제10조(자문대상)

이외에도 총괄기획가 및 총괄자문위원은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관련된 정책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자체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데,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총괄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총괄자문단 회의를 통해 주제를 선정 후 진행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행복청 및 LH공사의 요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선정된 연구과제는 총괄자문단 내 TF팀을 통해 수행하거나 위원 중에 일부가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해 업무를 수행한다.

총괄기획가 및 총괄자문위원이 속한 총괄자문단은 비법정 자문조직으로 법정 심의기구와 다른 유연성을 갖춘 자문체계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행복도시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법정 위원회에서 건축, 교통, 도시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심의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 자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며, 세종시 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법정 심의기구인 경관심의위원회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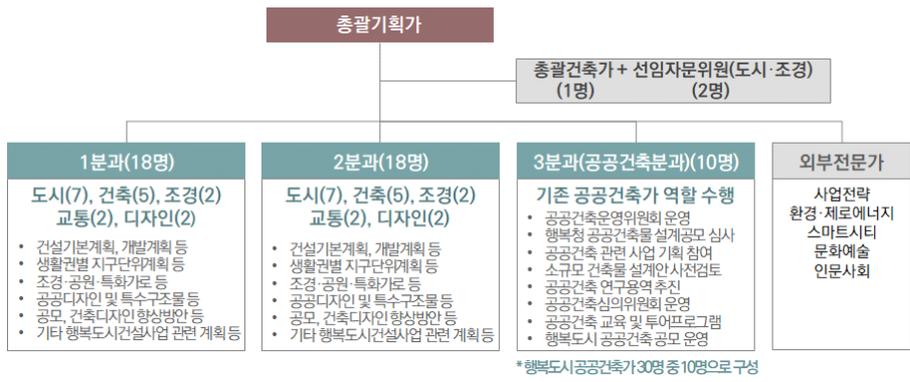
□ 운영방식

• 총괄자문단을 통한 총괄자문회의

총괄자문단을 통한 총괄자문회의는 총 3개 분과로 구분하여 운영 중이며, 1분과와 2분과는 모두 도시, 건축, 조경, 교통, 디자인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개 분과의 자문의 내용적 차이는 없으며, 자문위원만 구분되어 있다.

2019년부터는 민간전문가의 참여범위 확대를 위해 공공건축분과(3분과)를 신설하여 행복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괄 및 공공건축가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현재 3분과는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가운데 10명을 위촉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사업에 대하여 공공건축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제시·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3분과 회의의 총괄·조정 역할은 총괄건축가가 맡고 있고, 1·2분과 회의와 달리 공공건축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건축 및 도시 분야 외 환경·제로에너지, 스마트시티, 문화예술, 인문사회 분야는 8기까지 총괄자문위원으로 선정해 함께 운영하였으나, 관련 안건이 많지 않아 9기부터는 관련 전문가를 총괄자문위원으로 직접 위촉하지 않고, 필요시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림 3-2] 행정중심복합도시 제9기 총괄자문단 구성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획조정단 유두원 실장 자문회의내용(20.5.14); (행정중심복합도시 기획조정단(2020), “제9기 총괄조정체계 가이드북”, p.7, pp.10-11. 참고후 저자 재작성

• 행복도시 건축가 운영위원회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추진단은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 결정 등을 위해 필요시 공공건축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추진단 협의를 통해 공공건축가 풀에서 5명 이내로 선정해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사업관리를 하고 자문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별 참여할 공공건축가를 결정하기도 하는데, 자문 등 공공건축가 참여가 필요한 경우 모든 공공건축가에게 통보하여 참여 희망 여부를 조사한 후 진행한다.

공공건축가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사업은 사전검토 요청 전, 설계공모 단계에 있는 사업은 공모지침 및 공고문 공고 전, 기본설계 단계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만, 기본설계 완료 전에는 총괄조정체계 공공건축분과(3분과)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표 3-18] 행복도시 공공건축사업별 전담공공건축가 명단(19.1.8.기준)

담당사업	공공건축가	공공건축가 업무	비고
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송복섭	공모지침 수립, 공모 심사, 설계 및 시공 자문	1기/2기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김시원	공모 심사, 설계 및 시공 자문	1기/2기
세종119특수구조단	최현규	공모 심사, 설계 및 시공 자문	1기/2기
세종남부경찰서	도용호	시공 자문	1기
세종세무서	임호균	시공 자문	1기/2기
창의진로교육원	오성훈	공모 심사, 시공 자문	1기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http://www.naacc.go.kr/sub.do> (검색일: 2020.5.18.))

2) 서울특별시 교육청

□ 민간전문가 도입배경 및 현황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미래학교 준비를 위한 서울교육공간 디자인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교육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2016년도에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였다.²³⁾ 2016년에 위촉된 1기 교육공간 자문관은 현재까지도 이들의 활동에 바탕이 되는 ‘서울교육공간플랜’을 총괄 기획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교육공간플랜

- 미래 세대들이 자라나는 공간을 창의적이며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울교육의 공공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교육공간의 품격을 향상하기 위한 종합계획
- 조성 프로세스(기획-계획-시공-유지관리) 별 수행과제 및 조직 내 업무분장 및 단계, 중장기 실천과제를 제안

※ 기획 : 사업추진체계준비-사전기획-사업계획수립-시행방침결정 단계로 세분화하고, 지자체, 민간전문가 및 사용자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계를 구축

※ 계획 : 계획단계를 설계용역발주-계획/실시설계관리 단계로 세분화, 계획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디자인 협의체에 의한 합의도출

※ 시공 : 공사발주 단계에서 담당 실무자 및 설계자 중심의 시공협의체 구축, 일정규모 이상의 실시설계 안 변경 발생 시 협의체 합의를 통한 변경

※ 유지관리 : 사후관리 단계에서 운영관리 협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평가 체계 운영

출처: (사)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 협의회(2018.07.), 「서울교육공간플랜」, 서울특별시교육청, p.10.;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201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 디자인관리체계 개선 컨설팅”, 내부자료, pp.27-28. 참고후 저자 재작성

교육부 사업인 ‘학교공간혁신사업(2019~)’의 일환으로 위촉한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해당 사업 시행 이전인 2016년도부터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공간 자문관 1명과 꿈담건축가 117명이 위촉되어 있다.

서울교육 공간디자인 혁신을 위한 자문관(민간전문가) 운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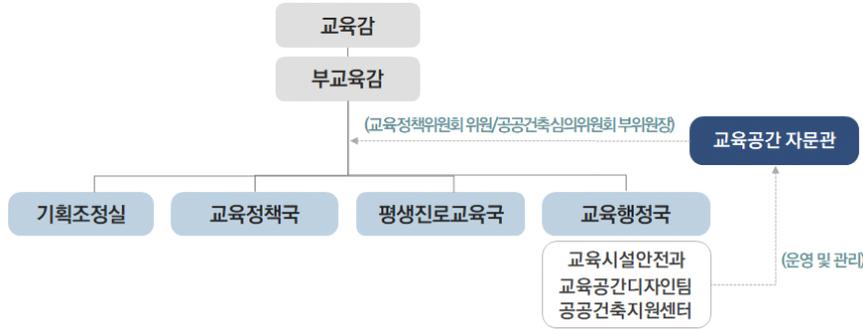
(중략)민간전문가' 제도도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으로 행정을 더욱 풍부히 하는 길입니다. 올해에는 우선 서울교육공간(건축), 그리고 교육공무직 등 몇몇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그들의 전문성을 우리교육청의 정책에 접목시킬 예정입니다.(후략) - 교육감 취임 2주년 기자회견문 중 -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2016), “서울교육 공간디자인 혁신을 위한 자문관(민간전문가) 운영 계획”, 내부자료, p.3.

23) 서울특별시교육청(2016), “서울교육 공간디자인 혁신을 위한 자문관(민간전문가) 운영 계획”, p.3. 참고후 저자 재작성

□ 운영체계

교육공간 자문관은 지위는 별도로 없으나, 교육정책위원회 위원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각종 정책, 교육공간 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림 3-3] 서울특별시교육청 운영체계

출처: 저자 작성

□ 민간전문가 역할 및 업무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역할은 자문에 한정을 두고 있긴 하나, 실제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3-19] 교육공간 자문관 및 꿈담건축가의 역할

구분	주요 역할
교육공간 자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건축·제도 등 통합 비전을 설정한 서울교육공간플랜 추진 설계용역 발주제도 개선 교육공간 혁신프로젝트-꿈을 담은 교실 사업 추진 미래교육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공간 콘텐츠의 개발방안 자문 서울교육 색채 환경 발전을 위한 디자인 자문 교육시설 정책자문위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꿈담건축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담사업 대상학교와의 1:1 매칭을 통해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꿈담 교실)총괄 사용자 참여 디자인 워크숍, 사용자 요구사항 및 행태분석, 디자인 기획, 실시설계, 디자인 감리 등의 용역 수행 <p>※ 용역금액은 2천만원 이하(사업에 따라 여성대표기업일 경우 5천만원 이하일 수 있음)</p>

출처: 엄철호 외(2019), "공공건축지원사업 4차평가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41.;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서울시교육청 공고 제2020-1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공간 디자인혁신 민간전문가 인력풀(꿈담건축가·학교건축가) 공개모집 안내", pp.1-2. 참고후 저자 재작성

특히 교육공간 자문관은 교육시설 정책자문회의에 참여하므로 교육시설사업의 기본 방향 및 계획 수립, 교육시설사업의 예산·집행·점검 및 평가, 교육시설 표준화 등 제도개선 등 전반적인 교육공간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이 가능하다.

□ 운영규정

교육공간 자문관은 「건축기본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사업에 참여하는 전반적인 민간전문가에 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근무기준, 업무 범위 및 역할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 않다.

[표 3-20]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임기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음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전문가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함 다만, 교육감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7조 참고후 저자 재작성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는 꿈담건축가의 자격기준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데,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꿈담건축가 자격기준

국내의 건축사, 건축교육 전문가(조교수 이상), 조경전문가, 공간혁신프로젝트 유경험자 등 사용자참여설계가 가능 전문가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국외 건축사 소지자도 가능)
- 대학에서 건축·도시·조경 관련 전공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우수(신진)건축가로 선정된 자
- 국내외 공공건축물 현상공모 당선 실적이 있는 자
- 공공기관 시행 디자인 시범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교육시설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자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72&bbsBean.bbsSeq=5736>) (검색일: 2020.2.4.)

□ 운영 및 지원 조직

교육공간 자문관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내 교육시설안전과 교육공간디자인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은 없이 팀장 1명 및 담당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3월,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립되었는데 향후 센터를 중심으로 교육공간개선사업의 실행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3) 한국철도공사

□ 민간전문가 도입배경 및 현황

공공건축물의 품격 제고 및 공공성 확보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주요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문 및 설계공모, 심사 등을 담당할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2020년 1월에 도입하였다. 현재 100명의 공공건축가가 위촉되어 있으며, 사업별로 공공건축가를 지정해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조정, 설계공모 심사 등을 수행 중에 있다.

□ 운영체제

한국철도공사가 직접 발주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이 의무인 사업에 대하여 공공건축가 인력풀에서 한 명의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시공·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별 공공건축가 선정은 추천위원회²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일단 모든 공공건축가에게 통보하여 해당 사업 참여 희망 여부를 조사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공공건축가 명단과 주요 실적을 첨부해 추천위원회에 상정하며 사업에 적합한 공공건축가 선정 후 사업 시행 부서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외에도 설계공모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공건축가 인력풀에서 4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²⁵⁾를 설계용역 착수 전까지 운영할 수도 있다.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사전기획단계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설계 공모방식(발주방식)을 결정하고, 설계 지침서 작성에 관한 내용을 자문 및 검토하며 설계 공모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역할도 함께 수행하여 해당 사업에 대해 건축기획 내용 및 과업지시서 등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 민간전문가 역할 및 업무

공공건축가는 앞서 언급한 추천위원회를 통해 담당하게 된 사업의 규모 및 내용 등의 타당성 검토, 기획·설계·시공·운영 등에 대한 조정·자문 외에도 각종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의 설계공모 심사를 비롯해 국가정책사업 및 각종 건축 관련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조

24)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설기술단장으로 하고 내부 및 외부위원을 4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내부위원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한국철도공사 공공건축가 가운데 랜덤방식으로 선정함

25)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업에 선정된 공공건축가로 하며, 위원장이 공공건축가 인력풀에서 본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4명 내외의 운영위원을 선정함

정·자문, 각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심의 등에 참여하고 있다.

□ 운영규정

공공건축가는 「건축기본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된 「한국철도공사 공공건축가 운영지침」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임기, 보수, 자격, 선정 등의 기준에 대해 담고 있다.

[표 3-21] 「한국철도공사 공공건축가 운영지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임기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보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철도공사의 「회의수당 지급 세칙」에 따라 평가 후 제시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자격기준	<p>「건축기본법」의 민간전문가 자격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다음의 하나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혹은 건축·도시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서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대학에서 건축·도시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그 밖에 공공건축 또는 철도건축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철도공사 시설기술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축사업과 관련 있는 부서의 처장 및 부장 중 4인 이내를 위원으로 하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건축가를 구성하며, 공공건축가 인력풀은 공모를 통해 모집함

출처: 한국철도공사(2019), 「한국철도공사 공공건축가 운영지침」 제5조, 제7조 및 제14조 참고후 저자 재작성

□ 운영 및 지원 조직

공공건축가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기술단 건축시설처는 전담인력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건축가 모집 이후 추천위원회 통해 각 사업별 전담 공공건축가를 선정하고 나면 해당 사업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므로 건축시설처의 업무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3.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 조사목적

국내 건축·도시 관련 중앙부처사업 중 민간전문가를 운영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각 사업별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운영체계 등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조사대상 및 내용

조사대상은 민간전문가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 가운데 건축·도시분야와 관련된 주요 부처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선정하여, 부처별 또는 사업별로 다양한 유형과 운영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 3개 사업, 농림부, 문체부, 해수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각 1개씩 총 7개를 선정하였다.

□ 조사방법

- 사업별 정책자료 및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 분석
- 관련 주체별 유선인터뷰를 통한 내용 정리

[표 3-22]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조사 개요

조사대상		조사내용
국토교통부	1. 도시재생뉴딜사업 2. 새뜰마을사업 3.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 시범사업	1) 민간전문가 도입 현황 - 운영근거, 민간전문가 유형 등
농림축산식품부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 민간전문가 역할 및 관계 - 관련조직 및 민간전문가 간 관계
문화체육관광부	5. 문화도시사업	3) 민간전문가 운영 및 지원체계 - 관련 조직 - 보수 - 근무형태 등
해양수산부	6. 어촌뉴딜300사업	
중소벤처기업부	7. 상권활성화사업	
교육부	8. 학교공간혁신사업	

출처: 저자 작성

1) 운영현황 및 개요

□ 사업추진 총괄과 다양한 주체간의 조정역할로서 프로젝트단위 민간전문가 활동

국토부, 농림부, 문체부, 해수부, 중소기업청 등 중앙부처의 건축 도시분야 사업에서는 개별법 또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단위의 민간전문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 중 민간전문가에 총괄조정역할을 명시한 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새뜰마을사업, 지역개발디자인관리 시범사업, 문화도시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상권활성화사업, 학교공간혁신사업으로 보여진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PM단장, 상권활성화사업은 타운매니저, 문화도시사업은 총괄기획자, 지역개발사업 시범사업은 총괄디자이너 등 사업마다 상이한 용어로 각 사업의 총괄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민간전문가의 위촉, 역할, 보수지급 등 운영기반에 관련된 사항을 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이와 다르게 농림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민간전문가인 '총괄계획가'는 개별법과 시행령에 위촉과 역할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었다. 개별 프로젝트단위 민간전문가 중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하는 민간전문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공건축가', 일반농산어촌사업의 '공공건축가', 어촌뉴딜300사업에 '공간환경코디네이터' 정도로 파악되며,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개선시범사업의 총괄디자이너를 건축기본법의 민간전문가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정도이다.

[표 3-23] 민간전문가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별 주요사업 개요

구분	담당부처	사업도입 시기	근거법
도시재생사업	국토부	201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새뜰마을사업	국토부	201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개발디자인관리 시범사업	국토부	2018~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림부	201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 제5조의2, 제6조의3」
문화도시사업	문체부	2018~	지역문화진흥법 제 15조 (문화도시의 지정)
어촌뉴딜300사업	해수부	2019~	「어촌어항법」
상권활성화사업	중기부	20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학교공간혁신사업	교육부	201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출처: 저자 작성

[표 3-24]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구분	민간전문가 구분	건축기본법 민간전문가	민간전문가 운영근거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장/사업총괄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공공건축가)	▲ (공공건축가)	도시재생 사업시행가이드라인 「건축기본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새뜰마을사업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도시 새뜰마을사업 시행매뉴얼
지역개발디자인관리 시범사업	총괄디자인어	▲ (유도)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 가이드라인 「건축기본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유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PM단장/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 (공공건축가)	「농어촌 정비법」 제 54조, 시행령 제52조
문화도시사업	총괄기획자(센터장)		문화도시추진 가이드라인
어촌뉴딜300사업	공간환경코디네이터	●	어촌뉴딜300사업 디자인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안)
상권활성화사업	타운매니저 (교육청)총괄기획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학교공간혁신사업	(교육청)실행기획가 학교공간혁신촉진자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

출처: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9),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식 회의자료”, pp.28-49.;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pp.7-10.;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도시 새뜰마을사업 시행 매뉴얼」, p.13.; 김상호(2019),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시범사업 설명자료”, 내부자료, (2019.4.5.), pp.6-7.; 「농어촌정비법」 제54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10); 문화체육관광부(2020),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p.2, pp.28-29.; 서수정 외(2019), 「어촌뉴딜 300 사업 디자인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해양수산부, pp.159-161.; 「상권 활성화사업 운영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10); 교육부(2019),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안)」, pp.7-10. 참고후 저자 재작성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사업 내 공공건축가 운영 확산의 움직임

제 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4.18)의 후속조치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발족되고, 부처별 시범사업 및 관련 사항 이행·관리 방안 마련되며 민간전문가 관련 정책이 확산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지원사업 중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교통부),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사업(문화체육관광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림수산식품부), 어촌뉴딜 300사업(해양수산부)에서 공공건축가 운영 확대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중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존 사업 민간전문가 이외에 공공

건축가를 위촉하도록 하여 개별건축물의 발주 및 계획에 대한 자문, 관계조율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²⁶⁾ 그 외 교육부(학교공간혁신사업)는 총괄기획가, 실행기획가, 학교공간혁신건축진자를 운영체계에 포함하여 사업추진 시행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별 민간전문가를 사용하는 용어 및 역할 등이 사업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총 100곳(2020.02기준)에서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제외하고, 그 외 사업에서는 예산반영 등의 어려움으로 시행되지 않거나 명확한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업시행 시 가점부여 등을 통해 공공건축가 운영 확산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일부 지역의 인터뷰에 따르면 계획단계에서 개별건축물에 대한 일회성 자문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축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2019년에 도입되어 아직 사업시행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으로 공공건축가의 명확한 역할이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표 3-25]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분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학교공간 혁신사업	문화체육 분야생활SOC	어촌뉴딜 300사업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공공건축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별 관련추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괄·공공건축가 참여 의무화 -우수설계를 위한 사업절차 개선 -생활SOC 복합시설 사업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계획수립 전 공공건축가 참여 -건축설계별도발주제도화 -건축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확대 -설계지의 시공과정 참여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 참여설계 시행 -학교공간혁신촉진자를 통한 공간 프로젝트를 수행 -단계별로 사용자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공공건축가단 운영 -'예술 건축물'제도 도입 -동·마을 단위 시각이미지 디자인 개선 -올해의 건축가상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절차 도입 -공간환경코디네이터 위촉 -건축물설계분리발주등

출처: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9),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식 회의자료", pp.28-47. 참고후 저자 재작성

26)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공공건축가를 코디네이터로 위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존 PM단에 공공건축가를 위촉·참여하도록 유도, 어촌뉴딜 300 사업은 2019년 선도지역에 한하여 공간환경코디네이터를 별도 위촉

2) 역할 및 관계

□ 사업 추진의 총괄 역할 및 계획수립을 위한 자문역할을 주요 역할로 제시

각 사업별 가이드라인 및 시행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로젝트 단위 민간전문가의 역할은 대부분 자문·총괄 역할 및 관련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자문역할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의 민간전문가는 국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관련 주체간의 관계조율 및 매개역할을 수행한다. 대부분 프로젝트의 관련 계획수립 시 총괄 자문 역할을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 시범사업, 어촌뉴딜300사업은 기획, 계획단계부터 사업시행과정까지의 전 과정을 자문 총괄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표 3-26] 민간전문가 자격요건 및 역할

구분	역할
도시재생뉴딜사업	- (사업총괄코디네이터)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 자문·총괄 - (코디네이터) 주민접점 사업주도 및 공공건축물 설계지침 수립·자문 - (공공건축가) 설계지침 수립 수행·자문
새뜰마을사업	- (총괄디자이너) 사업의 총괄조정자 역할 및 마스터플랜 수립 총괄 , 개별사업계획 수립 시 자문, 사업추진협의회 총괄 운영 - (마을활동가) 주민과의 가교 역할, 주민간 합의유도, 주민공동체 지원사업 발굴, 행정주민간 갈등조정 및 주민교육 및 전문가 네트워크 역할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시범사업	- (총괄디자이너) 지역개발사업의 품격제고를 위한 기획, 설계, 시공 등 사업수행과정에서 디자인 관련 사항을 총괄·조정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 (PM단장/총괄계획가) 계획수립 자원 , 주민, 지자체, 및 시행업체와의 관계조율, 사업추진과정에서의 갈등해소 및 자문 등의 역할
학교공간혁신사업	- (학교공간혁신촉진자) 학교구성원과 사용자 참여설계와 평가과정 의 제반과정을 촉진·유도·조정하고 전문적 지원
문화도시사업	- (총괄기획자) 문화도시 정책사업 틀 마련 및 자문, 전문조사 및 연구, 사업평가 및 전문적 지원, 중앙부처와 기초지자체 간 매개역할
어촌뉴딜300사업	- (공간환경코디네이터)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공간환경 디자인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조정 역할
상권활성화사업	- (타운매니저)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료 제공, 세부추진계획 수립 , 상권관리기구 운영 및 관리,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출처: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9),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회 발족식 회의자료”, pp.28-49.;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pp.7-10.;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도시 새뜰마을사업 시행 매뉴얼」, p.13.; 김상호(2019),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시범사업 설명자료”, 내부자료, (2019.4.5.), pp.6-7.; 「농어촌정비법」 제5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 20.2.10); 문화체육관광부(2020),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p.2, pp28-29; 서수정 외(2019), 「어촌뉴딜 300사업 디자인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해양수산부, pp.159-161.; 「상권 활성화사업 운영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10); 교육부(2019),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안)」, pp.7-10. 참고후 저자 작성

□ 프로젝트의 기획 및 계획단계와 시행단계별 민간전문가 역할 구분

그 중 도시재생뉴딜사업, 새뜰마을사업, 학교공간혁신사업과 같이 개별 프로젝트 내에 여러 민간전문가의 유형을 둘 경우 각 유형을 민간전문가의 역할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업총괄의 역할과 주민접점 사업지원 및 조율역할을 구분하여 민간전문가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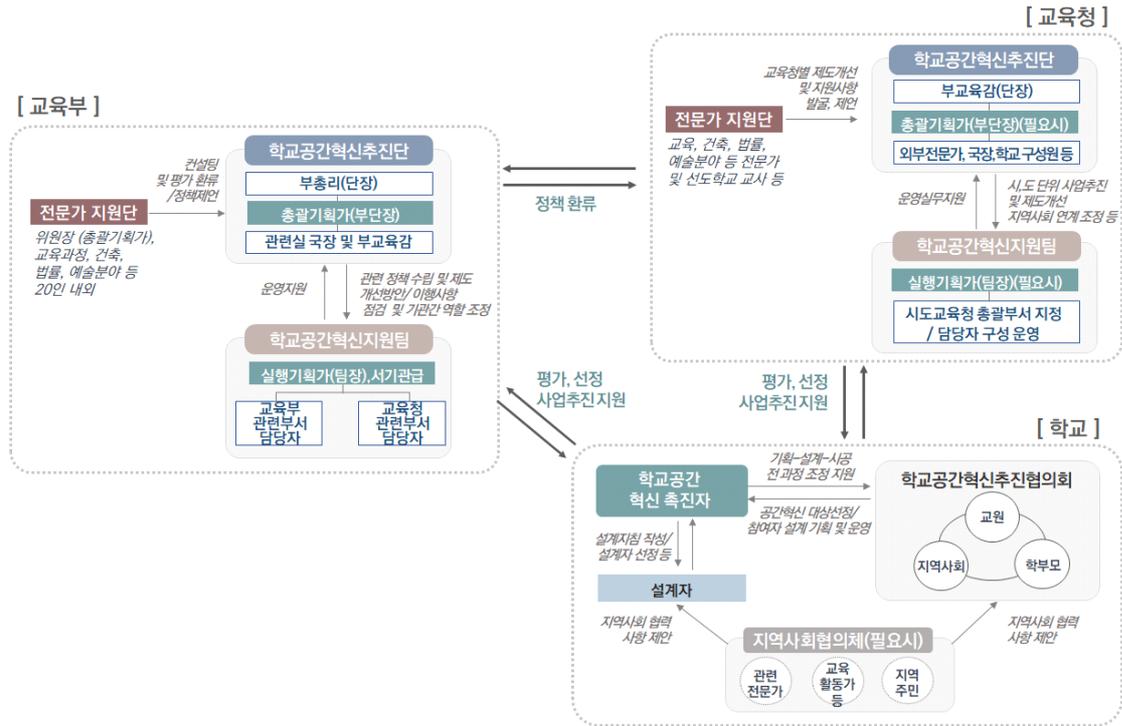
민간전문가를 1인 이상 두고 있는 사업의 특성은 주민참여와 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학교공간혁신사업도 사용자 참여설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업시행 및 주민참여사업 발굴 등을 위한 별도 민간전문가(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를 별도로 두어 사업시행단계의 운영·관리 역할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이 외 개별건축물의 품질향상 및 사용자 참여설계를 위해 건축사 및 관련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개별건축물의 기획부터 설계-시공까지 전 과정을 총괄·조정하도록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표 3-27] 민간전문가 역할 및 업무범위

구분	사업추진 단계별 역할 및 업무범위									관련조직		
	사업준비		사업기획 및 계획		사업추진기반			사업시행		중간 지원 조직	컨설팅 조직	평가 심의 조직
	심사 평가	정책 자문	사업 기획	계획 자문	총괄 조정	협업체 운영 관리	발주 방식 검토	세부 사업 자문	갈등 관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총괄코디네이터			●	●	●			●			
	(센터장)			●	●	●			●			
	코디네이터 (공공건축가)						●		●	●	●	◎ ◎ ◎
새뜰마을	총괄코디네이터			●	●	●		●	●			
	마을활동가								●	●	●	◎
지역개발	총괄디자이너			●	●	●	●	●	●			
일반농산어촌 개발	PM단장/총괄계획가			●	●	●						
	(공공건축가)							●	●			
학교공간 혁신	(교육청총괄기획가)	●	●	●	●							
	(교육청실행기획가)	●	●	●	●							
	학교공간혁신촉진자					●	●	●	●	●	●	◎ ◎
문화도시	총괄기획자			●	●	●	●	●	●	●	◎ ◎ ◎	
어촌뉴딜300	공헌환경코디네이터			●	●	●		●	●			◎ ◎
상권활성화	타운매니저					●	●	●	●	●	◎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3-4] 학교공간혁신사업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출처: 교육부(2019),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안)」, pp.7-13. 참고후 저자 재작성

3) 운영 및 지원체계

□ 일부 사업은 민간전문가가 사업의 중간지원조직 장으로서 역할 수행

부처별 프로젝트의 민간전문가는 대부분 비상근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시재생사업, 문화도시사업, 상권활성화사업에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두고 있는데, 해당조직의 센터장 역할을 민간전문가가 수행하고 있었다. 사업의 총괄·자문역할을 각 사업별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에서 사업추진, 사업모니터링, 사업추진 관련 조사 및 업무 수행지원함에 따라, 지원조직이 민간전문가의 업무 수행 지원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전문가가 중간지원조직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경우 지원조직 내 분야별(사업추진, 주민역량강화, 행정지원 등) 인력들이 각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사업추진의 동력

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중간지원조직 이외 중앙차원에서
의 심의·정책방향 수립 등을 위한 위원회 및 전문가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업추
진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별도 컨설팅단을 두어 사업추진의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표 3-28] 사업별 전문가조직 및 민간전문가의 역할

구분	도시재생뉴딜사업	사업	상권활성화사업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문화도시센터	상권관리기구
중간지원조직 구성	-시군구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 센터 구분하여 설치 운영 가능 -사업총괄코디네이터(센터장), 코디 네이터 등으로 구성	-센터장, 사무국장, 센터원(지역문화전 문인력, 청년문화기획자, 문화행정배 치자 등), 활동가 등으로 구성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표 또는 공동대 표로 참여가 가능 -지방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비 영리 법인으로 설립 가능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	-시군구 도시재생지원센터) 행정구역 내 도시재생사업 관리, 도시재생 관 련 계획수립 과 사업추진 지원 -(현장지원센터) 해당 활성화지역 관리 -(공통) 주민 의견조정, 전문가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도시 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관리 -전문컨설팅체계 운영 및 지원 -문화도시 추진자료의 통합기록 및 관 리와 DB정보 구축	-계획수립 자료 제공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지원 -상권활성화 관련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
민간전문가 역할	-사업총괄코디네이터) 활성화계획 수 립 및 사업시행과정 자문·총괄 -(코디네이터) 주민접점 사업주도 및 공공건축물 설계지침 수립·자문 -(공공건축가) 설계지침 수립 수행·자문	-(총괄기획자) 문화도시 정책사업 틀 마 련 및 자문, 전문조사 및 연구, 사업평 가 및 전문적 지원, 중앙부처와 기초지 자체 간 매개역할	-(타운매니저)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 료 제공, 세부추진계획 수립, 상권관 리기구 운영 및 관리, 상권활성화사 업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출처: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9),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식 회의자료”, pp.28-49.;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
형,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pp.7-10.; 문화체육관광부(2020),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p.2, pp28-29;
「상권 활성화사업 운영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10) 참고후 저자 재작성

[표 3-29]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 민간전문가 및 관련 조직 현황

구분	도시재생사업	새마을사업	지역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국립농촌진흥연구원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심의평가조직(중앙) 사업지원(중앙)	도시재생특위/실무위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중앙계획지원단 (도) 광역계획지원단)
전문가 조직(컨설팅)	도시재생지원기구, 컨설팅단	전문가자문단	통합디자인협의회/ 분야별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구분	도시재생사업	새마을사업	지역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전문가 구분	사업총괄코디네이터(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총괄디자이너	PM단장 (총괄계획가)
	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공공건축가
	공공건축가			
구분	학교공간혁신사업	문화도시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상권활성화사업
관계부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심의평가조직(중앙), 사업지원(중앙)	전문가 지원단	문화도시컨설팅단	디자인검토위원회 모니터링/평가사업추진지원단	상권활성화평가위원회
전문가 조직(컨설팅)			권역별 총괄조정자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문화도시센터		상권관리기구
민간전문가 구분	(교육청) 총괄기획가	센터장(총괄기획자)	공간환경코디네이터	타운매니저
	(교육청) 실행기획가			
	학교공간혁신촉진자			

출처: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9),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식 회의자료”, pp.28-49.;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pp.7-10.;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도시 새마을사업 시행 매뉴얼」, p.13.; 김상호(2019),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시범사업 설명자료”, 내부자료,(2019.4.5.), pp.6-7.; 「농어촌정비법」제54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 20.2.10); 문화체육관광부(2020),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p.2, pp28-29; 서수정 외(2019), 「어촌뉴딜 300사업 디자인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해양수산부, pp.159-161.; 「상권 활성화사업 운영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10); 교육부(2019),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안)」, pp.7-10. 참고후 저자 작성

□ 국비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전문가로서 일정 기간 운영에 한정

각 사업별 사업구역 및 단위사업의 시행 총괄조정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전문가 이외에 심의, 컨설팅, 권역별 사업자문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앙부처사업의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사업준비단계부터 계획, 사업시행과정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국비지원 이후의 관리단계에서의 운영방안이 미흡한 경우가 다수이다.

특히 이들 사업은 대부분 국비지원 규모 및 사업기간이 정해져있어, 민간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총괄조정 관리 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사업종료 이후에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수립 및 운영방안을 강구해야하는 상황에서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프로젝트 단위의 민간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표 3-30] 민간전문가 및 관련 전문가 조직 운영현황

구분	활동범위						
	전문가 조직			민간전문가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 단계	부처(중앙) (심의 평가/ 컨설팅)	지역(권역) (사업자문)	사업구역 (총괄조정)	단위사업 (사업시행, 운영관리)	
도시재생 뉴딜 (국토부)	3~6년/ 50~250억	준비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장 (사업총괄)		
		계획	컨설팅단				
		선정	도시재생특위/실무위				
		시행 관리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장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공공건축가)	
새들마을 (국토부)	4년/ 최대50억	준비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코디네이터		
		계획					
		선정	평가위원회				
		시행 관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코디 (자문단)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지역개발 (국토부)	3년/ (지역수요) 최대20억 (투자)최대100 억원	준비			총괄디자이너		
		선정	평가위원회				
		계획	정책연구기관(auri)		총괄디자이너		
		시행 관리					
일반 농산어촌 (농림부)	5년/최대150 억원	준비		광역계획지원단	PM단장/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계획					
		선정	중앙계획지원단	광역계획지원단	PM단장/ 총괄계획가	(분야별 전문가)	(공공건축가)
		시행 관리					
문화도시 (문화부)	5년/7.5억원	준비			총괄기획자		
		계획					
		(예비)선정	문화도시컨설팅단				
		시행 관리		문화도시지원센터	총괄기획자	총괄기획자	
어촌뉴딜 300 (해수부)	3년/평균 100억원	준비			공간환경코디네이터		
		선정	디자인검토위원회	권역별 총괄조정가	공간환경코디네이터		
		계획	사업추진지원단				
		시행 관리					
상권 활성화 (중기부)	5년/80억원	준비		(상권활성화지원센터)	타운매니저		
		계획			타운매니저	이사회	타운매니저
		선정	상권활성화평가위원회				
		시행 관리			타운매니저	타운매니저	
학교공간 혁신 (교육부)	(영역단위) 40~100억원 (학교단위) 40억미만	준비		(교육청) 총괄, 실행기획가	학교공간혁신촉진자	학교공간혁신촉진자	
		계획					
		선정	(교육부, 교육청) 전문지원단	(교육청) 전문가지원단			
		시행 관리			학교공간혁신촉진자	학교공간혁신촉진자	

출처: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9),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업체 발족식 회의자료", pp.28-49.;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지가지형,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pp.7-10.;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도시 새들마을사업 시행 매뉴얼」, p.13.; 김상호(2019),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시범사업 설명자료」, 내부자료(2019.4.5.), pp.6-7.; 「농어촌정비법」제54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10); 문화체육관광부(2020),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p.2, pp.28-29; 서수정 외(2019), 「어촌뉴딜 300사업 디자인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해양수산부, pp.159-161.; 「상권 활성화사업 운영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10); 교육부(2019),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안)」, pp.7-10. 참고후 저자 작성

4. 소결

1) 지자체 민간전문가

□ 총 39곳 운영 중, 2019년에 급격히 증가, 현재도 계속 도입 중, 실태파악 필요

'20.5.13일 기준으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있는 지자체는 총 29곳으로 이중 21곳은 공공건축가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총괄은 없지만 공공건축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10곳이나 된다. 종합하면 전국의 총 39개 지자체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또는 공공건축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인원은 약 789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가운데 2019년 1월 이전에 본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는 8곳뿐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운영한 지 2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본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²⁷⁾ 최근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선정기준의 객관성 결여 등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 만큼²⁸⁾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최근 1~2년 사이 민간전문가 제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총 39개 지자체 중 19곳에서 조례 제정, 최근 조례제정 후 민간전문가 도입

도·특·광역시 경우 10곳 가운데 8곳, 시·군·구 19곳 가운데 11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대부분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2곳은 「경관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곳은 근거법 없이 운영 중에 있다.

'20.5.13일 기준으로 제도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으나, 조례를 제정한 곳도 2곳(전남, 신안군)이 있으며, 2019년 이전에는 주로 제도 마련 없이 민간전문가를 먼저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제도 마련 후 민간전문가를 선정, 위촉하는 경향이 있다.

□ 민간전문가 운영 및 기반구축 현황

민간전문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사항을 중심으로 볼 때, 우선 도·특·광역시의 경우

27) 연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본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는 매달 증가하고 있음. 2020.9.1. 기준 본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지자체는 총 47개로 증가함. 최근 운영현황은 부록1. 참고

28) 박대로 (2019). 서울총괄건축가 서울대 건축과 독식 논란…동문나뉘먹기?. 중앙일보 1월 4일 기사; 임정환. (2020). 국토부 선정 '공공건축가' 뒷말 무성…인맥 나뉘먹기 전락 논란. 뉴데일리경제. 1월 20일 기사 등

서울특별시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가운데, 경남과 부산, 대전이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위촉, 총괄건축가 위상정립, 조례제정 등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 광주광역시 2개 지역은 조례는 제정되었으나, 총괄건축가의 위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총괄건축가로서 업무와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북의 경우 아직까지 공공건축가가 위촉되어 있지 않아, 공공건축가 운영의 필요성 및 업무추진의 어려움 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3-31] 도/ 특·광역시 민간전문가 운영 및 기반구축 현황 종합(20.5.13. 기준)

구분	총괄건축가/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위상정립	조례마련	전담조직	전담인력 확보
충남	○	○	△	△*	-	-
경북	○	X	X	○	-	○
경남	○	○	○	○	-	-
제주	○	○	○	△	-	-
서울시	○	○	○	○	○	○
부산시	○	○	○	○	-	○
광주시	○	○	X	○	-	-
대전시	○	○	○	○	-	○

출처: 저자 작성

*충남은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666호, 2020. 3. 10., 제정)에 민간전문가의 참여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민간전문가의 구성, 임기, 활동, 선정과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없음

시·군·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주시는 공식적인 자료와 달리 전담조직은 없는 상황이나, 전담인력을 운영하는 등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원주시, 진주시, 춘천시가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 총괄건축가 위상정립, 조례제정 등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당진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총괄건축가의 위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수원시는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총괄 역할을 하는 디자인기획관이 부단체장급 아래로 설정되어 있어, 총괄로서의 업무와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주시의 경우 조례는 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공공건축가가 위촉되어 있지 않고 위상도 정립되어 있지 않아, 업무수행의 어려움 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인천서구, 서대문구, 은평구, 부여군도 공공건축가가 없는 상황으로 공공건축가 운영의 필요성과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원주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담조직을 처음으로 신설할 계획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3-32] 시·군·구 민간전문가 운영 및 기반구축 현황 종합('20.5.13. 기준)

구분	총괄건축가/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위상정립	조례마련	전담조직	전담인력 확보
수원시	○	○	△	○	-	-
용인시	○	○	X	X	-	-
전주시	○	X	X	○	-	-
인천서구	○	X	○	○	-	-
은평구	○	X	○	X	-	-
파주시	○	○	△	○	-	○
원주시	○	○	○	○	△	-
진주시	○	○	○	○	-	○
춘천시	○	○	○	○	-	-
서대문구	○	X	X	X	-	-
경주시	○	○	X	X	-	-
당진시	○	○	X	○	-	-
영주시	○	○	○	○	-	○
부여군	○	X	X	X	-	-
의성군	○	○	○	X	-	-

출처: 저자 작성

□ 민간전문가 운영 주요 이슈 관련

(위촉절차) 대체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지명추천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공공건축가는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론 총괄건축가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경우도 있는데, 도/특·광역시 경우, 최근에 도입한 대전광역시 1곳과 시·군·구의 경우 파주시, 수원시, 성남시, 인천서구, 은평구 5곳이 해당된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1인을 선정해야 하고 지자체장과의 협력적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이유로 공개모집 보다는 추천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담당자들이 지명추천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개모집을 통해 진행한 지자체와 지명추천을 통해 진행한 지자체들의 담당공무원 심층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위상정립)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위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의외로 많은 상황으로 이와 관련된 행정의 입장과 애로사항,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활동에 있어서의 애로사항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수지급체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사기준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와 수원시만이 직급에 따른 보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위상정립과 연계하여, 역할과 업무에 맞는 보수지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공건축가도 사업참여 시 엔지니어링 기술사기준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고, 일부 설계도면 작성에 대한 보수지급기준도 설정하고 있는데, 보수지급기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참여업무 및 참여형태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건축기획 업무에 있어 기획안을 자문하는 경우와 기획자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수지급 기준이 명확히 구별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운영기준 및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건축사 구성 비율) 공공건축가 구성 시 지역건축사가 배제되고 해당지역 외 건축사 위주로 구성된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나, 조사결과 지역건축사 비율은 지역별로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특별시(100%)를 제외하고, 경남(66%), 제주특별자치도(68%), 광주광역시(75%), 수원시(92%), 진주시(77%), 양산시(75%) 등은 오히려 지역건축사 비율이 60% 이상, 최대 90%까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역건축사 비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 다양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심층면담조사 시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지원조직 확대 운영 및 전담인력) 일부 지자체에서 전담인력을 1~2인 가량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나 대부분 전담인력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담인력의 필요성 도출을 위해 실제 업무 수행상의 애로사항, 한계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축정책위원회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담당부서가 기본적으로 건축과에 있어, 건축 관련 부서에서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거나 예상될지 면담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 총 3곳에서 운영하고 있어 공공기관에서의 운영은 아직 미비한 상황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은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대표적이며, 서울특별시 교육청 정도가 있고,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건축가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다른 지역 교육청의 총괄기획자들과 달리 학교공간혁신사업 하나에 한정된 업무를 하지 않고, 서울교육공간 디자인 혁신의 일환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행복청 민간전문가 간 연계, 전문적 전담지원조직 운영 등의 측면에서 선도적

행복청의 경우, 도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기획가와 건축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건축가를 함께 운영 중에 있으며, 총괄기획가가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자문단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기에 총괄건축가가 선임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도시-건축의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총괄기획가와 총괄자문단의 업무를 지원 및 운영하고 있는 부서인 '기획조정단'은 전문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전담지원조직으로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역시 선도적이다. 현재 예산은 LH에서 받고 있다.

□ 지역개발공사, 경찰청, 소방청 등 공공기관형 민간전문가 도입 검토 필요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심의 없이 모든 학교시설이 교육부 자체적으로 진행되므로, 이러한 경우 민간전문가 운용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시설이나 소방시설 역시 각각 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전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에 행복청의 민간전문가 운영체계를 도입하였다²⁹⁾. 이처럼 건축·도시 사업을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경찰청, 소방청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품격향상과 효율적 사업집행을 위해 민간전문가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 민간전문가

□ 대부분 사업추진의 총괄·자문 역할로 민간전문가 운영, 그러나 지방 중소도시의 역량있는 민간전문가 위축의 어려움

각 사업별 원활한 사업추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의 총괄·자문 역할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역량있는 전문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민간전문가의 역량과 자질 보다 국비지원 선정을 위한 요건으로 민간전문가를 형식적으로 위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 단위의 위촉으로 인해 한명의 민간전문가가 여러 지역을 담당함에 따라 사업시행 전반을 관리 자문하는데 한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각 사업별 민간전문가 역할로 사업계획 수립의 자문, 총괄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비지원공모를 위

29) 박찬수(2020), 수자원공사, 송산그린시티 전문가 자문단 위촉...싱크탱크 역할, 뉴스1, 6월 9일 기사. 참고

한 계획수립 기간이 한정되어있어, 대부분 용역사에 의존한 계획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 민간전문가는 이 과정에서 일부 자문 역할만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질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 예산의 한계로 국비지원 이후 민간전문가 역할 지속의 어려움

대부분의 중앙부처 사업에서는 국비지원 이후 사업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또는 민간전문가를 두고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가이드라인 상에 역할을 언급하고 있어 민간전문가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구속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지원 이후 지속적으로 민간전문가로 위촉·운영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 및 군단위에서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 중소도시, 군단위는 국비지원사업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방중소도시의 인력지원 및 체계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 계획단계와 실행단계의 민간전문가가 상이하어 사업추진의 어려움 발생

각 사업마다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 단계마다 다른 민간전문가가 위촉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지속되는 민간전문가의 변경으로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중간지원조직과 민간전문가간의 관계설정 등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문화도시사업의 경우 예비사업단계를 두고 있어 사업선정 이전부터 참여하여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나, 실제 사업선정이후에는 다른 민간전문가가 위촉됨에 따라, 계획의 의도를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민간전문가가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사업추진에 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역량있는 인력이 장기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사업별 민간전문가의 운영 및 지원체계에 대한 가이드 미흡

각 사업마다 민간전문가 운영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 확보, 지역 내 관련 사업과의 연계, 관련 주체와의 관계조율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준 것으로 보여진다. 사업초기 명확하지 않은 역할 및 업무 설정으로 민간전문가의 역할 정립에 상당기간 노력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사업 내 여러 민간전문가(코디네이터, 공공건축가(별도위촉시) 등)가 위촉되어 있는 경우 각 주체간의 관계정립 및 역할수행의 차별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일부 사업의 경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군단위 소규모 도시의 경우 이들을 설립·운영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별도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김천의 경우, 유관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주민공동체 발굴 및 주민참여사업 등 마을활동가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지원센터의 인력이 수행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여군의 경우 지자체 재정능력, 인력수급 등을 이유로 지원조직 운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민간전문가의 역할인 타운매니저를 별도로 위촉하지 않고 해당 재단의 팀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또는 지방 소도시의 경우, 도시지역이 한정적이며 사업구역별로 인접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각 사업 간의 연계·조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각 사업마다 관련 부서와 부처가 상이 하여 이들 간의 협업구조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규모에 따른 관련 조직과의 연계방안과 관련사업의 민간전문가와의 협업관계 마련 필요성 등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제4장 지자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실태 분석

1. 분석개요
 2. 민간전문가 간담회 주요 내용
 3. 지자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실태 사례분석
-

4장은 국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운영 유형 중 ‘지자체 단위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이슈별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회의 및 면담조사를 통해 지자체별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는 운영 기간과 무관하게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위촉되어 있는 29개 지자체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공건축가 간담회도 공공건축가가 위촉되어 있는 31개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다만, 지자체 운영실태 분석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위촉되어 있고 20.5월 기준 도입된 지 6개월 미만인 지자체를 제외한 총 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는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를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도시규모별로 총 4회(도 1회, 특·광역시 1회, 시·군·구 2회), 공공건축가도 공공건축가 위주로 1회, 특·광역시 및 시·군·구 공공건축가 위주로 1회 총 2회 진행하였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총 15인, 공공건축가는 총 8인이 참석하였다.

지자체 운영실태 사례분석은 방문 및 유선 면담조사, 자문회의 등을 통해 민간전문가 선정 및 위상, 전담부서 신설·운영 및 전문직 공무원(임기제) 운영, 업무수행체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역할 및 활동사항, 공공건축가 운영체계, 유관조직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1. 분석개요

1) 조사목적 및 방향

□ 조사목적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국내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및 성과, 한계점 등을 파악하고, 제도도입 및 운영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슈 및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전문가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조사방향

- 조사내용의 차별성 확보, 그에 따른 조사대상 및 범위를 확정할 필요
- 개별면담조사 등 정성적 조사를 위한 전제를 설정하고 진행할 필요
- 정성적 조사의 경우, 조사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전제를 세워놓고 할 필요

□ 조사 진행을 위한 전제 설정

전제1. 도 차원에서의 민간전문가 운영 필요할 것이다.

- 광역시와 광역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차별성

전제2. 인구규모별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내용과 범위, 역할이 다를 수 있다.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차별성
- 기초자치단체라 할지라도 인구규모 등의 차이에 따른 차별성 등을 고려

전제3. 공공건축가는 인구규모별로 업무내용과 범위, 역할이 다르지 않다.

전제4. 공공건축가 권한과 구체적인 수행업무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할 것이다. (공공건축가 권한과 수행업무에 대한 공유, 공감대 형성 필요)

전제5. 민간전문가 위상과 권한을 명확히 해주어야 한다.

전제6. 공공건축 및 건축정책 관련조직(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지역건축정책위원회 등)과 민간전문가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전제7. 민간전문가 활용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다.

-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한시적 운영 vs. 민간전문가 지속적 안정적 운영

2)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조사내용은 크게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현황과 한계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 이슈별 운영현황을 파악하는 것, 이슈별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면담조사를 진행하거나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지역의 현황은 직접방문 외에 공문, 메일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거나 수시로 전화문의를 통해 파악하였다.

[표 4-1] 조사 개요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대상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한계 및 문제점,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	관계자 심층면담 - 기관방문 및 자문회의 - 유선면담	담당공무원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이슈별 운영현황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심의위원 참여현황 - 관련 조직별 민간전문가 참여 구성 현황 - 민간전문가 자문수행 현황 분석 등	자료수집 (공문, 메일) 전화문의	담당공무원
이슈별 의견수렴 한계 및 문제점,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	집단간담회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출처: 저자 작성

[표 4-2]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심층면담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제도 도입 및 위촉	- 민간전문가 위촉 및 선정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개선사항 - 보수지급 기준 및 체계
담당부서·유관조직	- 담당·지원부서 현황 및 계획, 운영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 유관조직 신설현황, 조직별 민간전문가 참여 여부 및 관계 설정현황
업무수행체계 및 협조체계	- 사업부서 업무공유 및 협조체계(사업참여 요청 절차 등) - 공공건축가 업무수행체계 및 운영체계 - 지자체 정책업무공유 체계, 지자체장과 소통체계
민간전문가 업무 및 활동사항	- 주요 업무수행현황 - 성과 및 한계, 애로사항, 개선사항 - 민간전문가 간 관계 및 협력체계 : 광역-기초단위 간, 총괄-공공건축가 간
기타	- 기획용역을 위한 예산운용 현황 및 계획 -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출처: 저자 작성

□ 간담회 조사 내용 및 세부 사항

[표 4-3]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세부 사항
위촉 및 근무	1. 위촉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 절차의 공정성(선정방식, 위촉주체) - 자격기준 문제 : 주관적, 법과 다른 기준
	2.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위상 문제	- 신진건축사 배제, 지역건축사 비율
	3. 공공건축가 구성 문제	
	4. 보수지급체계	- 보수기준, 지급방식
	5. 도 민간전문가 운영 필요성 및 업무 차별화	
역할 및 업무	6.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 도시규모별 역할 및 업무 차별화 필요성과 업무내용 - 중복사업, 관련사업들의 연계·조정업무의 필요성, 인식문제 - 정책 및 사업발굴 기획업무의 필요성, 인식문제
	7. 공공건축가 업무	- 직접 설계참여에 대한 적절성 - 공공건축가의 역할과 권한 : 조정 or 자문
담당부서 및 유관조직 체계	8. 별도 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	
	9. 민간전문가 유관조직들과 민간전문가 담당부서와의 관계	
기타	10. 유관조직과 민간전문가 관계 설정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민간전문가
	11. 분야별 전문가 운용의 문제 + 추가할 업무내용에 대한 의견 +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 어려움	
	12. 민간전문가의 역량,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행정부서의 역량	

출처: 저자 작성

[표 4-4] 공공건축가 간담회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세부 사항
위촉 및 근무	1. 위촉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 절차의 공정성(선정방식, 위촉주체) - 자격기준 문제 : 주관적, 법과 다른 기준
	4. 보수지급체계	- 보수기준, 지급방식
역할 및 업무	7. 공공건축가 업무	- 직접 설계참여에 대한 적절성 - 공공건축가의 역할과 권한 : 조정 or 자문
담당부서 및 유관조직 체계	8. 별도 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	
	9. 민간전문가 유관조직들과 민간전문가 담당부서와의 관계	
기타	10. 유관조직과 민간전문가 관계 설정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민간전문가
	11. 분야별 전문가 운용의 문제 + 추가할 업무내용에 대한 의견 +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 어려움	
	12. 민간전문가의 역량,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행정부서의 역량	

출처: 저자 작성

3) 조사대상 및 조사 실시³⁰⁾

□ 조사대상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는 상호 타지역 운영현황 및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운영 기간과 무관하게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위촉되어 있는 29개 지자체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공건축가 간담회도 공공건축가가 위촉되어 있는 31개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다만, 지자체 면담조사는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위촉되어 있고 20.5월 기준 도입된 지 6개월 미만인 지자체를 제외한 총 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 조사 실시 개요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는 도시규모에 따라 여건이 상이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도시규모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공공건축가는 5인 내외로 총 2회 진행하였다. 간담회는 이슈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집단토의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표 4-5]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개최 개요

구분	일정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외부 자문위원	비고
특·광역시	1차 (2020. 7.13.)	김인철(부산 총괄건축가) 함인선(광주 총괄건축가)	안재락 교수(경상대) 조준배 본부장(유진건축) 박기범 과장(국건위)	부산, 광주 발제
도	2차 (2020. 7.16.)	민현식(경남 총괄건축가) 배병길(경북 총괄건축가) 김용미(제주 총괄건축가) 윤충열(전북 총괄건축가)	강인호 교수(한남대) 조준배 본부장(유진건축) 박기범 과장(국건위)	제주, 경남 발제
시군구	3차 (2020. 7.23.)	최삼영(진주 총괄계획가) 차주영(당진 총괄계획가) 윤철재(의성 총괄건축가) 김대익(용인 총괄건축가)	김혜란(前고령,임실 총괄) 이양재(충남, 행복청 공공건축가)	
	4차 (2020. 7.31.)	안재락(남해 총괄건축가) 강인호(부여 총괄계획가) 이민아(춘천 총괄건축가) 이기옥(파주 총괄건축가) 신승수(영주 도시건축관리단장)	윤여갑(당진 공공건축가)	

출처: 저자 작성

30)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는 계획하였으나,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대상 수가 통계처리하기에 표본수가 작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함

[표 4-6] 공공건축가 간담회 개최 개요

구분	일정	공공건축가
특·광역시 시·군·구	5차 (2020.9.7.)	김창균(당진, 前서울 공공건축가) 이옥화(서울, 인천, 포천 공공건축가) 오신욱(김해, 前부산 공공건축가) 유형두(광주 공공건축가)
도 시·군·구	6차 (2020.9.8.)	김규린(충남, 경북, 前행복청 공공건축가) 유방근(경남, 사천 공공건축가) 현군출(제주 공공건축가) 김민석(경남, 서울 공공건축가)

출처: 저자 작성

[표 4-7] 지자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심층면담조사 대상 및 진행 개요

구분	지역	총인구수 (명)	전체면적 (km ²)	총괄 건축가 /총괄 계획가	공공 건축가	면담진행	간담회 참석
도 (4)	경남	340만	11,800	○	○	●	○
	경북	270만	19,100	○	-		○
	충남	210만	8,700	○	○	●	
	제주	70만	2,050	○	○		○
특· 광역시 (3)	서울	970만	610	○	○	●	
	부산	340만	1000	○	○		○
	광주	150만	500	○	○	△	○
시 (10)	경기 수원시	119만	120	○	○	●	
	경기 용인시	106만	310	○	○	△	○
	전북 전주시	65만	200	○	-	-	
	경기 파주시	45만	680	○	○	△	○
	강원 원주시	35만	870	○	○	△	
	경북 진주시	35만	710	○	○	△	○
	강원 춘천시	28만	1,120	○	○	△	○
	경북 경주시	26만	1,330	○	-	-	
	충남 당진시	17만	640	○	○	●	○
	경북 영주시	10만	670	○	○	●	○
군 (2)	충남 부여군	6만	630	○	-	△	○
	경북 의성군	5만	1,180	○	○	△	○
구 (3)	서울 서대문구	31만	17.61	○	-	-	
	서울 은평구	48만	29.7	○	-	●	
	인천서구	54만	130	○	○	-	

출처: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_T_1B040A3&conn_path=I3 (검색일: 2020.03.11.)); 국가통계포털 도시·비도시지역 면적현황(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15&tblId=TX_315_2009_H1002&conn_path=I3 (검색일: 2020.03.11.))
참고후 총인구수, 도시지역비율, 전체면적 작성

*참고 : ● 직접방문 또는 자문, △ 수시 유선면담,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참석한 지자체

2. 민간전문가 간담회 주요 내용

1) 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 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운영 필요, 역할은 시군구와 구분 될 필요

도와 시군은 별도 자치권자가 있으나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의결권, 재정상황 등 자체 프로젝트 수립 여건이 미흡할 수밖에 없어 도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도 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직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이 정착되지 않은 다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는 담당공무원의 역량에만 기대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운영의 필요성

(중략) 우선 저기 저 도 광역 도단위에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필요하나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일선 시군에 공공건축가 제도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도에서 이 모든 걸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도에 있는 공공건축가를 활용해야 되고 이들을 운영해야 되고 큰 틀에서 기틀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시군 단위에서 전부 다 생겼을 때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구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가 도에 설립되면, 그러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로서의 역할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출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내용(2020.7.16.) 일부 발췌

그러나 별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위촉되어있는 시군지역은 해당지역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자체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공공건축가 지원 등의 시스템을 도차원에서 모색할 필요는 있으나, 이 역시 총괄이 있는 시군지역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 시군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주요역할과 업무 구분 필요

(중략) 지역에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자문을 해주고 다 했는데, 다시 도로 올라가서 도에서 또 만약에 방향이 바뀌면, 그러면 이걸 완전히 서열이 생기는거고, 그러면 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상위, 위계가 명확하게 생기는 굉장히 위험한 일에서 좀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역할이 꾸준히 있을 것이라는데, 단계론적으로 처음에는 시, 군, 구가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시, 군, 구의 공공건축가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를 만들기 위한 홍보와 교육, 이게 가장 큰 일이고요. 그래서 이걸 도의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만드는게 중요하거든요.

출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내용(2020.7.16.) 일부 발췌

이러한 점에서 도 공공건축심의대상을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군 지역에서의 공공건축심의대상이 거의 없어 그 역할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히려 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시군구 단위의 교육과 도시사의 공약사업과 관련된 업무, 도차원의 비전 설정업무를 집중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역할 및 업무

- 도 및 국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 기획 및 자문 수행 적합

대부분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들은 건축·도시 관련 국비지원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 자문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되고 있는 수많은 국비사업(도시재생뉴딜사업, 어촌어항재생사업 등)과 지자체사업은 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관여하여 자문 및 조정을 하기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도 단위에서는 시군단위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프로젝트보다는 공항입지 선정 등 도 단위, 국가단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의 기획 및 자문에 무게를 두어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 차원의 별도 공모를 추진할 시 기존 국비 지원 사업 공모에 탈락한 지역의 연계, 조정, 자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때 자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보고와 진행사항 등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시간을 두고 성공사례를 통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필요성과 행정의 인식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구분되었다.

- 도단위 법정·비법정 기본계획 조정·자문 역할 수행 필요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지역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며, 이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 건축정책기본계획, 경관계획 등 법정, 비법정기본계획의 조정 자문 역할은 필요한 업무임에 공감하였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도 법정·비법정계획 검토 중요성

(중략)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도 종합계획은 도에서 각 시, 군별 연계사업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00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저보고 00군에 들어가서 뭐 하라 그래서 한창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든 각 시, 군 별로는 자기네 하고 싶은 사업이 도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데, 도 종합계획은 기본적으로 시, 군 연계사업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여타 시, 군하고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야 할 일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서로 협의하고 해야하는데, 그런데 거기 황당한 사업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중략)

출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내용(2020.7.16.) 일부 발췌

그러나 대부분의 법정 기본계획은 재수립기간이 5~10년 정도로 되어있어, 2년 정도의 임기 내에 하나의 계획도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

움을 지적하였다.

- 사업발주 방식 자문 및 설계공모 운영 총괄 수행

설계공모 운영 확대는 역량있는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간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 도단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중 일부 지역은 설계공모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한 설계공모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 민간전문가가 부재한 관할지역 프로젝트의 자문 수행 필요, 일회성 자문은 지양될 필요

도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건축가는 권역단위로 구분하거나, 프로젝트 및 발주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프로젝트에 배정하여 총괄 및 자문역할로서 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나 공공건축가가 부재한 시군지역의 사업부서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또는 공공건축가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때 도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건축가가 시군단위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행정의 지원과 민간전문가에 대한 인식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대부분 일회성 자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프로젝트 시작단계에 도의 운영부서 담당과장 또는 국장이 지자체 사업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과 공공건축가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해당 사업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공공건축가들의 프로젝트 자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반영결과 및 수행내역 등에 대한 사항을 담은 행정문서 보고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각 공공건축가들의 활동 및 역할 수행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도에 제출하여 도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등 피드백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도에서 시군프로젝트에 파견된 공공건축가의 업무수행 체계마련 필요
(중략) 도에서 현장에 대해서 시, 군, 구로 내려가는 공공건축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생각을 해요. 기초단위의 경우,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그 시, 군, 구에 있으면 보호를 해줘요. 최소한 잘되도록 관련 부서 불려서 이거 잘되게 해달라고 해라, 하지만 도 공공건축가는 혼자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그 프로젝트를 해야하고, 그건 담당자를 만나서 풀어야 하는데, 결국 자문2~3회로 끝나는 상황이 되버리는 경우가 많죠.
출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내용(2020.7.16.) 일부 발췌

□ 관련 조직 운영 및 체계 마련

- 전담 지원조직 마련의 필요성 제기

관련 조직 중 행정조직의 경우 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들은 대부분 총괄건축가/총괄

계획가, 공공건축가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의 '도시공간개선단'과 같은 별도 전담 지원조직의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도단위의 경우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해당부서가 각기 상이하여 정보공유가 어려워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통합·연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담조직이 여건상 어렵다면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하는 행정조직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구성이 제도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현재 갖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많은 민간전문가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정책위원회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검토

도 단위에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³¹⁾를 별도로 조직한 지역은 부재하였으며, 대부분 건축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건축정책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역할까지 포괄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상에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을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규정하고 있어「건축기본법」상의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조정 검토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관련 심의 및 운영조직간의 연계 및 통합 필요

(중략) 결국은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건축정책위원회 일이라든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일이라든지 다 끌고 갈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기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만들면, 예컨대, 국토부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사전심의는 못하더라도 이 모든 일을 체계적으로 끌고 갈수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법마다 뭐 이런 위원회를 자꾸 만들도록 되어 있고 이게 또 건축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라고 풀어놔 버리니 이걸 설득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걸 좀 간소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출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내용(2020.7.16.) 일부 발췌

□ 제도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위상, 임기, 보수 등

- 제도도입 초기단계에 위상정립에 많은 어려움 존재,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과 활동 필요, 위상정립과 관련된 임기, 보수지급체계 함께 개선 될 필요

대부분 지역에서 제도도입 초기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위상정립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를 위촉하는 형식이다보니 지역에 소속되어 있다기보다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정도도의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행정체계에 있는 조직이 아닌 점, 대부분 연임이 가능하나 임기가 2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부단체장'이라는 위상은 실제로 작동되기 어려우며, 같은 식구라기보다는 잠시 머물렀다 갈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업무추진에 어

3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 22조의 3(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 건축위원회. 다만, 지역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두는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프로젝트의 총괄·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지자체장의 인식 변화부터 추진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제주의 경우 공공건축가와 함께 제주의 지역자원을 조사발굴하는 ‘공공성지도제작’ 프로젝트를 신규로 발굴하여 추진하면서 지역의 변화되는 모습과 행정의 인식을 천천히 변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였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위상확립 및 인식변화를 위해 임명직으로의 전환, 자문횟수 또는 출근일수에 따른 보수지급이 아닌 월급제로의 변화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시범사업 추진 필요,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 있는 상황

이와 함께 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업무추진을 원활하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나 그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이드 및 중앙차원의 지원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또한 민간전문가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행정조직의 확대, 전문인력 충원 등의 시스템 마련을 위한가이드를 마련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2) 특광역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 특광역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역할 및 업무

- 자문 역할보다는 새로운 업무의 발굴을 통한 지역 변화 견인역할 중요

특광역시의 경우 시군구와 다르게 공간적 범위가 넓고 대상이 광범위하여 자문의 역할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따라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및 계획의 조정 자문의 역할보다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여 지역의 변화를 병행해서 보여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민간전문가 위상 및 인식정립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조정·자문 수행도 필요, 따라서 업무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됨

특광역시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지역 내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축도시분야의 개별프로젝트에 대한 조정·자문 역할은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소모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역 내 발생하는 개별프로젝트의 자문역할을 수행하다보면, 많은 업무량에 의해 매몰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특광역시의 경우 초기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위상 및 인식 정립을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지역 내 프로젝트의 조정·자문

역할을 통해 행정 및 지역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프로젝트 선별과정을 통해 자문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부산광역시 시민공원 프로젝트 수행으로 인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위상정립 사례

(중략)그동안 싸우는 이슈가 주제가 뭐냐고 했더니 용적률하고 층수야. 그러니깐 낮춰라. 조금 지어라. 그러니깐 주민들은 “우리 권리인데 왜 너희들이 못 하게 하나.” (중략) 대신에 숫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으로 하자”라고 제안했지 예를들면 7동짜리 65층짜리 최고 높이 65층으로 되어있는 거를 평균 높이로 바꾸고. 그럼 높이가 낮아지잖아. 그리고 7동으로 되어 있던 것을 2동은 저층으로 만들고 5동만 세우되 5동은 2동 3동으로 떨어뜨려 놓자. 그럼 공원에 그림자가 따로 떨어져서 생긴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경사진쪽은 용적률을 10%만 더 주면 제안대로 하겠다고 했다. 국장과 협의를 했고 승인이 나서 해결했더니... 끝나고 나니깐 박수를 치고 자연스럽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생기더라고.

출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내용(2020.7.13.) 일부 발췌

- 구단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

또한 특광역시에는 구단위에서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 운영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광역시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주 1~2일 업무를 통해 전지역을 파악하고 총괄조정하기가 어렵다는 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였다. 이를 위해 구 단위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도-시군과의 관계처럼 특광역시-구간의 조직적인 협조체계를 갖춰야할 필요성을 제기되었으며 구 단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위촉될 시 지역의 문제 및 관련 프로젝트들을 좀 더 장소단위로 파악하고 연계, 조정 검토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다만 구마다의 여건이 다르고 자치권자의 의지와 인식에 따라 편차가 심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하였다.

구단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운영 필요

(중략)구 단위에도 필요한 말이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그러니깐 광역시 단위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와 구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거기도 공공건축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어떠한 하나의 조직화 내지는 하나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총괄 전체 광역시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밑에 구 단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 어느 것까지 서로가 관여할지 저는 그 부분은 나도 광역시는 큰 곳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구 단위의 총괄 건축가가 시에서는 아예 공공건축가 역할까지 같이 하던지.

출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내용(2020.7.13.) 일부 발췌

- 법정·비법정 기본계획들의 조정·자문, 정합성 확보로 비전 및 미래상 설정

특광역시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법정·비법정계획들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지역의 비전 및 미래상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었다. 그

러나 도시기본계획, 건축기본계획, 경관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 관련 기본계획들의 재정비 기간은 보통 5년으로, 현실적인 여건상 대부분 민간전문가 임기기간(보통 2년) 내에 이들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업무는 검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또한 계획마다 수립부서가 상이하여 이를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가는 위상 및 업무체계와 연계되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장의 주요정책업무 지원을 주요업무로 수행할 필요

특광역시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지역 내 시장의 주요 공약프로젝트 또는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축·도시분야의 시장, 부시장 상당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시장의 정책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임기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임기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 특광역시 공공건축가 역할 및 업무

-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 일회성 자문 등 한정된 역할 수행

현재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특광역시 지역에서는 공공건축가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산, 광주 등 대부분 지역에서 운영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공공건축가 운영이 . 특히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명확히 부여되지 않는 상황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일회성 자문 등 한정된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공공건축가 운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제도 운영 초기 지역에 대한 조사와 주요업무 발굴을 위한 기획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제도 정착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 공공건축가 직접설계는 지양 필요,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수행 필요, 지역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필요

공공건축가의 직접설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현실적으로 민간전문가 참여의 성과나 효과를 통해 본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초기단계에는 제한적으로 직접설계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 설계의 질적향상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프로젝트에 한하여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건축가의 직접설계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건의되었다.

- 건축기획업무

건축기획의 부실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 및 예산낭비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개정(2019.12.19.)하였으며 그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 업무가 의무화가 되었다. 건축기획업무를 수행할 주체와 관련해서 지역에 따라 주요하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는 공공건축가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이분법적으로 된다 안된다를 제시하기보다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건축기획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는 예산마련과 보수지급에 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아직 현장에서는 건축기획업무를 수행할 전문가 및 업체에 대한 보수를 수의 계약범위³²⁾ 이상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건축기획업무가 발주방식, 과업지시서 검토, 설계공모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포괄하고 있어 질 높은 기획업무 수행은 위해서는 업무에 따른 적정보수지급이 가능할 수 있는 예산운영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관련 조직 운영 및 체계 마련

- 일부 지역 건축정책위원회에서 공심위 심의기능 수행하고 있으며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관련 위원회의 당연직으로 제기될 필요성 제기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를 운영하는 특광역시 일부는 건축정책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었으나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당연직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제기되었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자문한 사항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이 심의과정에 나올 경우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인식과 위상에 대한 부문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 또한 한계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현재 중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간전문가 제도 가이드라인’ 상에 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성과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등 운영규정,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제시해줄 필요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권한 역할 부여 필요

(중략)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책임지고 그 구성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하는 거 같아요. 물론 지자체에 따라 가지고 광역시나 이런 데는 인력이 좀 많기는 한데 인력이 많다고 해서 그 기능들이 다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다 이게 일괄 조율을 이만큼 해왔는데 마지막에 와서 바꾸라고 해버렸을 때 솔직히 말해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위상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출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내용(2020.7.13.) 일부 발췌

32) 수의계약 범위는 2000만원, 여성일 경우 5000만원까지 가능함

□ 제도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위상, 임기, 보수 등

- 제도도입 초기단계에 위상정립에 많은 어려움 존재, 여전히 미정립 상황

특광역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도 대부분 제도도입 초기 위상정립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에도 위상이 명확하지 못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부산의 경우 초기 위상정립을 프로젝트를 통해 극복하였는데,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니 자연스럽게 행정과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역할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요청과 도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관련부서와의 관계도 원활해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직 현장에서는 민간전문가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개인의 역량에 기대어 제도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라 부처차원의 제도적 기반과 인식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시장의 특별보좌관 형식의 정무행정체제로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방식 등 위상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보수체계 및 위촉직에서 임명직으로 전환할 필요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3) 시군구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 시군구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역할 및 업무

시군구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앞선 도·특광역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와는 다르게 건축도시분야의 사업 및 계획의 자문업무와 설계공모 운영에 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특히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단계에 따른 주요업무와 역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해준다면 현장에서 좀 더 제도를 안정화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위프로젝트 조정·자문 역할 수행 필요

시군구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건축도시분야의 사업 및 계획 자문역할을 수행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담회를 통해 나타났다. 특히 초반에는 공공건축물의 자문에 대한 요청이 주를 이뤘다면, 임기가 지속될수록 자문분야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단위프로젝트의 자문 수행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초기단계에서 여러 사업부서와의 교류와 인식을 확대시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인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는 요청 자문 횟수가 증대³³⁾됨에 따라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주요하게 생각되는 프로젝트와 계획을 선택 및 집중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 있으며, 일회성 자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 절차 속에 지속적인 피드백 과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는 별도 자문절차를 타부서에 제시하기도 하였다.

영주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관련 사업 및 계획 자문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중략)시장님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자문을 거쳐서 가라고 얘기를 하시나봐요. 그런데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를 거쳐서 갔다는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달에 한 여섯 번 정도 가는데요. 그런데 보고회 때..자꾸 부릅니다. 근데 보고회 때 부르는거는 아무런 쓸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면피용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NO자문 NO보고를 원칙으로 사전자문이 없는 보고회에 안간다. 그래서 사전에 뭔가 없으면 그건 가봤자 안되더라고요.

출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내용(2020.7.31.) 일부 발췌

군지역의 경우 재정 여건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지역이 한정적이라 타부처 여러 사업들이 유사한 대상지를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한 사업간의 연계·조정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어촌뉴딜300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농어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재생관련 국비지원사업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에게 자문요청이 들어오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에게 자문요청이 들어오지 않는 사업의 경우 관련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 연계·조정 검토하는 사항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군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국비지원사업 관련 업무 조정 및 검토

(중략)어촌뉴딜 같은 경우는 한 부서가 3개 내지 4개씩 이렇게 관리하고, 직원 해봐야 한 두 명이다 보니 업무가 안 나잡아요. 그래서 사업을 공단으로 다 넘겨버려요....어촌공단에 넘기기 전에 승인을 받아서 넘길지 안 넘길지를 판단해서 보내겠다...우리가 체크해서 과업지시서까지 검토해줄테니 가져와라.....그래서 그거는 약속을 일단 받아놓은 상태고. 지금도 어촌공단으로 사업관리위탁 전 자문을 받으러 와요.....앞으로는 .공공건축가들이 참여해서 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주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출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내용(2020.7.31.) 일부 발췌

- 설계공모 운영을 통한 공공건축의 질 향상과 지역건축가들의 역량 강화 유도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사업추진의 대부분을 가격입찰제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라 공간환경 및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역할 수행 초기에는 사어발주방식의 변화와 설계공모운영에 대한 사항에 주력하여 업무를 수행하

33) 파주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20년 4월 기준 총 100회 정도의 자문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진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초기단계에는 10개 정도의 사업요청이 들어왔으나 최근 30여기로 자문요청 프로젝트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고 있는 형태를 보였다. 과정에서 지역건축사의 반발,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의 항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밖에 없으나 설계공모를 통한 결과물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해 점차 인식변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공모 방식의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공모 운영지침’으로는 선정방식, 심사위원 구성을 위한 결정권자 설정, 기획업무 등 관련업무 수행 등을 위한 예산마련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맞춤형 설계공모운영지침을 별도로 제정하는 등 설계공모 시스템 마련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설계공모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 자문비 상향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도 있었다.

진주시 설계공모 심사위원 운영 관련 사례

(중략)참여자의 역할보다 심사자의 역할이 90%다. 90% 역할하는 사람한테 적정 보수는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돈을 더 줄 때 그 사람도 책임감을 더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해도 조금 더 열심히 할 거고 적어도 돈에 대한 보상은 하려고 할 겁니다.... 저는 심사위원분들에게 현장을 꼭 보여드립니다. 현장에 대한 설명해주고 지침서에 대해 이해를 못 했을까봐서 지침 설명까지 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해야하는 역할인거고 제가 못할경우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공공건축가가 가서 설명을 다 해줘요.

춘천시 설계공모 운영지침 마련 사례

(중략) 국토교통부의 운영지침은 거수냐 투표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 구성에 대한 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공모운영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해서, PA나 공공건축 관리자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나 공공건축 관리자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결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국토부 지침에 보면 결정권자가 안 나와 있어요.

출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내용(2020.7.23.) 일부 발췌

- 지방 소도시 또는 군지역의 경우 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 및 연계성 확보를 위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역할이 중요

지역의 방향과 미래상을 설정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수립되고 있는 도시군기본계획, 경관계획, 관광기본계획,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등 다수의 기본계획의 정합성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조정·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되었다. 특히 이러한 의견은 군지역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계획 간의 정합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자문으로는 강제력을 가지기 어려워 실효성이 부족한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 지역파악과 차년도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별도 기획업무 필요

시군구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또한 지역자원 파악과 지역의 연구를 위한 기획업무를 발굴하여 활동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민간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해 지역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건축가와 함께 마을지도와 같

은 지역자원 발굴 기획업무를 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 시군구 공공건축가 역할 및 업무

지방 중소도시에서 공공건축가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풀 마련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량있는 지역전문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의 경우 공공건축가의 대부분이 서울지역의 전문가 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축가의 역할은 대부분 사업단위의 자문 역할이 주요 업무였으며, 사업부서의 요청 시 공개모집을 하거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프로젝트 배정하는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중 대부분이 일회성 자문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자문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자문과정에서도 프로젝트 과정에서도 기획단계에서 발주방식 등의 공공건축가의 자문이 필요하며 설계단계에서의 디자인 자문은 지양해야한다는 의견에 대체적으로 공감하였다.

- 지역 여건에 따라 공공건축가의 직접설계권 부여가 필요

공공건축가의 직접설계를 지양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지방소도시의 경우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용역사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프로젝트, 지역차원에서 중요한 사업 등에 한정하여 공공건축가의 직접설계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 지역의 주요사업,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등에 한정하여 건축기획업무의 직접 수행도 필요

건축기획업무로 직접설계와 마찬가지로 직접수행은 대도록 지양할 필요가 있으나, 시범사업의 성격,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업, 지역의 중요사업 등에 한정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현재 아직 건축기획업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가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기획의 질을 담보하기가 어려우며 민간전문가의 인식확대와 건축기획에 대한 업역 정리 등을 위해 시범적으로 수행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앞으로 증가하게 될 건축기획업무를 공공건축가가 소화하기가 어려울 실정으로 오히려 공공건축가가 용역업체를 추천하고 초기단계에 기획의 방향 등을 제안하고 용역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차츰 변경해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도 있었다. 또한 건축기획의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1억 미만의 소규모 공공건축물들은 결국 공공건축가들의 희생으로 밖에 질적 담보를 유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 관련 조직 운영 및 체계 마련

- 행정조직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조체계 필요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들의 역할 수행에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대부분 행정조직체계의 미흡을 꼽았다는 점에서 민간전문가 역할 수행에 있어 행정조직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으로 보여진다. 대부분 민간전문가 지원부서는 팀체제에 일부 인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문프로젝트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 인력을 보강하였으나 전문성이 부재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의 운영부서가 다르거나, 공공건축관련 전담부서와 공공건축가 운영부서가 상이한 경우 업무추진에 별도 협조체계를 운영하기도 하나 협조체계로는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현재 전담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서울, 영주와 같이 지방중소도시에서도 전담조직체계를 구성하여 통합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조직의 전문성 강화

(중략)수단으로 준 계 시스템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조례 만들고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하고 위원회 만들고 사실 그것이었는데... 이 위원회라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 사람에 따라 획획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지속 가능하게 남는 것은 공공건축팀이 댔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건축직들이 원하는 것도 사실 그거고.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의 목적

(중략)민간전문가 제도가 생긴 배경 자체가 공공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민간전문가가 돕는 위치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민간전문가로 들어가서 하는 역할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댔든 공공건축가가 댔든 뭐가 댔든 공공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계속 피드백하면서 자문하고 상의하고 그런 역할이 가장 메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출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내용(2020.7.23.)일부 발췌

- 대부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공심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나 당연직이 될 필요성은 논의 필요

최근 지자체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며, 심의위원구성으로는 공공건축가, 지역건축사회 추천 전문가, 유관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이며 그 외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의위원이 포함되어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반드시 위원장이 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 제도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위상, 임기, 보수 등

민간전문가들의 건축기획업무 등 참여시의 적정보수 지급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건축기획 업무의 비용기준이 부재하여 수의계약의 범위(2,000만원) 내에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³⁴⁾. 시군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에서는 도와의 관계설정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특히 지방소도시나 군지역의 경우 재정여건 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도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 도에서 직접 관여하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도와 시군간의 관계와 역할정립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해줄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였다.

4) 공공건축가 간담회

□ 공공건축가 역할 및 업무

- 설계과정의 일회성 자문보다 기획단계의 자문이 중요

공공건축가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공공건축가의 역할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사업부서의 요청에 의한 자문역할로, 이때 자문은 구속력을 가지지가 어렵고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자문사항에 대한 실효성을 가지기가 어려운 점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현상설계안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거나³⁵⁾, 공공건축이 하나의 관리대상으로 인식되다보니 공공건축가의 검토를 받도록 업무체계를 마련하면서 면피용으로 자문요청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공공건축가들은 2~4개 지역 또는 조직의 공공건축가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2년 동안 자문횟수가 전무한 경우도 있는 등 각 지역마다의 편차와 역할의 차이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계단계에서는 구속력이 없는 자문의 경우 반영되기가 쉽지 않으며, 공공건축가의 자문역할을 오히려 초기 기획단계에서 증점적으로 수행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 공공건축가의 MP역할은 설계의도 구현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보수지급 등 운영기반 마련은 미흡한 상황

두 번째는 프로젝트 MP로서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프로젝트 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 공공건축가들이 직접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참여하여 이끌어 갈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공공건축가가 중간에서 자문 등을 통해 조정역할을 할 수 있어 결과물의 질적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34) 2016년도에 제시된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라인에 기획업무에 대한 내용은 설계비의 5~8%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60~70억 정도의 공사의 기획업무비용은 1500~1700만원 정도밖에 되지않아 수의계약 범위로 책정해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당진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35) 일부 지자체 사례로 건축가에게 공공건축가가 디자인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모 당선작이 마음에 들지 않고 제안한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하자 오히려 기획업무를 수의계약 범위 내로 (1800만원, 공심위까지 포함)공공건축가에게 맡겨 진행하도록 함(봉평다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건축가를 MP의 역할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계별(기획-설계-시공) 지위, 역할, 업무를 설정하고 관련 사항을 조례에 담아 제시해주거나, 초기 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사업부서-지원부서-용역사-공공건축가와의 회의와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원부서에서 사업부서와 용역사에게 공공건축가의 역할과 업무를 인지시켜줄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공공성을 담보해야하는 소규모 프로젝트는 공공건축가의 직접 참여 필요

세 번째는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여 기획 및 설계를 수행하는 역할이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가의 직접설계를 가급적 지양해야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공공건축가는 오히려 자문 역할보다 기획단계 설계단계의 참여가 필요한 역할 중의 하나임을 제기하였다. 특히 공공성을 담보하여야 하나 소규모이거나, 수행업체를 찾지 못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선례차원에서 공공건축가의 직접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기획업무의 경우 수의계약범위 내에 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등을 포함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진 공공건축가 입장에서는 공공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자, 관급실적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수 있음이 제기되었다.

□ 공공건축가 운영체계

공공건축가 운영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건축 행정의 전문성 향상과 건축 및 공간환경의 질 향상이 그것이다. 그중 건축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결국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공공건축가-운영부서-사업부서-용역사의 지속적인 협조체계와 협업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건축 및 공간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각각의 공공건축가의 영역과 업무종류(인허가업무, 건축기획업무 등)를 바탕으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건축사 비율에 대한 이슈도 논의되었는데, 지역건축사 비율이 높을수록 좋다는 인식은 지양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수도권역의 역량있는 건축사들과 지역건축사들이 혼합되어 건전한 경쟁을 통해 위기의식과 참여도를 끌어 올릴 수 있음을 제기하였다. 공공건축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간의 정보와 업무의 공유가 중요하며, 공공건축가의 자문사항이 어떻게 사업에 반영되고 적용되는지 결과보고를 통한 환류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는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공공건축가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별도 체계를 마련하고 조성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 제도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위상, 임기, 보수 등

- 공공건축가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위상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

지역에서 공공건축가가 지속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가로서의 자긍심과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 다르게 프로젝트마다 배정되는 식의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위촉된 기간 동안 1~2회 정도 자문만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 프로젝트 발생건수마다 지원을 통해 공공건축가를 지정하여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업무나 공공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고 자연스럽게 참여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가가 공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 윤리교육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공공건축가의 위상 확립을 위한 지자체장의 의지와 파트너로서의 인식 필요

민간전문가 제도의 인식 확보와 민간전문가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교육과 민간전문가들의 교육이 수반되어야 함은 대부분 동의하였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 다르게 공공건축가에 대한 인식은 건축도시분야의 인력풀로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여전히 공공건축가에 대한 대우, 책임, 권리 등에 대한 사항들이 정립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축가들이 활동하기 수월한 지역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장 또는 행정의 인식이 뒷받침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러한 지역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시장주재 회의, 자치단체장과의 면담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의 인식 확립과 건축도시분야의 파트너로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의 임기를 동일하게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공공건축가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지급과 기준 필요

공공건축가의 책임감과 역할수행에 대한 사명감도 중요하나 현재 공공건축가라는 이유로 정당한 보수지급 없이 업무수행을 요구받는 상황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한 편에서 제기되었다. 대부분 공공건축가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경우 수의계약 범위 내 보수를 지급하나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문의 경우 적정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같이 공공건축가의 역할별 보수지급체계를 마련해 놓은 곳도 있으나 아직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특히 건축기획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놓지 않고 있어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5) 소결

2장 3절에서 정리했던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이슈들에 대해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아래 몇 가지 이슈 또는 문제점들이 추가로 제시되었다. 추가된 사항을 포함하여 간담회 개최 결과를 주요 이슈별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4-8]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이슈에 대한 민간전문가 간담회 의견 종합

구분	주요 내용	추가 제기된 이슈
위촉 및 근무	1. 위촉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 절차의 공정성(선정방식, 위촉주체) - 자격기준 문제 : 주관적, 법과 다른 기준	- 임기 - 위상정립 방안
	2.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위상 문제	
	3. 공공건축가 구성 문제 : 신진건축사 배제, 지역건축사 비율	
	4. 보수지급체계 : 보수기준, 지급방식	
역할 및 업무	5. 도 민간전문가 운영 필요성 및 업무 차별화	- 특광역시 산하 관할 기초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 필요성
	6. 도시규모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 도시규모별 역할 및 업무의 차별화 필요성과 업무내용 - 중복사업, 관련사업들의 연계·조정업무의 필요성, 인식문제 - 정책 및 사업발굴 기획업무의 필요성, 인식문제	- 자문업무의 실효성 문제 (일회용, 면피용)
	7. 공공건축가 업무 - 직접설계참여에 대한 적절성 - 공공건축가의 역할과 권한 : 조정 or 자문	- 참여 시점(기획단계) - 건축기획 직접수행 - 공공성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공건축가 운 영체계 마련의 필요성
담당부서 및 유관조직 체계	8. 별도 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	
	9. 민간전문가 유관조직들과 민간전문가 담당부서와의 관계 10. 유관조직과 민간전문가 관계 설정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민간전문가	- 건축정책위원회와 민간 전문가
기타	11. 분야별 전문가 운용의 문제 + 추가할 업무내용에 대한 의견,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 어려움 12. 민간전문가의 역량,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행정부서의 역량	- 공공건축가 교육 및 교류 필요(건축기획업무, 사 전검토업무 관련)

출처: 저자 작성

*파란색 글씨는 제기된 이슈들을 표시한 것임

□ 민간전문가의 위상정립 미흡으로 업무수행의 어려움 상존, 임기, 보수지급체계와도 연계가 있어 개선 필요

현재 대부분 민간전문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민간전문가의 위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연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기와 근무일수로 산정되는 보수지급체계와도 연계되어 있는 문제로, 위상정립방안을 모색하고 임기 및 보수지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례에서 민간전문가 위상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행정적 규정도 중요하지만 실상은 지역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 현재 임기나 보수지급 규정이 부단체장급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총괄건축가 업무로 지역의 비전이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정·비법정 기본계획들을 검토하여 정합성을 확보해주는 일이 중요하다. 상위 기본계획들의 재정비 기간을 고려하면 2년의 임기기간동안 이러한 업무는 거의 할 수가 없다. 근무일수로 산정하는 보수지급방식은 마치 일용직과 같은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 주 1~2회 근무를 하고 있으나 수시로 업무를 하거나 평상시에도 많은 부분을 신경써야하는 업무 특성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민간전문가의 위상정립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 존재

다만, 구체적인 위상정립방안에 있어서는 행정체계규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시간을 갖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고 위상과 호칭이 정립이 되어가는 방향이 좋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타났다. 전자의 방안으로는 결재라인에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키거나, 임명직(상근직)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 있다. 하지만 행정 결재라인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와 우려의 의견도 있었다.

[표 4-9] 민간전문가의 위상정립 방안에 대한 간담회 이견

행정체계 등 강력한 시스템 구축	점진적 인식변화를 통한 위상정립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직에서 임명직(상근직)으로 전환 • 결재라인에 포함 • 시장의 특보정보의 권한 부여 • 시장과 동일한 임기체제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위상과 호칭 정립 • 업무수행경험과 관계형성을 통한 인식변화

출처: 저자 작성

□ 도시규모에 따른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중점 업무 차등 제시 필요

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할자치단체에서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는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 특히 지방중소도시 경우 재정여건 등이 열악하여 별도 예산을 마련하여 민간전문가를 운영 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은 만큼, 도 차원에서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이 었다. 이 경우 도시규모에 따라 도, 특·광역시, 시군구 단위별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의 업무와 역할을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의 업무와 역 할의 항목의 조정보다는 도시 규모별로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주 로 이어졌다.

즉, 도 단위에서는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지역의 비전 및 미래상 설정의 주요한 역 할을 하는 법정·비법정 기본계획의 검토·자문 역할, 자치단체장의 주요 정책 및 프로젝트 지원 업무, 필요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의 총괄·자문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광역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역시 개별프로젝트 자문보 다 새로운 업무발굴을 통한 지역 견인 역할이 필요하나, 지역에 따라 제도의 안정화 및 인식정립을 위한 초반에 개별프로젝트 조정자문 역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시군구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개별프로젝트에 대한 조정·자문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군지역 및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오히려 국비지원 프로젝트 등 건 축도시분야의 사업 간의 내용 조정 및 연계를 검토하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공통적으로는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행정의 지원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기 존의 업무로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성과를 보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틈새업무(신규사 업 기획)를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표 4-10] 도시규모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주요업무

도	특광역시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지역 공공건축가 파견 지원,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지원 • 도단위 법정·비법정계획 검토·자문 • 자치단체장의 특정프로젝트 지원 • 도차원의 주요 프로젝트 선별 하여 총괄·조정·자문 • 신규 프로젝트 및 업무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지역 공공건축가 파견 지원,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지원 • 신규 프로젝트 및 업무 발굴 • 선별적 프로젝트 조정 및 자문 • 자치단체장의 특정프로젝트 지원 •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총괄 조 정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프로젝트 조정 자문 • 국비지원 프로젝트 자문 및 조정 • 일부 주요 프로젝트 직접 참여 • 법정·비법정계획 검토 자문 • 신규 프로젝트 및 업무 발굴 (지역 의 비전 및 방향설정을 위한 지역 연구 관련 프로젝트 등)

출처: 저자 작성

□ 자문업무가 일회성, 면피용으로 머물지 않도록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 모두 개별 프로젝트의 자문업무가 일회성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민간전문가 참여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과 때로는 이러한 자문이 행정조직의 면피용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특히 공공건축가의 경우, 참여를 요청한 사업부서나 사업 수행업체가 추가로 자문을 요청해야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직까지 공공건축가가 회의나 자문을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문업무의 경우 일회성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축가가 개별 프로젝트에 자문을 수행한 경우, 공공건축가 스스로 활동사항(자문내용)을 정리·기록하거나 사업부서에서 이를 정리하고 반영 여부 등 추후 진행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는 절차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러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전문가 제도에 대한 공무원 및 지자체 장의 인식개선 중요

간담회에서는 민간전문가가 원활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민간전문가에 대한 인식과 담당직원의 역할이 중요함을 제기하였다.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의 민간전문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운영부서의 과장, 또는 국장의 참여를 통해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사업부서, 용역수행업체에게 공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공무원 및 건축직 공무원 대상의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 역시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공공건축가 기획단계 참여 중요, 건축기획업무 직접 수행도 필요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 및 예산낭비의 최소화를 위해 기획업무가 중요한 만큼 공공건축가 프로젝트의 기획단계에 자문 등 참여에 집중해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대부분 공감하였다. 기획단계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건축기획 업무를 직접수행하거나 프로젝트 단위의 MP로서 조정,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 공공건축가 설계업무 직접참여에 대한 이슈는 의견분분

- 공공건축가의 설계업무 직접참여권 부여는 지양할 필요

기획단계 이외의 설계단계에서의 민간전문가 참여에 대해서는 공정성,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공공건축가에게 직접설계권을 부여할 경우 공공건축가가

개별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인식되기가 쉬우며, 이는 공공건축가가 프로젝트의 직접수행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여지를 주는 것으로 지양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공건축가가 직접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당한 보수지급도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이유도 제기되었다.

- 공공성을 요하는 주요프로젝트에 한하여 공공건축가 직접설계도 가능할 필요

그러나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이견으로는 지역의 주요 프로젝트이거나 공공성을 확보해야하나 수행할 전문가가 부재할 경우 선도적 의미로 민간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진 공공건축가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외건에 따라 실효성 없는 일회성 자문보다 건축기획업무의 참여 및 직접설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결국 공공건축가가 설계 및 건축기획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특혜성이 아닌 오히려 힘든 작업을 해결해 나가야하는 공공의 전문가로서 인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이 형성된 상황에서 직접 참여는 필요한 역할이라는 것이다.

[표 4-11] 공공건축가 직접설계에 대한 간담회 이견 종합

직접설계 참여 지양 필요	공공성, 주요프로젝트 등 일부 참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설계는 반드시 지양 할 필요 • 오히려 직접설계보다 프로젝트 MP역할 부여 • 보수지급체계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도시는 공공건축가가 직접설계 참여해야 하는 경우 발생 • 소규모 선도프로젝트에 참여 가능 • 공공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신진건축가들에게 창의적 활동 기회 제공 필요

출처: 저자 작성

□ 공공건축가 활동에 대한 명분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업무체계 마련 필요

공공건축가 인원규모가 큰 경우 보통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 긴밀한 업무협조 내지는 특별한 관계없이 개별 프로젝트의 참여를 메일로 요청받고 지원신청을 통해 참여를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공건축가들은 지역 내에 건축·도시 관련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고, 프로젝트 별로 정해진 공공건축가 선정결과나 사유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과정과 관계는 공공건축가들에게 공공건축가로서의 활동에 대한 명분과 사명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대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공공건축가들과 정기적 모임을 갖고 진행상황을 상호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거나, 공공건축가에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이를 정책화/사업화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중간역할을 하는 경우, 공공건축가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자의 경우 앞서 설계 및 건축기획 업무 직접참여 시 대가의 부적합성 대한 건의보다는 공공성 있는 사업에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 공공건축가 선정시 지역건축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분분

특히 시군구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에서 실효성 있는 공공건축가의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의 발굴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는 특히 개별프로젝트가 지역의 여건과 방향에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지방 소도시일수록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방 소도시의 경우 인력풀이 부족하며 특히 건축 이외 도시, 조경 등 분야의 전문가는 더욱 발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공공건축가 선정 시 지역건축사가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대도시 및 수도권의 전문인력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프로젝트를 일정시간 이상 참여하기에 물리적, 재정적 여건마련이 어려워 지역건축가가 참여해야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수도권의 역량있는 전문가들과 지역 전문가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 공공건축가 업무 관련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등에 대한 교육 또는 교류 실시 필요

최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19.12)으로 도입된 건축기획업무 및 사전검토 업무는 공공건축가가 직접 참여하거나 자문 또는 심의를 하게 되는 업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공건축가들이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지자체 차원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 국가 차원에서 해당업무를 공공건축가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교육 또는 교류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 관련 심의조직과 민간전문가 관계, 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 확대 관련 제도 개정 요구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마다 의견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위원에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현재 대부분 공심위는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지역 공공건축가, 지역건축사회 추천 전문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일부지자체에서는 총괄 및 공공건축가가 배제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³⁶⁾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공심위의 위원장의 당연직으로 규

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고, 위원장으로 당연직이 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도 많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건축·도시 분야의 지역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건축·도시와 관련된 정책이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된 심의기구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지역의 건축정책위원회는 이와 직접 관련된 유관조직으로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위원장을 역임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건축정책위원회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모두 구성하기 어려운 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당연직 또는 구성원으로 당연시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건축기본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건축정책위원회에서 공심위 심의기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 규정과 같이 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에 ‘타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등’의 조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표 4-12] 건축분야 심의위원회

구분	건축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근거	건축법령 제5조의5	건축기본법 제 19조	건축사법(산업진흥법령 제19조4)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타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타당성조사결과위반명및건축기획업무의 적정성에 관한사항 공공건축사업의추진에관한사항지문

출처: 저자 작성

36)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가 공심위 심의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이에 해당되지 않음

3. 지자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실태 사례분석

1) 민간전문가 선정 및 위상

□ 위촉 방식 및 절차 : 절차와 관련한 애로사항

공공건축가는 대부분 공개모집을 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위촉하고 있으나, 총괄은 대부분 지명추천 후 지자체 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위촉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 대전, 인천 서구, 파주는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를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였다, 그 중 파주는 모집공고를 자체 홈페이지 외에 관련 학·협회에도 연락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접수인원의 부족으로 재공고를 내야하는 등 행정적 수반절차가 따르는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려고 준비하는 많은 지자체 담당자들은 전문가 추천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여러 지역에서 공식적인 기관에서 명망있고 능력 있는 전문가 추천을 받길 원하고 있었으나, 현재 국토부, 국전위,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추천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 특히 후보자를 마련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이라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할 경우 후보자를 추천받거나 추천해야하기 때문에 목록을 만드는 출발부터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격기준

조례에 의한 규정만 살펴보면, 「건축기본법」 제22조 자격기준을 토대로 하되, 그 외 단체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20년 9월말 기준으로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21곳 중 12곳으로 대다수다. 관련 조례가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은 전북 전주시, 경북 영주시, 경남 진주시 3곳 중 2곳은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거나,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격기준에 대한 일부 논란은 지자체 자체 규정이 법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13] 지자체 조례상의 민간전문가 자격기준 마련 현황('20.9월 기준)

구분	지자체
민간전문가 자격기준	• 원주시, 전주시, 진주시, 수원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자격기준	•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창원시, 인천 서구
공공건축가 자격기준	• 전라북도, 경상남도, 창원시, 인천 서구,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파주시, 춘천시

출처: 「전라북도 건축기본 조례」,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경상남도 건축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건축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파주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원주시 건축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참고후 저자 작성

□ 임기

민간전문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수립된 21개 조례(20.9월 기준) 중 민간전문가의 임기에 대해서는 1~2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본연임을 2년으로 하고 있다. 그 중 경남, 춘천, 창원은 2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대 6년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었다. 조례 외에 내부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중 당진시와 부여군에서는 별도 임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서대문구에서는 1년 단위로 재계약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14] 국내 지자체별 조례에 명시된 임기현황(20.9월 기준)

구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2년(연임)	1차례 연임	2차례 연임	2년	1차례 연임	2차례 연임
도(4)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전남, 경북	전북	경남
특광역시(5)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인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인천
시·군·구(12)	파주, 원주, 전주, 영주, 진주	수원(1년), 성남, 청주, 서울 강동, 인천 서구	춘천, 창원	파주, 원주, 전주, 진주	수원(1년), 성남, 청주, 서울 강동구	춘천, 창원

출처: 저자 작성

□ 근무방식

국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근무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상근직으로 주 1~2회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시 총괄(디자인기획관)만이 국내 유일한 상근직으로 공무원조직 속에서 활동 중이다. 다만, 4급(국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속되어 있는 도시디자인단은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부서라기보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팀으로 구성되어있어 해당 부서 내 사업위주로 업무활동이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보수지급체계

- 서울특별시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정무부시장 기준 적용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보수는 대부분 엔지니어링 기술사기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매달 지급³⁷⁾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유일하게 2019년부터 정무부시장 월급 기준으로 보수를 상향조정하여 적용하고 있었다.

37) 충청남도는 도시사 방침을 통해 총괄건축가 및 수석 공공건축가는 기술사, 중진 공공건축가는 특급기술자, 신진공공건축가는 고급기술자 등 엔지니어링 기술사기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함

• 제주도 : 공공건축가 활동내용별 적합한 지급기준 설정

공공건축가 보수는 대부분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자문비 수당 또는 회의비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 중 제주도가 유일하게 공공건축가 활동업무 유형(자문수당, 회의수당, 사업기획 및 발굴 업무, 실행방안 구상 업무, 설계공모 계획 수립 및 운영 등의 업무)에 따라 각각 적합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별도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활동 초기 공공건축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한 점과 행정에서의 적극적 협조가 진행된 점과 관련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전문가 보수지급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민간전문가의 업무 및 활동별 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활동별 난이도 및 소요일수를 고려하여 공공건축가 운영협의체 회의를 통해 급수를 설정하고 추정소요일수 15일 이내, 공공사업발주에 대한 건축사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중 기획업무 대가(Ⅱ)기준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다.

구분	구분	업무범위	지급기준
총괄 건축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엔지니어링기술사노임단가(기술사) 적용 *근무횟수×기술사노임단가(369,831원) 기준 *항공료 실비 별도 지급
공공 건축가	자문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기획, 추진 및 사후관리 관련 자문 • 건축·도시 주요 공공사업 조정 및 자문 등 	• 150천원
		• 사이버(e-메일, 영상회의 등)를 통한 자문	• 50천원
	회의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가 운영협의체 • 공공건축가 분과회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시간 이하 : 100 • 2시간 초과 : 150
	자문활동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획 및 발굴 - 상한액 5,500천원/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급 : 5,500천원, B급 : 3,600천원 • C급 : 1,8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방안 구상 - 상한액 3,600천원/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급 : 3,600천원, B급 : 2,500천원 • C급 : 1,8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 계획 수립 및 운영 등 - 상한액 3,600천원/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급 : 3,600천원, B급 : 2,500천원 • C급 : 1,800천원

※ 자문활동(현장조사, 사업부서 요구사항 및 법령검토, 설계지침서과업지시서·건축기획 사전검토서 작성, 심사운영계획 수립 등, 현장설명회 참여 및 심사운영 지원(기술심사) 등)별로 과제의 난이도 및 소요일수 등을 고려하여 A, B, C급으로 구분하여 선정
출처: 김용미(2020), “제주 총괄·공공건축가 활동보고”, 도 총괄건축가 간담회 발제자료, p.19.(20.7.16.)

2) 전담부서 신설·운영 및 전문직 공무원(임기제) 운영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전담조직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북, 파주, 진주시, 춘천시, 영주시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1~2인의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은평구는 현재 건축과 내 건축직 1인이 담당하고 있으나, 전담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자문한 사업의 조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추후 전담인력으로 8급 상당 시간선택 임기제 1인³⁸⁾을 뽑을 예정이다. 한편 영주시의 도시건축관리단은 현재 도시건축관리단장 1인만 있어 전담조직으로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전문가 운영 및 관리는 도시과 내 도시경관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전담인력 1인³⁹⁾이 있다. 국내 공무원 조직은 순환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들은 잦은 담당자의 변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019년도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운영현황에 따르면 사업을 추진하는 1년만에 파주, 춘천은 2회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으며, 그 외 지역은 1회의 담당자가 변경되는 등 모든 지역에서 담당공무원의 부서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에서는 전담인력 외에도 전문직이 고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담인력체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충남도와 수원시가 있으며, 이 지역은 전문직 공무원이 본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서울특별시 : 2부시장 산하 대규모 전담조직 운영

2015년 신설된 서울특별시는 행정2부시장 산하 도시공간개선단이라는 전담조직에서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도 전담하고 있다. 2020년 9월 현재 총 1반 6팀, 총 43인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도시공간정책팀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건축정책위원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공간개선단 팀간 업무조정 역할도 하고 있다. 도시공간기획팀은 도시공간개선 기획업무 정책방향과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유희공간 발굴 및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며, 올해 설립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2018년 1월에 신설된 공공건축팀은 공공건축가 추천·운영·인력관리·모니터링 등 공공건축가 운영을 총괄하고 있고, 마을건축가 운영 및 마을지도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수원시 : 전문직 공무원의 전문적·체계적 업무지원 및 업무체계 마련

2019년도 행정관리 구축방안 마련을 위해 시장 지시사항으로 방침을 받았으며, 이후 관련 내용을 토대로 조례⁴⁰⁾를 제정하였다.

38) 자격기준은 건축·도시계획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로 카드, 포토샵, 스케치업 등 능통자로 명시하고 있음 (은평구(2020), “2020년 총괄건축가 운영계획”, 내부자료, p.4.)

39) 기존에 건축직이었으나, 2020년 7월 인사이동으로 전기분야 공무원이 전담이 되어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임

이후 '타 부서와의 신뢰구축', '권한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직급'을 목표로 하여 초기 도시개발국 내 '도시디자인과'였던 조직을 2부시장 산하의 전담조직인 '도시디자인단'으로 개편하여 현재 총 5개팀, 22인이 근무하고 있다. 디자인직 공무원도 기존 3인에서 11인으로 총 8인을 증원하였다.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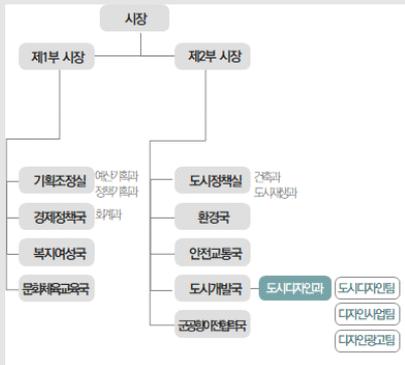
- 도시공간정책의 미래비전 제시 및 중요사업 자문
- 서울의 건축·도시공간 정책 등 공공문화의 국제교류 및 진흥
 - 공공사업 공모 운영 및 설계자 선정 지원 등 공공발주제도 개선
 - 주요 도시공간개선 사업 기획 및 설계
 - 서울 도시건축센터·도시건축전시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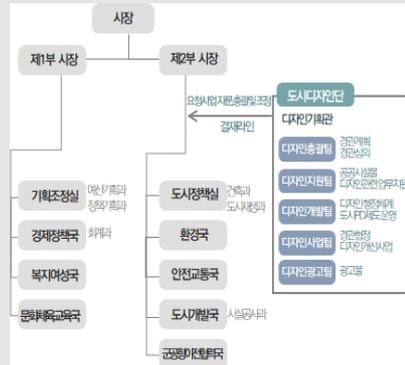
[그림 4-1]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조직도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2020), "2020년 주요업무보고", 내부자료, p. 1.

수원시 도시디자인단으로의 조직 개편 및 확대

수원시는 기존에 도시개발국 내 옥외광고, 경관, 시설사업 담당 팀으로 구성된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관련 업무지원, 디자인 행정체계 및 공공건축가 운영 등을 담당하는 팀을 확대 개편하여 도시디자인단으로 조직을 확대하였다. 확대된 조직의 장으로 4급상당의 디자인기획관을 위촉하여 운영 중이다.



[그림 4-2] (초기) 경기 수원시 조직체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3] (현재) 경기 수원시 조직체계
출처: 저자 작성

40)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0. 3. 13.]

- 충청남도 : 전문직 공무원의 전문적·체계적 업무지원 및 업무체계 마련

충청남도는 19년 1월 신설 조직된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공공건축팀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전문관으로 채용된 팀장 1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되어있다. 현재 공공건축팀에서는 민간전문가 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이외에 충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충남공공건축지원센터 등 관련 조직의 운영지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직 공무원 채용으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제도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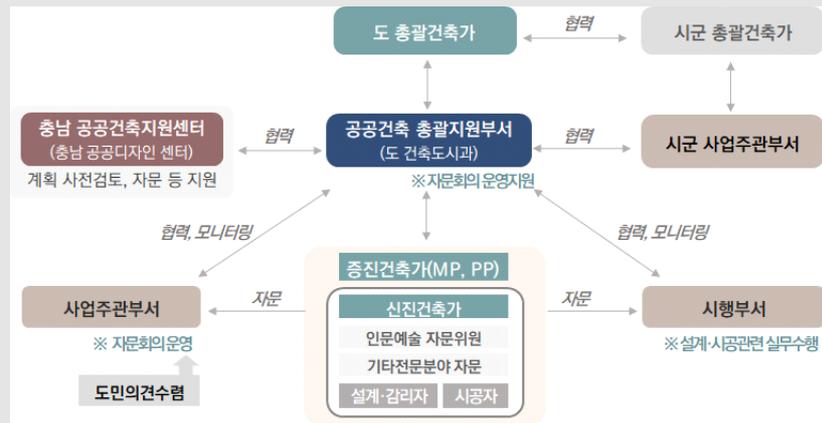
[표 4-15] 민간전문가 지원조직 운영현황 및 역할

구분	건축도시과 공공건축팀(2019.01 조직)
조직 구성	팀장(전문직 공무원)1인, 주무관 2인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전문가 활용 및 공공건축기획 관련 법령제개정 사항 -충남 공공건축심의위원회구성, 운영관리 사항 -충남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관리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참여사업 모니터링, 워크숍 등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 관련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출처: 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검색일: 20.8.24)); 충청남도(2020), "총괄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현황", 자문회의자료(20.08.24.), p.8. 참고후 저자 재작성

충청남도 운영부서-사업부서-사업시행부서 간 업무협조체계 구축

공공건축가가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 권한, 역할, 위상등을 정립하기 위해 운영부서(道 공공건축팀)에서는 공공건축가, 사업부서, 사업시행부서(종합건설사업소내 공공건축과)와 기획단계부터 협조체계 구축하고 있다. 협조체계 이외에도 공공건축사업단계별 업무수행 절차 및 공공건축가의 역할, 법개정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공공업무노트'를 운영부서에서 월 1회 공공건축가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공하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4-4] 민간전문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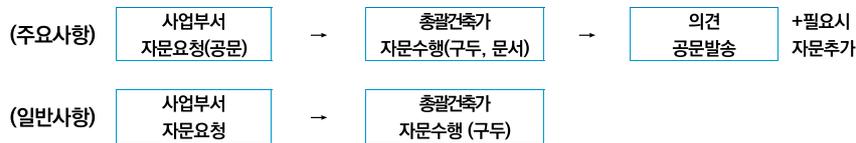
출처: 충청남도(2020), "총괄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현황", 자문회의자료(20.08.24.), p.9.

3) 업무수행체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자문 수행은 대부분 사업부서의 자문요청 시 수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각 사업부서마다 업무공유가 원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요청이 없을 시 관련 사업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은평구에서는 주요업무와 일반 업무를 구분하여 별도 절차 및 자문시점을 마련하였다. 또한 수원은 중점사업을 예산편성 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재정과, 회계과, 감사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결재라인에 포함시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제주는 활동 내용에 대한 결과물을 모니터링하여 피드백이 가능한 환류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건에 맞는 사업추진체계 및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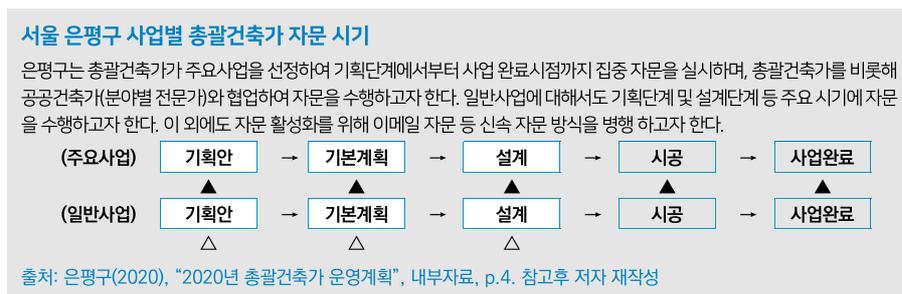
- 은평구 : 총괄건축가 단독형, 초기단계 참고형

총괄건축가 위촉 후 공공건축물, 도시계획, 조경, 공공디자인분야 등 공간환경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사업기획 단계부터 총괄건축가의 자문을 받도록 공문으로 안내하였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사업부서와 공문을 주고받는 형태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구두로 주고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자문한 사업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별도로 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며 전체적으로는 회의록으로만 관리하고 있다.



[그림 4-5] 서울 은평구 사업 내용별 총괄건축가 업무수행 절차

출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과 김혜진 주무관 인터뷰(2020.7.10.)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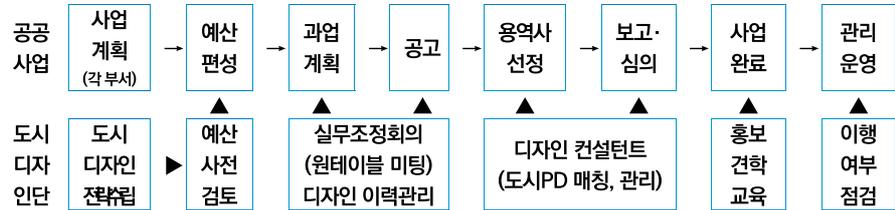


출처: 은평구(2020), "2020년 총괄건축가 운영계획", 내부자료, p.4. 참고후 저자 재작성

- 수원시 : 예산편성 전 협조체계 구축, 이력관리 시행

디자인기획관은 경관사업, 디자인개선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결재라인에 포함되어 사업들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중점사업⁴¹⁾에 대해서는 본 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제정과, 회계과, 감사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예산사전검토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조정회의를 진행하는데, 도시디자인단을 중심으로 사업담당부서, 감사관, 회계과, 사업관련부서로 사업자문 TFT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협업을 원활하게 하였다. 이 때 사업담당부서 담당자에게는 인센티브(업무우수표창)를 부여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그림 4-6] 경기 수원시 디자인 중심 행정 프로세스

출처: 수원시 도시디자인단(2020), “행정체계 다이어그램(수원)”, 내부자료, p.2. 참고후 저자 재작성

수원시 디자인 이력 관리카드 작성 및 단계별 이력 관리 사항

수원시는 체계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디자인이력 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하여 각 사업별 자문관련 사항 등을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단계별 디자인이력 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검토, 조정, 지원, 평가 및 환류의 성격으로 구분하여 자문 및 조정,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검토	조정	지원	평가·환류
사업 기획 단계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기획(안) 디자인활동 검토 예산편성	사업기획(안) 디자인활동 조정		
사업 계획 단계	과업지시서(안)검토 발주방식 검토 민간전문가 운영(MP) 검토 사업착수	기획의도와 상충시, 과업지시서(안) 조정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시, 발주방식 조정	사업방향성 설정 필요시, 민간전문가 자문 지원	
사업 추진 단계	사업목표와 설계(안) 부합성 검토 세부추진과정 적합성 검토 사업준공	사업목표와 상충시, 설계(안) 조정 전제조건 변동시, 사업목표 조정 세부추진과정 조정	디자인 고도와 필요시, 민간전문가 운영(MP)·디자인협의·디자인개발 지원	디자인 심의 운영 평가 조형성·합목적성·사용성 등 평가
사업 관리·운영 단계	설계 결과 반영 검토	설계결과와 상이할 시, 시공 보완 요구	디자인 보완 필요시, 추가 개발 지원	만족도·사회적 기여도 등 평가 문제점 및 개선점 등을 도출하여 향후사업에 환류

[그림 4-7] 경기 수원시 전략사업 단계별 디자인 이력 관리내용

출처: 수원시 도시디자인단(2020), “공공사업 디자인 행정체계(수원)”, 내부자료, p.2.

- 제주도 : 활동결과 환류체계 마련

제주도는 민간전문가 제도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기록을 통해 관련 주체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에 대한 환류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

41) 중점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의 필요성 및 가능성, 경관성의 비중 검토, 종합적 관점에서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인접지역과 추진시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임

수원시 디자인 이력 관리카드 작성 및 단계별 이력 관리 사항

수원시는 체계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디자인이력 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하여 각 사업별 자문관련 사항 등을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단계별 디자인이력 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검토, 조정, 지원, 평가 및 환류의 성격으로 구분하여 자문 및 조정,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4-16] 경기 수원시 디자인이력 관리카드 양식

관리번호	사업명		소관부서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기대효과 작성			
사업내용	○ 사업의 내용 작성			
위치			사전절차 및 각종 조사·협의 ·평가 수행여부	○ 사업 추진을 위해 필 요한 행정절차 및 수행여 부 등 작성
지역·지구				
규모				
기간				
사업비				
추진단계	기획 및 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해당하는 단계에 표시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 사업의 그간 추진현황 작성 ○ 사업의 향후 추진일정 작성			
사업추진	담당과장		담당팀장	담당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검토의견	○ 디자인 담당부서에서 작성			
디자인관리	담당과장		담당팀장	담당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출처: 수원시 도시디자인단(2020), "디자인이력 관리카드", 내부자료, pp.1-3. 참고후 저자 재작성

건축가 배정 시 사업부서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추진하며, 활동사항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여 공공건축가 운영협의체에 제출하면 활동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피드백이 가능한 체계를 조성하였다. 특히 활동사항에 대한 기록과 결과물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민간전문가의 업무를 기록하기 위함도 있으나 정보의 공유과정을 통해 결과의 환류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 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 4-17] 공공건축가 활동결과물 제출 내용 및 기간

구분	제출내용	기간
자문, 회의 등	• 공공건축가 활동보고서	3일 이내
사업 기획 및 발굴	• 대상지 현황자료, 사업 기획(안)	2개월 이내
실행방안 구상	• 실행방안 구상(안)	1개월 이내
설계공모 계획 수립 및 운영	•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사전검토 신청서, 설계공모 운영계획서	7일 이내
	• 질의응답서, 기술검토 의견 등	2일 이내

출처: 김용미(2020), "제주 총괄·공공건축가 활동보고", 도 총괄건축가 간담회 발제자료, p.18.(20.7.16.)

4)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역할 및 업무

□ 비전 및 미래상 설정 지원,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국토부 지원사업을 통해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으나, 대부분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는 진행하지 못하고 원도심 등을 대상으로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전략과 세부사업을 발굴하여 담고 있다. 이외 시급하거나 장기적으로 필요한 전략사업의 기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체 예산을 확보한 경우가 있는데, 영주시가 초기 활동당시에 약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차년도에 전략사업 기획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당진시가 7천만원, 원주시가 2억원을 2019년에 마련하여 올해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그중 일부를 지역의 비전 및 미래상 설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주도는 총괄건축가는 지역 내 공공건축가, 행정담당자들과 함께 제주도의 향후 10년까지 공공건축, 공공공간 개선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별 실천 로드맵⁴²⁾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로드맵 작성 과정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고하고 도시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 행정과 공공건축가들이 목표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 공공공간 개선을 위한 과업발굴 및 실천 로드맵

구분	주제	단기	중기	장기	
도시 공간	광역	보행친화도시 그린웨이	●		
	제주 협력	제주시청 전면광장 및 보행가로		●	
		무근성 옛길과 관덕정 광장	●		
	서귀 포	제주 신항 워터프론트			●
		광역	서귀포시 중심가로 체계	●	
		서귀포시 경사지형	●		
이중섭거리 문화공간		●			
협역	솔동산 주거환경개선		●		
정체성	생활soc 기초자산	●			
	점	돌창고	●		
	선	올래		●	
	면	보전지구		●	
정책 개발	산업	해안양식장	●		
	광역	관광패턴 변화		●	
		해안취락지구	●		
	인구	초고령화 사회			●
		읍면지역 유희공간		●	
협역	도시건축 미래전략	●			

출처: 김용미(2020), “제주 총괄·공공건축가 활동보고”, 도 총괄건축가 간담회 발제자료, p.15.(20.7.16.)

42) 공공건축공간개선을 위해 2030 제주 건축도시 공간플랜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현재 위촉된 공공건축가들이 추진해야할 실천과제(사업제안,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 제주 올레보전 방안, 역사문화도시 회복, 돌창고 현장조사 활용방안 등 연구과제 수행)를 제시함

□ 건축·도시 관련 사업 총괄조정 및 자문

- 군지역, 구단위 사업간 통합적 연계 또는 협력적 관계 구축 마련 및 운영 참여

부여군과 은평구에서는 장소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부서들 사업의 자문과정에서 몇 개의 사업을 함께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느끼면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연계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총괄 역할을 하고 있었다. 도 또는 특·광역시, 인구규모가 큰 시단위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지역, 구단위의 특성상 사업추진이 가능한 대상지가 한정적이고, 하나의 대상지에 여러 부처의 사업들이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장소단위의 연계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은평구 총괄건축가 업무 : 총괄 조정을 위한 사업협의체 운영

1차년도에는 구에서 진행되는 업무를 파악하는데 힘을 쏟고, 개별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자문을 수행하였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업무수행 당시 총괄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사업들을 정리하였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협의체'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표 4-18] 서울 은평구 총괄건축가가 총괄·자문하는 2020년 주요사업

사업명	참여 부서
은평구 종합도시발전계획 수립	도시계획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자원순환과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조성	문화관광과
서울혁신파크 개발	도시계획과
수색 DMC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과, 코레일
기자촌 예술인 마을 조성(국립 한국문학관)	문화관광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출처: 은평구(2020), "2020년 총괄건축가 운영계획", 내부자료, p.3.

부여군 총괄계획가 업무 : 총괄 조정을 위한 사업협의체 운영

부여읍 중심지에 동시에 진행중이던 6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고도경관협의회'를 운영. 이를 토대로 규암지구에서도 각기 다른 부서의 3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자 두 번째로 사업협의체를 운영하여 총괄계획가가 해당 사업들을 총괄, 조정하고 있다.



민관고도경관협의회 (2016.12)

부여읍 중심지에서 추진되는 6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



규암지구 사업추진 실무단 통합협의체 (2019)

규암지역에서 추진되는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

부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상권활성화 기본계획/사업	규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여 도심발전전략 기본계획	부여 경관기본계획	123사비 공예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여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현상변경 인허가 기준 변경	규암 도시재생사업

[그림 4-8] 충남 부여군 통합사업추진협의체 운영 사례

출처: 부여군(2020), "2020년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신청서", 내부자료, p.4.

- 일회성, 면피용 개별 프로젝트 자문 업무

현재 민간전문가들은 역할 수행 중 대부분의 시간을 프로젝트 자문 업무를 수행⁴³⁾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경남 진주시가 111건의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평균 54회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로젝트 중 50%가 넘는 프로젝트에서 자문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도 이러한 단발성 자문 업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공공건축가들과 틈새업무 발굴 등 협력관계 설정 운영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제도 도입 초기 지역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단일부서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시범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있는 업무를 발굴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선도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 사례1. 당진 : 당진형 통합마을회관 표준모델 개발

당진시는 기획업무에 필요한 예산 7천만원을 확보해 지역에 필요한 신규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 중 한 예로 총 1,500만원의 예산으로 '당진형 통합 마을회관 표준모델 연구'를 진행하여 소규모 사업으로 이전에 입찰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디자인 품질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건립 방향과 적정예산, 절차 등을 제안하였다.⁴⁴⁾

당진형 통합마을회관 표준모델 개발

- 마을별 이용자수에 따른 당진 마실방 규모 제안
- 마실방 기본 공간 활용 유닛 및 조합방법 제시
- 적정 공사비 제안 및 지원근거 마련

마을별 이용자수에 따른 당진 마실방 규모 검토

- 이용 인원에 따른 경로당 규모 검토
- 3.0mx3.0m 유닛의 조합으로 최소면적 S1타입 (54㎡, 약 16.3평)부터 최대면적 s4(135㎡, 약 40.8평)까지 분류, 마을마다 필요한 타입 선택 가능



출처: 당진시(2020), "2019년 민간전문가 등 지원사업 성과자료", 성과발표회 발표자료, p.27.(20.6.30.)

43) 충청남도 총 17개 사업, 29건의 자문 중 일회성 자문 9건, 경상남도 총 13개 사업, 15건의 자문 중 일회성 자문 11건, 광주광역시 총 12개 사업, 27건의 자문 중 일회성 자문 2건, 경기파주시 총 19개 사업, 53건의 자문 중 일회성 자문 7건, 강원 춘천시 총 46개 사업, 80건의 자문 중 일회성 자문 28건, 강원 원주시 총 37개 사업, 78건의 자문 중 일회성 자문 20건, 충남 당진시 총 16개 사업, 31건의 자문 중 일회성 자문 9건, 경남 진주시 총 25개 사업, 111건의 자문 중 일회성 자문 7건을 수행함(심경미 외(2020), 「민간전문가 참여 및 통합디자인 관리체계의 지속적 운용방안 연구-제1권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p.100, pp.110-111, p.121, pp.132-133, pp140-141, p.152, p.157, p.160. 참고후 저자 제작성)

44) 당진시 차주영 총괄계획가 서면자문 내용(20.9.15.)

- 사례2. 제주 : 제주 읍면동 공공성 지도 제작

제주도는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가 2020년 4월부터 6개월간 가장 주요하게 추진한 업무로 '제주 읍면동 공공성지도' 제작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중 건축공간분과가 함께 지역의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유휴자원에 대한 대안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프로젝트로 지역의 미래상과 비전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고 차년도 사업예산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 공공건축가의 실천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특히 공공성지도 제작을 통해 활동결과물을 작성하고 결과물을 행정과 공유하면서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민간전문가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

- 사례3. 서울특별시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서울의 전담조직인 도시공간개선단은 초기 사업부서로부터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공공건축가 활용을 통한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 등 가시적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여주기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틈새사업을 발굴하였다. 그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424개 동주민센터의 공간개선이 완료되었다. 앞으로도 공공건축가 참여 분야 확대를 위해 공원 내 공공건축물과 특별교부금대상 사업에 있어 업무지원 강화로 준공까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전문분야별 공공건축가와 협력하여 기본 구상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교하고 구체적인 기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⁴⁵⁾

□ 발주방식 및 설계공모 개선

- 파주시 : 설계공모의 공정성 확보와 홍보의 다각화

파주시의 경우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후 총괄·공공건축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공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위원 선정 및 공공건축 고도화와 관련한 공모지침의 검토를 위하여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설계공모 관리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고 있으며, 홍보 방식을 다각화를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참가등록 건수가 대폭 증대(기존 평균 2~3건→평균 54건)되는 효과로 경쟁력 있는 응모작 선정이 가능하게 되었다.⁴⁶⁾

45)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2020), "2020년 주요업무보고", 내부자료. p.25.

46) 심경미 외(2020), 「민간전문가 참여 및 통합디자인 관리체계의 지속적 운용방안 연구-제1권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p.131, pp.168-169. 참고후 저자 재작성

- 제주도 : 설계공모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제주도는 설계공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심사체제로 전환하였고, 심사과정의 전문성 강화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억 가량을 투입하여 디지털 심사장을 조성하였다.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건축가는 심사에 1회만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 토론과정에 공모참여자도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제주 지역의 건축도시분야의 전문가들의 역량강화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그림 4-9] 파주시 설계공모 포스터
출처: 파주시(2020), “2019년 민간전문가 등 지원사업 성과자료”, 성과발표회 발표자료, p.8, p.12.(20.6.30.)



[그림 4-10] 제주도 디지털 심사장 운영
출처: 김용미(2020), “제주 총괄·공공건축가 활동보고”, 도 총괄건축가 간담회 발제자료, p.13.(20.7.16.)

□ 초기 인식확보를 위한 시장, 위원장, 지자체 관계자들과의 관계 맺기

19년 초부터 제도 운영이 되었으나 아직 도 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에 대한 위상과 인식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관련 부서와의 업무협조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총괄 및 공공건축가의 정례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곳으로 당진, 원주, 영주가 있었다. 이들은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이 때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각각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의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진행될 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및 시장과 주기적 만남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의 총괄건축가는 2년 임기의 부지사급으로 19.12월에 위촉되었다. 본격 업무를 수행한 시점을 올해 2월부터로 제주도, 서귀포시 공공건축 관련 사업추진 9개 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어촌어항공단⁴⁷⁾ 등 관련 유관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도관련 설명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특히 총괄건축가는 자치단체장(도지사, 제주도, 서귀포시장)과의 주기적 면담을 통해 관련 활동결과와 상황을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제도의 인식 확대와 민간전문가의 위상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출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내용(2020.7.16.) 일부 발췌

47) 현재 제주도내 증가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시 위탁기관인 공사, 및 공단에 제도에 대한 설명과 공공건축가와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인식제고를 위해 경남, 당진, 제주도와 같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총괄·공공건축가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특히 제주도는 총괄건축가의 위촉초기 행정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지자체장과의 면담, 공공건축가와와의 워크숍 등 많은 시간을 관련 주체와의 관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할애하고 있었다.

경상남도 총괄·공공건축가 워크숍

- 일시·장소: 2019.8.22.(목) 경남 거제 대명리조트 회의실
- 참석자: 경남 경제부지사, 경남 공공건축가팀, 경남 총괄·공공건축가, 경남도 내 시·군 총괄·공공건축가, 서울 도시공간개선단장
- 주요 내용: 서울·영주 사례 분석, 공공건축가 분임 토의, 공공건축 관련 경남도내 여러 부서 협의



출처: 진주시(2019), “2019년 민간전문가 등 지원사업 성과자료”, 성과발표회 발표자료, p.27.(20.6.30.)

당진시 총괄·공공건축가 워크숍

- 당진시도 2020년 9월 15일 총괄·공공건축가, 건축과장, 건축정책팀, 공공건축팀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으로 건축기본조례 제정(20년 10월 예정)과 더불어 공공건축가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 출처: 당진시 차주영 총괄계획가 서면자문 내용(20.9.15.)

제주도 : 관계자 교육 및 지속적인 면담을 통한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구분	일시	내용
면담	20.3.5~6	· 제주시, 서귀포시 공공건축 사업부서(9개부서)방문
	20.3.25~26	· 여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방문, 협업체계 강화
	20.5.7	· 서귀포시장 총괄건축가 면담
	20.5.18~22	· 제주시장, 총괄건축가 면담
	20.7.	· 총괄건축가, 도지사 보고
워크숍	20.4.7	· 서귀포시 공공건축가 워크숍
	20.4.28	· 제주시 공공건축가 워크숍
	20.5.26	· 공공건축가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
토론회	20.6.11	· 서귀포시 공공건축 실(국), 과장, 공공건축가 합동 토론회

출처: 김용미(2020), “제주 총괄·공공건축가 활동보고”, 도 총괄건축가 간담회 발제자료, p.6.(20.7.16.)

5) 공공건축가 운영체계

지역에서 공공건축가를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보여진다. 첫째, 대부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형태로 공공건축가 인력풀을 토대로 사업부서 요청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 운영부서가 공공건축가를 지정 배치하는 방식이다. 둘째, 서울, 당진,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식으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현안을 찾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는 경우이다. 셋째, 경남, 제주도에서는 공공건축가를 업무별, 권역별로 구분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고 권역 내 프로젝트에 관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넷째, 사업부서 요청 시 프로젝트 자문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역의 여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나 그중 제주의 경우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로 체계적으로 공공건축가를 운영하며 각 권역별 사업부서 요청시 분과장이 공공건축가를 지정하여 총괄 또는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 보여진다.

- 제주도 : 공공건축가 구역별로 4개 분과 운영, 분과장과 협조체계 구축

현재 제주도는 공공건축가를 분과별(기획분과, 건축도시분과, 도시조경분과), 권역별(제주시 서부, 제주시 동부, 서귀포시 서부, 서귀포시 동부)로 구분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 각 해당분과의 분과장(공공건축가), 건축지적과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체를 조직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4-1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운영협의체 운영

출처: 김용미(2020), "제주 총괄·공공건축가 활동보고", 도 총괄건축가 간담회 발제자료, pp.3-7.(20.7.16.) 참고후 저자 재작성

공공건축가 운영협의체는 공공건축의 방향을 제시하고, 설계공모의 심사위원 추천, 설계공모 운영전문관(PA) 추천, 공공건축가의 추천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며, 공공건축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 권역별 프로젝트 발생 시 운영협의체에서 분과장에게 해당사항을 전달하면 분과장이 프로젝트에 적정한 공공건축가로 지정 참여하도록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각 분과별로 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별도로 구분하여 공공건축가들이 사명감과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협의체를 통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간의 업무의 교류와 관련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해당 업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건축가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4-19] 공공건축가 분과별 운영 및 역할

구분	기획분과	건축공간분과	도시조경분과
조직 구성	공공건축가 7인 (분과장 1인 포함)	제주시서부 6인, 제주시 동부 6인, 서귀포시 서부5인, 서귀포시 동부 5인 (분과장 4인 포함)	공공건축가 6인 (도시1인, 도시재생2인, 경관1인, 조경2인) (분과장 1인 포함)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 관련 공공건축가 참여사업 발굴 국비 공모사업 및 도전사업 발굴 또는 기 진행사업 자문 국비 공모사업 제안 또는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세부사업에 대한 조정자문 방치된 공간, 낙후된 작은 공공공간 등을 발굴 및 공간개선 채널사업 발굴 및 검토 도시재생사업중 건축설계자문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설계, 도시재생, 도시경관, 조경분야 사업별 자문

출처: 김용미(2020), "제주 총괄·공공건축가 활동보고", 도 총괄건축가 간담회 발제자료, pp.3-4.(20.7.16.) 참고후 저자 재작성

공공건축가는 설계공모 및 개별사업의 자문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건축기획업무의 조정자문역할⁴⁸⁾을 수행하였으며 사업부서의 차년도 및 추경예산 요구시 공공건축가가 참여하여 예산의 적정성 검토 및 유사사업 및 관련 사업의 통합 연계방안 등을 제시하여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공공건축가의 개별프로젝트 자문은 사업부서에서 보고서를 운영부서에 제출할 경우 운영부서에서 공공건축가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두었다는 측면도 민간전문가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8) 공공건축물 설계업무 참여가 가능하나 단, 본인이 기획 또는 자문한 프로젝트 설계에는 참여불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권역 내 사업을 조정·관리해야하는 분과장은 직접설계 참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6) 유관조직 운영 현황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한 유관조직은 크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이며 각 지자체별 유관조직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4-20] 국내 지자체별 유관조직 신설현황('20.9.14. 기준)

구분	지역	유관 조직		
		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도 (5)	충청남도	X	●(1)△(5)	
	전라북도	X	X	X
	경상북도	X		X
	경상남도	●(1) △ (4)	X(정책위 대신)	X
	제주특별자치도	X		X
특·광역시 (4)	서울특별시	●(1)	△(8)	
	부산광역시	●(1) △(1)	△(2)	
	광주광역시	○(1)	X(정책위 대신)	X
	대전광역시	●(1)△(5)	X(정책위 대신)	X
시·군 (16)	경기 수원시	X		X
	경기 성남시	X	○(부위원장)△(15)	
	경기 용인시	X	X	X
	경기 파주시	X	●(1)△(4)	X
	강원 춘천시	●	●(1)△(4)	X
	강원 원주시	X	●(1)△(6)	X
	충북 청주시	X	●(1)	X
	충남 부여군	X	●(1)△(3)	X
	충남 당진시	X		X
	전북 전주시	X	X	X
	경북 영주시	X	X	X
	경북 경주시	X	X	X
	경북 의성군	X	○(1)△(3)	X
	경남 창원시	X	○(1)△(3)	X
	경남 진주시	X	○(1)△(2)	X
	경남 남해군	X	●(1)△(8)	X
구 (4)	서울 서대문구	X	X	X
	서울 은평구	X	X	X
	인천 서구	X	X	X
	대구 수성구	X	●(1)△(10)	X

출처: 저자 작성

*심층면담조사 대상이었던 22곳을 포함하고, 조사 시점이 9월 14일인 점을 감안해 전북, 대전, 성남, 충북, 창원, 남해, 대구 수성구의 7곳을 추가로 조사하였음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위원장 ●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위원 ○ / 공공건축가 참여(위원 등) △ (참여인원수)

***음영표시된 곳은 설치된 곳

□ 건축정책위원회가 공심위 역할 수행, 법과 상충되는 문제 발생

건축정책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공심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상에 제시되어있다. 따라서 정책위가 설치되어있는 경남, 광주, 대전의 경우 공심위의 역할을

건축정책위가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건축정책위의 역할은 지역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행, 건축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하는 자문기구로 현행 법규와는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공심위 역할을 대신하여 운영되고 있는 건축정책위는 대부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위원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건축정책위는 주로 광역에 주로 설치되어 있으나 유일하게 시군단위에서 춘천시만 건축정책위가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아직 건축정책위의 조례 등의 운영근거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경상남도 건축정책위원회와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의 역할

경남도의 관련 유관조직은 크게 건축 관련 심의, 자문, 공공건축 심의의견을 수행하는 건축정책위원회와 사업별 참여 및 공공건축가 추천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가 있으며 그 공공건축가 자문단, 공공건축가 추진위원회⁴⁹⁾ 등이 구성되어있다. 현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역할을 건축정책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다.

구분	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인 구성 총괄건축가 위원장 위촉 당연직(도시교통국장, 사회혁신추진단장), 위촉직(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계획, 디자인, 주거, 조경, 경제,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인 구성 도시교통국장 위원장 당연직 총괄건축가, 해당부서 과장, 공공건축가 2인으로 구성
시기	'20.4.13	'19.9.19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건축계획 수립 시행 (경남 건축기본계획 운영 진행 중)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등 건축관련 운영발주 전 기획 공공건축가 선정 및 협업 등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 과업지시서, 공모지침서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 및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별 참여 및 자문 공공환경 및 공공공간 개선사업 전체 시군에서 진행하는 도비 보조사업 시군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더라도 요청시 사업부서에 공공건축가 추천

출처: 심경미 외(2020), 「민간전문가 참여 및 통합디자인 관리체계의 지속적 운용방안 연구-제1권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p.155. 참고후 저자 재작성

□ 시군지역 대부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시군지역에서는 수원, 용인, 당진, 영주, 경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위원의 구성방법은 지역마다 상이하였으나 대부분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충청남도가 유일하게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위원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 당진의 경우에는 자문, 사업추진 주체와 심의주체가 동일시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9)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교통국장이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관련 자문 등을 지원하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광역단위에서 설치·운영이 필요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는 현재 9개 지자체 중 서울, 충남, 부산에서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지역 모두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내에 민간전문가가 직접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대부분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문단에 속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만약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 공공건축가가 속해있을 경우 사전검토를 직접수행하거나 관련 프로젝트의 자문을 수행하게 되는데, 기획단계에서 수행하는 자문과 사전검토 단계의 업무가 유사하여 중복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공건축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자문위원 운영

서울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였고, 선정위원회를 거쳐 총 40명의 자문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공공·마을건축가는 약 20%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⁵⁰⁾

충남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자문단 운영

충남의 경우 공개모집을 하지는 않고, 충남도 공공건축가 중 역량있는 건축사에 해당되는 사람 가운데 8명을 추천 받았으며, 기존 충남공공디자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던 디자인 컨설팅 자문위원 중 건축사 또는 건축학과 교수 중 26명을 추출해 총 34명을 운영하고 있다.⁵¹⁾

부산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자문위원 운영

부산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였고, 선정위원회를 거쳐 총 18명의 자문위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 가운데 공공건축가가 6인이 포함되어 있다.⁵²⁾

7) 기타

□ 개별프로젝트 단위 민간전문가와와의 관계

현재 지자체에 위촉되어 있는 민간전문가와 가장 많은 관계를 맺는 것은 도시재생뉴딜사업 내 사업총괄코디네이터(센터장)이다. 대부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해당프로젝트에 한하여 프로젝트 단위 민간전문가에게 일임하고 있었다. 당진시는 도시재생사업, 어촌뉴딜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모계획 수립 전 단계, 사업선정 이후 계획수립 단계에서 일회성 자문을 수행하고 있었다. 영주시의 경우만 현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중 1개 지역에 한하여 총괄역할을 하고 있으며, 2개 지역은 일임하나 정례회의를 통해 사업추진상황과 내용에 대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축가는 개별프로젝트 참여 시 대부분 단위사업에 한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영주시에 서만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MP로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50)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이상아 주무관 유선인터뷰 내용(20.9.14.)

51) 충청남도청 공공건축팀 박상훈 주무관·충남공공디자인센터 강경연 박사 유선인터뷰 내용(20.9.14.)

52)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 박현주 주무관 유선인터뷰 내용(20.9.14.)

[표 4-21] 부처별 프로젝트 민간전문가와의 관계

구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 개별 공공사업 단위 총괄계획가와의 관계							공공건축가의 개별 공공사업 참여 여부						
	사업부서			관계형성 방법				사업부서		참여 방법				
	도시 재생	어촌 뉴딜	농촌 중흥지	총괄	일임	자문	정기 모임	브리 핑	도시 재생	어촌 뉴딜	농촌 중흥지	자문	일임 자문	MP
강원 춘천시	●				●				●			●		
강원 원주시	●				●				●			●		
충남 당진시	●	●	●		●	●								
경기 수원시	●				●			●						
경북 영주시	●			●	●		●	●	●			●		●

출처: 저자 작성

□ 일부 지역 타부서 심의기구에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위원(장)으로 겸직 활동

다수의 지역에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유관부서의 심의기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자체로는 수원으로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총 7개의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그 중 4개의 위원회가 타부서에서 운영되는 심의위원회라는 점에서 유관부서의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해당부서에서 프로젝트 자문요청 시 자문과 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표 4-22]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유관 심의기구 포함 현황

구분	위원회 참여 현황
충청남도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위원장
경상북도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위원장 예정)
경상남도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위원(위원장 부재시 대행)
경기 성남시	• 경관심의위원회 위원
경기 수원시	• 건축위원회 위원(건축과),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부위원장,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위원, 도시공원위원회 위원(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미술관 운영위원회 위원(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 관광기념품지정위원회 위원(관광과)
경기 파주시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건축과)
충남 공주시	• 정책자문위원회 위원(기획담당관), 건축위원회 위원(허가과)
충남 부여군	• 경관심의위원회 부위원장(도시건축과)
충남 홍성군	• 건축위원회 위원
전북 전주시	• 정원박람회추진위원회 위원장
경북 영주시	• 경관심의위원회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허가과)
경북 경주시	• 건축위원회 위원, 고도보전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왕경조성과), 경관심의위원회 위원(도시계획과)
경북 의성군	•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군계획위원회 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기획예산담당관)
인천 서구	• 스마트에코시티 위원회 공동위원장

출처: 지자체 유선 인터뷰(20.9.11.~20.9.14.) 및 수원시 도시디자인단(2020), “수원 디자인기획관”, 내부자료. 참고후 저자 재작성

8) 소결

□ 위촉 및 근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대부분 지명추천 후 지자체장이 장이 위촉하고 있으며, 공공 건축가는 대부분 공개모집을 하고 있었다. 일부 공개모집하기도 하였으나 여건 상 후보자 목록을 구성하는 업무부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대부분 비상근직으로 위촉기간은 기본 2년으로 하며, 지역에 따라 1~2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2년간의 임시직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인 듯하다. 조례상의 민간전문가의 위상정립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다. 일부지역은 국장 또는 4급상당의 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민간전문가에 대한 위상정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이슈 및 문제점 최종 종합 : 위촉 및 근무

구분	현황	한계 및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
선정 및 근무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 대부분 지명추천 후 지자체 장 위촉, (공공) 대부분 공개모집 • 지자체 자체규정에 자격기준을 법보다 포괄적으로 규정 • 위촉기간 기본 2년(1~2차례 연임 가능) • 대부분 비상근 운영(수원만 상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모집 시 적극적 홍보 필요 - 후보자 목록을 구성하는 어려움 발생 - 2년간 한정된 역할수행이라는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풀 제공 - 지자체 여건에 따른 임기도입 유도 (시장과 임기 동일)
보수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회의, 자문수당으로 보수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민간전문가 역할, 활동별 적정 보수지급 기준 마련 미흡 	-
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위상정립이 없거나 국장 또는 4급상당의 자위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전문가에 대한 위상정립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제고를 위한 관계자(교육 중요성 강조 필요)

출처: 저자 작성

□ 역할 및 업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지역의 비전 및 미래상 설정과 관련하여 대부분 지역에서 해당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토부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을 통해 비전 및 미래상 설정을 위한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지역에서는 기획예산 마련의 어려움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가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수행하게 되는 업무는 프로젝트 자문 업무이나 대부분 일회성, 면피용으로 활용되어져 실효성이 부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중 장소단위로 관련 사업간의 연계, 조정의 역할이 중요한 지방 소도시, 군

지역, 구단위의 경우 일부지역에서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도시규모에 따른 주요 업무를 제시하여 인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업무로는 일부지역에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임기 초기 제도도입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역의 틈새업무를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당진의 '통합마을회관 표준모델 개발'과 제주의 '읍면동 공공성지도 제작', 서울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있으며, 공공건축가는 지역의 새로운 선도 사례를 발굴하고, 정책제안이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더욱 느끼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공공건축가는 대부분 사업부서의 요청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수동적인 관계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업무수행 초기 공공건축가의 운영방향과 역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경우 지역의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민간전문가가 해당지역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확립과 제도의 이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 및 협력체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24]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이슈 및 문제점 최종 종합 : 역할 및 업무

구분	현황	한계 및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역할 및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 및 미래상 설정 지원 업무 수행 - 일부 지자체 기획예산 마련(당진, 원주, 제주) 	- 제도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별도 예산마련에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군지역에서 장소단위의 사업간 통합정연계, 조정역할 수행 	- 대부분 중소도시, 군지역에서 사업부서 요청시 자문하는 형태로 사업연계조정 업무 수행 미흡	- 군지역, 구단위의 중요 업무로 제안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지역에서 개별프로젝트 자문업무 수행(평균 54회, 수행프로젝트 중 50% 이상) 	- 대부분, 일회성으로 자문업무	- 자문업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지역 가시적 성과위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공공건축가와 협업을 통한 틈새업무 발굴 	- 별도 예산이 마련되어있지 못할 경우 추진하기가 어려움, 행정적, 인력 뒷받침 한계	- 공공건축가의 사명감과 지역의 인식을 넓힐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지역에서 발주방식 및 설계공모 개선 방안에 주력 	- 설계공모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역의 논란 발생	-
공공건축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지역 공공건축가, 행정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일회성 워크숍, 포럼 등 진행 충남, 제주 등 도시사와의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도입 초기 대부분지역에서 관계자 교육 추진 미흡 - 대부분 지자체장과의 보고체계 마련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업무의 중요성 제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서요청시 공공건축가 자문역할을 주로 수행 일부지역에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수원 당진 제주등) 당진월회 공공건축가간의 업무협력을 통한 정보교류 	- 대부분 지역에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와의 협업 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프로젝트 일회성 자문으로 사명감을 갖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가 운영방안 및 역할을 초기 마련할 필요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간의 정보교류 및 협업구조 마련 필요

출처: 저자 작성

□ 담당 부서 및 유관조직 체계

• 행정조직 및 인력 관련 사항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인력은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전담조직 운영은 전무한 상황이며, 일부지역에서만 1~2인의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순환보직체제로 인해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수원의 경우 전문직 공무원 운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향후 지역 내 민간 전문가 운영지원부서의 전문직 운영을 권장하고 순환보직을 최대한 지양할 필요성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활동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서는 운영부서와 사업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제주, 수원, 은평구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25]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이슈 및 문제점 최종 종합 : 담당부서 및 유관조직 체계

구분	현황	한계 및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
행정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제외 전담조직 운영 지역 부재 일부지역만 1~2인 전담인력 확보 전문직 공무원 운영시 전문적 체계적 업무 지원 가능 (충남, 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업무 지속성 및 전문성 확보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직공무원 운영 권장, 임기 내 담당자 순환 보직 지양 유도(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사업부서의 자문요청시 업무수행 일부지역 지자체 방침에 따라 자문시기 명시, 결재라인 포함, 구두보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일부지역 활동결과 환류체계 마련(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서의 요청이 없을 경우 유관사업의 현황을 파악, 개입하기가 어려움 공공건축가 일회성, 면피성에 그친 자문수행건수가 증가, 운영부서에서 사업추진과정 및 결과반영을 알기가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운영, 민간전문가 간의 업무수행체계 마련 필요 활동결과 모니터링체계 마련 유도
유관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지역 건축정책위 공심위 역할 수행 대부분 시군지역에서는 공심위 운영 일부지역은 자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기구에 민간전문가 불포함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미흡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내 자문위원으로 민간 전문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직 일부지역에서는 건축정책위, 공심위 설치가 미흡 타부서의 프로젝트 자문요청시 심의와 자문을 동시수행하여 공정성 확보 어려움 지역공센에서의 공공건축가의 역할 정립이 아직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센에서의 공공건축가 역할 정립 필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개별 프로젝트 민간전문가 위촉시 대부분 역할 위임 일부지역은 개별프로젝트 총괄, 조정역할수행(영주) 일부 지역은 타부서 관련 심의기구에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어 사업부서의 요청 전 민간전문가의 개입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정립 필요

출처: 저자 작성

- 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등 유관조직 관련 사항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되어 관련 심의 및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등은 지역여건에 맞게 조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운영되고 있는 공심위, 건축정책위 모두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간전문가가 위원(장)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지역은 민간전문가가 심의기구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와 심의주체를 구분하여 따른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지역에서는 민간전문가가 심의위원의 당연직으로 제시될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민간전문가의 인식과 활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건축정책위는 자문기구로 공심위의 역할을 대체하기에는 법적 상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법개정과 가이드라인 상의 역할 명시는 필요한 상황이다.

제5장 해외 민간전문가 제도 사례분석

1. 네덜란드 도시총괄건축가
 2. 벨기에 총괄건축가
 3. 덴마크 도시건축가
 4. 국내에의 시사점
-

5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운영현황과 행정적 지위, 역할 등을 정리하고 다양한 운영방식의 사례를 보여주고자 한다.

우선 네덜란드는 약 200여 년 전부터 ‘국가건축가’라는 명칭으로 여러 공공사업을 관장해오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도시총괄건축가(Stadsbouwmeester, Stadsarchitect 등)라는 명칭의 민간전문가들이 활동하기 시작해온 만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이후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사례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벨기에 총괄건축가(bouwmeester) 제도는 약 2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인 지원과 전문성을 통해 도시의 공공공간 구성에 다양한 효과를 불어넣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⁵³⁾ 우리나라의 행정체계 중 광역자치단체인 도에 해당되는 주정부 총괄건축가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만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덴마크 도시건축가(City Architect, Stadsarkitekt)도 네덜란드처럼 왕실의 왕정건축가 제도로 인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에는 도시건축가를 비롯해 도시조경가, 도시계획가 등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었으나 현재는 ‘도시건축가’만 있다. 이들은 모든 상근직이고 일부 전담조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사례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53) Vlaams Bouwmeester 홈페이지(<https://vlaamsbouwmeester.be/nl/team-vlaams-bouwmeester/historiek>) (검색일: 2020.9.12.)

1. 네덜란드 도시총괄건축가⁵⁴⁾

1)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네덜란드에서는 1806년부터 ‘국가건축가’라는 명칭으로 도로건설 및 관리, 성벽, 수로와 방죽, 광장과 공공 정원 등 왕실 및 국가 주요 공공사업을 관장하는 다수의 총괄책임자가 임명되어 활동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전에 국가건축가로 활동했던 다수의 총괄책임자들이 도시총괄건축가(Stadsbouwmeester, Stadsarchitect 등)라는 지위를 갖고 활동하기 시작하였다.⁵⁵⁾ 또한, 2007년부터 총괄건축가 지위와 위상은 주택법(Woningwet)에서 건축미관위원회(welstandscommissie)를 대신하여 건축허가 과정에서 자문하는 역할로 공식적으로 명시하였다.⁵⁶⁾

1806년 도입된 국가건축가를 비롯해 네덜란드 지자체 전역에서는 10~20명 정도의 도시총괄 건축가가 활동 중⁵⁷⁾에 있으며,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역 문화, 전통, 정책방향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와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4년부터는 주정부 단위에서도 주정부 총괄건축가(Rijksbouwmeester) 또는 자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 12개 주 가운데 7개 주에서 주정부 총괄건축가를 운영하고 있다.⁵⁸⁾⁵⁹⁾

이 외에도 구역 또는 프로젝트 사업총괄건축가(Supervisor)를 운영하며 도시의 특정 지역 및 구역에 대한 공간 품질 향상과 개선을 위한 민간 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괄건축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총괄건축가 없이 관련 부서의 전문화, 위원회와 사업총괄건축가(supervisor)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총괄건축가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⁶⁰⁾

54) 네덜란드 사례는 외부전문가 원고(이상현 대구광역시 주무관)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55) 심경미 외(2019),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모델 구축 및 홍보방안 마련연구」, 국토교통부, p.53. 참고후 저자 재작성

56) “2절 건축규정 조항 8.5. 건축 규정(bouwverordening)에는 건축미관위원회(welstandscommissie)의 구성, 조직 및 운영 방식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음 건축미관위원회(welstandscommissie)를 대신하여 도시총괄건축가가 임명되어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건축규정에서 도시총괄건축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https://maxius.nl/woningwet/artikel8>(검색일: 2020.8.24.))

57) Amersfoort시, Groningen시, Delft시, Haarlem시 등이 도시총괄건축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Amsterdam시는 재설치를 고려 중에 있음

58) Marcel van der Meijs(Palmbout urban landscapes 공동 파트너) 이메일 인터뷰(2019.2.23.) 내용

59) 네덜란드는 1953년부터 철도총괄건축가(Spoorbouwmeester) 제도도 운영하고 있음

60) Amsterdam 시는 전문화된 내부 조직인 지속 가능한 공간개발부서(Ruimte en Duurzaamheid)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새로운 도시개발과 계획에 대한 외부 자문은 전문성이 있는 도시설계사, 건축가, 조경설계사 등을 구역 또는 프로젝트 단위 총괄 계획가(Supervisor)를 임명해서 총괄하고 있음. 또한 새로운 민간 및 공공 건축물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디자인 대한 개별 자문은 건축미관위원

[표 5-1] 네덜란드 도시별 도시총괄건축가 현황(2020년 기준)

도시명	현 총괄건축가	임기	주요 업무 및 내용
Den Haag	Erik Pasveer	2010년 ~ 2020년 (현재, 임기 완료 후 새로운 총괄 건축가 찾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Erik Pasveer는 도시 계획 및 계획 부서의 책임자로서 헤이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총괄건축가로 근무 2020년 1월부터 총괄건축가의 자리가 공식 이고, 2020년 2월 새로운 총괄건축가의 역할과 그 지위에 대한 토론 개최
Amersfoort	Micha de Haas	2019년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시 도시총괄건축가 미관 및 경관 관련된 건축 규제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데 중점
Amstelveen	Marijn Schenk	2017년 ~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도시총괄건축가로 재임명 2시의 공간 개발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자문 및 건축 허가에 대한 자문
Arheim	Luuk Tepe	2007년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공간의 도시건축가로 임명 통합된 비전과 접근 방식에 기초하여 도시의 공공 공간의 이미지 품질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자문하고 조정
Delft	Tako Postma	2019년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 산업,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동네 이미지 강화 등 도시의 미래상을 위한 외부 전문가
Groningen	Jeroen de Willigen	2015년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프로젝트에 및 건축 허가에 대한 자문
Haarlem	Willem Hein Schenk	2019년 ~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개발, 지속가능성, 이동성 및 사회적 포용성을 고려한 공간 전략 및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
Haarlemmermeer	Joop Slangen	2017년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arlemmermeer 간척지 지역 총괄 건축가
Leiden	Hilde Blank	2017년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기후변화 등에 대한 이슈들을 다루며 도시의 개발 프로젝트간의 일관성을 유도하고 도시 공간 문제를 다른 영역과 조율
Meppel	Geert Jan Jonkhout	2012년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개발지인 Nieuwveense Landen 주거 지역에 개인 건축주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지원 자문
Oss	Martin Jagreis	2008년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공무원으로 도시 디자인에 대한 자문 시행
Voorst	Willem van Oorschot	2012년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공무원으로 도시 계획 및 공간 품질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자문을 수행

출처: Architectuur Lokaal 홈페이지(<https://arch-lokaal.nl/netwerken/bouwmeesters-netwerken/>(검색일: 2020.9.11.))

회(welstandscommissie)운영을 통해 계획의 미적인 수준을 보장하고 있음

2) 행정적 지위

도시총괄건축가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독립된 외부 전문가로 임기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근무형태도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데, 고용법에 근거하여 일정기간동안 계약을 통해 시에 소속된 지원 또는 관리자 형태의 상근직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독립적인 형태의 외부 자문위원으로 임명하여 활동하거나 경우에 따라 직원과 예산을 받아 활동하기도 한다.⁶¹⁾ 지위는 네덜란드 주택법(Woningwet)에서 총괄건축가의 업무를 명시하면서 위상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일부 도시에서는 총괄건축가의 역할을 외부 컨설턴트에 국한시켜 지위가 불명확하기도 하다.

3) 역할

도시총괄건축가의 역할은 각 도시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⁶²⁾

- 지자체의 도시 비전, 계획 및 프로젝트를 위한 자문 수행

도시총괄건축가는 도시공간 개발과 계획에 대한 독립적인 자문 수행을 통해 지자체의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건설하는데 있어 민간전문가로서 공간의 품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경우 법적인 측면에서 총괄건축가의 지위와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의회의 요청에 의해 독립적인 외부 자문을 시행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내부 공무원이 총괄건축가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총괄건축가는 각 부서에서 요청되는 프로젝트의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요청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제안을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 시의회에서 승인된 미관 가이드라인(welstandsnota)에 근거하여 건축허가 시 미적인 측면을 자문하고 조정(심의)

네덜란드 주택법(Woningwet) 2절 건축규정 8.5조항(Afdeling 2. De bouwverordening Artikel 8.5)에는 새로운 건축물은 총괄건축가 또는 건축미관위원회(welstandscommissie)에 의해 검토되고 판단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⁶³⁾ 이에 총괄건축가는 시의회에서 승인된 미관 가이드라인(welstandsnota)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디자인을 자문 및 조정(심의)하고 자문한 내용은 공공에 공개하고 있다.

61) 심경미 외(2019),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모델 구축 및 홍보방안 마련연구」, 국토교통부, p.54.

62) Loes Oudenaarde(네덜란드 Amersfoort시 前총괄건축가, 2013~2019년) Skype 인터뷰 내용(20.4.28.)

63) Maxius 홈페이지(<https://maxius.nl/woningwet/artikel8>(검색일: 2020.8.24.)) 참고후 저자 재작성

4) 운영 특성

- 국가·주정부·시 총괄건축가 및 철도총괄건축가 등 다양한 유형 운영

네덜란드에는 국가를 비롯해 주정부, 도시총괄건축가를 비롯해 철도총괄건축가가 운영 중에 있다. 국가건축가 및 철도총괄건축가는 아플리에와 같은 전문가 지원조직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외 총괄건축가들은 별도의 지원조직이 없다.

- 주정부 총괄건축가와 도시총괄건축가 간 교류 네트워크 구축

주정부 총괄건축가와 도시총괄건축가는 업무협의를 진행한다. 칸막이 행정, 업무수행 등을 극복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자체, 주정부 및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과도 소통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Architectuur Lokaal협회에서는 1993년 총괄건축가들의 경험과 생각들을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2009년 정부 총괄건축가가 합류한 후 정기적인 공동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 도시총괄건축가 제도 중소도시 위주로 운영 중, 암스테르담은 도입 논의 중

현재 도시총괄건축가를 운영하는 도시를 살펴보면,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등 대도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규모가 큰 도시의 경우 총괄건축가가 혼자 도시의 공간개선 업무 및 자문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도시 공간 품질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부서 자체가 전문화 및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자문위원회 또는 총괄팀 등 외부전문가 그룹 활용을 통해 이를 대체하고 있다. 특히 암스테르담 시는 1967년 이후 총괄건축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2017년 암스테르담 예술위원회(Kunstraad)의 총괄건축가 재설치를 권고하였고⁶⁴⁾ 현재까지 그 필요성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De stad is nooit af uit(도시는 끝나지 않는다)」 내용 중 도시총괄건축가 임명 및 운영 권장

2017년 암스테르담시 예술위원회(Kunstraad)에서 출판된 「De stad is nooit af uit(도시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보고서에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그 중 하나가 도시총괄건축가를 임명하고 통합적인 사고에서 도시 및 건축의 확장을 모니터링하라는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주정부 총괄건축가(Rijksbouwmeester)와 유사한 예산, 조직, 임명 기간을 가지도록 권장하고 있다.

출처: Amsterdamse Kunstraad(2017.5.10), 「De stad is nooit af uit」, Amsterdamse Kunstraad, p.13. 참고후 저자 재정리(<https://www.kunstraad.nl/advies/stad-is-nooit-af/>) (검색일: 2020.8.31.)

암스테르담 시 공간품질위원회(Commissie Ruimtelijke Kwaliteit) 위원장(Eric Luiten)은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Golden triangle(전문화된 전문조직, 사업총괄건축가, 건축미관위원회)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총괄건축가를 임명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레이덴 시 총괄건축가(Hilde Blank)는 지

64) Amsterdamse Kunstraad(2017.5.10), 「De stad is nooit af uit」, Amsterdamse Kunstraad, p.13.

자체 담당공무원들이 담당계획구역만 관심사항이라는 점, 모빌리티의 변화 및 새로운 지역과의 관계 등 일관성이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총괄건축가 필요성을 주장했다.⁶⁵⁾

- 법에 명문화 된 건축허가 시 자문 및 조정(심의) 역할

2007년부터 네덜란드 주택법(Woningwet) 에서 건축미관위원회를 대신하여 도시총괄 건축가가 임명되어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건축규정에서 도시총괄건축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여러 주체들 간의 협업 및 주변 지역 간 조정하는 독립적인 역할 중요

올해 봄, 네덜란드에서 발간된 총괄건축가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Architectuur Lokaal 96호⁶⁶⁾에서는 헤이그 시의 공석이었던 총괄건축가 선정을 위해 논의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총괄건축가가 어떤 관점에서 일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 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네덜란드에서 필요로 하는 총괄건축가의 역할과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총괄건축가가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도시접근성, 경제, 공동체 측면에서 좋은 도시디자인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 개발 및 건설업 종사자 및 디자이너들 간의 협업을 하면서 그 주변 지역 간의 조정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덜란드 도시총괄건축가 역할 수행의 관점

- 동네, 도시, 지역의 일관성과 정체성 중시
- 지역의 전문가들 또는 총괄건축가 전담 아틀리에 구성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부서의 위상 강화
- 명확한 총괄건축가의 독립적인 위상 확보
- 보다 투명하고 협상 가능한 도시개발 방식 마련

출처: Architectuur Lokaal(2020), 「Architectuur Lokaal 96호(2020년 봄호)」, p.15. 참고후 저자 재작성(홈페이지 <https://arch-lokaal.nl/wp-content/uploads/2020/03/Architectuur-Lokaal-96.pdf>(검색일: 2020.9.12.))

- 확립되지 않은 위상이 가진 한계

일부 도시에서는 외부 컨설턴트에 역할을 국한시켜 지위가 불명확한 상황이기도 하다. 아메르스포르트 시의 도시총괄건축가였던 Noud de Vreeze(2008년~2011년 임기)는 일부 다른 문제들이 있기도 했었지만 조직 내에서 명확한 위상, 책임 및 예산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회고하였다.⁶⁷⁾

65) Loes Oudenaarde(네덜란드 Amersfoort시 前총괄건축가, 2013~2019년) Skype 인터뷰 내용(20.4.28.)

66) Architectuur Lokaal(2020), 「Architectuur Lokaal 96호(2020년 봄호)」, p.15. 참고후 저자 재작성(홈페이지 <https://arch-lokaal.nl/wp-content/uploads/2020/03/Architectuur-Lokaal-96.pdf>(검색일: 2020.9.12.))

67) Noud de Vreeze(네덜란드 Amersfoort시 前도시총괄건축가,08~11년) 이메일 인터뷰 내용(19.3.11.)

2. 벨기에 총괄건축가⁶⁸⁾

1)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벨기에⁶⁹⁾의 건축사 제도는 플랜더스 지방과 브뤼셀 수도권, 왈로니아 지방으로 분리된 채 운영되고 있으며, 분리된 건축사 등록체계 및 협회를 가지며 건축사의 활동 반경과 건축법 체계 등도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⁷⁰⁾ 이러한 배경에서 총괄건축가 제도도 플랜더스 지방과 브뤼셀 수도권, 왈로니아 지방으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다. 벨기에 총괄건축가(bouwmeester) 제도는 약 2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 플랜더스 지방에서는 건축과 도시의 질적 수준 저하에 따른 우려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었고, 당시 플랜더스 정부 장관(Wivina Demeester)의 **네덜란드 식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제안에 의해 제도 시행 승인이** 되었고 1999년 **초대 총괄건축가가** 위촉되었다.⁷¹⁾ 브뤼셀 수도권 지방은 이보다 10년 늦은 2009년에 초대 총괄건축가가 위촉되었다.

2개 지방정부 총괄건축가를 비롯해 대도시 3곳에서 도시총괄건축가(stadbouwmeester)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경향은 지방정부 총괄건축가가 세부적인 지역의 이슈에 개입하기 보단 지방 정부의 비전과 지역의 이슈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길 원하고 있으며, 총괄건축가에게는 전문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 및 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공간을 구성하는 일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⁷²⁾

[표 5-2] 벨기에 총괄건축가 현황(2020년 기준)

지방명	도입한 도시명	현 총괄건축가	현재 도시건축가 임기	인구수
플랜더스	플랜더스	공개 모집 중		630만
	겐트	Peter Vanden Abeele	2017년 ~ 현재	26만
	안트워프	Christian Rapp	2016년 ~ 현재	53만
브뤼셀	브뤼셀	Kristiaan Boreet	2015년 ~ 현재	112만
왈로니아	샤를루아	Georgios MAILLIS	2013년 ~ 현재	20만

출처: 위키피디아 홈페이지(<https://ko.wikipedia.org/wiki/%EB%B2%A8%EA%B8%B0%EC%97%90>(검색일: 2020.9.12.))

※ 음영은 지방정부 차원의 총괄건축가 운영 지역(브뤼셀은 서울특별시와 같이 하나의 지방이자 도시임)

68) 벨기에 사례는 외부전문가 원고(황의현 Studio for Essential Architecture)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69) 벨기에에는 연방형태의 국가로 총 3개의 지방(Gewest)인 플랜더스(Vlaams Gewest), 브뤼셀 수도권(Brussels Hoofdstedelijk Gewest), 왈로니아(Waals Gewest)로 구분되어 있고, 각 지방은 자치정부를 보유하며 행정, 정치, 경제 등 분리된 체계를 가지고 있음

70) Orde van Architecten 홈페이지(<https://www.architect.be/nl/de-orde/over-de-orde-van-architecten/>(검색일: 2020.9.12.))

71) Vlaams Bouwmeester 홈페이지(<https://vlaamsbouwmeester.be/nl/team-vlaams-bouwmeester/historiek/>(검색일: 2020.9.12.))

72) Vlaams Bouwmeester 홈페이지(<https://vlaamsbouwmeester.be/nl/team-vlaams-bouwmeester/historiek/>(검색일: 2020.9.12.))

2) 행정적 지위

- 임명직 공무원(상근직), 까다로운 임명절차

총괄건축가는 정부(지자체)에 의해 고용되는 임명직 공무원이며, 상근으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내부 논의와 절차를 거쳐 임명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건축, 도시적 사상, 리더쉽, 청렴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정부(지자체)의 구성원으로 일하는 만큼 정부(지자체)와의 융화를 핵심적으로 판단한다.⁷³⁾ 도시총괄건축가를 선정 심사할 때 해당 지방정부 총괄건축가가 선정위원회에 포함된다.⁷⁴⁾

[표 5-3] 벨기에 플랜더스 지방 총괄건축가 선정절차

1단계	채용 공고	플랜더스 지역 신문, VDAD(정부공식 채용 사이트)
2단계	이력서 스크리닝	정부사이트에 올라온 이력서를 토대로 규정에 대한 적합성 평가
3단계	사전 인터뷰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지원 동기, 정부의 방향성과 적합도, 의소통의 기술, 관련 경험 등에 대한 사전 인터뷰 개최
4단계	직무 역량 시험	후보자 스스로 작성한 약점 분석, 분석에 대한 토론 및 심층 인터뷰, 다년간의 프로그램에 대한 비전 노트 작성, 총괄건축가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가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하여 평가
5단계	적합한 후보 리스트 작성	위의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위한 개요를 작성하고 관련 부서 장관에 후보자 명단 제출, 요구된 서류의 제출 여부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함
6단계	최종 인터뷰	직책에 대한 적합한 역량을 가진 후보자를 선정하는 단계로 장관은 부총리와의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단, 적절한 후보가 없을 경우 선택하지 않음)
7단계	임명	플랜더스 정부는 고용주가 되어 선정된 최종 후보와 계약 체결

출처: NOTA AAN DE VLAAMSE REGERING(2020), "vacantverklaring van de functie van VlaamseBouwmeester"(<https://beslissingenvlaamseregering.vlaanderen.be/document-view/5E32A62E9B6639000800052D>(검색일: 2020.9.12.))

73) Vlaams Bouwmeester 홈페이지(<https://www.vlaamsbouwmeester.be/nl/atelier-home>(검색일: 2020.9.12.))

74) Stad Gent(2017), "Stadsbouwmeester zoeken", (https://www.jobat.be/extra/krant_archief/20170408_DS.pdf(검색일: 2020.9.12.))

상근으로 근무하는 임명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5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하고,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데, 플랜더스의 경우 1년에 85,895~110,494 유로(한화 기준 약 1억2천만 원~1억5천만 원) 정도이며,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별도로 휴가비와 성과급이 있다.⁷⁵⁾

- 연구조직을 그룹으로 운영 : 정책 및 프로젝트 관련 조언과 기술 지원 제공

지방정부 총괄건축가는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총리의 정치적 책임 하에 총리 직할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한다.⁷⁶⁾ 모든 총괄건축가는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조직을 포함한 그룹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벨기에 총괄건축가 제도가 가지는 특이점이기도 하다. 샤를루아 시(Tchâlerwè)는 건축가, 조경가, 디자이너 등 총 4인으로 구성된 팀이 있고,⁷⁷⁾ 플랜더스의 경우 총 15인 내외의 연구 조직(bouwmeester)이 있고, 이들은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 및 프로젝트 관련 주제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과 관리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각 연구원은 동등한 직급과 위치에서 총괄건축가가 관장하는 각 사업의 담당자(coordinator)로 투입된다. 이 연구원들도 플랜더스 정부에 의해 고용되는 공무원이며, 총괄건축가의 임기와 무관하게 정해진 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⁷⁸⁾

이 외에도 ‘아플리에’ 공간을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플랜더스와 안트워프 시(Antwerpen)는 이 공간에서 프로젝트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간의 품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발표 및 토론을 하기도 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 및 관리, 연구, 조사 등도 진행한다.⁷⁹⁾⁸⁰⁾

플랜더스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다르게 연구조직 외 4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있다. 이들은 총괄건축가의 추천으로 선출되며, 총괄건축가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⁸¹⁾

75) Vlaanderen 홈페이지(<https://beslissingenvlaamseregering.vlaanderen.be/document-view/5E32A62E9B6639000800052D>)(검색일: 2020.9.12.) 참고후 저자 재작성

76) Vlaams Regering(2020), 「Visienota aan de Vlaamse Regering - Vlaams Bouwmeesterschap」, pp.2-4. 참고후 저자 재작성

77) DH Les Sports 홈페이지(<https://www.dhnet.be/regions/charleroi/le-bouwmeester-de-charleroi-reengage-pendant-quat-ans-pour-2-6-millions-5b48b6a755326925480e97f0>)(검색일: 2020.9.12.) 참고후 저자 재작성

78) Vlaams Regering(2020), 「Visienota aan de Vlaamse Regering - Vlaams Bouwmeesterschap」, pp.2-4. 참고후 저자 재작성

79) Vlaams Bouwmeester(2017), 「Ruimte maken voor mens en natuur BWMSTR 2017-2020」, p.3.

80) Christian Rapp(2017), 「Atypische Stadbouwmeester」, p.15. 참고후 저자 재작성

81) Vlaams Regering(2020), 「Visienota aan de Vlaamse Regering - Vlaams Bouwmeesterschap」, pp.2-4. 참고후 저자 재작성

3) 역할

벨기에 총괄건축가 제도는 아직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현재까지도 역할의 범위와 해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지역이 지향하는 도시·건축적 비전 제시(inspirator)

총괄건축가는 각 지역이 지향하는 도시·건축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참여와 연구를 독려하고, 지역의 비전을 충분히 이해한 공간적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비건설적 방법으로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⁸²⁾ 플랜더스 지방총괄건축가는 총리에게 건축 및 도시에 관한 아젠다를 직접적으로 조언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⁸³⁾

- 폭넓은 대화를 촉진하는 촉진자(aanjager)

도시는 하나의 의견이 아닌 여러 사람들에 의해 함께 생산되는 만큼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활발히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총괄건축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⁸⁴⁾

- 협력·자문 등이 원활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주최자(Organisator)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본 과정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조언자(advvisor)

총괄건축가는 항상 프로젝트 참여자들과 협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시공자와 설계자가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품질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⁸⁵⁾⁸⁶⁾

특히 총괄건축가 팀(또는 연구조직)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지침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자들과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총괄건축가로 하여금 시의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기본 과정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듯 총괄건축가는 수동적으로 기다리거나 최종 지침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⁸⁷⁾

82) Stad Bouwmeester Gent(2018), 「Samen Stad Bouwen」, p.10.

83) Vlaams Bouwmeester 홈페이지(<https://www.vlaamsbouwmeester.be/nl/atelier-home>(검색일: 2020.9.12.))

84) Stad Bouwmeester Gent(2018), 「Samen Stad Bouwen」, pp.10-28.

85) Vlaams Bouwmeester(2017), 「Ruimte maken voor mens en natuur BWMSTR 2017-2020」, p.2.

86) bx1 홈페이지(<https://bx1.be/news/le-nom-du-nouveau-bouwmeester-de-bruxelles-sera-connu-en-janvier/>(검색일: 2020.9.12.))

87) Stad Bouwmeester Gent(2018), 「Samen Stad Bouwen」, pp.10-28.

플랜더스 지방총괄건축가 역할(een vernieuwd bouwmeesterschap)

플랜더스 지방총괄건축가의 목표는 건설 환경에 있어 건축물의 질과 도시 환경에 대한 종합적 품질의 이해, 이에 대한 사용 및 인식, 이미지의 질, 건설 기술, 에너지, 비용 관리 등을 촉진하는데 있다. 이러한 합의는 건축물의 디자인 및 시공, 공공공간, 조경 및 인프라와 같은 공공 및 준공공 프로젝트 담당자의 지원으로 수행된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적 과제와 이에 개입된 이해 당사자 및 분야를 교차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함을 뜻한다.

출처: Vlaams Bouwmeester(2017), 「Ruimte maken voor mens en natuur BWMSTR 2017-2020」, p.2. 참고후 저자 재작성(https://www.vlaamsbouwmeester.be/sites/default/files/uploads/EXTENDED_NL_17052017.pdf(검색일: 2020.8.31.))

4) 운영 특성

- 지방정부 총괄건축가와 도시총괄건축가 간 교류 네트워크 구축

각각 다루는 지역의 범위와 현안의 종류에 차이가 있으나, 각 도시들은 지방에 속해있기 때문에 업무상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 총괄건축가는 별도로 존재하는 도시총괄건축가 및 정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업무상의 위계는 존재하지 않고,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 관계에 있으며 필요시 요청에 따라 업무의 협력이 이뤄진다.

- 총괄건축가는 총괄건축가 팀(연구조직)과 함께 조직으로 업무수행

벨기에 총괄건축가 제도의 핵심은 총괄건축가 개인이 아닌 조직⁸⁸⁾을 바탕으로 업무가 수행된다는 점이다. 총괄건축가는 각 지자체의 현황과 비전을 바탕으로 자신의 조직을 이끌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은 때로는 연구기관으로, 때로는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실행의 주체가 되어 업무에 임하고 있다. 총괄건축가 팀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는 총괄건축가 한 사람의 독단이나 주관적 판단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총괄건축가 팀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축은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수행되는 사전 연구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공공 프로젝트의 수행 이전에 먼저, 필요성 및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각화된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총괄건축가와 정부 기관에 있어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이 되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공공 및 민간 이해 당사자들과 분명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

- 민간영역에 동일한 서비스 제공

총괄건축가는 도시개발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바탕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러한 철학은 프로젝트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는다. 물론 초기에는 건축, 도시 및 공공공간 등 공공 프

88) 플랜더스에서는 총괄건축가를 칭하는 명칭인 'Bouwmeester'가 이 연구조직을 부르는 명칭이기도 함

로젝트에 대한 자문하는 역할에 머물렀으나, 현재는 민간영역까지 도시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⁸⁹⁾ 이것은 총괄건축가가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무원 조직 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판단된다.

-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권력화되지 않도록 투명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

도시를 다루는 일은 특히, 정치화, 권력화되기 쉬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벨기에 각 지자체는 총괄건축가 제도가 특정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권력화되지 않도록 투명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의 인력을 고용하거나, 지속적으로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적으로 특정 정부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조직 구성을 가지는 등 독립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 총괄건축가는 임명직 공무원으로 다른 공공 기관과 같은 수준의 감사를 받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기구의 운영 등을 통하여 추구하는 방향이 언제나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총괄건축가 제도가 가진 권위적인 성격과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건축계 내부에서는 이 제도가 가진 권위적인 성격과 불투명성으로 인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책임지지 않는 임시직이라는 비판과 해외 유명 건축가의 명성에 의존한다는 비판 등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보완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⁹⁰⁾⁹¹⁾

- 정부의 일원으로 정책에 협력할 것을 강요당하기도

2019년에 발표된 플랜더스 지방 정부 합의문에 따르면 ‘플랜더스 총괄건축가는 공공공간의 설계 및 선택에 있어 플랜더스 정부와 지자체를 지원하는 핵심 업무에 집중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플랜더스 정부는 ‘총괄건축가가 임기동안 정부의 일원으로서 정책적 선택에 맞추어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요구하는 등 일각에선 이러한 흐름에 대해 총괄건축가가 가진 업무적 재량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건축계와 정부가 나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⁹²⁾

89) bx1 홈페이지(<https://bx1.be/news/le-nom-du-nouveau-bouwmeester-de-bruxelles-sera-connu-en-janvier/>(검색일: 2020.9.12.))

90) Geert Sels(2014), “Het einde van de Vlaamse Bouwmeester”(https://www.standaard.be/cnt/dmf20140724_01191021(검색일: 2020.9.12.))

91) Sofie De Caigny(2018), “Opinie | Het glazen plafond van de Vlaamse architectuur”(https://www.vai.be/nieuws/opinie-het-glazen-plafond-van-de-vlaamse-architectuur(검색일: 2020.9.12.))

92) Vlaams Regering(2020), 「Visienota aan de Vlaamse Regering - Vlaams Bouwmeesterschap」, pp.1-2.

3. 덴마크 도시건축가

1)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덴마크 도시건축가(City Architect, Stadsarkitekt)는 왕실의 왕정건축가 제도로 인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도시건축가를 비롯해 도시조경가, 도시계획가 등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었으나 현재는 ‘도시건축가’만 있으며, 이들은 건축을 비롯해 도시 및 조경 등 관련 분야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 현재는 덴마크 내 98개 지자체 가운데 9개 지자체⁹³⁾에서 운영하고 있고,⁹⁴⁾⁹⁵⁾ 오덴세 시는 도시건축가 대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 위원회(the architecture council)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최근 결정했다.⁹⁶⁾

[표 5-4] 덴마크 도시별 도시건축가 현황(2020년 기준)

지역명	도입한 도시명	현 도시건축가	현재 도시건축가 임기	인구수
덴마크수도지역	København	Camilla van Deurs	2019년 ~ 현재	55만
	Frederiksberg	Claus H. Sivager		10만
	Gladsaxe	Tina Saaby Madsen	2020년 ~ 현재	6.5만
	Rødovre	Bjarne Rieckmann	2006년 ~ 현재	3.6만
북월란지역	Aalborg	Peder Baltzer Nielsen	2010년 ~ 현재	20만
중앙월란지역	Aarhus	Stephen Willacy	2012년 ~ 현재	31만
	Esbjerg	Morten Harder	2019년 ~ 현재	11만
남덴마크지역	Vejle	Lisbet Wolters	2015년 ~ 현재	10만
	Kolding	Michael Pagaard		9만

출처: Arkitektforeningen 홈페이지(<https://arkitektforeningen.dk/vi-arbejder-for/arkitekturpolitik/stadsarkitekt/>)(검색일: 2020.7.6.); LinkedIn 홈페이지(<https://gl.linkedin.com/in/stephenwillacy/de>)(검색일: 2020.7.6.); Estate Media 홈페이지(<https://estatemedia.dk/dk/2019/01/11/camilla-van-deurs-ny-stadsarkitekt-koebenhavn/>)(검색일: 2020.7.6.); 위키피디아 홈페이지(https://ko.wikipedia.org/wiki/%EB%8D%B4%EB%A7%88%ED%81%AC%EC%9D%98_%ED%96%89%EC%A0%95_%EA%B5%AC%EC%97%AD)(검색일: 2020.7.6.)

93) Aalborg, Aarhus, Esbjerg, Frederiksberg, Gladsaxe, København, Rødovre, Vejle, Kolding에서 운영하고 있음

94) 덴마크 건축가협회 홈페이지(<https://arkitektforeningen.dk/vi-arbejder-for/arkitekturpolitik/stadsarkitekt/>)(검색일: 2020.7.7.)

95) 덴마크의 행정구역은 총 5개 지역(region)과 98개의 지방자치단체(kommuner)로 구성되어 있음

96) 덴마크 팟캐스트(BYLYD) ‘총괄건축가(Stadsarkitekt) 시리즈’ #46. 참고후 저자 제작성(<https://www.podcast.com/sv/podcast/219319/bylyd>) (검색일: 2020.8.31.)

2) 행정적 지위

덴마크 도시건축가는 모두 상근직으로 정부 소속 공무원이다. 지자체마다 선정방식이 다를 수 있으나, 글라드삭스 시와 코펜하겐 시의 경우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또는 고용위원회(ansættelsesudvalg bestående))를 통해 선정한다. 이들의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건축교육을 이수하고 건축 분야에서의 경험과 도시계획에 대한 지식, 비전 및 솔루션 등이 요구되며, 이외에도 성실성, 관계 기술, 네트워크 지향적인 성향 등이 포함된다.⁹⁷⁾⁹⁸⁾ 일반적으로 시장 취임시 도시건축가를 함께 지명해 임기동안 활용하므로 시장 임기 기간과 거의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코펜하겐 시의 경우 5년 임기로 2회 연임이 가능하다. 상근직이기 때문에 월급형태로 지급이 되며, 글라드삭스 시의 경우 도시건축가 급여기준은 1년에 DKK 770,000 크로네(한화 기준 약 1억4천만 원)로 별도로 연금과 성과급이 있다.⁹⁹⁾ 도시건축가 가운데 일부는 의사결정 및 인사책임 권한까지 갖고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일부는 의사결정 권한만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¹⁰⁰⁾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바일레 시(Vejle) 한 곳밖에 없으며, 이곳은 1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개발팀’을 운영하여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인, 공무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년 향후 계획안에 대한 개괄을 작성해 보여주고 계획을 구체화하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사업을 추진한다.¹⁰¹⁾ 그리고 시급하거나 장기적으로 필요한 전략사업의 기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체 예산을 갖고 있다.¹⁰²⁾ 또한 바일레 시는 도시실험실(City Laboratory)이라는 공간을 운영해 도시의 개발 방향에 대해 시민들, 그리고 정치인들과 함께 논의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도시실험실 내 3D 스튜디오(The Cave)를 활용해 정치인 등과의 토론하기도 하는데, 아직 구상일 뿐이나 완성된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일지 보여주기 위해 건축가들이 제작하는 3D예산도라 생각하면 된다.¹⁰³⁾

97) Genitor(2019), “Job- og personprofil STADSARKITEKT BY- OG MILJØFORVALTNINGEN GLADSAXE KOMMUNE”, p.2, pp.6-7. 참고후 저자 재작성

98)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2019), “도시계획 아카데미 초청 국제 콘퍼런스 참가 및 도시공간·공공건축물 개선 우수 사례 조사를 위한 공무원외여행 결과보고”, 내부자료, p.14. 참고후 저자 재작성

99) Genitor(2019), “Job- og personprofil STADSARKITEKT BY- OG MILJØFORVALTNINGEN GLADSAXE KOMMUNE”, p.7. 참고후 저자 재작성

100) 덴마크 팻캐스트(BYLYD) ‘총괄건축가(Stadsarkitekt) 시리즈’ #46. 참고후 저자 재작성(<https://www.podplay.com/sv/podcast/219319/bylyd> (검색일: 2020.8.31.))

101) 덴마크 팻캐스트(BYLYD) ‘총괄건축가(Stadsarkitekt) 시리즈’ #39. 참고후 저자 재작성(<https://www.podplay.com/sv/podcast/219319/bylyd> (검색일: 2020.8.31.))

102) 덴마크 팻캐스트(BYLYD) 홈페이지(<http://www.bylyd.dk/39-stadsarkitektens-blik-1-lisbet-wolters-vejle>(검색일: 2020.7.7.)) 참고후 저자 재작성

103) 덴마크 팻캐스트(BYLYD) ‘총괄건축가(Stadsarkitekt) 시리즈’ #39. 참고후 저자 재작성(<https://www.podplay.com/sv/podcast/219319/bylyd> (검색일: 2020.8.31.))



[그림 5-1] 바일레 시(Vejle) 조직도(2020년 9월 기준)

출처: 바일레 시 홈페이지(<https://www.vejle.dk/media/33053/vejle-kommune-organisationsdiagramseptember-2020.pdf>(검색일: 2020.9.13.)) 참고후 저자 재작성

3) 역할

도시건축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 공무원, 건축 관련 전문가 및 시민 등 모든 사람에게 강력한 전문성을 보여줘야 하며, 모든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역할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나, 다음과 같은 공통적 역할이 있다.

- 바람직한 도시를 위한 지향점 제시

도시건축가는 무엇보다 도시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 논의를 펼치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은 정치인에서부터 시장, 중간관리자, 그리고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길 바라며, 그들의 직위를 활용해 협의하고 조정하고 싶어 한다.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직 안에 스며들어 부드러운 대화 방식 등 갖가지 방식으로 수행한다.¹⁰⁴⁾

- 시장 및 정치인, 위원장들과의 관계 맺기

도시건축가는 도시개발, 계획 및 건축에 대한 조언자(advisor)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도시의 주요 현안을 조정하고 도시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코펜하겐 시의 경우 시장 및 부시장들과의 매달 1회의 정례회의를 가지고 있으며, 각 부시장과도 정례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프레데릭스베르 시의 경우 매주 시장과 만나 논의하며, 바람직한 도시와 건축의 방향에 대한 조언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시키고 있고,¹⁰⁵⁾ 시간이 있을 때마다 도시 내부를 많이 걸어 다니며, 시장과도

104) 덴마크 팟캐스트(BLYLD) '총괄건축가(Stadsarkitekt) 시리즈' #46. (<https://www.podplay.com/sv/podcast/219319/bylyd> (검색일: 2020.8.31.)) 참고후 저자 재작성

105) 덴마크 팟캐스트(BLYLD) 홈페이지(<http://www.bylyd.dk/40-stadsarkitektens-blik-2-claus-sivager-frederiksberg> (검색일: 2020.7.7.)) 참고후 저자 재작성

함께 차를 타고 나가 무엇이 좋은 건축을 이루는지 공감시키고, 같은 눈높이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누기도 한다.¹⁰⁶⁾ 글래드삭스 시의 경우 도시전략위원회(Bystrategisk Råd)에 참여하고 있다.¹⁰⁷⁾

- 대규모 도시계획 및 프로젝트의 건축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 수행¹⁰⁸⁾

대규모 도시계획 및 프로젝트의 건축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¹⁰⁹⁾ 이를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프레임워크를 잘 짜야 결과까지 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 사업기획에서부터 관여한다.¹¹⁰⁾

- 도시건축가가 수립한 외관 매뉴얼에 따라 건축허가 시 자문 및 조정(심의)

도시건축가가 성공하려면 전략과 정책들이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닿아야 한다.¹¹¹⁾ 도시건축가가 지향하는 바가 적용될 수 있도록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외관 매뉴얼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건축허가 시 계획 내용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¹¹²⁾ 프레데릭스 베르 시 및 뢰도우레 시에서는 도시건축가를 이해시키기전에는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다.¹¹³⁾¹¹⁴⁾

-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한 지자체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

포럼, 워크숍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지자체 관계자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¹¹⁵⁾ 바일레 시의 도시건축가는 아이들, 성인 등 일반 시민을 비롯해 정치인, 관료들을 대상으로 건축과 도시에 대해 교육을 시키길 원하는데, 이것은 결국 최상의 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¹¹⁶⁾

106) 덴마크 팟캐스트(BYLYD) '총괄건축가(Stadsarkitekt) 시리즈' #40.(<https://www.podplay.com/sv/podcast/219319/bylyd> (검색일: 2020.8.31.)) 참고후 저자 재작성

107) FAOD 홈페이지(<https://www.faod.dk/stadsarkitekt-til-gladsaxe-kommune> (검색일: 2020.7.7.))

108) LinkedIn 홈페이지(<https://gl.linkedin.com/in/stephenwillacy/de> (검색일: 2020.7.7.)) 참고후 저자 재작성

109) LinkedIn 홈페이지(<https://gl.linkedin.com/in/stephenwillacy/de> (검색일: 2020.7.7.)) 참고후 저자 재작성

110) 덴마크 팟캐스트(BYLYD) '총괄건축가(Stadsarkitekt) 시리즈' #40.(<https://www.podplay.com/sv/podcast/219319/bylyd> (검색일: 2020.8.31.)) 참고후 저자 재작성

111) 덴마크 팟캐스트(BYLYD) '총괄건축가(Stadsarkitekt) 시리즈' #46.(<https://www.podplay.com/sv/podcast/219319/bylyd> (검색일: 2020.8.31.)) 참고후 저자 재작성

112) 덴마크 팟캐스트(BYLYD) '총괄건축가(Stadsarkitekt) 시리즈' #40.(<https://www.podplay.com/sv/podcast/219319/bylyd> (검색일: 2020.8.31.)) 참고후 저자 재작성

113) 덴마크 팟캐스트(BYLYD) '총괄건축가(Stadsarkitekt) 시리즈' #40.(<https://www.podplay.com/sv/podcast/219319/bylyd> (검색일: 2020.8.31.)) 참고후 저자 재작성

114) 덴마크 팟캐스트(BYLYD) '총괄건축가(Stadsarkitekt) 시리즈' #42.(<https://www.podplay.com/sv/podcast/219319/bylyd> (검색일: 2020.8.31.)) 참고후 저자 재작성

115) Estate Media 홈페이지(<https://estatemedia.dk/dk/2019/01/11/camilla-van-deurs-ny-stadsarkitekt-koebenhavn/>(검색일: 2020.7.7.))

116) 덴마크 팟캐스트(BYLYD) '총괄건축가(Stadsarkitekt) 시리즈' #39.(<https://www.podplay.com/sv/podcast/219319/bylyd> (검색일: 2020.8.31.)) 참고후 저자 재작성

□ 주요 활동 사례 예

- 바람직한 도시를 위한 지향점 및 실행방안 제시

프레데릭스베르 도시건축가는 도시 내 주요도로인 프레데릭스베르 가로수길 41번가(Frederiksberg Allé 41)를 따라 다양한 공동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외부활동을 지향하는 여러 계획 시행하였다.¹¹⁷⁾

- 건축허가 시 자문 및 조정(심의)

바일레 시 도시건축가는 보존이 필요한 양질의 건물 소유주들을 알아내려고 노력해왔다. 시에서 직접 매입을 하는 것도 방법이나,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지속적으로 정치인들에게 본인이 생각한 바와 건물이 가진 가능성이 무엇인지 설명해왔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보존계획이 수립된 경우 도시건축가의 허락 없이 건물 소유주는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또한, 바일레 시 도시건축가는 건축물 높이 관리를 위해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녹색스카이라인 유지를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¹¹⁸⁾

- 건축물 관리

바일레 시 도시건축가는 침하 손상이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의 소유주들을 알아내고 그들과의 대화를 시도하였다. 이는 막대한 공공투자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가로서, 시의회와 함께 다뤄야 하는 과업이기 때문에 추진하였다.¹¹⁹⁾

- 대규모 프로젝트 총괄 조정 : 이르마비엔(Irmabyen) 개발 프로젝트

뢰도우레 시 도시건축가가 지향하는 도시의 모습인 '혼합된(mixed) 도시'를 조성하고자 개발자와 함께 진행한 사례로, 의도적으로 다르게 계획한 건물 유형이 있는 24개의 대지를 통합해 지하주차장을 계획했으며, 이곳에 전체 주차대수의 절반가량을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교외지역 치고는 급진적인 해결책으로 논쟁이 있을 거라 예상될 수는 있겠으나, 개발자들이 제안한 내용 안에서 이점을 찾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시 큰 어려움은 없었다.¹²⁰⁾

117) 덴마크 팻캐스트(BLYD) '총괄건축가(Stadsarkitekt) 시리즈' #40 (<https://www.podplay.com/sv/podcast/219319/bylyd> (검색일: 2020.8.31.)) 참고후 저자 재작성

118) 덴마크 팻캐스트(BLYD) '총괄건축가(Stadsarkitekt) 시리즈' #39 (<https://www.podplay.com/sv/podcast/219319/bylyd> (검색일: 2020.8.31.)) 참고후 저자 재작성

119) 덴마크 팻캐스트(BLYD) '총괄건축가(Stadsarkitekt) 시리즈' #39 (<https://www.podplay.com/sv/podcast/219319/bylyd> (검색일: 2020.8.31.)) 참고후 저자 재작성

120) 덴마크 팻캐스트(BLYD) '총괄건축가(Stadsarkitekt) 시리즈' #42 (<https://www.podplay.com/sv/podcast/219319/bylyd> (검색일: 2020.8.31.)) 참고후 저자 재작성



[그림 5-2] 덴마크 뢰도우레시 이르마비엔 개발구역 전경 예시

출처: Grøning Arkitekter 홈페이지(http://groning-arkitekter.dk/___impro/1/onewebmedia/IrmaByen_14-1030x702.jpg?etag=W%2F%225d6b4-58aae9d2%22&sourceContentType=image%2Fjpeg&ignoreAspectRatio&resize=1000,682&extract=0,99,1000,484(검색일: 2020.9.2.))

4) 운영 특성

- 전담조직 및 도시실험실 운영을 통한 비전 제시

덴마크 내 도시건축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바일레 시에서만 ‘프로젝트 개발팀’을 운영하고, ‘도시실험실’이라는 공간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다 쉽게 정치인, 공무원, 시민들에게 향후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토론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담조직이 있기에 전략사업 등에 대한 기획수립에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예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시장의 파트너 역할 수행

시장과 임기를 동일하게 운영하는 만큼 시장의 파트너로서 건축 및 도시 관련 정책적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의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을 높이고 공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 내 모든 도시건축가는 상근직이며, 높은 급여를 지급받으나, 그만큼 까다로운 자격기준을 갖고 있다. 특히 건축 및 도시 분야에서의 학위와 경험 외 관계 기술, 네트워크 지향적인 성향이 자격기준에 포함된 것이 특징적이다.

- 민간영역에 동일한 서비스 제공

도시건축가는 공공 및 민간 건축물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도시개발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으며, 도시 속 특별한 요소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¹²¹⁾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덴마크 도시건축가는 모두 상근직으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한계

덴마크는 네덜란드 및 벨기에처럼 국가단위, 주정부단위의 총괄건축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총 98개 지자체 가운데 단 9개 지자체에서만 도시건축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도시건축가 1인에 대한 높은 인건비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러한 투자가 성공할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도시건축가를 위촉했을 때 이들이 가진 특권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도시건축가 임명 후 이들이 많은 요구를 하도록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¹²²⁾ 그리고 도시건축가가 조언을 한다 치고 그들을 넘어 설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¹²³⁾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도시건축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직 내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없기에 도시건축가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지자체에 도시건축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가 건축의 질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발자 등을 초기부터 프로젝트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은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¹²⁴⁾

121) Estate Media 홈페이지(<https://estatemedia.dk/dk/2019/01/11/camilla-van-deurs-ny-stadsarkitekt-koebenhavn/>(검색일: 2020.7.7.)) 참고후 저자 재작성

122) 덴마크 팟캐스트(BLYD) '총괄건축가(Stadsarkitekt) 시리즈' #40(<https://www.podplay.com/sv/podcast/219319/bylyd>(검색일: 2020.8.31.)) 참고후 저자 재작성

123) 덴마크 팟캐스트(BLYD) '총괄건축가(Stadsarkitekt) 시리즈' #46(<https://www.podplay.com/sv/podcast/219319/bylyd>(검색일: 2020.8.31.)) 참고후 저자 재작성

124) 덴마크 팟캐스트(BLYD) '총괄건축가(Stadsarkitekt) 시리즈' #46(<https://www.podplay.com/sv/podcast/219319/bylyd>(검색일: 2020.8.31.)) 참고후 저자 재작성

4. 국내에의 시사점

[표 5-5] 해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현황 종합

구분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유형 (도입 수)	국가건축가 주정부총괄건축가(7/12) 도시(총괄)건축가(14)	주정부총괄건축가(2/3) 도시총괄건축가(3)	도시건축가(9/98)
위상	명문화 X	명문화 X	명문화 X
위촉방식	공개모집	공개모집 *7단계 선정절차	공개모집
임기	지자체에 따라 다름 *4년 /10년 등	지자체에 따라 다름 *5년 이상의 임기 보장 등	지자체에 따라 다름 *시장 임기와 거의 동일 *5년 임기(2회 연임 가능) 등
근무방식	상근 or 비상근	모두 상근	모두 상근
보수기준		연봉 85,895~110,494 유로 (한화 기준 약 1억2천만 원 ~1억5천만 원) *휴가비 및 성과금 별도 지급	연봉 DKK 770,000 크로네 (한화 기준 약 1억4천만 원) *연금 및 성과금 별도 지급
연구조직	국가·철도총괄건축가만 운영 주정부·도시총괄건축가 별도 연구조직 운영X	모두 운영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총괄건축가 임기와 무관)	1개 지자체(바일레 시(Vejle))에서만 운영

출처: 저자 작성

□ 국가·주정부·도시단위로 다양하게 운영, 제도 도입 필요성과 우려 국내와 비슷

살펴본 세 나라의 경우, 국가건축가를 비롯하여, 주 단위, 도시단위 등 행정위계별로 총괄건축가를 운영하고 있다. 총괄건축가 제도를 가장 앞서 운영한 네덜란드의 경우 주로 중소도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벨기에와 덴마크는 아직까지 많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최근 암스테르담이 1967년에 운영을 중단한 이후 총괄건축가를 다시 운영 하자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총괄건축가 1인이 아닌 전문화된 전문 조직과 사업총괄건축가, 건축정책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긴 하나, 반대로 모빌리티의 변화 및 새로운 지역과의 관계 등 일관성이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총괄건축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해외 사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내와 여건이 다르겠으나,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이 담당계획구역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 건축과 도시의 질적 수준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점을 해결하고, 건축의 질을 높여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통합적인 사고에서 도시를 바

라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다뤄가기 위해 총괄건축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본 제도의 도입취지가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총괄건축가 제도가 가진 권위적인 성격과 불투명성으로 인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점, 책임지지 않는 임시직이라는 비판, 유명 건축가의 명성에 의존한다는 비판, 위촉 이후 이들의 요구를 다 받기 어려운 정치적 입장 등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다.

□ 임기 및 근무방식과 업무 대상범위 : 5~10년 임기 + 상근직 + 민간영역까지

네덜란드는 비상근직 또는 상근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벨기에 및 덴마크는 모든 총괄건축가가 상근직으로 조직 내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 임기는 일반적으로 5년 내외, 연임 가능으로 국내에 비하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의 경우 시장 취임 시 도시건축가를 함께 지명해 임기동안 활용하므로 시장 임기 기간과 거의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통상 2년의 임기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세 나라 모두 총괄건축가 업무 대상이 공공사업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민간영역까지 확대되어 있는데, 이는 상근직으로 운영되는 근무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도 일부 민간영역의 대규모개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진정한 도시의 비전과 미래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업무범위 대상의 확대는 위상과 근무방식 등 총괄건축가의 운영체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위상정립 미비

네덜란드는 총괄건축가가 건축허가에 대한 자문과 조정(심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택법(Woningwet) 상 명시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세 나라가 위상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측면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해외의 경우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총괄건축가의 위상정립이 미흡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총괄건축가들은 명확한 위상, 책임 및 예산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본 제도의 성공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 선정기준

벨기에의 경우 주정부 총괄건축가 선정과정은 총 7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만큼 매우 까다롭다. 누구나 똑같이 이력서를 제출하고 적합성 평가를 거친 후 사전 인터뷰 및 직무

역량 시험을 치른 후에야 후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비로소 최종 인터뷰를 통해 임명이 된다. 벨기에의 경우 총괄건축가는 주지사 또는 시장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면서 바람직한 건축 도시를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등 책임감이 있으면서도 명예로운 자리라는 인식이 정립되어 있다. 전문성과 인성을 모두 갖추었다는 인정을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받는 자리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지역별로 역량과 인식의 편차가 커 총괄건축가가 A부터 Z까지 다양한 업무와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명예보다는 고된 일로 여겨지고 있어 선정기준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럼에도 선정절차의 논란이 없지 않은 만큼, 국내의 경우 최소한 광역단위 총괄건축가의 선정과정은 보다 공식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전담조직 및 도시실험실 운영을 통한 비전 제시 등의 역할 수행

네덜란드 국가건축가의 ‘아플리에’, 덴마크 바일레 시의 ‘프로젝트 개발팀’ 및 ‘도시실험실’, 벨기에의 ‘Bouwmeester’ 등은 총괄건축가가 개인으로 업무를 하지 않고 별도의 전문가팀 혹은 연구팀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 사례들이다. 이들은 국내의 공공건축가 운영과 달리, 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바람직한 도시를 위한 지향점을 제시하거나, 대규모 도시계획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의 건축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주택문제, 도시공원문제, 청년주택확보문제 등 국가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전담인력이나 전문직 공무원(임기제), 전담부서 신설도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는 전담조직 신설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으나, 총괄건축가 제도의 취지를 볼 때, 증장기적으로 연구조직을 운영하던가 현재 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관련 업무들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교류, 네트워크, 소통 강조 및 활동 :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

국가, 주정부, 도시 등 다양한 유형의 총괄건축가를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총괄건축가들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정기적으로 공동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덴마크 도시건축가는 일반 시민을 비롯해 정치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포럼, 워크숍 및 토론회 등을 통해 건축과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라고 언급했다.

□ 시장 및 정치인, 위원장들과의 관계 맺기 및 정치인, 공무원 등 역량 강화 활동

특히 도시건축가는 무엇보다 도시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 논의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인에서부터 시장, 중간관리자, 그리고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협의와 조정을 위해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시장 및 부서장들과의 매달 1회의 정례회의를 갖는 것, 각 부서장과도 정례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 시장에게 바람직한 도시와 건축의 방향에 대한 조건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 무엇이 좋은 건축을 이루는지 공감시키는 것 등의 활동들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었다. 총괄건축가 활동에 자치단체장과 부서장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사항임을 공유하고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고 협의해야 하고, 주변 지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소속되면 안 된다. 따라서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더불어 권력화 및 정치화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국내에서의 시사점 종합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에서의 시사점을 종합하면 첫째, 바람직한 도시를 위한 방향이나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내에도 현재보다 임기를 보다 장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다 다양한 활동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에도 전문연구조직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내 운영체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활동을 공공건축가와 함께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무원 외에 시장, 정치인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반면에 국가건축가를 도입하는 것, 민간영역까지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 상근직으로의 운영을 적극 추진하는 것 등은 국내 실정과 상황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제6장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운영실태 분석 종합 및 개선방향
 3.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모델 제시
 4. 제도 개선방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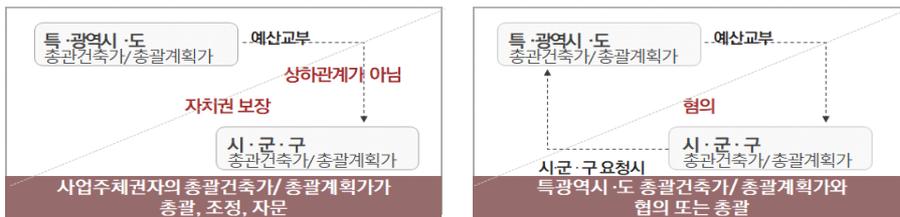
1. 기본방향

국내 지자체에서 위촉·운영 중인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민간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활동현황과 애로사항,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020년 5월 13일 기준 지자체 민간전문가를 운영하고 있는 총 39개 지자체는 도시규모나 재정능력, 행정역량, 지역건축사 및 전문가 수, 접근성 등 여건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대두된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실제 운영 실태와 다르게 이해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첫째, 제기된 이슈를 토대로 민간전문가 간담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지자체 운영 실태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둘째, 지자체 특성 또는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획일적, 일률적 기준보다는 방향이나 원칙 등을 제시하고, 필수사항과 권장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며, 셋째,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가 민간전문가 제도 취지에 맞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과 업무에 관한 규정은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1.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지위는 부단체장급으로 위상정립이 중요하다.¹²⁵⁾
2. 도 단위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운영 필요하다.
3.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는 도시규모별로 다르다기보다는 행정위계·도시규모별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주요하게 수행해야 할 업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는 단순한 일회성 자문은 지양하여 기존 일반 '자문위원'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5. 공공건축가 업무와 역할은 공공건축가가 해당 지역 공공건축가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6. 광역(도·특광역시)과 기초(시군구)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상하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



[그림 6-1] 민간전문가 상호간 관계 개념도

출처: 심경미(2019),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이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2019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공공건축 정책 및 제도의 이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94.(2019.7.16)

7.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민간전문가 활용의 지속적 안정적 운영보다는 지자체 행정역량의 강화, 행정조직의 전문화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토대로, 민간전문가 운영 실태를 위축 및 근무 관련, 역할 및 업무수행 관련, 운영체계 및 조직 관련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한 후, 그에 따른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은 크게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모델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9년 7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그 밖에 임기, 자격기준, 보수기준 등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법 개정 사항과도 연계되고 있어, 제도 개선 방안에는 법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개성(안)에 제시하였다.

125) 지자체 행정은 크게 행정과 건설로 구분되므로, 타 분야와 달리 건축·도시 분야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부단체장급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운영실태 분석 종합 및 개선방향

1) 위촉 및 근무 관련

[표 6-1] 운영실태 분석 종합 및 개선방향 : 위촉 및 근무 관련

주요 이슈 종합	분석 결과 및 개선방향	개선 방안
1. 위촉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 절차의 공정성(선정방식, 위촉주체) + 전문가 풀 확보의 어려움	전문가 풀 확보의 어려움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위촉 과정 투명성 제고 방안 필요(공개모집 및 심사 진행)	민간전문가 목록 아카이브 시행 및 자료 공개 선정과정 강화를 위해서는 위상과 책임 권한 명확화가 선 해결될 필요
- 자격기준 문제 : 주관적, 법과 다른 기준	○ 조례와 근거법 관련 규정의 정합성 확보 필요	조례 및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법 개선 필요 <i>⇒ 법 개정</i>
2.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위상 문제 + 임기	● 위상확보를 위한 방안 강구할 필요	상근직 운영(공무원 조직내 편입) 시장 및 공무원 인식 개선 임기 규정 개정(기간의 확대) - 최소 3년 이상 또는 기본 5년(연임 가능) 또는 지자체장과 동일임기 <i>⇒ 법 개정, 가이드라인 개정</i>
3. 공공건축가 구성 문제 - 신진건축사 배제, 지역건축사 비율	X 특정 지역의 문제에 해당 + 지역건축사 협력체계 마련 필요	-
4. 보수지급체계 : 보수기준, 지급방식	○ 위상 정립과 연계하여 보수지급체계 개선 필요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보수지급기준 및 방식 - 근무일수가 아닌 월급제 지급 공공건축가 보수지급기준 세분화 - 활동업무별 보수지급기준 마련 <i>⇒ 법 개정, 가이드라인 개정</i>

출처: 저자 작성

□ 전문가 인력풀 아카이브 실시 및 자료 공개 필요

위촉과정에서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전문가 풀 확보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괄의 역할을 볼 때, 객관성이나 공정성 보다는 지자체장과의 파트너로서 협력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도 있어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현재는 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풀을 공공에서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현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민간전문가 운영현황과 위촉된 전문가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민간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목록은 제공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문가 인력풀에 대한 조사와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 조례 및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자격기준 관련 법 개정 필요

국토부 지원사업에서는 법적인 자격에 준하여 지원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 자체적으로 위촉하는 경우 현행 법규정의 자격기준보다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법적 기준에 맞지 않은 전문가들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부 관련조례 규정에서 자격기준을 지자체장이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의 법 규정은 외국건축사 면허만 갖고 있는 경우나 실제로 총괄 또는 공공건축가의 역할을 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실무자들은 민간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미 일부 조례에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고 자격기준의 논란이 있는 만큼, 관련 법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위상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강구 필요

- 방안1. 상근직으로 운영, 공무원 조직에 편제되어 위상정립

국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위상정립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할 역할과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민간전문가는 그야말로 행정조직 밖에 있기 때문에, 현 규정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근본적으로 위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부 해외에서와 같이 상근직으로 공무원조직에 편제되는 것이다. 국내에서 수원시가 처음으로 공무원직제 속에 편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민간전문가 근무방식이 비상근직 외에 상근직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방안2. 지자체 장 의지 또는 인식개선을 통한 위상 정립

국내·외 사례를 볼 때 공무원 조직에 편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전문가 위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자체 장의 의지 또는 인식개선을 통해, 지자체 장 스스로 민간전문가의 필요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부서장과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지시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내부방침과 결재권 부여 등을 통해 위상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선행되어야 갈등이나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국내 실정은 아직까지 지자체 장들의 의지와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므로, 첫째 해당 지역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자치단체장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둘째 국가차원에서 지자체 장 인식개선을 위한 역할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방안3.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위상 법제화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위상을 법적으로 명확히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도 일부 국가는 법적으로 막강한 권한(건축심의 허가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으로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역할과 업무수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적으로 민간전문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위상을 법제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여건과 담당자들의 역량에 편차가 커서, 현재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업무는 A부터 Z까지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지역의 미래상과 비전을 설정하거나, 보다 중요한 정책업무를 지원하거나, 공공건축가와 새로운 선도사업을 발굴·추진하거나, 공공사업 발주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보다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위상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공공을 위한 노력봉사가 아닌, 실력과 인성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자리로 민간전문가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꼭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된 이후라면 벨기에처럼 선정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보다 공식적인 선정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 지자체 장과의 파트너십이 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명선정방식도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 절차라 판단된다.

네덜란드 총괄건축가 제도 역할 및 위상

네덜란드 총괄건축가의 역할은 첫째, 해당 지자체의 도시 비전, 계획 및 프로젝트를 위한 외부 자문가 역할이며, 둘째, '건축허가 시 미적인 측면을 자문하고 조정하는 외부 전문가로서의 역할'이다. 총괄건축가는 '도시공간 개발과 계획에 대한 독립적인 자문 수행을 통해 지자체의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건설하는데 있어 민간 전문가로서 공간 품질을 높여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총괄 건축가는 각 부서에서 요청되는 프로젝트의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법적인 측면에서 총괄건축가의 지위와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의회의 요청에 의해 독립적인 외부 자문을 시행하거나, 공식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위치를 갖지 못하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Amersfoort시의 도시 총괄 건축가였던 Noud de Vreeze(2008년~2011년 임기)는 일부 다른 문제들이 있기도 했었지만 조직 내에서 명확한 위상, 책임 및 예산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출처: Noud de Vreeze(네덜란드 Amersfoort시 前도시총괄건축가, 2008-2011년) 이메일 인터뷰 내용(19.3.11.)

- 임기기간과 보수지급체계 위상에 걸맞게 관련 규정 개정할 필요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임기기간과 보수지급체계가 위상에 걸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부단체장급의 위상을 갖기에 임기기간이 기본 2년은 다소 짧다고 볼 수 있으며¹²⁶⁾, 근무일수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은 일용직의 업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다. 비

상근으로 근무하더라도 위촉되어 있는 동안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로서 업무를 특정한 날에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인 점을 고려할 때, 보수지급체계 역시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 상위 기본계획들의 재정비 수립기간이 보통 5년인 점, 해외의 경우 5년을 기본으로 연임할 경우 10년까지 활동이 가능한 점, 시장의 임기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하여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역할과 위상에 걸맞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할 만하다.

□ 공공건축가 지역건축사 구성 비율 보다는, 지역건축사들과 협력관계 형성 중요

공공건축가 구성원에 지역건축사 비율보다는 실제로 지역건축사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 보다 중요하다. 민간전문가 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지역건축사들의 역량강화에도 있기 때문이다. 공공건축가로 참여하지 않는 지역건축사들은 설계공모나 입찰 등을 통해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당사자들이다. 결국 민간전문가 활동을 통해 지역의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고 좋은 공공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건축사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공공건축가 풀에 지역건축사 구성 비율 보다는 실제로 지역건축사들과 어떻게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내지는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는 현재보다 좋은 품질 및 디자인의 공공건축, 공공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건축사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외부 건축기들과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¹²⁷⁾

□ 공공건축가 업무 및 활동사항 다양화에 따라 세부적 지급기준 마련 필요

공공건축가 보수지급기준은 대부분 자문활동에 한정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공공건축가 업무는 단순한 자문활동은 자제하고, 특히 설계단계에서의 자문은 지양하고 건축기획단계의 자문은 권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축기획 심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기획업무를 직접수행하거나 선도적 시범사업의 경우 설계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과 업무에 적합하게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126)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자체에서 별도의 임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례에서도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2년보다 길게 활동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2년 임기를 설정하고 있어 2년이 상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은 현재 부여군(5년), 영주시(보통 4년) 2지역 정도뿐임

127) 영주시에서는 건축기획업무는 외부 건축사(공공건축가)가 수행하고, 설계 및 시공감리는 지역건축사가 수행하되 공공건축가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 및 시행단계에서 공공건축가가 지역건축사와 협력적 관계를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례가 있음

2) 민간전문가 역할 및 업무수행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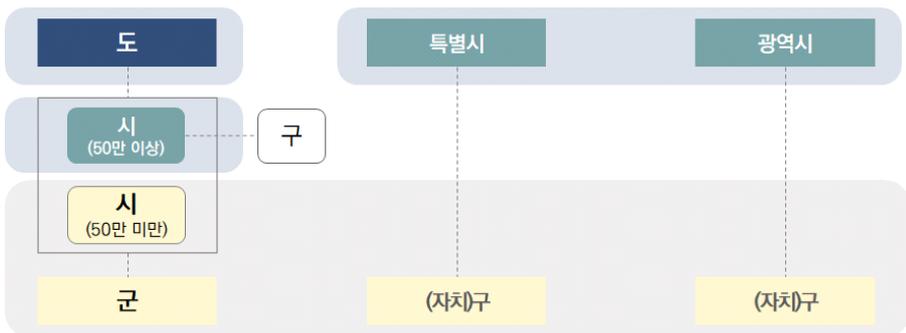
[표 6-2] 운영실태 분석 종합 및 개선방향 : 민간전문가 역할 및 업무수행 관련

주요 이슈 종합	분석 결과 및 개선방향	개선 방안
1. 도 민간전문가 운영 필요성 및 업무 차별화 + 특광역시 산하 관할 기초지자체 운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민간전문가 운영 필요 ● 도 민간전문가 업무 특광역시 및 기초와 다른 점 명시 필요 	행정단위별/도시규모별 지역 여건 및 고려사항을 설명하고, 중점을 두어야 할 주요 업무를 설명, 제시 <i>☞ 가이드라인 개정</i>
2. 도시규모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 자문업무의 실효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단위별/도시 규모별 업무 차별화 보다는 중요도 전달될 수 있게 제시 ● 자문업무의 실효성 확보 필요 	조정 또는 자문의 역할을 명확히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계 마련 공공건축가 활동에 대한 피드백, 모니터링 체계 마련 공공건축가 활동에 명분과 사명감을 줄 수 있는 운영체계 마련 <i>☞ 가이드라인 개정</i>
3. 공공건축가 업무 - 직접설계 참여의 적절성 - 공공건축가의 역할과 권한(조정 or 자문) + 참여 시점 + 건축기획업무 직접 수행 + 공공성있는 업무 수행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업무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참여 시점 공유 필요 ● 공공성있는 업무 수행체계 마련 필요 ● 직접설계 및 건축기획 직접참여 필요 시 참여 	공공건축가 설계 및 건축기획업무 직접 수행에 대한 원칙과 기준 명시 <i>☞ 가이드라인 개정</i>

출처: 저자 작성

□ 행정구역별 민간전문가 운영 : 도, 특광역시, 시, 군, 자치구에 운영 필요

민간전문가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볼 때, 도·특별시·광역시 산하 시·군·구(자치구) 기초 자치단체에서 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도의 경우, 도 단위 또는 국가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을 도 차원에서 결정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관할 지자체 내 민간전문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도입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의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림 6-2] 민간전문가 운영 필요 지자체 단위 구분

출처: 저자 작성

□ 도시규모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차별화 : 보다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를 설명

20.7월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의 내용에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빼거나 별도로 추가해야 할 사항은 거의 없다. 다만,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수행해야 할 업무들의 중요도 내지는 우선순위 혹은 필요성에 대한 설명 없이 나열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현재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만 구분되어 있는데, 이보다 더 세분화하기 보다는 도시규모별로 다른 여건과 고려사항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를 토대로 보다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 주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도시규모별 여건과 고려사항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6-3] 지자체 규모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차별화를 위한 여건 및 고려사항

운영모델 정립 전		운영모델 정립 후	
구분	시나리오	여건 및 고려사항 정리	구분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가 운영 위주인가? • 도 종합계획, 법정기본계획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비 지원사업의 주체가 시·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접 자문·조정 업무 최소화 할 필요 • 관할 시·군의 업무 차별화 고려할 필요 : 도단위, 국가단위 차원의 프로젝트에 중점 	도
특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들의 업무 찾기, 연계조정 업무는 약함, 조직화(시스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지역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을 위한 역할에 집중할 필요 	도 특·광역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좌지우지되기 쉬움 • 소규모 사업들 관리에 매몰되는 경향, 공공건축가에게 일임하는 구조 만들기 • 도 지원사업 신청은 개별부서에서 추진, 도 직접사업 신청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규모 시, 군, 구와 다르게 공간적 범위 넓고 대상이 광범위함, 자문의 역할 제한적 • 프로젝트가 많아 개별 사업 자문에 매몰될 수 있는 점 주의할 필요, 공공건축가에게 일임하는 구조 만들 필요, 협력적 구조 만들 필요 • 대규모 칸막이 조직 속에서 본인들의 업무 찾을 필요(틈새업무, 새로운 사업 기획 및 발굴, 선도 사업 추진 등) • 대규모 조직을 감당한 조직화(시스템화) • 프로젝트 간 연계조정 업무는 약함 	특·광역시 대규모 시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 지역에 필요한 사업 발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중심의 사업 및 계획 자문, 설계공모 운영 중점관리 가능 •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좌지우지되기 쉬움, 시장과의 관계 형성, 인식개선 중요 • 개별 사업들 관리에 매몰되는 경향 주의 • 공공건축가와 협력적 관계 만들 필요 • 도/특광역시 직접사업 신청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 만들 필요 • 지역주민과 지역에 필요한 사업 발굴하기 	중소규모 시 군 자치구

출처: 저자 작성

도시규모별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중점을 두어야 할 업무의 내용은 간담회 및 운영실태 사례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으며, 도 - 특·광역시 - 대규모 시 - 중소규모 시·군(자치) 4단계로 구분하여 보다 중요하게 수행해야 할 업무 및 공통 업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4] 행정단위별/도시규모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주요업무(안)

도	특광역시	대규모 시	중소규모 시·군·자치구
1. 도단위 법정 비법정계획 검토 자문 2. 도지사 주요 정책 사업 지원 3. 도차원/국가차원의 주요 프로젝트 선별하여 총괄조정자문 4. 신규 프로젝트 및 업무 발굴	1. 신규 프로젝트 및 업무 발굴 2. 선별적 프로젝트 조정 및 자문 3. 시장의 주요 정책 사업 지원 4.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총괄 조정 및 관리		A. 개별프로젝트 조정·자문, 특히 중복·연계 사업 조정·자문 B. 국비지원 프로젝트 자문 및 조정 C. 법정·비법정계획 검토 자문(정합성 확보) D. 지역의 비전 및 미래상 만들기: 지역 연구 관련 프로젝트 및 기획, 신규 프로젝트 및 업무 발굴 E. 일부 주요 프로젝트 직접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지자체 민간전문가 도입 관련 활동 공공건축가 파견 지원 운영체계 마련 관할 지자체 민간전문가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	
(공통) 공공건축가 운영·지원 (공통) 사업발주방식 검토·지원, 설계공모 관리·자문 (공통) 교육, 홍보: 특히 초기단계 제도 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출처: 저자 작성

□ 공공건축가 업무

- 자문 : 기획단계의 자문이 중요, 설계단계 디자인 자문은 지양할 필요

공공건축가의 자문은 면피용,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설계, 시공과정에서의 자문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초기인 기획단계에서 공공건축가가 참여하여 자문하는 것이 필요하며 디자인의 자문보다 사업 추진 과정상의 애로사항의 해결방안 제시, 사업의 방향, 유관사업과의 연계 및 조정 등의 자문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개별 프로젝트 일회성 자문보다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여 총괄·조정 (MP)

공공건축물 및 공공사업의 기획단계 강화, 설계의도 구현, 시공품질의 확보 등을 위해 사업의 전 과정(건축기획-설계-시공)에 공공건축가가 참여하여 총괄·조정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공공건축가가 사업시작 초기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권한(총괄·조정)에 대해 사업부서 담당자 및 수행업체, 공공건축가 모두가 공유한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건축기획업무는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

기획단계의 건축기획업무는 불필요한 사업을 사전에 줄이고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공공건축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문 또는 직접수행 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설계업무 직접수행은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수의계약 범위 또는 지명설계에 의한 공공건축가가 직접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양한다. 이것은 공공건축가들에게 특정한 공공사업을 맡긴다는 형평성 논란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건축가들조차 공공건축가가 되면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오해를 갖게 하여 민간전문가 본래의 취지를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설계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다만, 국내에 민간전문가 제도에 대한 인식과 효과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진한 상황인 점, 지방소도시의 경우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시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 지역에 공공성을 높여야 하거나 공공성 확보에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귀찮은 업무로 취급하거나, 작은 규모의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건축가가 적극 참여하여 직접설계를 할 수 있다. 가령, 선도적인 시범사업, 전문성 및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난이도가 높은 사업,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중요사업 등으로 한정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되, 기본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설계업무 직접 참여가 공공건축가가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 주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공감대와 인식이 확립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설계업무 직접 수행여부를 이분법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원칙적으로는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공공건축가가 직접 참여해야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건축가 운영체계

- 조정 또는 자문의 역할을 명확히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계 마련 필요 ①

공공건축가 업무 운영체계는 대부분 공공건축가 참여를 요청하는 사업부서 신청절차 위주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공건축가가 해당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역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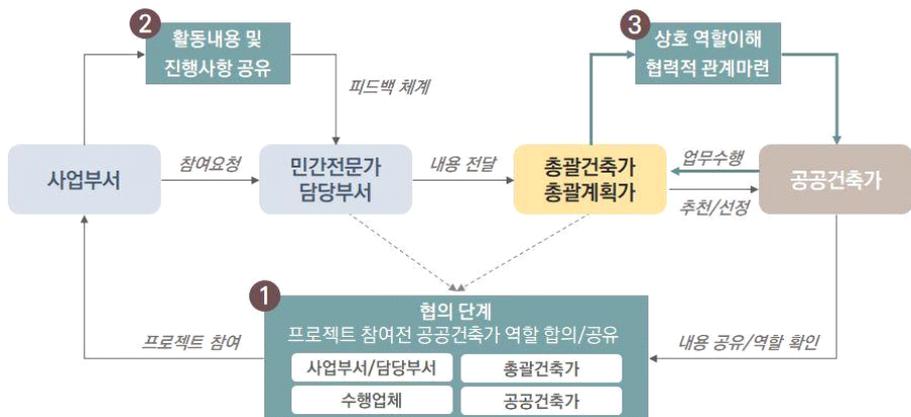
해야 하는지 협의 또는 공유하는 과정(단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건축가들은 사업의 조정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사업부서 및 수행업체는 단순 자문을 원할 경우, 공공건축가 참여시 상호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공공건축가 활동에 대한 피드백, 모니터링 체계 마련 필요 ②

공공건축가나 개별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후 자문한 내용 등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이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일회성 자문이 아닌, 사업추진을 일관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체계라 할 수 있다. 특히 공공건축가가 건축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자문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전 과정을 관여할 수 있게 운영체계를 만들고 업무활동에 대한 피드백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공공건축가 활동에 명분과 사명감을 줄 수 있는 운영체계 마련 필요 ③

공공건축가 간담회를 통해 공공건축가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명분과 사명감을 부여해주는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공공건축가들과 정기적 모임을 갖고 진행상황을 상호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거나, 공공건축가에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이를 정책화/사업화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림 6-3] 공공건축가 업무수행체계 개선방향 개념도

출처: 저자 작성

3) 운영체계 및 조직 관련 등

[표 6-5] 운영실태 분석 종합 및 개선방향 : 운영체계 및 조직 관련

주요 이슈 종합	분석 결과 및 개선방향	개선 방안
8. 별도 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	● 전담인력(임기제 공무원) 총원 필요 전담조직 신설 필요	전문관제도 도입 광역단위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전담조직 구성을 권장 <i>※ 가이드라인 개정</i>
9. 민간전문가 유관조직들과 민간전문가 담당 부서와의 관계	○ 담당부서 동일하게 운영할 필요 동일하지 않을 경우, 연계운영 방안 마련 필요	<i>※ 가이드라인 개정</i>
10. 유관조직과 민간전문가 관계 설정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민간전문가 + 건축정책위원회와 민간전문가	● 유관조직별로 민간전문가 관계 설정 필요	건축정책위 외에 두 조직과 민간전문가 관계에 대한 관련 규정 추가 <i>※ 가이드라인 및 법 개정</i>
11. 분야별 전문가 운용의 문제 + 추가할 업무내용에 대한 의견 +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 어려움 + 공공건축가 교육 및 교류 필요(건축기획, 사전검토 관련)	○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관련 교육 필요	공무원 외 건축가들 대상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12. 민간전문가의 역량,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행정부서의 역량	○ 교육 필요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마련 필요	전문관제도 도입 전담조직 구성을 권장 <i>※ 가이드라인 개정</i>

출처: 저자 작성

□ 전문인력 확보, 전문관제도 도입 및 전담조직 신설을 위한 방안마련 필요

민간전문가 지원업무를 담당할 부서는 해당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므로 건축 및 도시와 관련된 부서일 필요가 있으며, 해당 업무를 전담한 인력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 국내 운영현황을 볼 때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진행에 차질을 주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 및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전문인력)을 위촉하거나 전문관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전문관제도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해당하여 5년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문과 수당, 승진가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사항이므로, 센터 설립 시 센터에서 민간전문가 지원 및 운영업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3(전문직위의 지정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 ③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에서는 5년이 경과하여야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에는 전보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에서 우대해야 하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0.9.14)

□ 유관조직과 민간전문가 관계설정에 대한 가이드 제시 필요

지역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 지역공공건축지역센터는 민간전문가 업무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유관조직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의 운영체계에서는 ‘시·도 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시·군·구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로 위촉·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19년 12월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및 공심위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건축정책위원회 외에 다른 두 조직에 대해서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가 해당 조직에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존 가이드라인과 동일

해당 지역의 건축 관련 정책 및 행정 개선, 건축문화 기반조성 등을 위해 건축정책위원회 구성을 권장하며,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지역 건축정책이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 가이드라인에 해당 내용 추가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업무를 지역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대체로 ‘도 및 특·광역시’ 단위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므로 이를 반영한다. 센터에서 수행할 사전검토 대상은 추정설계비 1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사전검토 의견을 자문할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여기에 공공건축가가 포함될 수 있다. 자문단의 공공

건축가가 심의위원회에 중복되어 운영될 경우, 심의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중복되어 운영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자문단에 포함된 공공건축가는 본인이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검토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가이드라인에 해당 내용 추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추정설계비 5천만 원 이상의 공공건축 사업 추진 시, 설계공모 발주 전 공심위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나 공공건축가가 자문이나 건축기획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는 것은 객관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개별 프로젝트의 자문이나 건축기획 업무를 공공건축가에게 일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공심위 위원장을 맡는 것이 오히려 적합할 수 있다. 즉, 공심위에 총괄 또는 공공건축가가 구성원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한지의 여부는 그들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업무가 연관성이 높을 경우는 배제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구성방향에 대한 원칙을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

□ 건축정책 및 건축기획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개선 필요

특히, 현재 건축정책위원회에서 공공건축심을 수행하는 지자체가 있어, 관련업무의 합리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유관조직 운영부서와 민간전문가 운영부서와의 연계 운영체계 마련 필요

전술한 3개의 유관조직은 소관법률에 따라 대부분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민간전문가 지원 및 담당부서가 건축과가 아닌 경우, 건축정책 및 건축기획업무가 두 개의 부서로 이원화되어 운영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3개의 유관조직에서의 자문, 심의, 사전검토 업무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가 수행하는 활동사항이 일관성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민간전문가 활동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일관성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 담당부서, 관련 위원회 및 센터와의 연계 운영 권장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업무에 대한 교육 시행 필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관련 학·협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등에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외에 건축사들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단위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모델 제시

1)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및 운영 개정(안)

□ 중소규모 시 및 군·구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활동과 운영

여건 및 고려사항

- 도·특광역시 및 대규모 시와 다르게 다루는 공간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한정적이라 지역 내 발생하고 있는 관련 사업 및 계획의 자문 업무와 설계공모 운영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장소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고, 특히 군지역은 원도심 등 특정지역에 여러 사업들이 중복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율적이고 일관된 사업진행을 위해 관련 사업들의 연계·조정업무가 중요하다.

주요 업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위프로젝트 조정·자문 역할 : 중소도시 및 군, 구 단위에서는 단위프로젝트로 인한 지역 여건변화가 광역에 비해 높아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조정·자문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지역의 비전 및 방향, 중요도, 연계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집중 수행 할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선별된 주요 단위프로젝트를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직접 조정·자문역할을 수행하거나 공공건축가를 지정하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국비지원 중복사업 또는 연계사업들 간의 연계·조정 중요 : 중소규모 시 또는 군 지역은 지역의 재정여건으로 인한 국비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또한 소도시와 군지역의 특성상 도시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사업이 중복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국비지원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검토하고 연계·조정하는 업무가 어느지역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촌뉴딜300사업, 농어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의 계획을 종합·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일관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법정·비법정 기본계획 조정·자문 역할, 통합마스터플랜 총괄·자문 수행 : 광역자치단체,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중소도시, 군지역의 방향과 미래상을 설정하는 지역 내 상위 법정, 비법정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업무가 중요하다. 별도 기획예산이 확보될 경우 지역의 미래상 및 장기플랜으로서의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총괄·자문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지역파악과 차년도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별도 기획업무 : 중소도시와 시군지역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여건을 조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파악과 차년도 신규프로젝트를 통한 예산마련을 위해 공공건축가와 함께 마을지도, 공공성지도 등을 만들어 생활단위에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할 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획업무를 추진하는 일이 중요하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거나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 등 구체적인 공간을 대상으로 공공건축가들과 함께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표 6-6] 중소규모 시, 군·구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수정(안)

구분	주요내용
1	건축·도시 주요 공공사업 조정 및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주요 프로젝트 조정 및 자문 • 주요 국비지원사업 연계 및 조정 업무 ※ 지역건축위원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심의 및 자문 업무
2	비전 및 미래상 설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비법정 계획 간 일관성 확보를 위한 자문, 조정 • 건축·도시 관련 신규사업/정책 발굴 및 기획 지원(기획예산 마련) • 시장의 주요 정책업무 및 프로젝트 지원
3	사업발주방식 검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방식 등 사업체계 검토, 개선 및 구축, 자문 • 건축·도시분야 설계공모 및 운영 지원, 사업관리·자문
4	민간전문가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가 운영·지원 • 개별프로젝트 공공건축가 연계
5	교육 및 관련 규정 검토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홍보 방안 마련 (초기단계 제도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방안) • 심의 및 심사 참여 • 건축, 도시, 디자인, SOC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및 조례 등 참여검토자문

출처: 국토교통부(2019.7),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p.3. 참고후 저자 재작성

□ 특광역시 및 대규모 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활동과 운영

여건 및 고려사항

- 시군구와 다르게 공간적 범위가 넓고 대상이 광범위하여 역할 측면에서 자문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 즉,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조정·자문의 역할이 드러나기는 어려운 반면 추진하는 사업이 많아 소모전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민간전문가 위상 및 인식정립을 위해서는 개별 프로젝트 조정·자문도 필요하므로 자문 업무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및 계획의 조정·자문 보다는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여 지역의 변화를 병행해서 보여주는 일이 중요하다.

주요 업무

신규프로젝트 발굴 및 업무 기획 : 대규모 도시에서는 공무원 조직규모도 크고, 대규모 개발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며, 각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사업총괄계획가들이 있는 경우도 많아, 개별 프로젝트의 자문이 쉽지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업 내지는 '마을건축가 마을지도 작성 사업' 또는 '제주특별자치시'의 '유휴부지 활용 사업발굴' 등과 같이, 단일부서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수행할 수 없는 공공성이 높은 지역에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측면에서 중요할 수 있다.

선별적 프로젝트 조정·자문 역할 : 특광역시에는 발생하는 프로젝트가 광범위하므로 매해 지역의 비전 및 방향, 중요도, 연계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집중수행할 프로젝트를 선별적하여 조정·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장의 주요 정책업무 지원 : 시장과 지역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며, 시장의 파트너로서 지역의 주요한 정책적 프로젝트를 자문·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법정·비법정 기본계획 조정·자문 역할 : 개별 프로젝트 자문보다는 상위 법정, 비법정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지역의 비전 및 미래상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건축정책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을 검토하고, 정합성 확보를 위해 계획 수립 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개별 프로젝트 자문보다는 공공건축가 운영체계 마련이 중요 (특·광역시만 해당) : 건축·도시와 관련된 많은 공공사업들의 합리적인 진행과 관리를 위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개별 프로젝트 자문보다는 공공건축가 참여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일에 치중하여야 한다. 가령, 사업부서에서 공공건축가 참여를 요청하였을 경우, 사전에 관련주체(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사업부서 담당자-사업수행자) 모두가 해당사업에서 공공건축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협의 내지는 공유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건축가가 사업부서 요청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에 자문을 하였을 경우, 일회성 자문에 머물지 않고 수행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반영 여부 또는 이후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도 중요하다.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에 주력 (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 동일)

[표 6-7] 특광역시, 대규모 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수정(안)

구분	주요내용
1	비전 및 미래상 설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도시 관련 신규사업/정책 발굴 및 기획 지원(기획예산 마련) • 시장의 주요 정책업무 및 프로젝트 지원 • 법정, 비법정 계획 간 일관성 확보를 위한 자문, 조정
2	건축·도시 주요 공공사업 조정 및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주요 프로젝트 조정 및 자문 •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주요 대규모 프로젝트 기획 및 자문 ※ 지역건축위원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심의 및 자문 업무
4	민간전문가운영체계 마련 (특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가 구성 및 역할 등 운영체계 마련 • 공공건축가 업무체계 및 협조체계 구축 • 공공건축가 운영·지원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지원
5	사업발주방식 검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방식 등 사업체계 검토, 개선 및 구축, 자문 • 건축·도시분야 설계공모 및 운영 지원, 사업관리·자문
4	교육 및 관련 규정 검토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홍보 방안 마련 (초기단계 제도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방안) • 심의 및 심사 참여 • 건축, 도시, 디자인, SOC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및 조례 등 참여·검토·자문

출처: 국토교통부(2019.7),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p.4. 참고후 저자 재작성

□ 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활동과 운영

여건 및 고려사항

- 도가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사업주체는 해당 시군에 있으므로 도비가 투입된 개별 프로젝트의 직접 조정·자문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도 단위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의 공공건축가가 참여 체계를 마련하는 일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 관할 지역 내 시군 단위에 민간전문가가 있는 경우 시군 단위 민간전문가들과의 관계 설정, 민간전문가가 없는 경우 제도 도입 필요성 인식개선, 제도 도입 시 지원 등 도 단위에서 해야 할 업무를 모색하여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주요 업무

도단위 법정·비법정 기본계획 조정·자문 역할 : 개별 프로젝트 자문보다는 도 단위의 법정, 비법정계획을 통한 지자체 전체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업무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건축정책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 도종합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때 총괄 또는 조정·자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도지사 주요 정책 업무 자문·지원 : 도지사와 지역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며, 도지사의 주요한 정책적 프로젝트를 자문·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도·국가단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총괄·조정·자문 : 시군단위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프로젝트 자문보다는 공항입지 선정 등 도 단위, 국가 단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기획 및 자문에 무게를 두고 수행해야 한다.

공공건축가 운영체계 마련 중요, 관할 지자체 민간전문가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 건축·도시와 관련된 많은 공공사업들의 합리적인 진행과 관리를 위해 개별 프로젝트 자문보다는 공공건축가들이 참여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일에 치중하여야 한다. 특히 도 단위에서는 도 직접사업에 공공건축가를 참여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관할 지자체 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행되는 주요한 사업을 도 단위에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초지자체 민간전문가들과의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활동 : 기초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해당 관할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들과의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표 6-8] 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수정(안)

구분		주요내용
1	비전 및 미래상 설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단위의 법정, 비법정 계획 간 일관성 확보를 위한 자문, 조정 • 도지사의 주요 정책업무 및 프로젝트 지원(기획예산 마련) • 건축·도시 관련 신규사업/정책 발굴 및 기획 지원 • 도 단위의 건축·도시 관련 정책 검토 및 비전 및 미래상 수립 자문
2	건축·도시 주요 공공사업 조정 및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국가단위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주요 대규모 프로젝트 기획 및 자문 • 주요 사업간의 연계 또는 협력적 관계 구축 마련 및 운영 참여 ※ 지역건축위원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심의 및 자문 업무
3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공공건축가 구성 및 역할 등 운영체계 마련 • 공공건축가 업무체계 및 협조체계 구축 •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지원 • 관할 도 지역 지자체 민간전문가 도입 관련 활동 • 관할 지자체 민간전문가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4	사업발주방식 검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방식 등 사업체계 검토, 개선 및 구축, 자문 • 건축·도시분야 설계공모 및 운영 지원, 사업관리·자문
5	교육 및 관련 규정 검토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홍보 방안 마련 (초기단계 제도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방안) • 건축, 도시, 디자인, SOC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및 조례 등 검토·자문

출처: 국토교통부(2019.7),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p.4. 참고후 저자 재작성

□ 공통업무

공통업무

사업발주방식 검토 및 설계공모 운영 : 간담회 및 운영실태 사례 통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사업발주방식의 개선과 설계공모 운영을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었다. 공공건축,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분야별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사업을 계획·설계할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참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축가, 건축직공무원, 관련부서 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지역 내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여야 한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 건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 공무원, 공공건축가 교육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공공건축가 업무 및 운영 개정(안)

공공건축가 설계업무 직접참여는 원칙적으로 지양한다.

공공건축가 설계업무 직접참여는 다음의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1. 일반인들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성을 요구하는 난해한 사업
2. 일반인들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성을 요구하는 중요한 위치의 사업
3. 일반인들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성을 요구하는 선도 사업

공공건축가 자문은 건축기획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획단계부터 참여한 경우, 기획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시공 전과정에 공공건축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표 6-9] 공공건축가의 업무 수정(안)

구분		주요 내용
1	건축도시 기획업무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업무* 참여 •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 기획단계 자문
2	건축도시 주요 공공사업 조정 및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 조정·자문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 국가정책사업(어촌뉴딜300사업, 생활SOC사업 등)의 총괄조정·자문 • 각종 정비계획* 수립의 조정·자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시개발사업 등
3	공공건축물 설계업무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업무 직접참여는 원칙적으로 지양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참여시, 공공성을 요하는 선도사업, 난해한 사업, 중요한 위치의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 ※ 본인이 기획 또는 자문한 프로젝트의 설계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심의에도 참여할 수 없음
4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및 심사 참여 • 건축, 도시, 디자인, SOC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및 조례 등 참여검토자문

출처: 국토교통부(2019.7),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p.4. 참고후 저자 재작성

□ 프로젝트별 공공건축가 참여 업무수행체계

사업부서에서 공공건축가 참여를 요청하여 개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경우, 공공건축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사업부서, 수행업체, 민간전문가 담당부서가 참여하여 공공건축가의 권한과 역할을 협의 또는 공유한다. 해당 지자체 및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가가 건축기획 업무에 직접 참여한 경우, 설계의도구현을 위해 공공건축가가 기획 이후 설계 및 시공단계 전 과정에 참여하여 자문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관련 사업부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표 6-10] 프로젝트별 민간전문가 참여 업무수행체계(기존)



출처: 저자 작성

[표 6-11] 프로젝트별 민간전문가 참여 업무수행체계 개선(안)



출처: 저자 작성

3)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개정(안)

□ (개정안)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내용 추가

(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해당 법에서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별도로 위원의 선정 및 구성이 건축위원회와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구성)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또는 공공건축가 포함여부는 건축기획업무 및 자문에 총괄·공공건축가가 얼마나 참여하도록 설정해 놓았는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 업무와 심의위원의 업무나 대상이 상충되는 일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활동제약)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포함된 공공건축가는 심의대상 범위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문, 건축기획, 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심의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공건축사업(추정설계비 5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참여가 가능하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자문단과의 관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공공건축지원센터 자문단은 중복하여 위촉, 운영할 수 없다.

(광역-기초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계) 광역과 기초단위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위촉되어 있는 지역의 공공건축심의는 관할 지역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정안)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구성 관련 내용 추가

(센터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2에 따른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도시 관련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지자체의 사업기획을 관리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므로 조속히 설립을 추진할 것을 권장한다. 해당 법에서는 모든 지자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도·특·광역시에 우선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구성)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전검토한 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기위해 별도의 역량있는 건축사와 전기, 구조, 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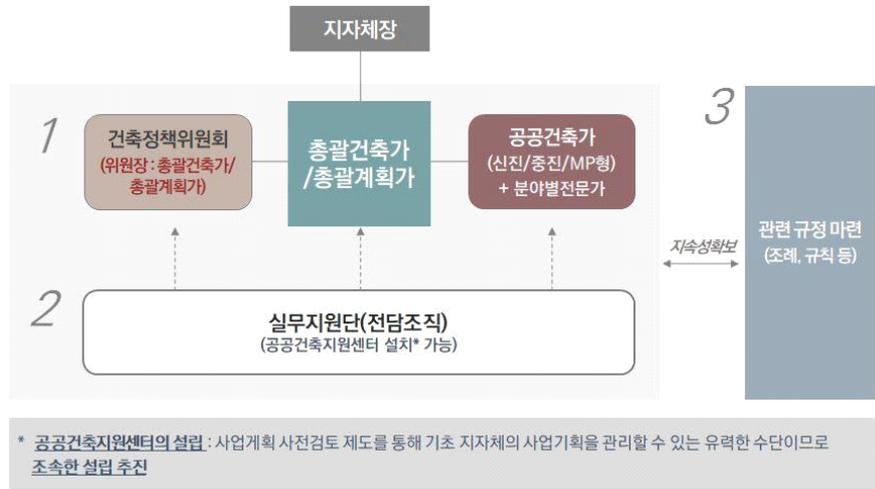
있으며, 자문단에는 해당 지자체 공공건축가가 포함될 수 있다.

(활동계약) 자문단에 포함된 공공건축가는 본인이 수행한 건축기획 또는 자문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검토에 대한 자문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의 관계) 자문단에 포함된 공공건축가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원은 중복하여 위촉, 운영할 수 없다.

□ (개정안) 유관조직 및 민간전문가 담당부서 관계 내용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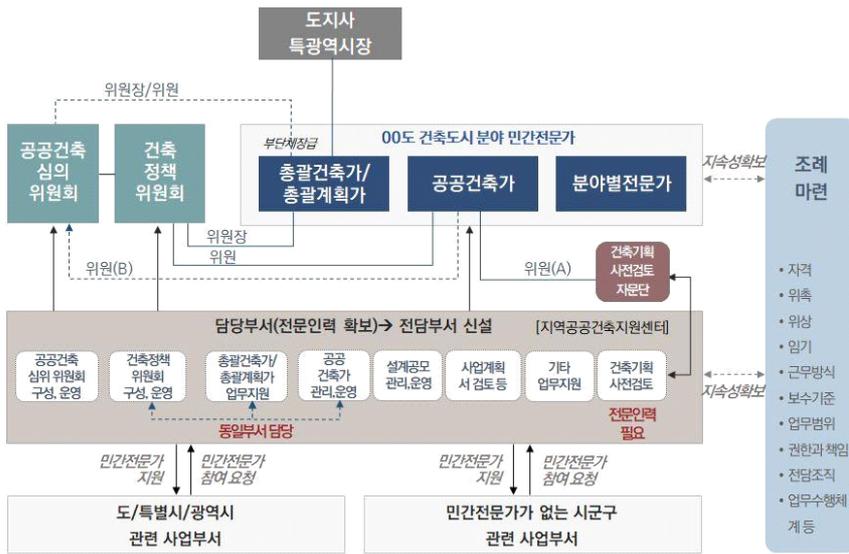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와 이들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가 동일한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¹²⁸⁾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와 공공건축가 담당부서가 다를 경우,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공공건축가 운영의 권한 또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와 건축정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가 다를 경우,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겸직하도록 위촉,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6-4]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서의 민간전문가 운영체계(2019.7) : 기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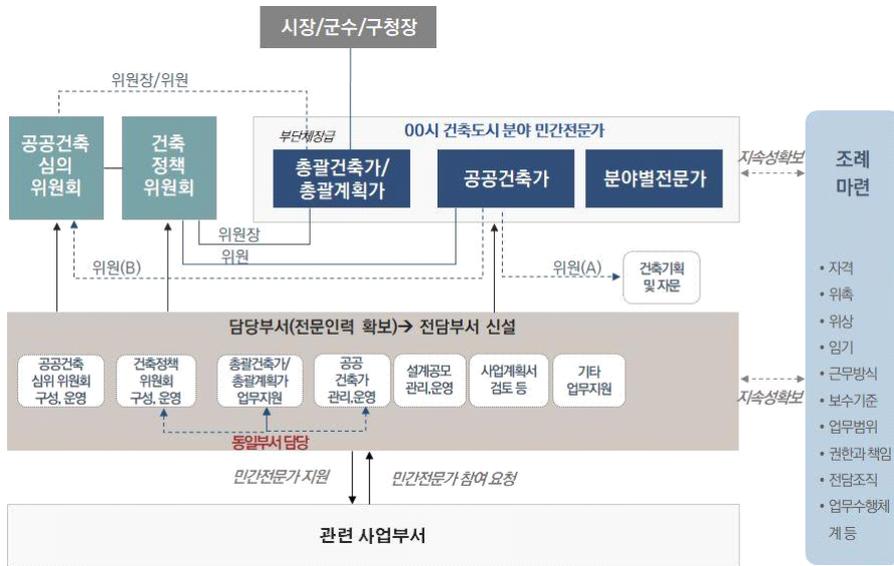
출처: 심경미(2019),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이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2019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공공건축 정책 및 제도의 이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00. (2019.7.16)

128)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및 민간전문가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이 동일(「건축기본법」)하므로 보통 건축과에서 담당할 경우 동일한 부서에서 운영함. 민간전문가 운영을 도시과에서 운영할 경우, 건축정책위 및 공심위 운영은 보통 건축과 소관으로 담당부서가 다를 수 있음



[그림 6-5] 광역자치단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체계(안)

출처: 저자 작성



[그림 6-6] 기초자치단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체계(안)

출처: 저자 작성

4. 제도 개선방안

1) 건축기본법 개정(안)

□ 기본방향

앞서 정리한 개선방향과 개선방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와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건축기본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먼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민간전문가’의 용어정립과 이를 토대로 자격기준 현실화, 업무범위 구체화 및 명확화, 건축정책위원회 역할 확대 및 총괄건축가등과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사항이 개정·신설될 필요가 있다.

□ 민간전문가 용어 개정

가장 먼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통칭되고 있는 용어를 법에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로 명칭과 구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¹²⁹⁾. 현재 발의 중인 「공공건축특별법」 및 ‘가이드라인’에서의 공식적인 용어를 고려하고, 관련 법률간 용어의 일치성 문제를 고려하여, 「공공건축특별법」에서 사용한 ‘총괄건축가등(건축, 도시, 조경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총괄건축가 또는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로 용어를 통일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6-12】 「건축기본법」 개정(안) : 민간전문가 용어

현안	개정(안)
<p>법 제23조(민간전문가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법 제23조(총괄건축가 등의 참여)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기획·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총괄건축가 또는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건축가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총괄건축가등을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신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총괄건축가등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신설) ④ 총괄건축가 등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법 제23조의 2(공공건축가의 참여)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 등의 개별 공공건축사업에 대하여 건축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사업의 과정에 대해 조정·자문해주는 전문가로서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의 자격·업무범위,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출처: 「건축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검색일: 2020.9.15.)); 「공공건축특별법(안)」(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검색일: 2020.9.15.)) 참고후 저자 재작성

129) 이는 이미 발의되었던 「공공건축특별법」에 이미 반영된 사항으로, 신설되는 법과 기존 「건축기본법」의 정합성을 위해서도 개정될 필요가 있음

□ 민간전문가 업무 및 보수 규정 개정

통칭되어 오던 민간전문가의 용어를 구분하여 작성함에 따라 해당되는 업무도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에 총괄조정업무 / 건축기획업무 / 사업발주방식 검토·지원 /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업무 등의 업무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자체 운영실태 조사와 총괄·공공건축가들의 간담회를 통해 업무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표 6-13] 「건축기본법」 개정(안) : 민간전문가의 업무 및 보수

현안	개정(안)
<p>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중략)</p> <p>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p>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중략)</p> <p>④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총괄건축가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동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5. 그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p>② 제25조에 따라 위촉된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 수행 2. 소규모 공공건축사업의 기획업무 참여 및 자문 3. 공공건축물 설계업무에 참여 4. 심의 및 심사, 가이드라인 및 조례 등 마련에 참여 5. 그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p>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중략)</p> <p>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중략)</p> <p>④ (삭제)</p> <p>령 제22조(민간전문가의 보수 등)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21조에 따라 위촉된 총괄건축가 등 및 공공건축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수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건축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0.9.15.)) 참고후 저자 재작성

□ 민간전문가 자격기준 개정

일부 조례에서는 민간전문가 자격기준에 외국건축사를 포함시키거나 해당분야에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등이 포함하는 등 법 규정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단체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법 규정에서의 자격기준도 보다 확대하거나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마련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표 6-14] 「건축기본법」 개정(안) : 민간전문가 자격기준

현안	개정(안)
<p>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p>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p>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p>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해외자격증 소지자 3. 건축, 도시, 조경 등 관련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근무 경력 7년 이상인 자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공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해외자격증 소지자 3. 건축, 도시, 조경 등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출처: 「건축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0.9.15.)) 참고후 저자 재작성

□ 건축정책위원회 기능 확대

「건축기본법」에 규정된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에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의 역할을 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까지 포함하는 운영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제22조의3 제1항 2호)하고 있으므로, 본 규정과 연동하여 건축기본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표 6-15] 「건축기본법」 개정(안) : 지역건축위원회

현안	개정(안)
<p>법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p> <p>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법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p> <p>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지역의 건축기본계획수립·시행에관한사항 2. 해당지역의 건축행정개선에관한사항 3. 건축문화기본조성을 위한사업및 활동에 대한사항 	<p>법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p> <p>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법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p> <p>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지역의 건축기본계획수립·시행에관한사항 2. 해당지역의 건축행정개선에관한사항 3. 건축문화기본조성을 위한사업및 활동에 대한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지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출처: 「건축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0.9.15.)) 참고후 저자 재작성

2)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안)

「건축기본법」과 연계하여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개정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크게 제2장1절, 제3장1절, 제4장1절에 대한 내용은 앞서 제6장3절에서 운영모델 부분에서 추가 및 수정할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건축기본법」개정(안)으로 제시된 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법규정에 강제하기 어려운 임기, 보수기준, 자격기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6-16]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및 방향(안)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목차	주요 개정 사항
제1장 총론	
제1절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기본방향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민간전문가 구분 및 자격기준	
제4절 민간전문가 참여 가능 대상사업	
제2장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업무 및 운영	
제1절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업무	▶6장3절 운영모델 반영
제2절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운영	
제3절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임기 및 근무방식, 보수기준	▶임기 확대 (4년 또는 5년, 연임가능) ▶근무방식 유연화 (상근직도 가능) ▶(보수기준) 월급형태 지급 원칙
제3장 공공건축가의 업무 및 운영	
제1절 공공건축가의 업무	▶6장3절 운영모델 반영
제2절 공공건축가 운영 및 보수기준	▶활동유형별 적정 보수지급기준 마련
제4장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및 공공기관 준비사항	
제1절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6장3절 운영모델 반영 ▶전문직공무원, 전문직위 제시
제2절 공공기관 지원사항 및 준비사항	

출처: 저자 작성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임기 및 근무방식

현재 규정이 2년이라는 한정된 기간으로 임기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보다 장기간 임기할 수 있는 제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2가지로 제안하

고자 한다. 근무방식도 한가지 방식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근무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표 6-17]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안)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임기 및 근무방식

현안	개정(안) -1안	개정(안) -2안
2-3-1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임기 및 근무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근무는 비상근직으로, 최소 주 2일(월 8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여건에 따라 상근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무지 및 근무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2-3-1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임기 및 근무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임기는 4년(또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근무는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비상근직 일 경우 최소 주 2일(월 8일 이상) 근무할 것을 권장한다. 이 때 근무지 및 근무시간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2-3-1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임기 및 근무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적 위촉을 원칙으로 하되 3년마다 재임용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근무는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비상근직 일 경우 최소 주 2일(월 8일 이상) 근무할 것을 권장한다. 이 때 근무지 및 근무시간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2019.7),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참고후 저자 재작성

□ 보수지급체계 : 지급기준 및 지급방식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보수기준은 해당 지위에 걸맞게 보수지급체계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 비상근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출근일에만 해당 업무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근무일수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월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정한다.

공공건축가 보수는 대부분 자체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회의비 및 교통비 지급기준에 준하여 자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자문 외에 지역현황조사, 새로운 과제 발굴, 지역현안 개선방안 제시, 건축기획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지급 기준이 자문수당에 머물러 있어, 실제 활동에 준하는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공공건축가 보수가 활동 유형별, 업무의 난이도별로 합리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수기준을 별도로 구분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6-18]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안)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 보수기준 개정(안)

현안	개정(안)
<p>2-3-2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보수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보수는 인건비와 여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류 작업 및 검토 등의 업무를 할 경우에는 해당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을 준용하여 검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인건비는 해당년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또는 '건축사(보) 노임단가'에 근무일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여건에 따라 부기관장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 보수기준(정무직 공무원)'을 적용한다.</p> <p>③ 여비는 해당년도 '공무원 여비기준'을 준용한다.</p>	<p>2-3-2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보수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보수는 월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류 작업 및 검토 등의 업무를 할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공공기관의 여건에 따라 부기관장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정무직 공무원)'을 적용한다. 그밖에 해당년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보) 노임단가'의 건축사 등급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p> <p>③ 여비는 해당년도 '공무원 여비기준'을 준용한다</p>
<p>3-2-2 공공건축가의 보수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보수는 자문비와 여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기획 및 사업책임(MP)의 업무에 대해 별도의 보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p> <p>② 자문비는 해당년도 공공기관의 자문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공공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노임단가의 건축사 1일 근무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③ 여비는 해당년도 '공무원 여비기준'을 준용한다.</p> <p>④ 사업책임(MP)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기술사, 건축사 노임단가의 건축사 1일 기준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p>	<p>3-2-2 공공건축가의 보수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보수는 활동 유형에 따라 적합한 비용이 지급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한다.</p> <p>② 자문 활동에 대해서는 자문비와 여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자문비는 해당년도 공공기관의 자문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공공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년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노임단가'의 건축사 1일 근무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여비는 해당년도 '공무원 여비기준'을 준용한다.</p> <p>③ 건축기획 및 사업책임(MP)의 업무에 대해서는 과제의 난이도 및 소요일수 등을 고려해 별도의 보수기준을 적용한다.</p>

출처: 국토교통부(2019.7),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참고후 저자 재작성

□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 실무지원조직을 부기관장 직속 국 단위 조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행정 지원조직의 인력구성, 운영방안 등에 대한 사항의 언급은 부재하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 행정지원 인력 및 조직구성의 미흡을 한계로 지적한 점을 감안하여 가이드라인에 전문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전문관제도 도입,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민간전문가 지원업무 수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해줄 필요가 있다.

[표 6-19]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안) : 실무지원조직 운영체계

현안	개정(안)
4-1-6 민간전문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무지원조직”을 부기관장 직속 국단위 조직으로 설치 운영한다. 실무지원조직에는 건축, 도시, 토목, 조경, 공공디자인 기술인력이 배치되도록 하며, 실무지원조직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과 관련된 부서장으로 구성된 “특별TF”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4-1-6 민간전문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무지원조직”을 부기관장 직속 국단위 조직으로 설치 운영한다. 실무지원조직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과 관련된 부서장으로 구성된 “특별TF”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실무지원조직에는 건축, 도시, 토목, 조경, 공공디자인 기술인력이 배치되도록 하며, 인력의 순환보조를 지양하도록 한다. ② 실무지원조직의 인력구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 또는 제7조의3에 해당하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업무의 전문성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2019.7),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참고후 저자 재작성

3)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안)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은 「건축기본법」에 근거하고, ‘민간전문가 제도 가이드라인’과 관련이 높으므로 법, 지침, 가이드라인 간의 정합성이 요구된다. 「건축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민간전문가 업무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6-20]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안) : 민간전문가 업무지원

현안	개정(안)
제7조(민간전문가 업무 지원) ①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담조직은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조직에서 담당하게 하는 등 적절한 구성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	제7조(민간전문가 업무 지원) ①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담조직은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조직에서 담당하게 하는 등 적절한 구성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 또는 제7조의3에 해당하는 전문직위로 지정하는 등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3.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가 민간전문가 업무 지원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출처: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9.15), 참고후 저자 작성

제7장 결론

-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 2. 정책제안 및 향후 연구과제 제안
-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본 연구는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당시 도입된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지자체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본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된 이슈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현황에 대한 파악이나 실태분석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특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과 「공공건축특별법(안)」의 발의 등 일련의 정책들이 변화함에 따라 민간전문가와 관련하여 새롭게 정립해줄 사항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민간전문가 운영상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운영모델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진행된 연구의 주요내용과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이슈 도출 및 실제 이슈 검증

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 지원사업(2013~2019), 언론보도 및 비평, 그리고 2019년 말에 진행되었던 전국 단위 권역별 설명회에서 대두된 사항을 중심으로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이를 전문가 의견수렴과 지자체 운영실태 분석의 주요 틀로 활용하여, 실제 이슈를 확인하고 추가 이슈를 도출하였다.

□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국내 도입 현황과 기본 운영현황 파악

국내 건축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본현황을 크게 지자체 단위, 공공기관 단위,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별, 공공기관별로 기본 운영현황을 파악하였다.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는 그 수가 방대하

여 운영현황을 전수조사하지는 못했으나, 총 8개의 주요 사업에 대해 분석 및 주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들은 사업규모와 대상 수가 방대하고 실제 공사가 진행되어 지역에 실제 파급력이 큰 만큼, 추후 보다 세부적인 실태파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기초현황분석은 향후 이러한 실태파악에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 국내 지자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실태 파악 및 개선사항 도출

국내 '지자체 단위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이슈별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회의 및 면담조사를 통해 지자체별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민간전문가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국내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 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였고, 위촉 및 근무, 역할 및 업무, 운영체계 측면에서 현황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고 또는 주목할 만한 사례들을 다양하게 소개, 정리함으로써 타 지자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공하였다. 다만, 이슈별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공건축가 간담회 인원이 10인 정도로 적었던 점,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간담회를 별도로 진행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 지자체 규모별 운영모델 제시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운영방향 정립, 제시

현재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도, 특·광역시부터 인구 3만에 이르는 군 단위까지 규모의 편차가 매우 크다. 다양한 여건의 지자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도시규모별로 고려해야할 여건과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업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슈별 운영방향을 정립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 규모별 운영모델을 제안하였다.

□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법제도 개선 제안으로 제도적 기반 구축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실태 분석내용을 토대로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규정을 담고 있는 법제도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건축기본법」,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상에서의 용어, 업무 및 역할, 전문인력 확보, 임기 및 근무방식, 보수지급체계, 행정지원조직 운영체계 등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2. 정책제안 및 향후 연구과제 제안

1) 정책제안

□ 민간전문가 제도의 정착 및 안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안) 제시

1단계로는 민간전문가가 본연의 취지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2단계로는 민간전문가 선정절차를 강화하여 전문성과 위상을 확보하고, 전담조직, 전문관제도 도입, 연구지원 조직 등 지자체 행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동시에 국가경쟁력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보로 지역밀착형 건축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건축자문단 도입 등을 검토, 추진한다.



[그림 7-1] 민간전문가 제도 정책 로드맵(안)

출처: 저자 작성

프랑스 CAUE 소속 자문건축가(architecte conseil)

프랑스 건축법에 근거한 기관인 프랑스 도시 계획 및 환경 건축 협의회 CAUE(Conseil D'Architecture D'Urbanisme Et de L'environnement)는 프랑스 행정체계 중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데파르트망(département)의 건축과 도시 그리고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익 차원에서 설립한 건축·도시·환경 자문기관을 말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건축가들이 CAUE 소속 자문건축가로 위촉되어 활동한다. CAUE 운영재원 건설관련 세금, 회원, 국가, 지방단체의 기부 또는 기여금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각각 한 달에 2회 근무하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6,000시간, 2,000명 이상의 개인 혹은 회사, 지자체 등 대상으로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건축물의 프로젝트 과정을 지원하고, 주요 건축물 허가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CAUE는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CAUE 소속 자문건축가도 지역별로 제공하며, 홈페이지에 이름, 연락처, 근무일 등을 제공한다. 자문건축가는 활동하는 지역에서 건축적 활동이 금지된다.

출처: CAUE13 홈페이지(<https://www.caue13.fr/votre-architecte-conseil>) (검색일: 2020.4.13.); France 건축사 협회 홈페이지 (<https://www.architectes.org/actualites/recrutement-d-architectes-conseils-de-l-etat-en-2019>) (검색일: 2020.04.16.) 참고후 저자 재작성

□ 행정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자료제공 플랫폼 구축

민간전문가 관련 공무원대상 교육은 현재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경관정책과정에 2개강의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건축정책과정에도 진행되도록 확대하고, 강좌 수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대상의 교육은 현 수도권위주에서 전국대상으로, 건축사 위주에서 도시·조경기술사까지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학·협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관련 자료를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종합적 플랫폼을 구축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시상제 도입

본 제도가 취지에 맞게 정착되고, 우수한 사례를 발굴·공유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한 우수 공공건축사업 시상제 및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행정우수상 시상제 등 관련 시상제를 도입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간전문가 활동을 위해서는 여러 관련 부서들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원부서 담당자들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다. 또한 발주방식 개선 업무는 지자체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발주방식, 공모지침서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수반된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업무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디자인 품질개선 효과, 행정업무역량 강화 효과에 대해 공로를 인정하여 시상 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국가지원사업에 공간기획 운영비까지 지원 확대

현재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전문가 제도 지원사업에서는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의 인건비와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공공건축가와 함께 지역에 필요한 공간전략 발굴 또는 틈새업무 발굴 등 공간기획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건축가의 경우 현재 회의수당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자문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과 자문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업무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유형별 지급기준 마련과 지원비용 확대가 필요하다.

2)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제안

□ 수요자 측면에서의 민간전문가 제도 의견수렴 및 인식조사, 효과분석 연구 필요

본 연구는 실태조사에 있어 공급자 위주의 조사에 치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건축·도시 분야 공무원과 나아가 민간전문가 제도의 영향을 받는 다른 부서 공무원, 그리고 일반시민의 인식까지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작 초기단계에서는 이러한 인식조사까지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였으나, 공공기관 유형 및 부처별 프로젝트 유형의 현황파악을 추가하고, 분석 대상 지자체가 증가하면서 운영실태 파악과 민간전문가 의견수렴에 집중하였다. 간담회 역시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개최하여 관계 공무원, 민간전문가가 개입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실무자(건축사 등)의 의견은 진행되지 못하였다.

민간전문가 제도의 종합적 개선과 실행가능성 및 집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공공건축가들의 의견수렴과 수요자 측면에서의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민간전문가 제도 및 활동에 대한 인식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지역주민과 정책 일선에서의 효과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수렴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사람중심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역량강화와 사회적 기여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의 민간전문가 유형에 대한 운영 실태 심층연구 필요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 민간전문가는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하다. 뿐만 아니라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범부처 대응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고자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향식 제도 확대 정책으로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민간 전문가들 간의 관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별도로 운영실태 등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공공기관형 민간전문가 도입의 필요성 검토 및 운영모델 마련 심층연구 필요

교육부와 같이 경찰청, 소방청 등 자체부서에서 수행되는 소방시설, 경찰시설 등은 일반 국민들이 일상공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최근 수자원공사가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공사와 같이 지역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 등에도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모델개발을 위한 관련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고령군(2019), 「경북 고령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형)」.
- 교육부(2019),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안)」.
- 구례읍(2019), 「전남 구례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형)」.
-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9),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식 회의자료”.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201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 디자인관리체계 개선 컨설팅”, 내부자료
- 국무조정실(2019), “[모두말씀]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9.04.18.)”, 정책브리핑자료.
- 국토교통부(2013), 「민간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
- 국토교통부(2019.7.),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원형)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2020), “새로운 공간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4월 10일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도시 새뜰마을사업 시행 매뉴얼」.
- 김귀영·민현석·이정용(2014), 「서울시정의 민간참여제도 도입방안」, 서울연구원.
- 김미영·이상봉·허운진·장보람·조인우·윤석재(2013), 「농촌 마을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총괄 계획가 운용 실태평가 및 향후 발전모델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김상호(2019),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시범사업 설명자료”, 내부자료.(2019.4.5.).
- 김용미(2020), “제주 총괄·공공건축가 활동보고”, 도 총괄건축가 간담회 발제자료.(2020.7.16.).
- 김진욱·박태성·이민우·이진민(2009), 「공공건축 설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디자인행정 지원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농림축산식품부(2018.12.), “2020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설명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안내서 및 지침”, 내부자료.

당진시(2020), “2019년 민간전문가 등 지원사업 성과자료”, 성과발표회 자료.(2020.6.30.).

문화체육관광부(2020),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박인석·강인호·박철수·박광재(2007), 「공공 도시·건축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참여방안 연구」, (사)대한건축학회.

부여군(2020), “2020년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신청서”, 내부자료.

(사)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 협의회(2018.7.), 「서울교육공간플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수정·김영현·조시은(2011),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수정·김영현·조시은(2012),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I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수정·이상민·임정하(2019), 「어촌뉴딜 300사업 디자인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해양수산부.

서수정·이상민·임정하(2019), “2019년도 어촌뉴딜 선도사업 모니터링”, 내부자료. 해양수산부.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2019), “도시계획 아카데미 초청 국제 콘퍼런스 참가 및 도시공간·공공건축물 개선 우수 사례 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내부자료.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2020), “2020년 주요업무보고”, 내부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서울시교육청 공고 제2020-1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공간 디자인혁신 민간전문가 인력풀(꿈담건축가·학교건축가) 공개모집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2016), “서울교육 공간디자인 혁신을 위한 자문관(민간전문가) 운영 계획”, 내부자료.

수원시 도시디자인단(2020), “공공사업 디자인 행정체계(수원)”, 내부자료.

수원시 도시디자인단(2020), “디자인이력 관리카드”, 내부자료.

수원시 도시디자인단(2020), “수원 디자인기획관”, 내부자료.

수원시 도시디자인단(2020), “행정체계 다이어그램(수원)”, 내부자료.

신민철·정희윤·이시우(2016), 「서울시 도시공간 기획기능 강화 방안」, 서울연구원.

심경미(2019),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이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2019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공공건축 정책 및 제도의 이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81-106.(2019.7.16)

심경미(2020), “지원사업의 이해와 운영” 「2020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착수워크숍 자료집」, 국토교통부, pp.5-38.(20.5.19)

심경미·엄운진·장민영·송지연(2019),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모델 구축 및 홍보방안 마련연구」, 국토교통부.

심경미·여혜진·김주희(2017), 「지역경관향상 지원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심경미·이상민·여혜진·김주희(2015), 「지역경관 향상 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 국토교통부.

심경미·장민영·이혜원·조효상(2020), 「민간전문가 참여 및 통합디자인 관리체계의 지속적 운용방안 연구-제1권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여혜진·고영호·엄운진(2018),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지역경관 향상 지원사업 모니터링」, 국토교통부.

여혜진·이성일(2018),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염철호·이규철·변나향·방재성·박석환·김꽃송이·이화영·이혜원·주소현·이경재·양은영·김준래(2019), 「공공건축지원사업 4차평가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염철호·서수정·이화영·양은영(2019), 「공공건축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연구 -「공공건축특별법」제정을 중심으로」, 최종연구심의회 자료, 내부자료.

염철호·이여경·이경재·주소현(2019), 「공공건축물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윤두원(2020), 「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조정체계 담론」,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은평구(2020), 「2020년 총괄건축가 운영계획」, 내부자료.

이영환·백혜선·임정민·김홍주·최보미·박윤재(2020), 「새뜰마을사업 성과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이유직(2019),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과 책임」, 2019년 착수지구 관계자 워크숍 내부자료.

임유경·변나향·박석환(2017),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임정민·이영환·김홍주·조필규·최원철·박보근·황영호(2016), 「새뜰마을사업 추진체계 및 평가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증평읍(2018), 「PM단 구성·운영 및 예산 집행 기준」, 내부자료.

차주영·서수정·이수연(2014),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주민참여사업 지원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차주영·유광흠·염철호·정민기(2013), 「건축·도시디자인 및 경관 향상을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충청남도(2020), 「총괄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현황」, 자문회의자료.(2020.8.24.)

충청남도(2020), 「총괄·공공건축가 지원사업 추진 결과」, 내부자료.

파주시(2020), 「2019년 민간전문가 등 지원사업 성과자료」, 성과발표회 자료.(2020.6.30.)

한상욱·서수정(2010), 「충청남도 건축디자인 제도 도입과제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충남발전연구원.

한지혜(2018), 「경기도의 상권관리제도로써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용 방안」, 경기연구원.

해양수산부(2019),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해양수산부(2019.12), 「20년 어촌뉴딜 300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2019),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행정중심복합도시 기획조정단(2020), “제9기 총괄조정체계 가이드북”.

행정중심복합도시 기획조정단(2020.2.), “제9기 총괄조정체계 운영방안 검토”, 내부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9),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가 운영규정(2019. 9. 30., 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20), 「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조정체계 운영규정(2020.5. 8., 개정)」

한국철도공사(2019), 「한국철도공사 공공건축가 운영지침 (시설기술단 지침 2019. 12., 제정)」

Architectuur Lokaal(2020), 「Architectuur Lokaal」, Architectuur Lokaal 96호(2020년 봄호).

Amsterdamse Kunstraad(2017), 「De stad is nooit af uit」.

Christian Rapp(2017), 「Atypische Stadbouwmeester」.

Geert Sels(2014), “Het einde van de Vlaamse Bouwmeester”.

Genitor(2019), 「Job- og personprofil STADSARKITEKT BY- OG MILJØFORVALTN
NGEN GLADSAXE KOMMUNE」.

Gemeente Amersfoort(2017), 「Welstandsnota 2017」, Gemeente Amersfoort.

NOTA AAN DE VLAAMSE REGERING(2020), 「vacantverklaring van de functie van
VlaamseBouwmeester」.

Stad Bouwmeester Gent(2018), 「Samen Stad Bouwen」.

Stad Gent(2017), 「Stadsbouwmeester zoeken」.

Sofie De Caigny(2018), “Opinie | Het glazen plafond van de Vlaamse architectuur”.

Vlaams Bouwmeester(2017), 「Ruimte maken voor mens en natuur BWMSTR 2017-2020」.

Vlaams Regering(2020), 「Visienota aan de Vlaamse Regering - Vlaams Bouwmeesterschap」.

「건축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건축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53호, 2017. 12. 29., 타법개정)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경상남도조례 제4625호, 2019. 8. 1., 일부개정)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경상북도조례 제4197호, 2019. 5. 30., 일부개정)

「공공건축특별법(안)」(국회발의안)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25호(2009.12.28.))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5394호, 2020. 3. 1., 일부개정)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6782호, 2019. 12. 10., 일부개정)
- 「농어촌정비법」(법률 제16542호, 2019. 8. 27., 일부개정)
-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대전광역시조례 제5378호, 2019. 12. 27., 일부개정)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6385호, 2019. 4. 23., 일부개정)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134호, 2020. 5. 27., 일부개정)
- 「상권 활성화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47호, 2018. 8. 21.,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366호, 2018. 12. 31., 제정)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865호, 2015. 5. 14.,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588호, 2020. 5. 19.,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931호, 2016. 6. 15., 제정)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291호, 2019. 9. 26., 일부개정)
- 「성남시 건축 기본 조례」(경기도성남시조례 제3458호, 2019. 12. 23., 제정)
-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경기도수원시조례 제4016호, 2020. 3. 13., 제정)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88호, 2019. 4. 23., 일부개정)
- 「신안군 건축기본 조례」(전라북도조례 제4707호, 2019. 7. 10., 일부개정)
- 「영주시 경관 조례」(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946호, 2015. 8. 13., 일부개정)
-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강원도원주시조례 제1857호, 2020. 4. 10., 제정)
-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6122호, 2019. 4. 17., 일부개정)
-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675호, 2019. 7. 11., 제정)
- 「전라남도 건축기본 조례」(전라북도조례 제4707호, 2019. 11. 7., 일부개정)
- 「전라북도 건축기본 조례」(전라북도조례 제4707호, 2019. 11. 11., 일부개정)
-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580호, 2019. 9. 30., 제정)
- 「진주시 경관 조례」(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554호, 2019. 12. 23.,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0804호, 2020. 6. 23., 타법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1043호, 2020. 9. 22., 일부개정)
- 「창원시 건축기본 조례」(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292호, 2019. 12. 31., 제정)
-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026호, 2020. 7. 17., 제정)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강원도춘천시조례 제1416호, 2019. 4. 11., 제정)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666호, 2020. 3. 10., 제정)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경기도파주시조례 제1605호, 2020. 7. 10., 일부개정)

「Woningwet(네덜란드 주택법)」(발효일 2017.1.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pcap2019/>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likms.assembly.go.kr>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https://www.city.go.kr/index.do>

서울도시건축센터 홈페이지 <https://sca.seoul.go.kr>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sen.go.kr/>

수원시 홈페이지 <https://www.suwon.go.kr/>

아우름 홈페이지 <http://www.aurum.re.kr>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etis.or.kr>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https://ko.wikipedia.org/>

은평구 홈페이지 <http://www.ep.go.kr/>

2020한국농어촌건축대전 홈페이지 <http://www.raise.go.kr>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korea.kr>

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http://info.korail.com>

해피시티2030홈페이지 <https://www.happycity2030.or.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http://www.naacc.go.kr/sub.do>

Amersfoort 홈페이지 <https://gemeente.leiden.nl>

Amsterdamse kunstraad 홈페이지 <https://www.kunstraad.nl>

Architectuur Lokaa 홈페이지 <https://arch-lokaal.nl>

Arkitektforeningen 홈페이지 <https://arkitektforeningen.dk>

Bx1 홈페이지 <https://bx1.be>

bylyd 홈페이지 <http://www.bylyd.dk>

CAUE13 홈페이지 <https://www.caue13.fr/>
Dd standaard 홈페이지 <https://www.standaard.be>
Denmark 팻캐스트(BLYD) 홈페이지 <https://www.podplay.com/sv/podcast/219319/bylyd>
DH les Sports 홈페이지 <https://www.dhnet.be>
Estate Media 홈페이지 <https://estatemedia.dk/dk>
FAOD 홈페이지 <https://www.faod.dk>
Flanders Architecture Institute 홈페이지 <https://www.vai.be>
France 건축사협회 홈페이지 <https://www.architectes.org>
Gemeente Amersfoort 홈페이지 <https://www.amersfoort.nl>
Groning Arkitekter 홈페이지 <http://groning-arkitekter.dk>
Jobat 홈페이지 <https://www.jobat.be>
linkedin 홈페이지 <https://gl.linkedin.com>
Maxius 홈페이지 <https://maxius.nl/woningwet/artikel8>
Orde van Architecten 홈페이지 <https://www.architect.be/nl>
Vejle 홈페이지 <https://www.vejle.dk/>
Vlaams Bouwmeester 홈페이지 <https://vlaamsbouwmeester.be/nl>
Vlaanderen 홈페이지 <https://beslissingenvlaamseregering.vlaanderen.be>

박찬수(2020), 수자원공사, 송산그린시티 전문가 자문단 위촉...싱크탱크 역할, 뉴스1, 6월 9일 기사.

임정환(2020), 국토부 선정 '공공건축가' 뒷말 무성...인맥 나눠먹기 전략 논란, 뉴테일리경제, 1월 20일 기사.

장영호(2019), 공공건축가, 총괄건축가 제도' 전국화 도래...제도 안착하려면, 건축사신문, 1월 3일 기사.

박태성(2016), 부산시 공공건축가 제도 왜 만들었나, 부산일보, 11월 23일 기사.

강동효(2019), 공공건축물 획일화 없앤다...민간 건축가 참여 확대, 서울경제, 4월 18일 기사.

박대료(2019), 서울총괄건축가 서울대 건축과 독식 논란...동문나눠먹기?. 중앙일보, 1월 4일 기사.

이진혁(2019), 무소불위 총괄·공공건축가... 폐쇄적 운영에 현실 반영 안 돼 논란, 조선비즈, 7월 11일 기사.

공공건축가 간담회 내용(2020.9.7., 2020.9.8.)

김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오미 담당자 유선인터뷰 내용(2020.5.14.)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 박현주 주무관 유선인터뷰 내용(2020.9.14.)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경영기획팀 조은화 차장 유선인터뷰 내용(2020.5.15.)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이상아 주무관 유선인터뷰 내용(2020.9.14.)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과 김혜진 주무관 인터뷰 내용(2020.7.10.)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한빛나 주무관 유선 인터뷰 내용(2020.5.14.)

지자체(충청남도 공공건축팀 박상훈 주무관,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강도석 주무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이원중 주무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김형건 주무관,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건축팀 변종진 주무관,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기획과 진장한 주무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장제식 주무관, 대전광역시 도시경관과 김문선 주무관, 수원시 도시디자인과 장진우 팀장, 용인시 공공건축과 이민영 실무관, 전주시 천만그루기획팀 오유리 주무관, 인천 서구 건축과 강지연 주무관, 서울 은평구 건축과 김혜진 주무관, 파주시 회계과 공공건축컨설팅팀 조재현 주무관, 원주시 총괄건축가TF 문성호 주무관, 진주시 건축과 공공시설팀 조용제 주무관, 춘천시 총괄건축가운영지원TF 한아름 주무관, 서울 서대문구 기획예산과 구정은 계장, 경주시 주택과 박희진 주무관, 당진시 건축과 이소정 팀장, 영주시 도시과 방성준 주무관, 부여군 도시건축과 양혜선 주무관, 의성군 지역재생과 여동익 주무관) 유선면담 내용(2020.3.3.~2020.3.30.)

청주시 문화도시센터 도경민 팀장 유선인터뷰 내용(2020.5.15.)

청주시 문화예술과 김소미 주무관 유선인터뷰 내용(2020.5.4.)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간담회 내용(2020.7.13., 2020.7.16., 2020.7.23., 2020.7.31)

충남도청 공공건축팀 박상훈 주무관·충남공공디자인센터 강경연 박사 유선인터뷰 내용(2020.9.14.)

충북연구원 변혜선 박사 인터뷰 내용(2020.5.14.)

행정중심복합도시 기획조정단 윤두원 실장 자문회의 내용(2020.5.14)

Loes Oudenaarde(Amersfoort시 前총괄건축가, 13~19년) Skype 인터뷰 내용(2020. 4. 28.)

Marcel van der Meijs(Palmbout urban landscapes 공동 파트너) 이메일 인터뷰 내용(2019.2.23.)

Noud de Vreeze(네덜란드 Amersfoort시 前도시총괄건축가, 08~11년) 이메일 인터뷰 내용(2019.3.11.)

Improvement of City Architect System in South Korea

SUMMARY

Sim, Kyungmi
Lee, Hyewon
Kim, Minkyung

Chapter 1 Introduction

Since the civilian expert system had been introduced through the “Framework Act on Building” in 2007,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that have implemented this system has increased with the achievements of Yeongju city (2009) and Seoul (2012). Also, in the national policy coordination meeting of April 2019,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d announced the public architecture design improvement plan, with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bodies, calling for the active use of the civilian expert system. As such, the participation of civilian experts is expected to grow in domestic architecture and urban projects. Meanwhile, the “Act on the Promotion of Building Service Industry” had been amended in December 2019. Through this, the basis for public building planning, expanding projects subjected to preliminary review and reviews, operating Public Building Deliberation Committees, and establishing Local Public Building Support Centers have been made. All are related to the work and operation of City Architects and Public Architects. However, while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introducing the civilian expert system is increasing and related policies are changing, the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system among stakeholders are still insufficient.

In order for the civilian expert system to operate according to its original purpos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d provide an operating system that local governments can refer to based on actual conditions. In particular, current regulations that only stipulate qualification standards and scope of work need to be revised to reduce confusion and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system.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focuses on the

issues and operation status of local government architecture and urban project civilian expert system, and aims to 1) derive emerging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2) establish an operation system for local government; 3) pro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achieve this, the concept and terminology related to civilian experts in architecture and urban projects were reviewed, and related issues were considered to provide the main framework for analysis (Chapter 2). Prior to analysis, the current operation status of the civilian expert system was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Chapter 3). Among these, the study focused on the ‘local government architecture and urban project civilian expert system’ and drew opinions from expert group meetings, and the local government operation system was analyzed through further meetings and interviews (Chapter 4). Also, overseas cases including the Netherlands, Belgium, and Denmark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Chapter 5). By synthesizing domestic and overseas studies, the study proposed a model of operation for the civilian expert system and pla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Chapter 6).

Chapter 2 Review of the civilian expert system and the main issues

Chapter 2 reviewed the outline, concept, and terminology of the civilian expert system under the “Framework Act on Building.” Based on understanding the policy changes, the main issues of the system were derived. A total of 12 issues were identified which was used as the main framework for collecting expert opinions and analyzing current operations.

Table 1. Definition of terms related to the civilian expert system

the Civilian Expert System Operation Guideline (2019.7)	City Architect / Master Planner	A civilian expert that provides consulting for <u>spatial policies</u> and strategies for administrative and project areas, or oversees, coordinates in the planning, design, and implementation stages of key projects to strengthen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competitiveness
	Public Architect	A civilian expert who manages individual architecture projects throughout <u>the planning, design,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phases</u> to ensure consistency of the plan

Sourc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19.07), the Civilian Expert System Operation Guideline.

Table 2. Issues of the civilian expert system

Category	Issues and problems
Appointment and working conditions	1. Objective appointment process, fairness: procedure, qualification
	2. The relation of status between City Architect / Master Planner
	3. Public Architect recruitment problem: exclusion of young architects, the percentage of local architects
	4. Fee: remuneration standard, payment method
Role and tasks	5. The necessity of operating the civilian expert system on province-level and differentiating tasks accordingly
	6. Tasks of City Architect/ Master Planner according to city size
	7. Public architect's task: direct involvement in design works
Responsible departments and organization system	8. The need to establish a designated organization
	9.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ian expert related organizations and departments in charge of civilian experts
	10.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civilian expert
Other	11. The problem of employing experts according to different fields
	12. Competency of civilian experts, competency of the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department

Source: Author

Chapter 3 Operation status of the civilian expert system in architecture and urban projects

Chapter 3 investigated the general operation status of the civilian expert system in architecture and urban projects, which was classified into three types for analysis.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A total of 39 local governments operate the civilian expert system as of May 13, 2020. There are 29 local governments with City Architects / Master Planners, of which 22 also operate the Public Architect system. There are 10 local governments where the Public Architect system is in operation without a City Architect or Master Planner. Of these local governments, eight have operated the system for more than two years, and most have introduced the system since 2019. The specific operation status of the local governments is as follows.

Three public organizations employ civilian experts which are the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KORAIL. As such, the operation of the civilian expert system in public institutions is still lacking. The case of the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is

exemplary in that while a civilian expert oversees the urban and architecture projects, there is also a general advisory group that is set up for cooperation, and a separate dedicated support organization of experts (Planning and coordination group). Unlike other regional offices,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employs a civilian expert to oversee the entire education facilities in Seoul in addition to managing the school innovation improvement project. In the future, continuous monitoring and analysis need to be carried out to prepare operation models for public institutions that manage firefighting and police facilities.

A total of eight key projects which employ civilian experts on a project basi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were having difficulty in finding competent experts. Second, because the period of appointment was not specified, different experts participated in the evolving stages of the project, making it difficult to execute the project in a consistent manner. Third, while most projects stipulate the setting of an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or the use of the civilian expert system to ensure project continuity after receiving state funds, there is no legal binding force to implement this. Fourth, the positive effects of securing project expertise, making connections with related projects in the region, and coordinating with related organizations were identified. However, due to the lack of guidance on the operation and support system of the project-based civilian expert system, it was found that considerable efforts were required to properly establish the role of civilian experts.

Chapter 4 Local government civilian expert system analysis

In Chapter 4, opinions were collated for the identified issues through expert group meetings with local government-based architecture and urban civilian experts, and the operation status of local governments was analyzed through advisory meetings and interviews. A total of 6 meetings were held, and 22 local governments were investigated, excluding local governments that had appointed a civilian expert for less than six months as of May 2020.

The opinions from the expert group meetings based on the identified issu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difficult to perform tasks due to the unclear status of the civilian expert, and the term of office and remuneration system needs to be clarified. Second, the

operation of a City Architect / Master Planner on a province-level is necessary under current circumstances, which should b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city size. Third,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ivilian experts' works so that advisory works are not a one-off task or simply part of a to-do list by administrators. Fourth, the need for Public Architects to engage in the planning phase of projects is strong, but their involvement in the design stage should be approached with caution. In general, it was found that advisory work in the planning stage should be strongly recommended rather than in the design stage. Fifth, it is necessary to educate and exchange Public Architects with regards to project planning and preliminary reviews. Last, the inclusion of civilian experts in Public Building Deliberation Committees should be based on local government conditions in relation to the activities of the civilian experts.

Next, the results of the case studies analysis of the local government civilian expert system are as follows. Concerning the appointment and working conditions, first, local government administrators faced difficulties even from the task of creating a list of candidates for City Architects / Master planners. Second, because of the strong perception that civilian experts are of temporary position, the status of the civilian experts was not firmly established. Considering role and tasks, first, civilian experts were generally not involved in setting the regional or future vision of the area which was related to the difficulty of securing the planning budget. Second, the most frequently performed task of providing advice ended up being one-off, and therefore, measures to secure effectiveness need to be sought. Third, it was found that coordination between related projects on a site basis was carried out only in some local governments, and therefore, higher awareness of this job needs to be raised. Fourth, in some cases, the City Architect / Master planner was found to actively seek out niche projects as a way of demonstrating the effects of introducing the system in the early period of their appointment. With regards to related organizations and systems, first, it was found that Seoul was the only local government with a designated organization, and there were only a number of areas with designated personnel. Even in these cases, personnel were changed often and it was difficult to ensure continuity of work. Second, in cases where there were Public officials in a profession term of office, the system was well understood and operated accordingly. Third, as of September 2020, there are seven Provincial Commissions on Architecture, 17 Public Building Deliberation Committees, and 3 Local Public Building Support Centers. Unlike Provincial Commissions on Architecture,

Public Building Deliberation Committees were organiz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local conditions in connection with the work and activities of civilian experts.

Chapter 5 Analysis of overseas civilian expert system

In Chapter 5, overseas cases that operate a civilian expert system were analyzed to understand its characteristics and draw implications for Korea. The results of studying the Netherlands, Belgium, and Denmark are as follows.

First, in the Netherlands, there is a National Architect, Regional Architect, and City Architect, mainly working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t was notable that they are legally granted authorities that provide advice and deliberate matters regarding building permits. In Belgium, three provincial governments and five cities, including Brussels, operate a similar system whereby all experts are full-time employees. The Belgium Regional Architect is appointed by going through seven stages of a selection process and is characteristic in that it is operated as a group including a research component. By operating a research organization concurrently, carrying out various tasks such as creating master plans, presenting visions for the city, tackling social issues, and proposing policy alternatives is possible. Denmark has nine local governments that operate the City Architect system, all of which are employed full-time. The term of office is aligned with the mayor's term of office or set as five years (two consecutive terms), which is considerably longer than in Korea. There was only one area that operated a designated organization, which allocated the budget for planning and establishing strategic projects, and operated an urban laboratory to discuss the direction of urban development with citizens.

Although a simple comparison between the different states is difficult, several differences were apparent. First, a National Architect was in operation in the Netherlands. Second, the term of office was from five to ten years and was the same as the mayor. Third, most were employed full-time and worked within the administrative system as well as participating in the private sector. Fourth, experts were selected mostly through open recruitment.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also similarities with Korea in that first, their status was not firmly established, second, the system was not widespread among local governments due to budget reasons, and third, there were concerns about individual

competence and subjective judgment.

The implications for Korea are as follows. First, a longer term of office is necessary to allow experts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and a desirable city. Second, a specialized research organization needs to be operated in conjunction with the system to ensure diverse activities and roles. However, considering the current operation of the system, it may be necessary to devise ways of carrying out these tasks with the Public Architect. Third, awareness among mayors and politicians need to be improved, not only local administrators. However introducing a National Architect, expanding the scope of work of the civilian expert to the private sector, and pursuing full-time employment may need to be more carefully considered in Korea.

Chapter 6 Improvement for civilian expert system operation

In Chapter 6, the basic direc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domestic and overseas cases were set, and the civilian expert system operation mode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were suggested.

□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

First, recommendations for appointment and working conditions are as follows. ① The list of experts should be archived and data disclosed to create a pool of candidates. ② The legal amendments to expand the qualification standards of civilian experts should be made reflecting the actual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 operation. ③ A detailed plan for firmly establishing the status of City Architect / Master Planner should be made, and the term of office and remuneration system should be revised accordingly. ④ In Public Architect appointments, ways of cooperating with local architects should be devised rather than securing a certain percentage of locally-based architects. ⑤ Detailed payment standards according to the different types of work and activities of the Public Architect should be prepared.

Second, recommendations for matters related to roles and tasks are as follows. ① The City Architect / Master Planner needs to be operated in provinces, and the system needs to be implemented at the level of cities, counties, and gu (basic autonomous districts). ② The differentiation of tasks by city size should be explained and major tasks that need to be performed depending on city size should be presented. ③ Public Architects should

focus on providing consultation in the planning stage rather than the design stage, and a system that allows the involvement from planning to the entire project needs to be established. Direct design involvement should be avoided in general, however, when unavoidable, there should only be very limited involvement. ④ In operating the Public Architect system, a consensus with regards to the roles of the expert needs to be reached prior to the project commencement, and a feedback system to share activities and progress should be in place, as well as a system that ensures cooperation with the City Architect / Master Plan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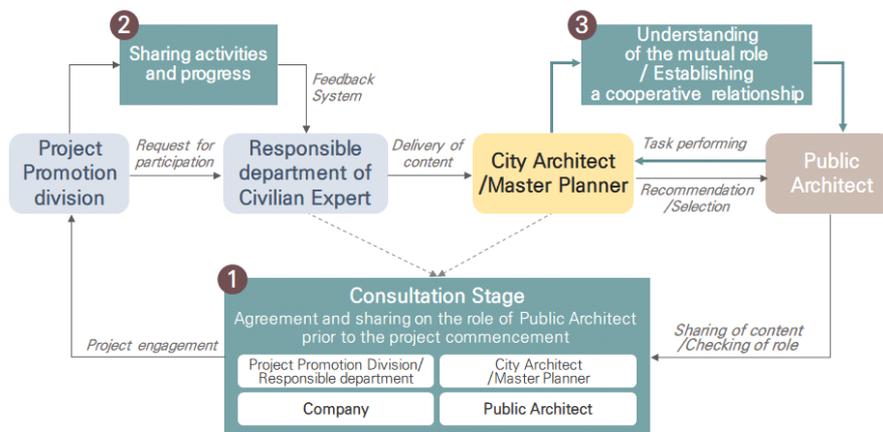


Figure 1. A conceptual diagram for improving the operation of the task-performing system of Public Architect

Source: Author

Third, recommendations for the operation system and organization are as follows. ① To establish professional manpower and a designated organization, the Professional Position System and the basis for establishing a Local Public Building Support Center should be used. ② With regards to setting relations with related organizations, the Public Building Deliberation Committee should be organized according to local conditions in connection with the degree of work and activities of the civil expert. The Local Public Building Support Center should avoid overlaps with the advisory group and the Public Building Deliberation Committee, and if a Public Architect is included in the advisory group, he/she should refrain from consulting in the preliminary reviews of projects that he/she has conducted. ③ The Provincial Commissions on Architecture's regulations should be amended so that it could take over the role of the Public Building Deliberation Committee. ④ An operating system that ensures the involvement of the

civilian expert consistently throughout the project should be established and training carried out.

□ Operation model

Based on the above-mentioned direction of improvement, the study presented a model of operation of the civilian expert system. Since this is related to the existing “Civilian Expert System Operation Guideline”, the operation model was presented by revising these items. This was divided into the City Architect / Master Planner tasks and operation amendment (draft), the Public Architect tasks and operation amendment (draft), and the Civilian Expert System amendment (draft). For each matter, amendments were written at a specific level to be reflected in the actual guideline.

First, with regards to the City Architect / Master Planner tasks and operation, the existing spatial scale of the province, Metropolitan areas, cities, gun, and gu should be revised to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gun, gu, Metropolitan Areas / Large cities, and Province. For each local government, the conditions, considerations, and tasks were summarized.

Second, with regards to the Public Architect tasks and operation, details on participating in the design stage were revised. Principles or the direction of activities were also added.

Third, with regards to the Civilian Expert System operation system revisions (draft), the relation with the Public Building Deliberation Committee, Local Public Building Support Center, as well as the relation between the preliminary review advisory group within the Center and the civilian expert, were specified. The relation with designated or support organizations was also added which were differentiated for Metropolitan areas and basic autonomous districts.

□ Institutional improvement

Revisions for the Framework Act on Building, Public architecture design standard, and the Civilian Expert System Operation Guideline were suggest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Building” amendments to terminology, qualification standards, specification of the scope of work,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were suggested. In the Civilian Expert System Operation Guideline, amendments (draft) regarding the term of office, remuneration standard, and

qualifications, which are difficult to enforce by law, were made while ensuring consistency with the amendments to the “Framework Act on Building”. In the Public architecture design guideline, the designated organization of the civilian expert, related project support organizations, and manpower were revised.

Table 3. Amendments to the “Framework Act on Building”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Building”

Category	Related matters	Amendments
Article 23 (Participation of Civilian Experts)	Terminology	→ Delete the term Civilian Expert and specify City Architect / Master Planner, Public Architect as legal terms
	Scope of work of civilian experts	→ Specify tasks separately for City Architect etc., and Public Architect → Delete ‘processing of civil complaints’ clause
	Remuneration	→ Suggest engineering project cost standard
	Qualification	→ Specify qualification criteria separately for City Architect / Master Planner and Public Architect → Change positional criteria to qualification criteria (PhD degree holders) → Specify overseas qualifications
Article 19 (Function of Provincial Commissions on Architecture Policy)	Expand functions of related organizations	→ Include deliberation regulations in other laws

Source: Author

Table 4. Amendments to the “the Civilian Expert Operation System Guideline” and “Public architecture design standard”

Related matters		Amendments
Guide line	Term of office and working conditions	→ (Alternative 1) 4 years (or 5 years), allow consecutive terms → (Alternative 2) Long-term appointment, re-appointment possible every 3 years → Full-time or part-time employment
	Remuneration	→ (City Architect) Paid in salary → (Public Architect) Establish remuneration standards depending on work type and difficulty of the task
	Civilian Expert operation system	→ Avoid rotational positions, introduce Public official in a professional term of office, recognize the professional position
Task	Support Civilian Expert	→ Appoint Public official in a professional term of office, designate a professional position → Support the work of civilian experts employed at the Local Public Building Support Center

Source: Author

Chapter 7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the operation model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architecture and urban field civilian expert system by gathering expert opinions, analyzing local government operation status, and drawing implications for the system to align to its original purpose and create substantial resul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to analyze the operation status of the civilian expert system that has been in place for ten years, and that the study collected expert opinions on pressing issues of the system. It has also presented an operation model that clearly defines the role and task of the City Architect / Master Planner depending on city size. At the time when the amendment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Building Service Industry” and the “Special Act on Public Architecture” is in progress as of 2019, the study contributes to current policies by presenting amendments (draft) to ensure the proper operation of the civilian expert system while maintaining consistency amo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the study has mainly focused on the civilian experts working in local governments, and therefore lack in-depth knowledge of how the system works in public institutions and project-based cases. In the future, further studies for both types should be pursued and in-depth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to prepare appropriate operation models for these types.

Keywords :

Civilian Experts, City Architect, Master Planner, Public Architect, Design Management Process, Public Building

1.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현황(20.9월말 기준)
 2.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

1.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현황(20.9월말 기준)¹³⁰⁾

□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개요

-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 총 48곳
 - 도·특·광역시 : 11곳 (약 65%), 시·군·구 : 37곳 (약 16%)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 모두 운영하는 지자체 : 29곳
 - 총괄건축가만 운영하는 지자체 : 6곳
 - 공공건축가만 운영하는 지자체 : 13곳
 - 총괄건축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 35곳
- 민간전문가 규모 : 총 942명
 - 총괄건축가 총 35명
 - 공공건축가 총 907명

[표 부록1-1] 국내 지자체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운영 현황('20.9월말 기준) (단위: 개)

구분	전체 지자체 수 ¹³¹⁾	민간전문가 운영 지자체 수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만 운영	공공건축가만 운영
도·특·광역시	17	11 (약 65%)	도 6 특·광역시 5	5	1	0
시·군·구	226	37 (약 16%)	시·군 32 구 5	19	2	11
합 계	-	48	48	29	6	13

출처: 저자 작성

[표 부록1-2] 국내 지자체 민간전문가 위촉 현황('20.9월말 기준) (단위: 개, 명)

구분	전체 지자체 수 ¹³²⁾	민간전문가 운영 지자체 수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인원	공공건축가 인원	합 계
도·특·광역시	17	11 (약 65%)	도 6 특·광역시 5	6	176	182
시·군·구	226	37 (약 16%)	시·군 32 구 5	21	268	289
합 계	-	48	48	35	907	942

출처: 저자 작성

130) 해당 내용은 20년 4월부터 매달 말일 기준으로 정리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 과와 공유하고 있으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npbc.or.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131) 행정안전부(2019),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p.4. 참고

132) 행정안전부(2019),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p.4. 참고

□ 도·특·광역시 운영현황 : 총 11개 지자체

- 도(6곳) :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특·광역시(5곳)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인천* (*인천: 공공건축가만 운영 중)

[표 부록1-3]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 도·특·광역시('20.9월말 기준)

구분	지역	담당부서	민간전문가			제도 마련	지원 사업 대상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성명	공공건축가		
도 (6)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공공건축팀	총괄건축가 ('19.7.15. 위촉)	제해성	63명('19.7.15. 위촉) (수석2, 중진 31, 신진 30)		'19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건축문화팀	총괄건축가 ('20.2.18. 위촉)	윤충열	20명 ('20.2.18. 위촉)	○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총괄건축가 ('20.7.6. 위촉)	손승광	30명 ('20.9.1. 위촉)	○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총괄건축가 ('19.4.16. 위촉)	배병길	-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공공건축가담당	총괄건축가 ('19.5.14. 위촉)	민현식	29명 ('19.6.7. 위촉, '20.6.7. 추가5인 위촉)	○	'19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건축팀	총괄건축가 ('19.12.5. 위촉)	김용미	34명 ('20. 2. 위촉)		
특·광역시 (5)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총괄건축가 ('19.1.2. 제3대 위촉)	김승희	265명('20.1.22. 9기 위촉) (MP25, 중진93, 신진147)	○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기획과	총괄건축가 ('19.2.14. 위촉)	김인철	42명 ('19.5.16. 위촉)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총괄건축가 ('19.4.23. 위촉)	함인선	24명 ('19.7. 17기 위촉)	○	'19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건축계획팀	-	-	50명 ('19.5. 위촉) (MP 5, 중진26, 신진19)	○	
	대전광역시	도시경관과	총괄건축가 ('20.1. 6. 위촉)	이성관	49명('20.3.4. 위촉) (수석2, 중진 19, 신진 28)	○	

출처: 심경미 외 (2020), 「민간전문가 참여 및 통합디자인 관리체계의 지속적 운용방안 연구-제1권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pp.17-19. 참고후 저자 추가보완

*초록 음영부분은 공공건축가만 운영하는 곳, 핑크 음영부분은 총괄건축가만 운영하는 곳

□ 시·군·구 운영 현황 : 총 37개 지자체

- 시·군(32곳) : 경기 6, 강원 2, 충북1, 충남 4, 전북 1, 전남 1, 경북 5, 경남 12
- 구(5곳) : 서울 서대문구, 서울 강동구, 서울 은평구, 인천 서구, 대구 수성구
- 총괄건축가만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 5곳
 - 시·군(2곳) : 전북 전주시, 경북 경주시
 - 구(3곳) : 서울 서대문구, 서울 은평구, 인천 서구

- 공공건축가만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 12곳
 - 시·군(11곳) : 경기 포천시, 전남 순천시, 경북 영천시, 경남 의령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함안군, 경남 사천시, 경남 양산시, 경남 통영시, 경남 창녕군, 경남 하동군
 - 구(1곳) : 서울 강동구

[표 부록1-4]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 시·군·구('20.9월말 기준)

구분	지역	담당부서	민간전문가			제도 마련	지원 사업 대상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성명	공공건축가			
시·군 (32)	경기 (6)	용인시	공공건축과	총괄건축가 (‘18.12.28 위촉)	김대익	13명 수석건축가 3명(‘18.12.28. 위촉) + 공공건축가 10명(‘19.1.11 위촉)		
		수원시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기획관 (‘19.3. 위촉)	고은정	14명 (‘20.8.6. 위촉)	○	
		파주시	회계과 공공건축컨설팅팀	총괄건축가 (‘19.8.20. 위촉)	이기욱	4명 (‘19.8.20. 위촉)	○	‘19, ‘20
		포천시	건축과 공공건축시설팀	-	-	14명 (‘19.10.8. 위촉)		
		성남시	건축과	총괄건축가 (‘20.2.1. 위촉)	홍경구	14명 (‘20.2.1. 위촉)	○	‘20
		화성시	도시디자인과	총괄계획가 (‘20.6.16. 위촉)	임승빈	3명 (‘20.9.23. 위촉)		
	강원 (2)	춘천시	도시재생과 총괄건축가 운영지원TF팀	총괄건축가 (‘19.5.21. 위촉)	이민아	13명 (‘19.7.31. 10명 위촉) (‘20.7.6. 3명 위촉)	○	‘19, ‘20
		원주시	건축과 총괄건축가TF팀	총괄건축가 (‘19.6.19. 위촉)	주대관	11명 (‘19.6.19. 5명 위촉) (‘20.5.8. 6명 위촉)	○	‘19, ‘20
	충북 (1)	청주시	공공시설과	총괄건축가 (‘20.6.22. 위촉)	신춘규	20명 (‘20.8.10. 위촉)	○	‘20
	충남 (4)	부여군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	지역총괄계획가 (‘16, ‘17 지원사업 이후 자체 운영 중)	강인호	6명 (‘20.5.26. 위촉)		‘16, ‘17, ‘20
		당진시	건축과 공공건축팀	총괄계획가 (‘18지원사업신청후운영중)	차주영	8명 (‘19.1. 5명 위촉) (‘20.3. 3명 위촉)		‘18 ‘19
		공주시	도시정책과	총괄건축가 (‘20.5.19. 위촉)	최성진	6명 (‘20.9.2. 위촉)		‘20
		홍성군	허가건축과	총괄건축가 (‘20.6.22. 위촉)	이창섭	5명 (‘20.9.24. 위촉)		‘20
	전북 (1)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도시 총괄조경가 (‘19.1.18. 위촉)	최신현	-	○	
	전남 (1)	순천시	도시재생과	-	-	8명 (‘19.7.19. 위촉)		
	경북 (5)	영주시	도시과 도시경관팀	도시건축관리단장 (‘19.4. 제3대 위촉)	신승수	3명 (‘15년 1명, ‘19.6 2명)	○	
		의성군	지역재생과 생태디자인팀	총괄건축가 (‘19.6.1. 위촉)	윤철재	3명 (‘19.12.1. 위촉)		‘20

구분	지역	담당부서	민간전문가			제도 마련	지원 사업 대상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성명	공공건축가			
경남 (12)	경주시	주택과 공공건축팀	총괄건축가 (‘19.6.18. 위촉)	이대준	-			
		구미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팀	총괄건축가 (‘20.9.22. 위촉)	이우열	6명 (‘20.6.9. 3명 위촉) (‘20.9.22. 3명 위촉)		‘20
		영천시	건축디자인과 공공건축지도담당	-	-	18명 (‘20.9.15. 위촉)		
	진주시	건축과 공공시설팀	총괄계획가 (‘19.6.10. 위촉)	최삼영	9명 (‘19.1.)	○	‘19, ‘20	
		의령군	도시재생과 건축경관담당	-	-	10명 (‘19.4.17. 위촉)		
		거창군	도시건축과 도시재생담당	-	-	7명 (‘19.6.24. 위촉)		
		김해시	건축과 건축행정팀	총괄건축가 (‘20.5.12. 위촉)	고인석	9명 (‘19.7. 위촉, ‘20.7. 추가5인 위촉)		
		함안군	도시건축과 공공디자인담당	-	-	6명 (‘19.9.5. 위촉)		
		사천시	건축과	-	-	5명 (‘19.9.30. 위촉) (건축 3, MP 2)		
		양산시	건축과	-	-	4명 (‘20.1.1. 위촉)		
		통영시	건축과	-	-	9명 (‘20.5.22.)		
		창녕군	도시건축과	-	-	5명 (‘20.1.31. 위촉)		
		남해군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	총괄건축가 (‘20.2.14. 위촉)	안재락	8명 (‘20.6.24. 위촉)		‘20
		창원시	건축경관과	총괄건축가 (‘20.3.5. 위촉)	오성훈	22명 (‘20.4.27. 위촉)	○	‘20
		하동군	도시건축과	-	-	5명 (‘20.7.15. 위촉)		
구 (5)	서울 (3)	서대문구	기획예산과	지역총괄계획가 (‘15. 위촉)	주대관	-		‘15
		강동구	건축과 공공건축팀	-	-	23명 (‘18.9.28. 위촉)	○	
		은평구	건축과 건축관리팀	총괄건축가 (‘19.7.1. 위촉)	한영근	-		
	인천 (1)	서구	건축과 공간지원팀	총괄건축가 (‘19.1.2. 위촉)	하태석	-	○	‘20
	대구 (1)	수성구	도시디자인과	총괄건축가 (‘20.5.13. 위촉)	신창훈	10명 (‘20.8.21. 위촉)		‘20

출처: 심경미 외(2020), 「민간전문가 참여 및 통합디자인 관리체계의 지속적 운용방안 연구-제1권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pp.17-19. 참고후 저자 추가보완

*회색음영부분은 2020년 국토부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대상지에 해당함

**초록 음영부분은 공공건축가만 운영하는 곳, 핑크 음영부분은 총괄건축가만 운영하는 곳

□ 기타 : 분야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를 운영하는 경우

- 전북 전주시 : 지역재생 총괄계획가 1인(조준배 본부장) 운영
 - 담당부서 : 주거복지과
 - 근거 :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
- 서울 강동구 : 도시경관총괄계획가 1인(김경인 대표) 운영
 - 담당부서 : 도시경관과 도시경관사업팀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경기 포천시 : 도시재생 총괄계획가 1인(오승수 대표) 운영
 - 담당부서 : 친환경도시재생과

[표 부록1-5]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 분야별 총괄건축가/계획가('20.9월말 기준)

구분	지역		담당부서	민간전문가			제도 마련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성명	공공건축가	
시·군 (2)	전북 (1)	전주시	주거복지과	지역재생 총괄계획가 ('19.6.28. 위촉)	조준배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18명 ('18.2. 위촉)	○
	경기 (1)	포천시	친환경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총괄계획가 ('20.7.8. 위촉)	오승수	-	
구 (1)	서울 (1)	강동구	도시경관과 도시경관사업팀	도시경관총괄계획가 ('19.1.2. 위촉)	김경인	-	○

출처: 저자 작성

2. 부처별 프로젝트 단위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1)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교통부)

□ 민간전문가 도입배경 및 현황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전문성 확보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총괄코디네이터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사업주도 및 발굴 등을 위해 코디네이터를 두도록 하고 있다.¹³³⁾ 이와 더불어 2019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물이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우수한 설계가 구현되도록 사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공공건축가 참여 의무화 하였다.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는 사업(3점)에 한하여 가점을 부가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를 유도함에 따라 현재 대구, 세종, 제주 등 특·광역시 3곳을 제외하고 67개 지자체에서 공공건축가를 위촉·시행중에 있다.¹³⁴⁾

[표 부록2-1]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주거복지·삶의 질 향상, 도시활력 회복, 일자리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을 목표로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시기	2017~현재 (도시재생사업 2014년도부터 시행)
근거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재생형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우리동네살리기
재원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기금에서 지원
현장지원	지자체장이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총괄·조정을 위해 도시재생 분
사업총괄	센터장과 함께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의 자문 및 총괄 역할
민간전문가	코디네이터 *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센터장과 통합 또는 별도 위촉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가능
유형	주민 의견수렴, 교육, 주민참여 사업발굴 등 현장에서 주민 접점 사업 주도 및 공
코디네이터	공건축물 설계지침 수립, 자문 등 역할 수행 * 코디네이터 위촉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 상황에 따라 센터장 겸무 가능 *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의미

출처: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pp.1-10.;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원형)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pp.7-10.;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pp.10-11.;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https://www.city.go.kr/portal/policyInfo/urban/contents04/link.do>(검색일: 20.3.15)) 참고후 저자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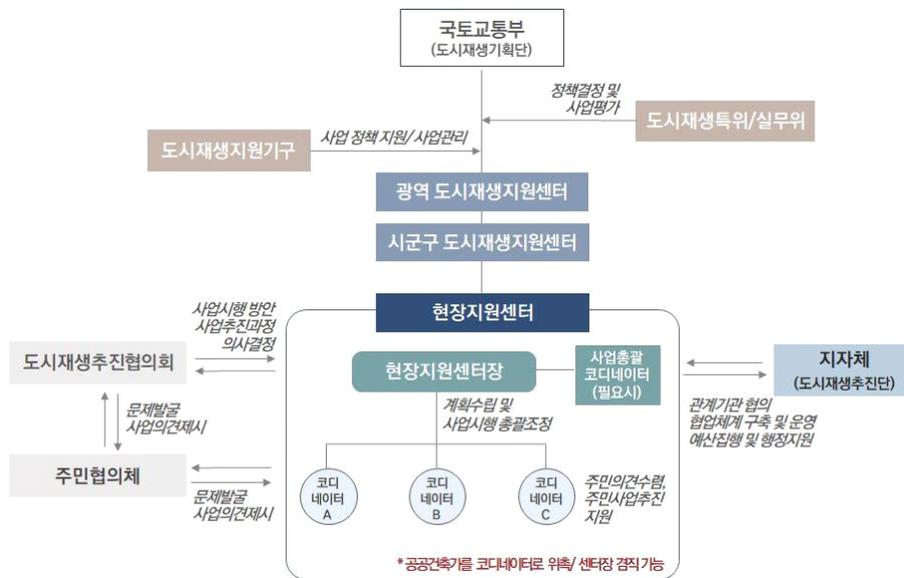
133) 현재 사업총괄코디네이터와 중간지원조직 내 장인 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의 위상 및 역할 설정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유도

134) 이들 지자체 대부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건축가만 위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2019.11월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2019), “총괄·공공건축가 운영현황”, 내부자료.)

□ 민간전문가 운영 및 지원체계

도시재생뉴딜사업 내 민간전문가는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가진 도시재생지원센터 혹은 현장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운영 중에 있다. 그 중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센터장을 겸직으로 하거나, 필요시 별도 위촉이 가능하며, 공공건축가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위촉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 및 현장상황에 따라 센터장이 겸무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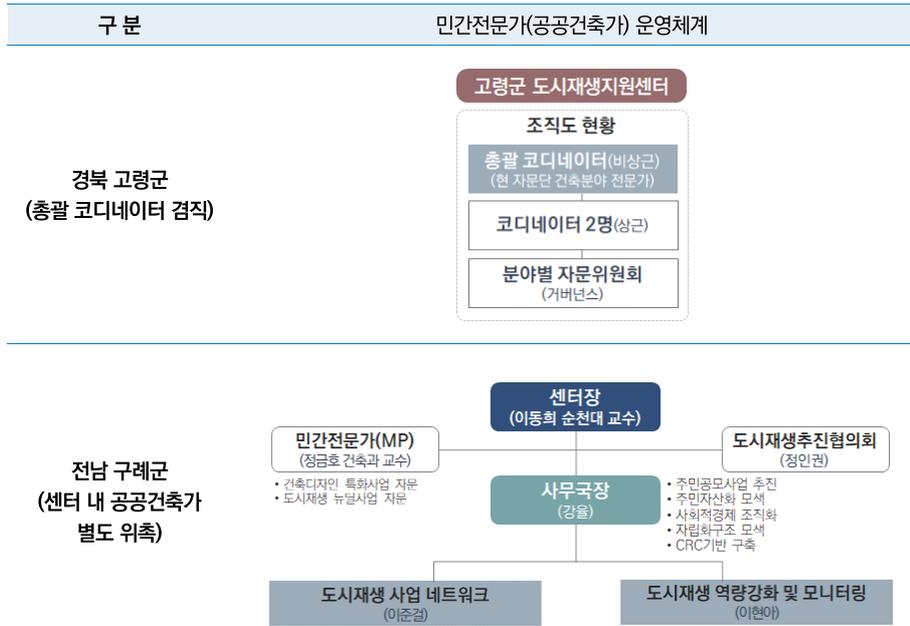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공공건축가 운영방식으로 총괄코디네이터로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거나 별도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공공건축물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 사업 내 별도 전문가 조직은 크게 중앙 차원에서 1. 정책 결정 및 심의·평가를 위한 도시재생특위/도시재생실무위, 2. 사업추진 관련 컨설팅을 수행하는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있으며, 지역단위에서 3. 개별 사업시행 및 관리 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가 있다.



[그림 부록2-1]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출처: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원형)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p.5. 참고후 저자 재작성

[표 부록2-2]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출처: 고령군(2019), 「경북 고령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형)」, p.42.; 구례읍(2019), 「전남 구례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형)」, p.41. 참고후 저자 재작성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민간전문가의 경우 최소 주 15시간 이상 상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며, 수당은 회의참석, 계획에 대한 검토 등 활동내역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수당의 경우 뉴딜사업비(지방비)를 활용하여 지급가능 (월단위 또는 활동일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며, 교통비 및 숙박비는 실비지급)하다.

[표 부록2-3]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전문가 역할 및 지원체계

구 분	가이드라인 개정(안)내용
도시재생 거버넌스 기반 구축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근무여건 최소 주 2일(15시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상근근무, 1년 이상 장기계약 및 4대보험 가입을 권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현장지원센터 운영 센터장 및 코디네이터(공공건축가포함)수당은 회의 참석, 계획에 대한 검토 등 활동내역에 따라 지급

출처: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기지형·일반근린형)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p.8,p.34. 참고후 저자 재작성

□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관계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의 총괄조정역할을 하는 센터장/사업총괄코디네이터와 별도로 사업시행과정에서 주민참여 및 주민주도 사업추진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별도로 두고 있다. 센터장(사업총괄코디네이터)은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지자체 장이 위촉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사업총괄코디네이터와 센터장을 통합하여 운영되거나 별도 위촉이 가능하다. 코디네이터는 주민 의견수렴, 교육, 주민참여 사업발굴 등 현장에서 주민 접점 사업 주도 및 공공건축물 설계지침 수립, 자문 등 역할 수행하며, 코디네이터의 역할로 공공건축가 위촉 가능하다. 공공건축가는 활성화지역 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물의 경우 직접 설계지침 수립을 수행하거나 자문 등을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센터장 겸무시 센터장 역할을 수행한다.

□ 주요사례 및 운영특성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9년도 이후 대구, 세종, 제주를 포함한 70개 지자체에서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관련 설계지침 작성 및 관련 사업시행 자문 등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9.11월 기준)¹³⁵⁾ 단기간에 공공건축가 위촉이 확산되었으나,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 도입시점은 2019년도 상반기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현재 개별건축물 단위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지지 않아 각 사업에서 공공건축가의 역할 등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가이드라인 상에서도 공공건축가에 대한 명확한 역할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 초반 활성화계획 수립 당시 건축계획 등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로 한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새뜰마을사업(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민간전문가 도입배경 및 현황

새뜰마을사업의 경우 기존 관주도의 일방향적인 사업방식을 탈피하고 사업의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와 상호협의 속에 사업을 추진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주거생활인프라 외에 복지,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마을활동가를 두어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대부분 대학교수 및 전문가, 마을활동가,

135) 국토교통부 (2019), “총괄·공공건축가 운영현황”, 내부자료. 참고후 저자 재작성

사회활동가가 사업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¹³⁶⁾

[표 부록2-4] 새뜰마을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열악한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및 노후 불량한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활력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	
사업 시기	2015 ~ 계속	(‘15년부터 도시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국가균형위는 ‘15~‘19까지 도시 지역 97곳을 선정 지원)
근거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민간전문가 유형	총괄코디네이터	-사업의 총괄조정자(중재자) 역할 -사업추진협의회 총괄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총괄 -참여주체간의 이해관계 및 갈등 조정 -마스터플랜에 대한 주민설명 및 합의형성 -개별사업계획 수립 시 자문
	마을활동가	-현장에서 총괄코디네이터와 함께 주민 간 가교 역할 담당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설명, 의견수렴, 주민간 합의유도 등 -지역 및 주민 여건파악을 통한 지역에 필요한 주민공동체 지원 사업 발굴 -행정과 주민간 또는 주민간 갈등조정 -주민교육 및 전문가 네트워크 역할

출처: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도시 새뜰마을사업 시행 매뉴얼」, pp.4-6, p.13. 참고후 저자 작성

□ 민간전문가 운영 및 지원체계

새뜰마을사업은 사업 특성상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의 내밀한 여건을 파악하고 전문성을 갖춘 총괄 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의 역할을 중요시 하고 있다. 새뜰마을사업은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 지원조직이 부재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용역사와 함께 유관센터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체계 구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외 사업대상지의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분야별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회의 개최 또는 개별 자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뜰마을사업의 경우 민간전문가에 대한 자격 및 역할에 대해 명시할 뿐 이들을 위한 지원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¹³⁷⁾ 대상지의 규모 등 지역여건

136) 임정민 외 (2016), 「새뜰마을사업 추진체계 및 평가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pp.21-22, pp.100-103. 참고후 저자 재작성

에 따라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회·경제적 계획에 전문지식이 높은 마을 활동가를 총괄코디네이터로 위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총괄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매 분기 자체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지원하고 있다.

새뜰마을사업 사업추진체계 구축: 총괄코디네이터

본 사업의 계획수립, 사업추진, 유지관리에 대한 자문 및 다양한 참여주체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의 총괄코디네이터를 위촉

· 총괄코디네이터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전문가에 대한 풀을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 및 사업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복수로 추천하면 국토교통부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위촉

- 총괄코디네이터 위촉·해촉·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

- 총괄코디네이터에 대해서는 워크숍 등을 통하여 정보교류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유도 할 예정

·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회·경제적 계획에 전문지식이 높은 마을활동가를 총괄코디네이터 등으로 위촉 가능

출처: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도시 새뜰마을사업 시행 매뉴얼」, p.11.

□ 민간전문가 역할 및 관계

총괄·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총괄코디네이터와 주민사업 등을 발굴하고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마을활동가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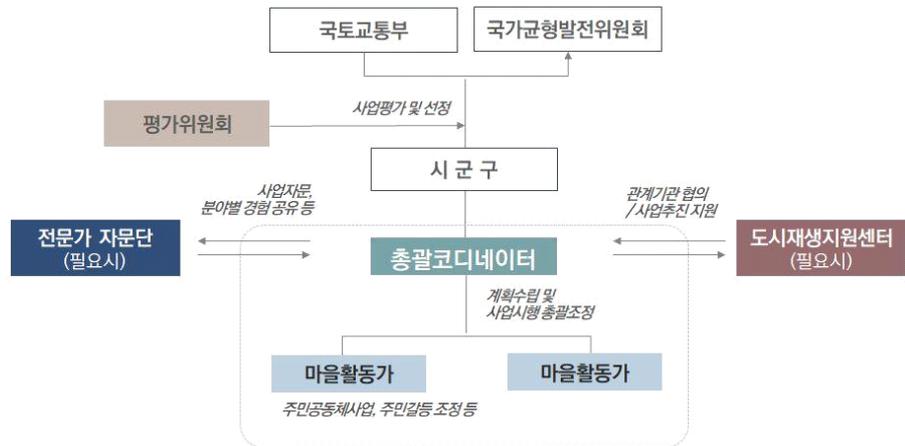
총괄코디네이터는 계획 수립, 사업추진, 유지관리에 대한 자문 및 다양한 참여주체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주민협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총괄 및 참여 주체간의 이해관계 및 갈등을 조정하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장한다. 마을활동가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설명, 의견수렴, 주민간 합의유도 등 코디네이터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며 지역 및 주민 여건 파악을 통한 지역에 필요한 주민공동체 지원 사업 발굴한다.

137) 총괄코디네이터가 희망하는 제도개선 및 지원사항으로 총괄 코디의 권한 및 역할의 명확화를 꼽음, (출처: 이영환 외(2020), 「새뜰마을사업 성과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p.95.)

[표 부록2-5] 새뜰마을사업 민간전문가 역할

구 분	자격 및 구성	역할
총괄 코디네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터 플랜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마을만들기) 경험이 풍부하며 참여주체간의 의견 조정 및 개별사업의 연계와 조정 등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 · 역량 있는 마을활동가가 겸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총괄조정자(중재자) 역할 · 사업추진협의회 총괄운영 · 마스터플랜 수립 총괄 · 참여주체간의 이해관계 및 갈등 조정 · 마스터플랜에 대한 주민설명 및 합의형성 · 개별사업계획 수립 시 자문
마을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가 있으며 지역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활동가 · 시민단체 및 사회활동가 중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 · 도시재생지원센터, 학회, 협회 등을 통해 관련 교육을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설명, 의견수렴, 주민간 합의유도 등 코디네이터 역할 · 지역 및 주민 여건파악을 통한 지역에 필요한 주민공동체 지원사업 발굴 · 행정과 주민간 또는 주민간 갈등조정 · 주민교육 및 전문가 네트워크 역할

출처: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도시 새뜰마을사업 시행 매뉴얼」, p.13. 참고후 저자 재작성



[그림 부록2-2] 새뜰마을사업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출처: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도시 새뜰마을사업 시행 매뉴얼」, pp.13-15. 참고후 저자 재작성

□ 주요사례 및 운영특성

새뜰마을사업은 2015년 사업을 시작하며 현재 총87개소(2020년 4월기준)로 총괄코디네이터가 모두 위촉·활동하고 있으나, 이들을 지원해주는 조직이 부재하여 민간전문가의 역할 지속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경북 김천시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민으로 구성된 마을활동가 3명을 선정·운영하였으나, 전문성 및 역량

의 부족 및 지역의 의견취합에 어려움이 있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에 대한 역할을 일부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의 S/W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지역민을 자주 만나는 조직으로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총괄 코디네이터에게 공유하고자 하였다.¹³⁸⁾

3)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 시범사업(국토교통부)

□ 민간전문가 도입배경 및 현황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 시범사업에 한하여 기획 단계부터 사업 전반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디자인 의사결정권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디자인 관련 총괄을 지원하는 전문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민간전문가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시범사업의 경우 기존 지역개발사업 중 사업 성격, 규모, 유사제도 운영 경험 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시범사업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사업 모두 총괄디자이너를 위촉, 전문성과 효용성을 지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표 부록2-6]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 시범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지역개발사업은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부터 산업단지, 관광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생활밀착형 SOC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연계함에 따라 장소단위 통합적 디자인 관리를 하기 위함	
사업 시기	2018.10 ~	2018년 기존 지역개발사업 중 사업 성격, 규모, 유사제도 운영 경험 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시범사업 5개소를 선정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 진행
근거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재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민간전문가 유형	총괄디자이너	· 지역개발사업에서 기획, 설계, 시공 등 사업수행과정에서 디자인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역할 · 통합디자인협의회의 운영,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총괄, 설계 및 시공 발주 관리 및 내용 점검 등 제반 사항 총괄·조정

출처: 김상호(2019),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시범사업 설명자료", 내부자료.(2019.4.5.), pp.3-7, 참고후 저자 재작성

138) 사업초기에는 정기적인 만남(월 2회)을 통해 각 주체별 의견 조율에 힘썼으나 사업이 안정화되고 마무리 시점인 현재는 주요 업무에 관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매주 메일을 통해 업무공유 진행 (주요 안건이 발발 시, 회의 개최) (출처: 김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오미 담당자 유선 인터뷰 내용(20.0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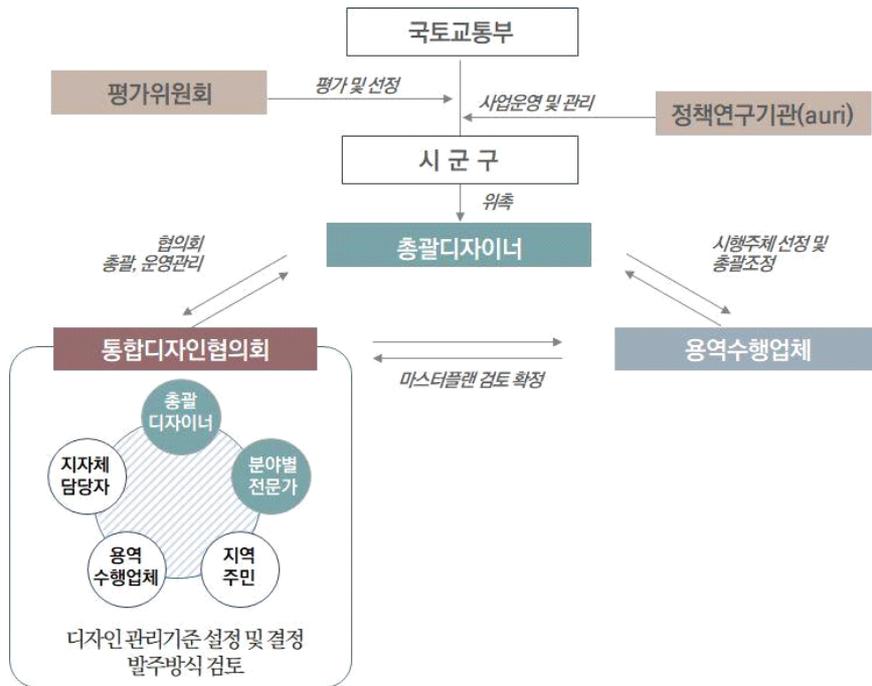
□ 민간전문가 운영 및 지원체계

시범사업의 민간전문가인 총괄디자이너를 중심으로 행정, 전문가, 지역주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합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 주도의 파트너적 거버넌스 형성하여 기획-사업시행까지 디자인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정·운영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때 지역 개발사업의 기획 및 추진 단계에서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괄디자이너와 함께 기준 및 방향등을 결정해나가는 통합디자인협의회는 총괄디자이너가 협의회 장으로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 분야별 전문가, 계획 및 설계 수행 주체, 지역주민이 협업하여 방향 등을 결정하였다. 이 때 통합디자인협의회는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마스터플랜의 내용이 디자인 관리기준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방향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 확정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마스터플랜 및 설계 발주 시 수준 높은 디자인 구현을 위한 적절한 발주 방식을 검토·결정하며 수행과정에서 중간결과물 및 최종결과물이 합의된 디자인 방향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검토하도록 하였다.

총괄디자이너의 근무는 1일 8시간 상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추진과정에 따라 원격근무 인정 등 유동적으로 조정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전검토, 전담부서 및 유관부서 협의, 전문가 컨설팅팀 협의, 통합설계관리위원회 운영, 디자인 검토회의 참석 등을 포함하여 매주 1일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때 인건비는 당해 연도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기술사 및 '건축사 노임단가(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를 기준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139)

139) 김상호(2019),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시범사업 설명자료”, 내부자료(2019.4.5.), p.10. 참고후 저자 재작성



[그림 부록2-3]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시범사업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출처: 김상호(2019),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시범사업 설명자료", 내부자료, (2019.4.5.), p.9. 참고후 저자 재작성

□ 민간전문가 역할 및 지원체계

사업추진의 전반의 총괄·조정 권한을 총괄디자이너에게 두고 이를 중심으로 사업계획 및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다. 총괄 디자이너는 지역개발사업의 계획 및 설계수행과정에 참여하여 기획안 작성, 계획수립주체 선정, 기본계획 및 통합설계지침 수립, 디자인 중점관리 대상의 설계수행주체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설계단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총괄·조정한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해야 할 경우, 기본계획 재정비의 적합성 및 설계변경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획된 디자인 가치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관련기관, 주민 및 지역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 수렴한다.

[표 부록2-기]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시범사업 민간전문가 자격 및 구성, 역할

구 분	자격 및 구성	역할
총괄 디자 이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장이 적절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해당지역 혹은 지역개발사업이 지향하는 디자인 가치와 방향을 공유하는 자를 총괄디자이너로 위촉 가능 · 지자체에서 실력 있는 총괄디자이너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전문가 추천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기준 결정 · 사업방향 검토 및 기본계획 방향제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및 총괄 조정 · 통합설계관리위원회 의견 수렴 및 조정 · 기본계획 및 설계수행팀 구성방식 (업체 수, 자격 등)에 대한 자문 · 용역 수행팀과 분야별 사업시행자 간의 업무 협의 및 조정 · 기본계획 및 통합설계지침에 따라 설계가 수립되었는지 검토 및 자문

출처: 김상호(2019),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시범사업 설명자료", 내부자료, (2019.4.5.), pp.7-10. 참고후 저자 재작성

□ 주요사례 및 운영특성

시범사업에서의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사업시행과 시공 업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 등 책임과 권한을 좀 더 부여하도록 하고 사업부서의 경우 기획·설계·발주 관련 업무 전문성 강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총괄디자이너, 전문기관 위탁대행, 지자체 행정체계 내 디자인업무 지원조직을 두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자체 행정의 디자인 업무 전문성 부족, 담당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업무 연속성 저하 등에 의한 문제가 더욱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시기별, 세부사업별로 달리 참여하고 기획단계에서 이해관계자간 총괄적 협력체계 구성의 미흡 등 내실 있는 협력체계 구성의 어려움¹⁴⁰⁾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일반농산어촌개발(농림축산식품부)

□ 민간전문가 도입배경 및 현황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54조, 제101조에 근거한 농어촌마을 정비계획 수립의 총괄 진행 조정역할을 위해 총괄계획가를 위촉·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기본계획에 건축물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하는 기존의 방식

140) 여혜진 외(2018),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p.135. 참고후 저자 재작성

으로는 양질의 건축디자인이 어려우며, 기존 설계비 2억이상 설계공모 및 사전검토의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공공건축가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 공공건축가 참여를 확대하여 건축설계를 별도로 발주하도록 제도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사업 참여시 공공건축가를 위촉하고 PM단에 참여시키는 경우 신규사업 평가가점 부여하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전문가 참여 규정

「농어촌정비법」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또는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계획 및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출처: 「농어촌정비법」(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검색일: 2020.2.13.))

[표 부록2-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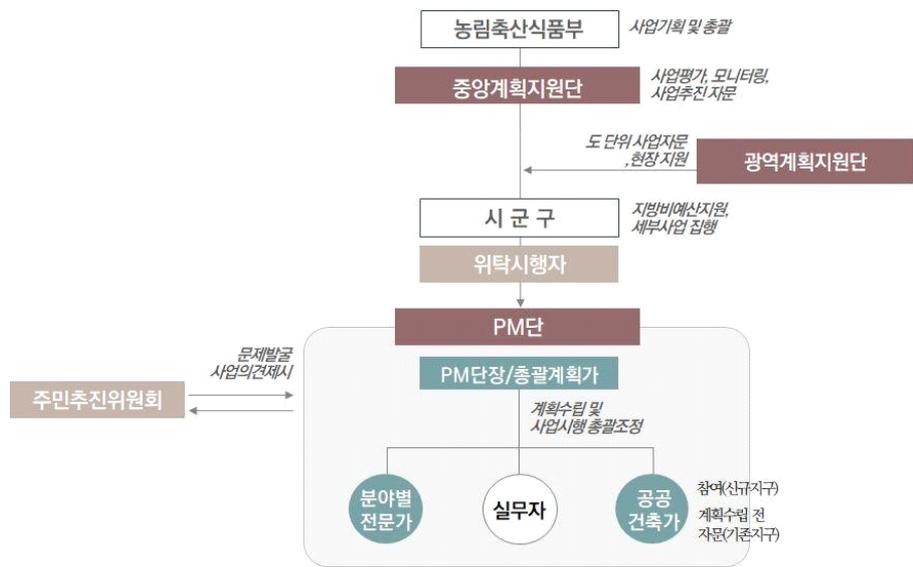
구분	내용
사업내용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 지원 * 사업유형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 생활 거점, 마을만들기, 시군 역량강화, 농촌다움 복원으로 구분
사업시기	2005 ~ 현재
근거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71조
재원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민간전문가 유형	PM단 (총괄계획가) 사업의 총괄진행 및 조정, 사업발주 관련 검토 및 총괄조정 등 * 총괄계획가 제도는 농어촌정비법 제 54조에 근거하여 추진 공공건축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경우 PM단 내 공공건축가를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의 자문·조정 역할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18.12.), “2020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설명회 자료”, pp.52-63.; 이유직(2019),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과 책임”, 2019년 착수지구 관계자 워크숍 내부자료, p.4.;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9),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법정부협업체 발족식 회의자료”, pp.31-36. 참고후 저자 재작성

□ 민간전문가 운영 및 지원체계

일반농산어촌사업은 사업의 총괄 역할인 PM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 자문 및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앙계획지원단, 광역계획지원단을 운영

하고 있다. 지자체는 중앙계획지원단의 자문을 받아 사업총괄 및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하며,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총괄계획가 및 PM단을 구성하며 보통 PM1인, 분야별 전문가, 실무자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의 총괄계획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PM단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맞게 일체형(PM-중간지원조직-전문가 컨소시엄)과 분리형(PM단을 우선구정하고, 계획수립업체를 향후 별도 선정)을 선택하여 추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공건축가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계획 수립 자문·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PM단 내 공공건축가 참여를 유도하여 기본계획 수립 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림 부록2-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체계

출처: 이유직(2019),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과 책임”, 2019년 착수지구 관계자 워크숍 내부자료, pp.4-8. 참고 후 저자 재작성

□ 민간전문가 역할 및 관계

사업을 이끌어가는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PM이 함에 따라, 사업계획수립부터 주민역량 강화 교육까지 사업계획, 실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내 개별 건축물에 한해 기획부터 시공단계까지 전반의 자문 역할을 위해 공공건축가가 별도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이다. PM(총괄계획가)은 사업계획부터 완료단계까지 사업 전 과정을 총괄 진행하며, 외부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계획수립,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 역할 수행,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한다. 행정과 중앙계획지원단과의 협력 조율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추구를 위한 협의를 주도하며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내실 있는 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전문가의 사업 참여한다. 공공건축가는 지자체에서 위촉하며, 기본계획 이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커뮤니티시설의 경우 양질의 건축디자인을 위한 기획 및 개별건축물 단위의 사업추진과정 참여한다.

[표 부록2-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전문가 자격 및 구성, 역할

구 분	자격 및 구성	역할
PM단 (총괄계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촌 계획,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학과 교수 · 다음 각목의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1. 지역개발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지역개발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3. 지역개발분야의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4. 그 밖에 학위 또는 자격을 소지하지 못하였으나 지역개발분야 실무전문가로 전문지식과 실무 경력이 풍부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 과정의 총괄 · 진행 및 계획의 주요 내용 검토 · 조정 ·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공무원 등의 자문 요청 ·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 · 군 ·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 설계 용역 및 공사 등의 발주방식과 과업 지시서 등에 대한 검토 · 단위사업별 시행계획 작성, 수정, 변경에 대한 검토 · 시행주체 선정 및 운영 주체의 발굴 · 부서별, 분야별 추진사업의 연계 및 조정 · 연차별 사업추진과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수행 · 행정 전담조직,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정

출처: 「농어촌정비법」(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 20.3.15); 중평음(2018), "PM단 구성·운영 및 예산 집행 기준", 내부자료, pp.3-4. 참고후 저자 재작성

□ 주요사례 및 운영특성

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PM단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대신하며 그 중 PM/총괄계획가가 사업 총괄조정역할을 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들에 대한 책임과 권한 설정이 미흡하여 지자체마다 사업추진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¹⁴¹⁾의 경우 지역 문제를 종합 진단하고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밀착하여 장기간에 걸쳐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PM단을 구성하여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컨트롤하는 역할 부여하였다. 지역 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월 1회 정기적인 PM단 회의를 진행했으며 주민설명회, 포럼 등을 개최하여 지역민을 초대하여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 및 인식 제고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PM단이 주체적으로 회의 및 계획과정 진행을 주재할 수 있는 권한이 미흡하며, 용역사 및 지자체가 협의를 추진하도록 함

141)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한빛나 주무관 유선인터뷰 내용 정리(2020.5.14.)

에 따라, 역할 수행 및 역할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¹⁴²⁾

5) 문화도시사업(문화체육관광부)

□ 민간전문가 도입배경 및 현황

문화도시사업은 각각의 제안된 사업의 적절성 판단과 전문적인 의견 청취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사업 평가항목에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문 추진 조직 확보라는 항목을 넣어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민간전문가는 문화도시 지정사업 전반을 관할하는 총괄팀장과 문화적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맡게 될 문화도시재생 팀장으로 활동하게 되며, 문화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이 지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도시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해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민관 협력에 의한 환경진단, 평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하고 있다.

[표 부록2-10] 문화도시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를 꾀함으로써 추진	
사업 시기	2018 ~ 진행 중	
근거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35조의 2, 제35조의 3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재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민간전문가 유형	문화도시 지원센터장 (총괄기획가)	· 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절차 이행 및 과정 전반 전문 관리 ·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전문컨설팅체계 운영 및 지원 · 문화도시 추진자료의 통합기록 및 관리와 DB 정보 구축
	문화도시 컨설팅단	· 중앙정부차원의 문화도시컨설팅 단을 구성하여 정책계획부터 사업계획, 실행, 관리까지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0),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pp.2-5, pp.33-34. 참고후 저자 재작성

142) 충북연구원 변혜선 박사 유선 인터뷰 내용 정리(2020.5.14)

□ 민간전문가 운영 및 지원체계

• 민간전문가 및 관련조직 운영체계

중앙차원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컨설팅단과 사업단위의 문화도시지원센터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라는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조직하고 사업의 추진-지원-관리를 함께 이끌어가는 구도로 사업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문화도시조례에 근거하여 문화도시추진 전문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때 문화도시총괄기획자(PM)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도시총괄기획자는 도시문화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센터는 문화기획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와 활동가를 축으로 구성된 정식조직으로 각 프로젝트 기획·추진/사업예산수령/정산 및 결과정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민간전문가가 소속된 중간지원조직인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총괄기획자와 함께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문화도시 지정준비, 문화도시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문화도시 관련 연계사업, 인재육성, 세부사업들에 대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사업추진 기획 및 운영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사업실행 관련 의견공유 및 시행을 위해 문화도시추진위원회(행정-시민-전문가)와 공유테이블 운영을 통해 사업방향 및 세부사업제안, 주요의제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 중앙차원의 문화도시컨설팅단을 두어 사업계획-실행-관리 등 전반의 전문컨설팅 및 심의 업무를 수행가능하도록 운영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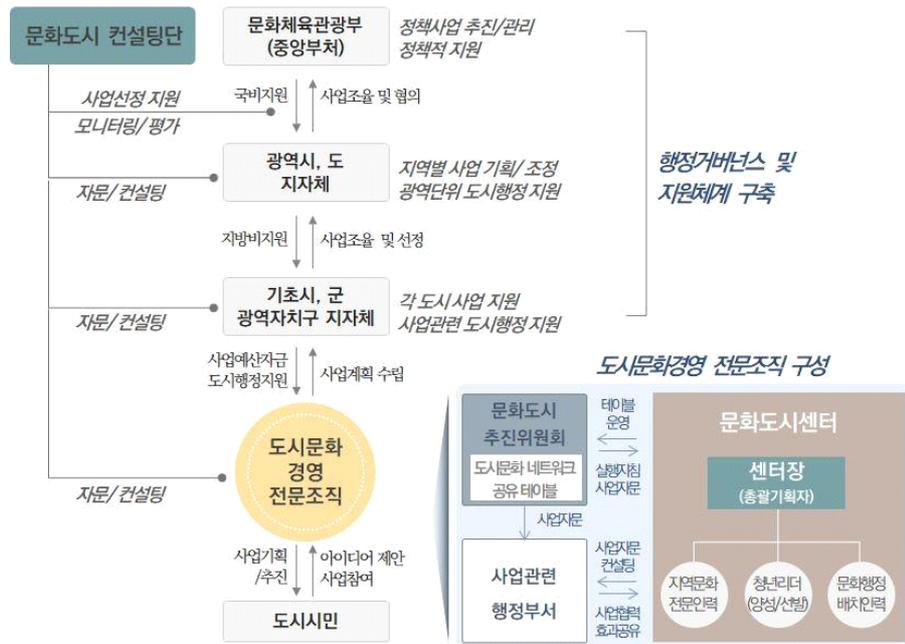
□ 민간전문가 역할 및 관계

센터장(총괄기획자)은 센터 내 관련 분야별 전문가(지역문화, 청년, 문화행정 등)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시민, 전문가의 협의체인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공유테이블 운영을 통해 주민교육 및 의견수렴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컨설팅단과 연계하여 문화도시 정책사업의 틀을 마련하고 정책 자문역할 수행하며 도시에 대한 전문조사 및 연구 추진, 문화도시사업 선정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및 사업평가 지원,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간의 거버넌스 매개로서 역할 지원한다.

[표 부록2-11] 문화도시사업 민간전문가 자격 및 구성, 역할

구 분	역할
문화도시지원 센터장 (총괄기획자)	문화도시 사업컨설팅, 문화도시 관련 연구개발 조사, 문화도시 사업 평가 및 관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0),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p.29. 참고후 저자 재작성



[그림 부록2-5] 문화도시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0),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p.28.

□ 주요사례 및 운영특성

문화도시사업은 2019년 말 선정, 2020년부터 예산편성이 지원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운영특성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총괄기획가를 위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부평구와 충북 청주시의 경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예비 심의 기간 내 도시문화 총괄기획가를 위촉하여 실행력을 갖춘 사업 추진 동력 확보하였다. 이외에도 2020년 4월 23일 대구 수성구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지역 내 다양한 인적자원들이 결합한 협의체인 문화도시추진단을 발족하고 지역 문화재단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영입된 민간전문가 투입하였다.

지역 내 문화도시센터와 사무국 등 중간 지원 기관에서 일하는 이들 전문가들은 사업이 선정되기 이전부터 투입되며 사업선정에 일조하지만 대부분의 임기가 사업선정 시점에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제1차 문화도시로 선정된 청주시의 경우 예비심사과정에서의 위촉된 총괄기획자의 임기가 2019년 12월에 종료되었으며 문화도시 사업의 주 업무가 문화도시센터로 옮겨감에 따라 새로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다.¹⁴³⁾ 민간전문가의 안정적 운영

을 위한 민간전문가 투입과정에서의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권한, 고용형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체계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¹⁴⁴⁾

6) 어촌뉴딜 300사업(해양수산부)

□ 민간전문가 도입배경 및 현황

어촌·어항의 통합적 재생 및 공간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120개 지역(2020년 2월 기준)에서 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2019년 8대 선도 지역을 선정하여 공간환경코디네이터와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도입을 통한 디자인 관리체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 활용, 설계 분리발주 등을 유도하고 있다.

어촌뉴딜 300사업 민간전문가 참여규정

사업의 계획서는「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07)」을 고려하여 작성
- 총괄계획가 지정 및 공공건축가 활용, 사업계획 사전 검토, 설계 분리발주 등의 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함
출처: 해양수산부(2019.12), 「20년 어촌뉴딜 300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p.8.

지자체 내 공공건축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공간환경코디네이터를 위촉하도록 하였으나 당진, 남해에서만 해당지역 공공건축가를 별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여 추진하였으며, 동해시의 경우 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지 못한 채 선도사업 추진하게 되었다.

[표 부록2-12] 어촌뉴딜 300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어촌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 어항지역의 정비 등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재생을 실현하고자 함
사업시기	2018~현재
근거법	「어촌어항법」 제4장의 2 어촌·어항 재생 (2020.02.28. 시행)
재원	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143) 청주시 문화도시센터 도경민 팀장 유선인터뷰 내용 정리(2020.5.15.)

144) 청주시 문화예술과 김소미 주무관 유선인터뷰 내용 정리(2020.5.4.)

구 분		내 용
민간전문가	권역별 총괄자문가	해양수산부장관이 8개 권역별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각 권역별 사업 추진 과정의 심의 및 관련 사업 자문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
	유형	공간환경 코디네이터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공간환경 디자인 관리체계 전 과정에 참여하여 단계별 내용을 조정,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전문가

출처: 서수정 외(2019), 「어촌뉴딜 300사업 디자인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해양수산부. p.28, pp.157-160. 참고후 저자 재작성

□ 민간전문가 운영 및 지원체계

• 민간전문가 및 관련조직 운영체계

개별지역의 사업계획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도 8대 선도사업에 한하여 공간환경코디네이터를 위촉하여 용역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전 과정을 총괄·조정하도록 하며,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분야별 자문 및 심의역할 수행을 위해 권역별 조정심의위원회¹⁴⁵⁾를 두고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권역별 총괄조정가를 별도로 두고 있다.

20년부터는 이러한 디자인관리체계를 전 대상지로 확대 적용하여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권역별 총괄조정위원회는 권역별 총괄·조정 업무를수행하며,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용역 발주단계, 계획 수립단계, 분야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디자인검토회의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시(안)을 조정·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민간전문가 근무형태 및 지원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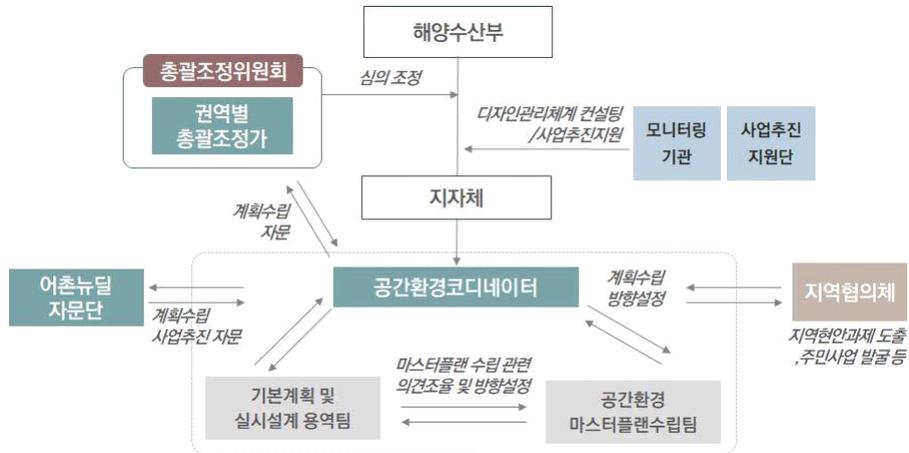
위촉된 공간환경코디네이터는 사업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지자체, 용역사 등과 비정기적 회의를 통해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에 따른 수당지급은 활동내역에 근거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며, 당해 연도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 협회)’의 기술사(건설 및 기타) 및 ‘건축사(보) 노임단가(대한건축사 협회)’의 건축사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가이드라인 상에 명시하고 있다.

□ 민간전문가 역할 및 관계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공간환경코디네이터는 관련 전문가인 공간환경디자인검토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사업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총괄조정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권역별 총괄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 컨설팅 등을 반영하여 사업추진하고 있다.

145) 권역별 총괄 조정심의위원회는 4~6인의 항만/수산업, 공간계획, 어촌어항 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공간환경코디네이터는 선도사업의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단계부터 건축·조경·토목 등 분야별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간환경 디자인과 관련한 제반 사항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우선추진사업 선정 및 설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부록2-6] 어촌뉴딜 8대 선도사업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출처: 서수정 외(2019), 『어촌뉴딜300사업 디자인제고를 위한 연구』, 해양수산부, p.107. 참고후 저자 재작성

□ 주요사례 및 운영특성

어촌뉴딜 300사업에서는 2019년도 선도사업 대상지 8곳 중 7곳(동해시 제외)에서 공간환경코디네이터를 위촉하여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까지 사업 전 과정을 총괄·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위촉 시 지역 내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 풀을 활용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사업의 특성상 대상지가 소도시로 관련 인력풀 마련에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중 당진시와 남해시에서만 지역 총괄계획가/공공건축가 풀을 활용한 공간환경코디네이터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⁴⁶⁾

146) 서수정 외(2019), “어촌뉴딜 선도사업 모니터링” 내부자료, 해양수산부 참고 재작성

7) 상권활성화사업(중소벤처기업부)

□ 민간전문가 도입배경 및 현황

상권활성화사업의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효율성 저하,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주체의 부재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중심의 관리기구가 도입되었다. 상권활성화사업은 2018년 선정 지원 3곳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9곳을 선정하여 현재 총 12곳에서 사업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신청단계에서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도록 유도하고 있다. 상권활성화구역 내 상인들은 대부분 비전문가로 상권관리기구 운영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방향 설정 등을 민간전문가와 기구의 도입을 통해 지원받음에 따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표 부록2-13] 상권활성화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도심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으로 주변 환경 개선, 테마공간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 시기	2011~ 진행 중
근거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절 2
재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민간전문가 유형	타운매니저 · 상권활성화구역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료 제공 · 상권활성화 구역 세부추진계획 수립 · 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및 관리 · 상권활성화사업의 추진 ·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기타 상권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출처: 「상권 활성화사업 운영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 20.3.18) 참고후 저자 재작성

□ 민간전문가 운영 및 지원체계

• 민간전문가 및 관련조직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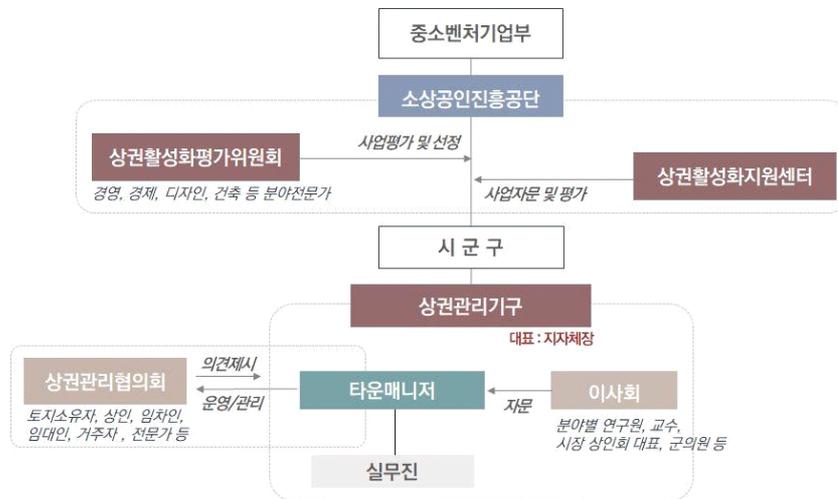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조직으로는 지역단위에서는 사업 추진 및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상권관리기구(재단)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운영을 위하여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인, 임차인, 임대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권협의회가 있다. 이중 상권관리기구(재단)는 지자체장이 대표이며, 내부 이사회(각 분야별 연구원 또는 대학교수, 시장상인회 대표, 군의원 등)를 운영을 통해 자문,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상권별 차별화 육성 방안 등을 모색하며, 지구 내 민간전문가인 타운매니저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에서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상권활성화평가위원회,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흥공단 내에 상권활성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평가위원회와 지원센터는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방향 및 계획, 사업선정 등에 대한 내용을 관할하는 조직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기보단 진흥공단 내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할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 민간전문가 역할 및 지원체계

상권활성화사업 내의 프로젝트 민간전문가인 타운매니저는 사업 추진 및 관리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속해있는 상권관리기구의 장은 지자체장으로 제시되고 있어 기구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타운매니저의 주요업무로는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및 관리,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전반의 업무를 협의회와의 협업 등이다.

타운매니저와 상인회 대표,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은 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상권관리 전문가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받고 사업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기반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¹⁴⁷⁾



[그림 부록2-7] 상권활성화사업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출처: 「상권 활성화사업 운영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0.3.18) 참고후 저자 재작성

147) 「상권 활성화사업 운영지침」제12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20.3.18) 참고후 저자 재작성

[표 부록2-14] 상권활성화사업 민간전문가(타운매니저) 자격 및 구성, 역할

자격 및 구성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관리기구는 시행규칙 제7조의 4의 규정에 따라 타운매니저를 두어야 한다 1. 경영, 경제,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경영, 경제,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경영, 경제,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전문성이 충분히 갖추어 졌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활성화구역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료제공 · 상권활성화구역 세부추진계획 수립 · 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및 관리 · 상권활성화사업의 추진 ·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기타 상권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 임명된 타운매니저와 상인회 대표,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은 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상권관리전문가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함

출처: 「상권 활성화사업 운영지침」 제12조,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0.3.18)

□ 주요사례 및 운영특성

타운매니저가 속한 상권관리기구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의해 기구의 설립 및 운영여부가 좌우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구의 운영과정에서 상권 활성화에 투여될 예산이 재단의 운영경비로 투여되는 등의 한계가 발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¹⁴⁸⁾ 지자체의 역량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기구의 특성상, 지역 여건으로 인해 기구의 총괄능력이 부재함에 따라 타운매니저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도 보여진다. 특히 일부지자체의 경우 국비지원 종료 후 지자체 예산으로 지속 운영해야 하는 부담으로 타운매니저의 위촉을 보류하거나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¹⁴⁹⁾

타운매니저 등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통한 이점으로 사업 초기 방향설정 및 지역 내 유관사업 등의 현황과 연계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으나, 지자체 예산마련 등 여건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48) 한지혜(2018), 「경기도의 상권관리제도로서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용 방안」, 경기연구원, p.19.

149) 부여군의 타운매니저는 2014년부터 2016년 3년간의 활동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위촉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이유로 국비사업으로 인건비가 보존되던 시기와는 달리 국비사업 종료 후 군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해당 인건비의 총량이 부담스러운 예산의 문제로 인해 재위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힘 (출처: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경영기획팀 조은화 차장 유선인터뷰 내용 정리(2020.5.15.))

8)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 민간전문가 도입배경 및 현황

학교공간혁신사업은 학교의 공간혁신 요구 증대의 대응과 교육부 내의 관련 사업의 산발적 추진과 지자체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학교공간 사업과의 연계강화¹⁵⁰⁾와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국정현안조정회의(19.1)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및 품격제고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가이드라인상에 총괄 및 실행기획가 제도·도입 운영을 통한 학교공간혁신 총괄 및 현장 수용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학교공간혁신 전문 관리자로서 총괄기획가(추진단 부단장 및 전문가 자문단 위원장 겸임/ 現공 주대학교 이화룡교수) 및 실행기획가(공주대학교 고인룡 교수)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를 두어 학교구성원과 설계·시공자와 조성과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표 부록2-15] 학교공간혁신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미래사회 주역인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학습과 놀이 및 휴식 및 균형잡힌 삶의 공간으로서 학교만들기	
사업시기	2019~현재	
근거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재원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민간전문가 구분	총괄기획가	교육청 소속의 학교공간혁신사업의 총괄기획 및 사업추진상의 정책 제도 개선 등 총괄 자문
	실행기획가	총괄기획가와 협업을 통해 정책 개선방안 제시, 사업추진 운영관련 업무지원 등
	학교공간 혁신촉진자 (퍼실리테이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주체들의 요구를 조율하고 설계에서 시공 및 사용 후 평가에 이르는 사업 전반을 관리

출처: 교육부(2019.4.8),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안)」, p.11. 참고후 저자 재작성

150) (교육부) 미래형 혁신학교(학교혁신정책과, 20억원), 공간수업 프로젝트(민주시민교육과, 25억원), 무한상상실(융합교육팀, 30억원), 학교공간혁신(교육시설과, 900억원), 학점제형 학교환경조성(고교학사제도혁신팀), 예술교육 공간혁신(체육예술교육지원팀)
(교육청) (서울) 메이커스페이스, 꿈담교실(17-20개교 지원), 학교공간재구조화사업(18-46개교지원, 19년-97개교/ 꿈담교실 포함) (강원) 학교감성화 사업(14), (부산) 별별공간사업(18), (광주) 아지트(아·썹·트)사업(18), (경기) 미래형 마을학교 만들기사업(18)(출처: 교육부(2019),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안)」, p.1)

[표 부록2-16] 시도 교육청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20.3.31. 기준)

구분	담당부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성명	명칭	위촉일	인원	위촉일
대구	교육 시설과 시설1담당	전혜영	총괄계획가	19.7.15	-	
울산	교육혁신과	유명희	총괄계획가(기획총괄)	20.3.1	-	
		홍경숙	총괄계획가(실행총괄)	20.3.1	-	
광주	교육 시설과 학교시설2팀	정주성	총괄계획가	19.7.15	-	
경기	북부청사 미래교육정책과 미래학교혁신팀	고인룡	총괄계획가	19.6.1	11명	19.6.13
강원	시설과	심형수	총괄계획가	19.6.13	-	
전북	시설과	박기우	총괄계획가	19.7.11	-	
경북	시설과 시설디자인 담당	이상홍	학교공간혁신 총괄계획가	19.6.28	-	
경남	교육혁신추진단 공간혁신담당	유진상	총괄계획가	19.	-	
제주	교육시설과 시설관리담당	김태일	학교공간혁신 총괄계획가	19.8.20	12명	19.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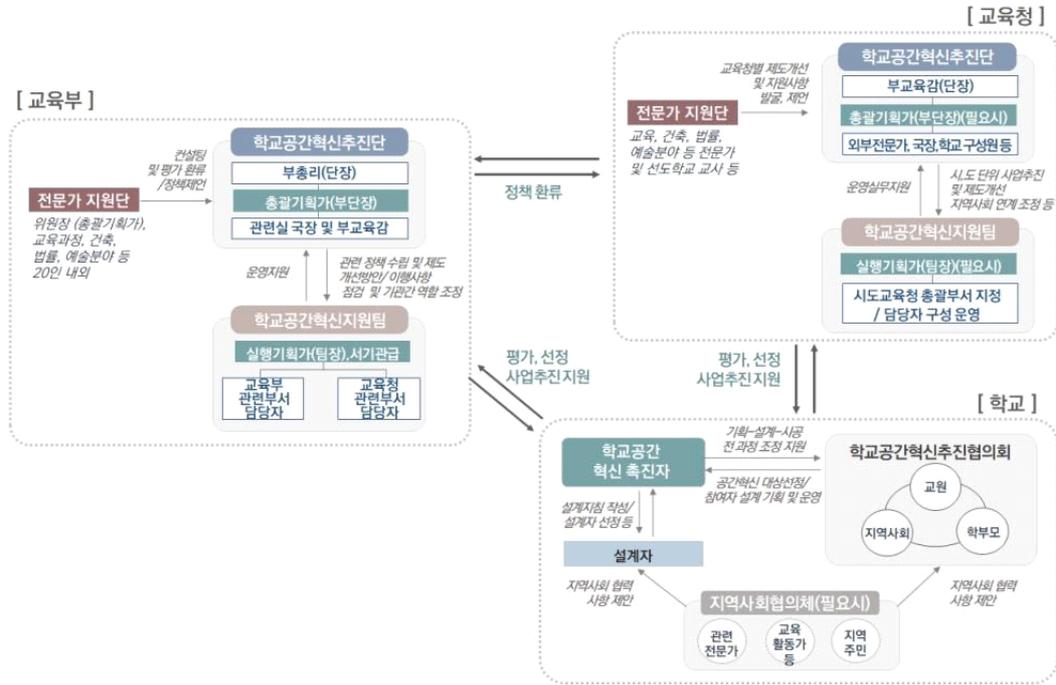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학교공간혁신사업 이외 교육청 관련 사업 총괄 조정 역할로 공공기관 민간전문가에 포함
출처: 각 홈페이지 참조 및 각 기관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 및 공문 발송 후 회신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 민간전문가 운영 및 지원체계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위해 교육부에서는 부처차원의 사업방향, 정책수립 등을 결정하며, 교육청에서 해당 지역의 학교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교육청에 필요시 총괄계획가와 실행계획가를 각각 위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육청 단위의 총괄계획가 및 실행계획가는 지역단위의 사업을 자문, 조정하는 역할로 학교단위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총괄계획가는 ‘학교공간혁신추진단’ 내 부단장의 지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시에 사업 및 정책의 제언 및 컨설팅을 담당하는 전문가 자문단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정책의 현장 수용성 제고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고자하는 의도로 보여 진다. 특히 각 학교마다 배정되는 학교공간혁신촉진자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인력풀을 구성·관리하고 교육청 선정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학교공간혁신추진협의회 및 지역사회 협의체와 협력하여 실제 사업 시행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¹⁵¹⁾ 총괄계획가와 실행계획가는 1년간 보직을 유지하며, 매월 정기2회, 수시 정책자문 및

151) 단위학교 공간혁신 기획-설계-시공 등 전 과정을 주관하도록 하되, 소규모 학교 또는 일부 영역에 대한 공간재구조화의 경우 복수의 학교 또는 영역을 묶어 담당이 가능함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공간혁신촉진자의 업무 수행기간은 설계 기획부터 실시설계 완료시점까지 전 과정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간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수행경비는 워크숍 운영, 디자인 감리, 사용 후 평가 등의 비용을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산정하며, 영역단위 사업인 경우 교육활동을 위한 제 경비(재료비, 인사이트투어비, 강사비 등)는 용역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⁵²⁾



[그림 부록2-8] 학교공간혁신사업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출처: 교육부(2019),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안)」, pp.7-13. 참고후 저자 재작성

□ 민간전문가 역할 및 관계

교육부(사업 전반의 정책 및 제도개선)-교육청(시도단위의 사업관련 제도마련 및 지원 사항 마련)의 역할 수행을 위해 각 총괄기획가, 실행기획가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을 위해 학교단위에 학교공간혁신촉진자를 두어 사업전반을 총괄 조정 하도록 하고 있다. 총괄기획자는 '학교공간혁신추진단'의 부단장으로 학교공간혁신 사업의 핵심인 총괄기획 및 사업 추진 상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

152) 사업 규모, 학교 여건과 요구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산출가능하도록 함 (출처: 교육부(2019), 「학교공간 혁신사업 가이드라인(안)」, pp.16-22. 참고후 저자 재작성)

하고, 실행기획가는 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지원 등 실무적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공간혁신지원팀'의 팀장으로 사업관련 이행사항 등을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선임한 학교공간혁신촉진자는 학교 구성원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한 사용자 참여설계와 사용 후 평가과정 등의 전 제반과정을 촉진·유도·조정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참여설계 준비 과정에서 설계자 선정방법과 설계지침 등을 기획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경우 직접 설계자를 선정하여 추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